

630.951

L293L

1999 v.2

1999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1998. 11. 12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총6권중 제2권



농림부

일 러 두 기

1. 이 지침서는 모두 6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사업명 뒤에 *표시한 것) 및 산림청 소관 사업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 제1권에는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대한 해설을 수록하였고, 제2권부터 제6권까지는 분야별 사업시행지침(1999년도 사업시행 요령과 2000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 안내)을 상세하게 수록하였습니다.
3. 이 지침서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 국립농산물검사소 출장소, 농촌지도소, 농·축·임·삼협조합, 농지개량조합, 농어촌진흥공사 지부,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시행지침의 1999년도 사업비는 잠정금액이므로 정부예산의 국회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5. 각 권별 수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권 : 관계규정 해설
 - 제2권 :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3권 : 농업(원예특용작물)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4권 : 축산업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5권 : 농촌개발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6권 :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6. 이 지침서의 내용은 PC통신(AFFIS)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지침서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AFFIS문의 : 농림수산정보센터 시스템운영과(전화 589-2039)
 - 구입문의 : 농림수산정보센터 총 무 과(전화 589-2034, 2036, 2048)

차 례

제1권 [관계규정 해설]

I. 농림사업실시규정 해설	1
1. 배경	3
2. 주요골자	4
3. 주요 변경사항	7
4. 해설	9
제1장 총칙	9
제2장 자율사업	13
제3장 공공사업	19
제4장 신규사업의 선정절차	21
제5장 보칙	23
II.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해설	25
1. 배경	27
2. 주요골자	28
3. 주요 변경사항	32
4. 해설	36
III. 농림사업실시규정(농림부 훈령 제965호)	55
IV.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농림부 훈령 제948호)	107
V. 참고사항	137
1. 42조원 지원계획	139
2. 농어촌특별세사업 지원계획	141
3. 농림사업자금 대출안내	143

제2권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I. 생산기반확충	149
1. 영농규모화사업(자율)	151
2. 토양개량사업(자율)	180
① 토양개량제공급 ② 객토	
3. 주요농작물원원종 및 원종생산*(공공)	202
4. 발기반정비(공공)	212
5. 경지정리사업(공공)	232
6. 기계화경작로확포장(공공)	260
7. 배수개선(공공)	272
8. 수리시설개보수(공공)	295
9. 대·중규모용수개발(공공)	331
10. 지표수보강개발(공공)	357
11. 농촌생산기반조사 및 생산기반종합정비시범사업(공공)	375
① 지하수개발조사 ② 농업용수수질조사·연구 ③ 해외농업투자환경조사	
④ 농업생산기반종합정비시범사업	
12. 대단위농업종합개발(공공)	412
13. 지역특화사업지원(공공)	427
①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② 감귤복합가공처리시설사업	
14. 서남해안간척(공공)	462
II. 농업기계화	481
15. 농기계구입지원(자율)	483
① 일반농가 ② 벼직파 및 발작물용 ③ 생산자조직 ④ 쌀전업농	
16. 농기계사후관리지원(자율)	575
① 농기계보관창고설치 ② 농기계수리봉사지원 ③ 광역농기계수리센터설치	
17. 시설농업기자재생산 및 농업기계생산비축지원(공공)	612
① 시설농업기자재생산지원 ② 농업기계생산비축지원	
III. 생산 및 유통개선	627
18. 미곡종합처리장설치운영(자율)	629
19. 농업협동조합합병지원(공공)	651
20. 농산물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실시(공공)	654
① 규모화촉진직접지불 ②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제3권 [농업(원예특용작물)구조개선]

I. 생산기반확충	693
21. 고품질수량증자개발(공공)	695
II. 생산 및 유통개선	705
22. 원예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자율)	707
① 시설원예 ② 노지채소 ③ 특작 ④ 과실	
23. 농산물규격출하(자율)	800
① 포장자재비지원 ② 포장개선시범	
24. 생산자조직육성(자율)	822
25. 산지유통기반확충	833
① 농산물산지유통센타건설 및 집하장시설보완 ② 농산물저온유통기반확충	
26. 농수산물도매시장및공판장건설(공공)	891
① 농수산물 도매시장건설 및 공판장건설 ② 농산물 도매유통시설 보완	
27. 농산물물류표준화(공공)	922
28. 농축산물판매촉진(공공)	933
29. 농산물물류센타(시설)건설(공공)	938
① 물류센타 ② 소비자단체물류시설	
30. 농산물직거래지원(공공)	959
31.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물류센타출하촉진자금(공공)	976
32. 채소수급안정사업(공공)	983
33. 농산물해외시장개척(공공)	990
34. 농수산물무역진흥센타건립(공공)	1013
35. 수출농산물저장시설설치(공공)	1019
36. 우수농산물수매 및 유통지원사업(공공)	1026

제4권 [축산업구조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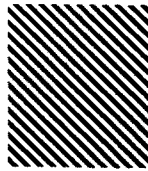
I. 사육기반확충	1043
37. 축산경쟁력강화사업(자율)	1045
①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② 축산분뇨처리시설 ③ 경주마육성사업	
38. 축산단지조성사업(공공)	1107
39. 가축계열화사업(공공)	1120
40. 소산업정보화사업(공공)	1135
41.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공공)	1141
 II. 생산 및 유통개선	 1151
42. 축산물종합처리장 및 공판장건설(공공)	1153
43. 축산물품질향상 및 유통시설지원(공공)	1159
① 품질향상 및 유통시설 ② 등급판정	
44. 경영상담·홍보 및 기술개발(공공)	1186
① 경영상담 및 홍보 ② 가축공제 ③ 식육처리전문인력양성	
45. 축협조합 경영개선(공공)	1199
46. 축산기자재생산시설지원사업(공공)	1211
47. 사료제조시설 및 사료원료구입(공공)	1216
48.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공공)	1234
① 가축방역 및 축산물검사 ② 축산위생시설자금지원	
49. 학교우유급식사업(공공)	1258
50. 축산자조금(공공)	1266
 III. 가축개량	 1271
51. 가축개량사업(공공)	1273
① 한우개량 ② 젖소개량 ③ 돼지개량 ④ 닭개량	
52. 가축개량기반구축(공공)	1311

제5권 [농촌개발]

I. 생산 및 유통개선	1319
53.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 및 환경농업지구조성(자율)	1321
①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 ② 환경농업지구조성 ③ 친환경농업시범마을조성 ④ 환경농업교육사업	
54. 농촌가공산업육성(공공)	1371
① 농산물가공산업육성 ② 특산단지육성 ③ 농산물가공공장 경영·기술지도 ④ 명품개발	
II. 기술개발 및 정보화	1457
55. 농림기술개발(공공)	1459
56. 농촌활력화시범사업*(공공)	1468
① 농업인건강관리시설치 ② 지역특화시범사업	
57. 기술보급사업*(공공)	1488
① 새기술보급시범사업 ② 품목별전문교육 및 농업인학습단체육성 ③ 영농4-H회원 시범영농지원	
III. 인력육성	1515
58. 농업인후계자육성(자율)	1517
59. 전업농육성(자율)	1552
60. 농업경영종합자금지원시범사업(자율)	1597
61.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공공)	1615
62. 농업계학교등교육지원(공공)	1627
① 농업계특성화대학지원 ② 한국농업전문학교지원	
63. 농업경영컨설팅지원(공공)	1638
IV. 소득원개발	1677
64.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자율)	1679
65. 농공단지육성(공공)	1739
66. 한계농지정비(공공)	1756
67. 농·축산경영자금지원(공공)	1770
① 농업경영자금 ② 축산경영자금	
V. 생활환경개선	1785
68. 농촌정주생활권개발(공공)	1787
① 일반정주권개발 ② 문화마을조성 ③ 농촌마을하수도시설 ④ 농가주거환경개선	
69.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공공)	1867

제6권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I. 경영기반확충	1891
70. 산림경영장비지원(자율)	1893
71. 사유림협업경영(공공)	1897
72. 임도시설(공공)	1902
73. 영림계획(자율)	1907
74. 임업기술개발보급(공공)	1912
II. 생산 및 유통개선	1917
75. 임산소득증대(자율)	1919
① 단기소득임산물생산 ② 조경수·분재소재생산 ③ 산림복합경영	
76. 임산물이용가공 및 저장시설(자율)	1944
77. 임업협동조합 및 임산물생산자조직육성(공공)	1956
① 임업협동조합육성 ② 임산물생산자조직육성	
78. 임산물유통개선지원(공공)	1967
79. 합판 및 보드류시설지원(공공)	1997
III. 인력육성	2003
80.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육성(자율)	2005
81. 임업전문인력양성 및 임도시공장비지원(공공)	2011
① 임업전문인력양성 ② 임도시공장비지원	
IV. 환경임업육성	2023
82. 산림휴양공간조성(공공)	2025
83. 사방사업(공공)	2031
84. 산림생태보전(공공)	2036
85. 산촌종합개발(공공)	2043
V. 산림자원조성	2055
86. 해외조림사업(자율)	2057
87. 산림조성(공공)	2063



I. 생산기반확충

여 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지관리과(과장 이준영, 행정사무관 김부천)입니다

1. 목 적

- 농지매매 및 장기임대차를 통하여 농가의 영농규모를 확대하고 농지교환·분합 촉진으로 농지의 집단화를 도모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제고
-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이끌어갈 전문화·규모화된 쌀농업경영체 육성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지의 규모화·집단화로 쌀 산업의 경쟁력 제고
- 쌀전업농을 집중 육성하여 주곡의 안정적 생산기반 확보
- 임차농가의 안정된 영농보장과 전업농가의 자립여건 조성

3. 근거법령

-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제13조 (농지매매사업등)
 - 제14조 (농지의 전매·임대등의 제한)
 - 제15조 (농지의 장기임대차)
 - 제16조 (장기임대차간척농지등의 매입)
 - 제19조 (전업농가의 영농복귀 지원)
 - 제20조 (농지의 교환·분합등)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95까지	'96	'97	'98	'99	2000~2004
사 업 량		ha 66,052	7,890	13,338	15,208	12,534	70,535
사 업 비	계	백만원 2,222,913	336,539	348,396	359,849	248,042	1,853,658
	보 조	-	-	-	-	-	-
	용 자	2,222,913	336,539	348,396	359,849	248,042	1,853,658
	지방비	-	-	-	-	-	-
	자부담	-	-	-	-	-	-

5. '99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구 분	사 업 내 용
○ 농지매매	○ 비농가, 전업(轉業)·은퇴하고자 영농규모를 축소하는 농가와 법인소유의 농지등을 매입하여 이를 쌀전업농등에게 매도
○ 농지장기임대차	○ 전업(轉業)·은퇴하고자 영농규모를 축소하는 농가등으로부터 농지를 장기임차하여 이를 쌀전업농등에게 장기 임대
○ 농지교환·분합	○ 농지교환·분합시 교환분합차액 지원 및 경지정리 집단환지시 청산금 지원

나. 지원대상

구 분	지 원 대 상
○ 농지매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전업농으로 선정된 자 ○ 벼를 주작목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장기임차간척·개간농지 매매지원의 경우에는 당해 간척·개간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 영농복귀자 ○ 농어촌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증환지대상자 ○ 과수(감귤)전업농으로 선정된 자(제주도에 한함)
○ 농지장기임대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전업농으로 선정된 자 ○ 벼를 주 작목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영농복귀자 ○ 과수(감귤)전업농으로 선정된 자(제주도에 한함)
○ 농지교환·분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교환·분합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경지정리 집단환지청산금 지원대상자

다.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실제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라. 매매사업대상농지의 지원상한

- 지원상한은 답은 평당 30,000원, 과수원은 평당 35,000원으로하고, 그 초과 금액은 자부담
- 지원상한액인 30,000원(답) 및 35,000원(과수원)이하범위에서는 10%자부담

마.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구 분	지 원 규 모	지 원 조 건	
		융자금리	상 환 기 간
○ 농지매매자금	10ha	연 4.5%	20년 균분상환
○ 농지임대차자금	"	무 이 자	5~7년 균분상환
○ 농지교환·분합 자금	교환·분합하는 농지가격 차액 및 청산금 납부해당액	연 4.5%	10년 균분상환

※ 매매, 임대차 지원규모는 쌀전업농 기준임 (경영체별 지원한도 참고)

바. '99년도 사업비 내용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농지관리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ha 12,534	백만원 248,042	248,042	-	248,042	-	-
○ 농지매매	2,465	125,715	125,715	-	125,715	-	-
○ 농지임대차	9,875	116,525	116,525	-	116,525	-	-
○ 농지교환·분합	194	5,802	5,802	-	5,802	-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농지관리과, 전화 : 02-503-7264~5, 02-500-2635)

나. 사업시행기관

(1) 중앙단위

- 농어촌진흥공사 (영농규모화사업처, 전화 : 0343-420-3058, 3356, 33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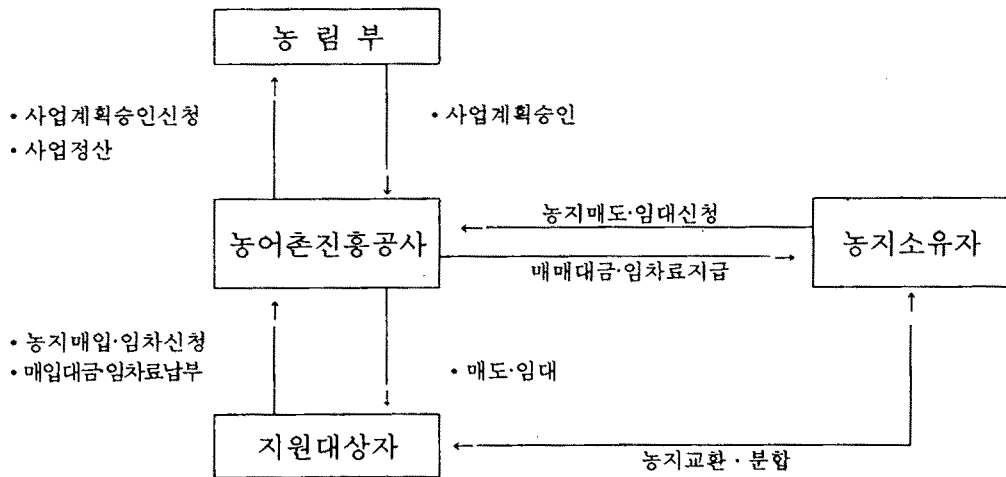
(2) 시·도단위

- 농어촌진흥공사 각 지사(영농규모화사업부)

(3) 시·군단위

- 농어촌진흥공사 각 시·군지부

다. 사업추진 체계도



< 사업시행요령 >

가. 농지매매사업

(1) 일반농지 매매사업

(가) 농지매입(공사가 농지를 매입할 경우)

○ 매입대상농지

- 농업진흥지역안의 답 및 농업진흥지역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답을 대상으로 다음순위에 따라 매입(다만, 쌀전업농등의 영농규모확대를 위해 불가피하게 매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진흥지역과 연결된 진흥지역밖의 답도 매입 가능)

- ①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의 답
- ② 비농가 및 비농업법인 소유의 답
- ③ 전업(轉業)을 위해 0.1ha까지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의 답 (단, 1필지 규모가 0.1ha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0.2ha까지 허용)
- ④ 은퇴를 위하여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의 답
- ⑤ 벼이외의 타작목으로 주작목을 전환하기 위해 0.1ha까지 벼농사의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의 답. 단, 1필지 규모가 0.1ha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0.2ha까지 허용
- ⑥ 농어촌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지정을 포기한 경지정리 사업지역내의 답
- ⑦ 농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명령을 받은 답중 벼경작에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쌀전업농의 규모화·집단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답

- 제주도에 한하여 농업진흥지역안의 감귤과수원 및 농업진흥지역밖의 우량 감귤과수원을 대상으로 다음순위에 따라 매입(다만, 과수전업농의 영농규모확대를 위해 불가피하게 매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진흥지역과 연결된 진흥지역밖의 감귤과수원도 매입 가능)

- ① 비농가 및 비농업법인소유의 과수원
- ② 전업(轉業)·은퇴 또는 타작목전환을 위해 감귤농사를 완전히 포기한 자의 과수원
- ③ 농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명령을 받은 과수원중 감귤경작에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감귤전업농의 규모화·집단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수원

※ 우량감귤과수원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한해·동해를 받는 지역은 제외

- (1) 해발 250m이하의 감귤과수원
- (2) 경사도 15%이하의 감귤과수원
- (3) 토지적성등급이 3급지이상의 감귤과수원
- (4) 감귤과수원이 7ha이상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의 감귤과수원

○ 매입가격의 결정

- 공사는 매입대상 농지소유자와 매매가격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와 인근지역의 실제 거래가격 및 공사의 현지조사에 의한 가격등을 감안하여 결정
- 현지조사시에는 조사대상 농지가격 등에 대한 농지관리위원등의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지원농지가격 등의 허위·담합을 사전 예방

○ 매매계약의 체결

- 공사는 매입대상 농지소유자와 매매협의를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매매계약을 체결

○ 매입대금의 지급

- 공사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매입대금을 지급
 - 계약금 : 매매계약 체결시 매입대금의 10%
 - 잔 금 :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제출시

○ 신청서식 : 별지 제1호서식

(나) 농지매도 (공사가 농지를 매도할 경우)

○ 매도대상자(아래의 각항중 한가지 경우에 해당된자)

① 쌀전업농으로 선정된 자

② 벼를 주작목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다음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법인)

- 총 출자액이 1억원이상이며, 조합원 또는 사원 1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 총출자액의 50%이상을 농지로 출자하고, 경작하고 있는 소유논이 각각 영농조합법인은 5ha이상, 농업회사법인은 10ha이상인 법인

- 운영실적이 1년이상이며 구성원 2/3이상인 비재배 경력 3년이상인 법인
- 운전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

③ 영농복귀자

- 공사에 농지를 매도하고 전업(轉業)한 자로서 전업후 2년 이내에 영농에 복귀하여 벼를 주작목으로 경영할 자

④ 농어촌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증환지대상자

- ⑤ 제주도에 한하여 과수(감귤)전업농으로 선정된 자 또는 과수(감귤)를 주작목으로 하여 설립된 농업법인으로서 과수농업법인의 자격요건은 위 ②의 기준을 준용

○ 매도대상 제외자

- 쌀 및 과수(감귤)전업농으로 선정된 이후 자기 보유농지를 고의로 매도 또는 임대하여 경영규모를 축소한 자
- 농지매입신청자가 당해농지의 매도대상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 다만,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도대상에 포함
- 주경작지가 소재한 시·군·구 및 연접한 시·군·구외에 소재하는 농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자와 해당 도·광역시 밖의 농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자. 다만, 행정구역 경계선이 한 들녘을 지나는 경우에는 그 들녘에 한하여 매도

○ 지대별 지원한도

- 기존 소유규모를 포함하여 경영규모
 - 평야지대 : 10ha까지
 - 중간지대 : 7 ha까지
 - 산간지대 : 3 ha까지

○ 매도한도

- 지대별 지원한도를 원칙으로하며 지역실정에 따라 개별 경영체별로 기존 소유규모를 포함한 경영규모
 - 쌀전업농 : 10ha까지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20ha까지
- 영농복귀자 : 전업당시 공사에 매도한 농지면적 규모이내

○ 지원우선순위

- ① 농지이용증진사업 지구내 쌀전업농
- ② 쌀전업농 선정이후 자력에 의한 농지확대규모가 큰 농가
- ③ 쌀전업농중 매매사업 신청시 정부지원면적이상 자력에 의해 농지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농가
- ④ 규모화촉진직접지불사업 대상 농업인의 농지매입 희망자
 - 4-1. 집단화가 가능한 자
 - 4-2. 전업농규모 도달가능성이 높은 자
 - 4-3. 규모화촉진직접지불사업 대상자가 지정한 자
- ⑤ 기타농지 매입희망자
 - 5-1. 집단화가 가능한 자
 - 5-2. 전업농규모 도달가능성이 큰 자(진흥지역내 경영규모가 큰 자)

※ 지원 우선 순위가 같을 경우 기 지원자중 영농규모화사업 지원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한 농업인 및 경영체를 우선 지원

○ 매도가격의 결정

- 공사가 매입한 가격으로 매도
- 공사는 매도대금을 분할수납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전매, 임대, 대리경작 및 담보제공의 제한을 위한 “특약등기”를 하므로써 전매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예방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등기비용은 농지매입자가 부담

○ 매매계약의 체결

- 매도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공사는 매매협의를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매매계약을 체결

○ 매도대금의 수납

- 일 시 불 : 농지매입농가가 원할시 일시불로 수납
- 분할상환
 - 금 리 :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연리 4.5%
 - 상환기간 : 20년간 균등분할상환

○ 신청서식 : 별지 제2호서식

(2) 장기임대차 간척·개간농지 매매사업

- 매입대상농지
 -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되어 20년 이상 장기간 임대차되고 있는 간척 및 개간 농지 (답에 한함)
- 지원대상자
 - 당해 간척·개간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 매매가격의 결정
 - 공사와 농지소유자 및 경작농업인이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
- 매매협의 조정
 - 공사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매매 협의 조정 요청
- 기타사항
 - 기타 사항은 본 지침 중 농지매매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

나. 농지임대차사업

- 임차대상농지(공사가 농지를 빌릴 경우)
 - 답의 경우 다음순위에 따라 임차
 - ①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의 답
 - ② 전업(轉業)을 위해 0.1ha까지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의 답 (단, 1필지 규모가 0.1ha를 초과하는 경우 0.2ha까지 허용)
 - ③ 은퇴를 위하여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의 답
 - ④ 벼이외에 타작목으로 주작목을 전환하기 위해 0.1ha까지 벼농사의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의 답 (단, 1필지의 규모가 0.1ha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0.2ha까지 허용)
 - ⑤ 임차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자경하고 있는 답과 100m이내 인접된 비농가의 답
 - ⑥ 공사에 임대한 농지로서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공사에 계속 임대하고자 하는 농지

- 제주도에 한하여 과수원(감귤재배)의 경우 전업(轉業)·은퇴 또는 타작목전환을 위해 감귤농사를 포기한 자의 과수원

○ 임차대상 제외농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등과 농지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차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농지

○ 대상지역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 다만, 개별법에 의한 각종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내의 농지는 제외

○ 임대 대상자(공사가 농지를 빌려줄 경우 : 아래 각항중 한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자)

① 쌀전업농으로 선정된 자

② 벼를 주작목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다음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법인)

- 총 출자액이 1억원이상이며, 조합원 또는 사원 1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 총출자액의 50%이상을 담으로 출자한 법인
- 운영실적이 1년이상이며 구성원 2/3이상인 벼재배 경력 3년 이상인 법인
- 운전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

③ 영농복귀자

- 공사에 농지를 임대하고 전업(轉業)한 자로서 전업 후 2년 이내에 영농에 복귀하여 벼를 주작목으로 경영할 자

④ 제주도에 한하여 과수(감귤)전업농으로 선정된 자 또는 과수(감귤)를 주작목으로 하여 설립된 농업법인으로서 과수농업 법인의 자격요건은 위 ②의 기준을 준용

- 임대대상 제외자
 - 쌀 및 과수(감귤)전업농으로 선정된 이후 고의로 자기 보유농지를 매도 또는 임대하여 경영규모를 축소한자
 - 농지임차신청자가 당해농지의 임대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 존비속인 경우. 다만,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대상에 포함
 - 주경작지가 소재한 시·군·구 및 연접한 시·군·구외에 소재하는 농지를 임차하고자 하는 자와 해당 도·광역시 밖의 농지를 임차하고자 하는 자. 다만, 행정구역 경계선이 한 들녘을 지나는 경우에는 그 들녘에 한하여 임대

- 지대별 지원한도
 - 기존 소유규모를 포함한 경영규모
 - 평야지대 : 10ha까지
 - 중간지대 : 7ha까지
 - 산간지대 : 3ha까지

- 임대한도
 - 지대별 지원한도를 원칙으로하며 지역실정에 따라 개별경영체별로 기존 소유규모를 포함하여 경영규모
 - 쌀전업농 : 10ha까지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20ha까지
 - 영농복귀자 : 전업당시 공사에 임대한 농지면적 규모이내

- 임대차 기간 : 5년~7년

- 지원 우선순위
 - 매매사업에서 정한 지원 우선순위와 같음

- 임대차료의 결정
 - 임대료는 공사가 임대차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시·군조례로 정한 지역별 임대료상한 범위내에서 당해지역의 관행 임대료 수준등을 감안하여 결정

- 시·군조례의 정율법에 의한 임차료 상한 또는 현물로 결정한 임차료를 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고시하는 당해년도 약정수매가격(1등급)을 적용하여 환산
-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임차권 설정등기
 - 공사는 임대차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임대차협의를 완료된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채권확보를 위해 임대 희망자에 따라 임차권 설정등기,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 연대보증인(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1인 입보 다만, 임차료 선급금이 1천만원이상인 경우 2인입보)의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
- 임차료 지급
 -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임차권설정등기가 완료되거나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 또는 연대보증인의 보증서를 징구한 때(임대자의 희망에 따라 일시 또는 분할지급 모두 가능)
- 임차료 수납
 - 공사는 계약 총금액을 매년 균등분할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수납(단, 시·군 조례의 개정에 따른 임차료 상한선의 하향조정으로 임차료가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부분은 기금운용관리자에게 손비처리를 요청)
 - 임차자가 당해년도 임차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게 납부를 촉구하여 징수
- 임차료의 감면
 - 공사는 농지를 임차한 자가 아래 사유로 인하여 임차료의 감면청구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임차료를 감면
 - 천재·지변·자연재해등 임차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재해등으로 당해년도의 수확량이 전년도부터 과거 3년간의 평균수확량보다 30%이상 감소한 경우

- 공사는 임차인으로부터 당해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감면청구를 받아야 하며, 관계 공공기관에서 재해대책시 조사한 자료를 첨부토록 하여야 함(다만, 수확전에 감소비율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수확후에 감면청구 받을 수 있음)
- 공사는 감면청구가 있는 경우 청구인의 입회하에 현지확인을 하고 관할 농지관리위원회의 조정을 받아 감면
- 임차료 감면기준

감 수 비 율	임차료 감면율
30% 미만	0%
30% - 40% 미만	45%
40% - 50% 미만	55%
50% - 60% 미만	70%
60% - 70% 미만	80%
70% - 80% 미만	95%
80%이상	100%

※ 감면기준 변경시는 변경을 적용

○ 공과금 등의 부담

- 공사에 농지를 장기임대한 자(농지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음
 - 각종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
 - 농어촌정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부과금 (농업용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을 제외한다)과 용자금의 상환금
 - 천재지변 기타 재해등으로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유실 또는 매몰된 경우 그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 공사로부터 농지를 장기임차한 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음.
 -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지개량계가 부과하는 경비중 농업용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
 - 경미한 노무작업으로 원상회복 할 수 있는 농지복구작업에 소요되는 비용
 - 노임, 종묘, 비료, 농약등 영농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

○ 신청서식 :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

다. 농지교환·분합사업

(1) 농업인 상호간의 교환·분합사업

- 신청자격(아래 각항중 한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자)
 - ① 농지이용증진사업 지구내 쌀전업농
 - ② 벼를 주작목으로 하는 농업인
 - ③ 벼를 주작목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다음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농업인)
 - 총 출자액이 1억원 이상이며, 조합원 또는 사원 1인의 출자액이 총 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 총 출자액의 50%이상을 담으로 출자한 법인
 -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며 구성원 2/3이상인 벼 재배 경력 3년 이상인 법인
 - 운전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
 - ④ 일정구역에 대한 교환·분합사업의 청산금 지원대상자
 - ⑤ 제주도에 한하여 과수(감귤)를 주작목으로 하는 농업인 또는 과수(감귤)를 주작목으로 하여 설립된 농업법인으로서 과수농업법인의 자격요건은 위 ③의 기준을 준용
- ※ 전업농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도 신청가능
- 대상농지
 - ① 답끼리의 교환·분합을 원칙으로 하되, 제주도의 경우는 과수원(감귤)끼리의 교환·분합도 포함
 - ② 벼를 주작목으로 하는 농업인의 밭과 교환·분합 함으로써 동 농업인이 벼 재배의 집단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경우 벼를 주작목으로 하지 않는 농업인의 답도 포함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교환·분합하는 농지의 가격차액을 지원
 - 지원조건 : 연리 4.5%, 10년 균등분할상환

- 소요자금의 지원
 - 공사는 농업인이 교환·분합등기와 보증인선정 등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자금을 지원
- 신청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 ※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의한 교환·분합사업의 시행자(시장·군수, 농어촌진흥공사)가 동 사업을 실시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때 교환·분합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2) 경지정리사업 실시에 따른 교환·분합사업

- 지원대상농지
 - 환지청산금이 발생하는 경지정리 사업지구내의 답
- 지원대상자
 - 2필지 이상의 산재된 농지를 집단화하고자 하는 농업인
 - 원지에 환지를 받지않은 농업인으로 집단환지에 기여하는 농업인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청산금 징수 해당액(일시이용지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제외)
 - 지원조건 : 연리 4.5%, 10년 균등분할상환
- 지원절차 및 방법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환지계획(교환·분합계획 포함. 이하 같다)의 인가 승인을 얻은 때에는 청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를 조사하여 다음의 서류를 첨부 공사 지부장에게 지원 협조를 요청

- 청산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의 명단 1부
-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환지계획서 사본 1부
- 농지의 환지계획 인가서 사본 1부
- 당해지구, 확정도면 및 종전도면 각 1부

- 공사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지원약정을 체결하고, 지원자금을 지원신청자에게 지급

○ 채권 확보

- 지원액 500만원 미만 : 동일지구 내에서 환지를 받은 자경농민 중 1인의 연대보증인 설정
- 지원액 500만원 이상 : 동일지구 내에서 환지를 받은 자경농민중 연대보증인 1인을 설정하고, 환지등기 완료시 지원농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

< 행정사항 >

가. 사업시행계획 공고 및 사업비 정산

(1) 사업계획의 승인 및 시달

- 농림부장관은 다음년도의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동 사업시행지침을 공사에 시달
- 공사는 농림부로부터 시달된 사업지침에 따라 30일이내에 세부사업시행계획을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 농림부장관은 공사가 제출한 다음년도의 사업시행계획을 심사하여 11월 30일까지 승인 시달

(2) 사업시행계획의 공고

- 공사는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확정된 사업시행계획의 개요를 공사 지부의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게시 공고

(3) 사업정산

- 공사는 당해년도 농가영농규모화사업 정산서를 다음년도 1월 3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사업정산을 받아야 함(별지 제6호 서식)
- 공사는 사업정산결과 농지매매 및 임대차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은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하고 조세공과금등 손실금은 농지관리기금에서 손비처리

(4) 기타

- 영농복귀자 지원에 필요한 농지매매자금·농지임대차자금과 지원농지의 재매입·매도시 필요한 자금은 '99년도 해당 사업비에서 지원
- 직접지불제사업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지원대상 농가의 농지에 대하여 영농규모화사업과 연계되도록 농지매매 및 임대차사업을 추진

나. 사후관리

(1) 일반사항

- 공사는 영농규모화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이 지침의 범위내에서 별도의 업무지침을 제정·운영할 수 있음
- 공사는 농지의 매매, 임대차 및 교환·분합 사업별로 관리기록부를 비치하여 기록·관리
- 농협은 농림부 또는 공사로부터 농지구입자금 지원조건 위반으로 융자금의 회수통보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제41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고 농림부 또는 공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융자금 회수상황 및 미 회수자 명단을 통보
- 관할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의 매매가격 또는 임차료의 조정 요청이 있을 때에는 조정결과를 매매 및 임대차 당사자에게 통보

(2) 지원농지의 관리

(가) 사후관리상황조사

- 공사는 농지의 매매(구입자금 포함) 및 임대차사업으로 당해연도 6월말까지 지원한 농지 및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매년 9월말까지 다음과 같이 사후관리상황을 조사
 - 지원을 받은 자와 후계농업인의 이농 또는 전업여부
 - 지원농지의 전매, 증여, 임대, 담보제공, 전대, 대리경작, 무단전용 여부
 - 농지구입자금을 지원받은 농업인후계자 및 영농조합법인의 자격상실 여부
 - 쌀전업농으로 지원받은 농지의 경우 벼이외의 타작물 재배 여부 및 경영규모 축소여부

- 사후관리상황조사결과 위반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을 촉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
 - 매도농지 : 지원금 또는 당해농지 회수
 - 구입자금지원농지 : 융자금 회수
 - 임대농지 : 임대차계약 해지

※ 매매사업으로 '98년이후 지원받은 쌀전업농등이 고의로 경영규모를 축소한 경우 : 당해농지 회수

(나) 회수농지의 가격결정

-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회수하는 농지의 가격은 실제거래 가격범위 내에서 당초 매도 가격에 다음의 경비를 가산한 금액으로 함.
 - 이자 : 이미 상환한 이자와 매매계약 체결시까지 상환할 이자
 - 소유권이전등기비용 : 법무사수수료
 - 기타 농지매입에 직접 소요된 경비 : 취득세, 등록세

(다) 전매·임대 등의 동의

- 공사는 농지를 매입한 자 또는 농지구입자금을 지원받은 자로부터 당해 농지의 전매, 임대, 대리경작 또는 담보제공 등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동의

-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농지를 전매하는 경우 >

- 농가가 생업상의 사정으로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자치구·읍·면 외의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그 지역에 장기간 체류하여 영농이 불가능한 경우
- 농가가 생업상의 사정으로 동일지역 내에서 타직업으로 전업하는 경우(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확인)
- 공사로부터 매입한 농지를 상속받은 자가 당해 농지를 전매하는 경우
- 기타 농림부장관이 위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농지를 전매 또는 임대하는 경우 >

- 세대주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장기간 영농이 불가능한 경우
- 세대주 또는 동거가족이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여 농업노동력이 없는 경우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

- 당해농지에 대한 농지매입대금(상환이자를 포함한다)의 전액을 상환한 경우
- 농지매입대금의 일부를 상환한 경우 (공사에 이미 상환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 영농규모확대를 위하여 매도하는 경우
- 집단화를 위한 교환·분합의 경우
- 각종 선거에 당선되어 직접 영농을 할 수 없는 경우

(라) 공공사업등 전용농지 처리

- 공사로부터 농지를 매입하였거나 자금의 지원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자가 당해 농지에 대한 공공사업등의 시행으로 공사로부터 전매동의를 받거나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농업경영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할 경우라도 사전에 해당면적이상의 농지를 새로이 구입하여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전용된 면적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지원금을 회수

(마) 사후관리위반 등에 대한 불이익 처분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으로 밝혀져 융자금이나 농지 등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가산금리를 부과하고, 기타 사후관리 위반 등으로 회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율을 부과하여 불이익 처분
- 농지 또는 지원금 전액을 회수당한 자는 차후 지원대상에서 제외

(바) 채권관리

- 공사는 채권의 실효성과 실익성을 종합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관리
- 공사 및 농협은 불건전채권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채권관련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지체없이 법적조치등을 취하여 채권을 회수

다. 보고

- 공사의 시·군지부장은 매분기마다 사업추진실적을 지사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각 지사장은 이를 종합하여 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사장에게 보고 (필요시 시·군등 행정기관에 통보)
- 공사는 매분기마다 시·도별, 사업별 추진실적보고서를 종합하여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7호 서식)
- 공사는 매도 및 구입자금지원농지와 임대농지에 대한 전매, 임대 및 전대등 위반여부를 조사한 사후관리상황 조사결과를 매년 10. 31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8호 서식)

6. 2000년도 사업신청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거주지관할 농어촌진흥공사 시·군지부

나. 신청자격

- 농지매도 : 비농가, 전업 또는 은퇴하고자 하는 농가, 타작목전환 농가 등
- 농지매입 : 쌀전업농,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간척·개간농지 경작농업인, 영농복귀자, 감귤전업농(제주도에 한함)
- 농지임대 : 전업 또는 은퇴하고자 하는 농가, 타작목전환 농가등
- 농지임차 : 쌀전업농,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농복귀자, 감귤 전업농(제주도에 한함)
- 농지교환·분합 : 쌀전업농,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자경농업인, 집단환지를 받은 자중 청산금지수 해당자

※ '99년도 신청자격과 동일.

다. 신청절차

- 2000. 1. 1이후 농지를 매입, 임차 또는 교환·분합하고자 하는 시기에 해당 신청서를 농어촌진흥공사 시·군지부에 제출(신청서식은 농어촌진흥공사 시·군지부에 비치)

라. 신청서식

- 농지매도 : 별지 제1호서식
- 농지매입 : 별지 제2호서식
- 농지임대 : 별지 제3호서식
- 농지임차 : 별지 제4호서식
- 농지교환·분합 : 별지 제5호서식
- 집단환지청산금지원 : 별도서식 없음(경지정리사업시행자에 신청)

< 별지 제2호 서식 >

농 지 매 입 신 청 서							
신 청 인	주 소				전 화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매 입 농 지	농지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m ²)	매입희망 가 격	비 고
	읍면	리동					
영 농 여 건			매입대금납부방법		1. 일시불	2. 분할상환	
영농 전문성	1. 자영농고 및 자영농과 졸업 2. 농업계고교, 농과계대학·대학원졸업						
영 농 규 모	계	m ²	소 유	m ²	임 차	m ²	
농지 집단화	경작농지와 1. 연접 2. 50m미만 3. 50m이상 100m미만 4. 100m이상 500m미만 5. 500m이상						
통 작 거 리	거주지로부터 1. 1km미만 2. 1km~5km미만 3. 5km~10km미만 4. 10km~20km미만						
영농기술개발	1. 유 2. 무	병역관계		1. 병역필 2. 병역면제 3. 기타			
후계농민유무	가족중 18세이상의 후계농민			1. 유 2. 무			
<p>위와 같이 귀공사 소유농지를 매입하고자 신청하오니 본인에게 매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 년 월 일 신 청 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농어촌진흥공사 사장 귀하</p>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 별지 제3호 서식 >

농지장기임대신청서								
농지소유자	주소					전화		
	성명			주민등록번호	-			
임대농지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 ²)	희망 임대료	소유권이외의 권리	
	읍면	리동						
임대료 지급	1. 전액을 일시불로 지급 2. 분할지급							
임대자의요건	1. 전업농 2. 은퇴농 3. 겸업농 4. 기타							
농지조건	답	1. 경지정리답 2. 수리안전답 3. 수리불안전답						
	전	1. 관개 및 입지조건 양호 2. 관개 및 입지조건 불량 3. 기타						
영농규모	계	m ²	소유농지	m ²	임차농지	m ²		
임대기간	19년 월 ~ 19년 월 (년간)							
첨부서류	1. 등기부등본 2. 토지대장등본 3. 지적도등본							
<p>위와 같이 본인 소유농지를 귀공사에 임대하고자 신청하오니 임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년 월 일 신청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농어촌진흥공사 사장 귀하</p>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 별지 제5호 서식 >

농지 교환 · 분합신청서										
농지 소유자	주소				주소					
	성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교환 · 분합 농지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 ²)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 ²)
	읍면	리동				읍면	리동			
농지 가격	금	원정			금	원정				
지원 요청액	금	원정			지원대상자					
첨부서류	1. 교환 · 분합계획서 1부 2. 교환 · 분합 합의서 1부 3. 소요자금 지원요청액 산출내역 1부 4. 교환 · 분합농지의 등기부,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각 1부 5. 농지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위와 같이 농지를 교환 · 분합하고자 신청하오니 농지가격의 차액을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년 월 일										
신청인					(인)					
신청인					(인)					
농어촌진흥공사 사장 귀하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 별지 제6호 서식 >

영농규모화사업 정산서

1. 총괄

가. 수입

(단위:원)

과목	예산(A)	정산신청액			미집행액 (A-B)	비고
		사업비(B)	이익금(C)	계(D)		
계						
○ 농지관리기금						
○ 이익금						

나. 지출

(단위:원)

과목	예산(A)	정산신청액			미집행액 (A-B)	비고
		사업비(B)	손실금(C)	계(D)		
○ 사업비 - 농지매매 - 장기임대차 - 농지교환·분합						
○ 손실금						

2. 사업별

가. 농지매매

(단위:농가,m²,원)

시도별	예산(A)	정산신청액						미집행액 (A-D)	미매도 (B-C)		
		농지매입(B)			농지매도(C)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D)	건수	면적	금액				
계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나. 농지장기임대차

(단위:m',원)

시도별	예산(A)	정산신청액						미집행액 (A-D)	미임대 (B-C)		
		농지임차(B)			농지임대(C)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D)	건수	면적	금액				
계											

다. 농지교환·분합

(단위:농가,m',원)

시도별	예산 (A)	정산신청액					미집행액 (A-B)
		건수	필지수	지원농가수	면적	금액(B)	
계							

3. 손익금 및 기타정산자료는 임의서식 사용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

< 별지 제7호 서식 >

영농규모화사업 추진실적(/ 분기)

1. 총괄

(단위:ha,호,백만원)

사업별	계획				신청접수					보조금지급				
	년간		금분기		농가	면적	%	금액	%	농가	면적	%	금액	%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농지매매														
임대차														
계														

나. 도별 신청실적(금분기/누계)

(단위:호,ha,백만원)

시도별	계획	농지매매			임대차			교환·분합		
	금분기 년간	농가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계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2	토양개량사업(자율)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환경농업과(과장 이덕로, 농업 사무관 김희열)입니다.

I. 토양개량제 공급

1. 목 적

-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이 낮은 농경지등에 토양개량제(석회, 규산)를 공급하여 토양을 개량하고 식량증산과 농산물의 품질향상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행정구역에 의한 들녘중심으로 토양개량제 시용
- 농협이 토양개량제 구매공급
- 시·군농촌지도소의 토양검정결과에 의한 시용처방에 따라 토양개량제 살포

3. 근거법령

- 농지법 제20조(토양의 개량·보전)

4. 연도별 지원계획

		'92-'95	'96	'97	'98	'99(P)	'00-'04
사업량		천톤 1,264	316	438	586	640	
사업비	계	백만원 71,523	17,640	28,128	37,941	41,735	
	보조	16,667	4,410	22,502	30,353	33,388	
	지방비	16,707	4,410	5,626	7,588	8,347	
	자부담	38,149	8,820	-	-	-	
	음자	-	-	-	-	-	

주 1) 지원비율 : '96까지(국비 25%, 지방비 25% 보조) → '97부터(국비 80%, 지방비 20% 보조)

5. '99년도 사업 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현황

(1)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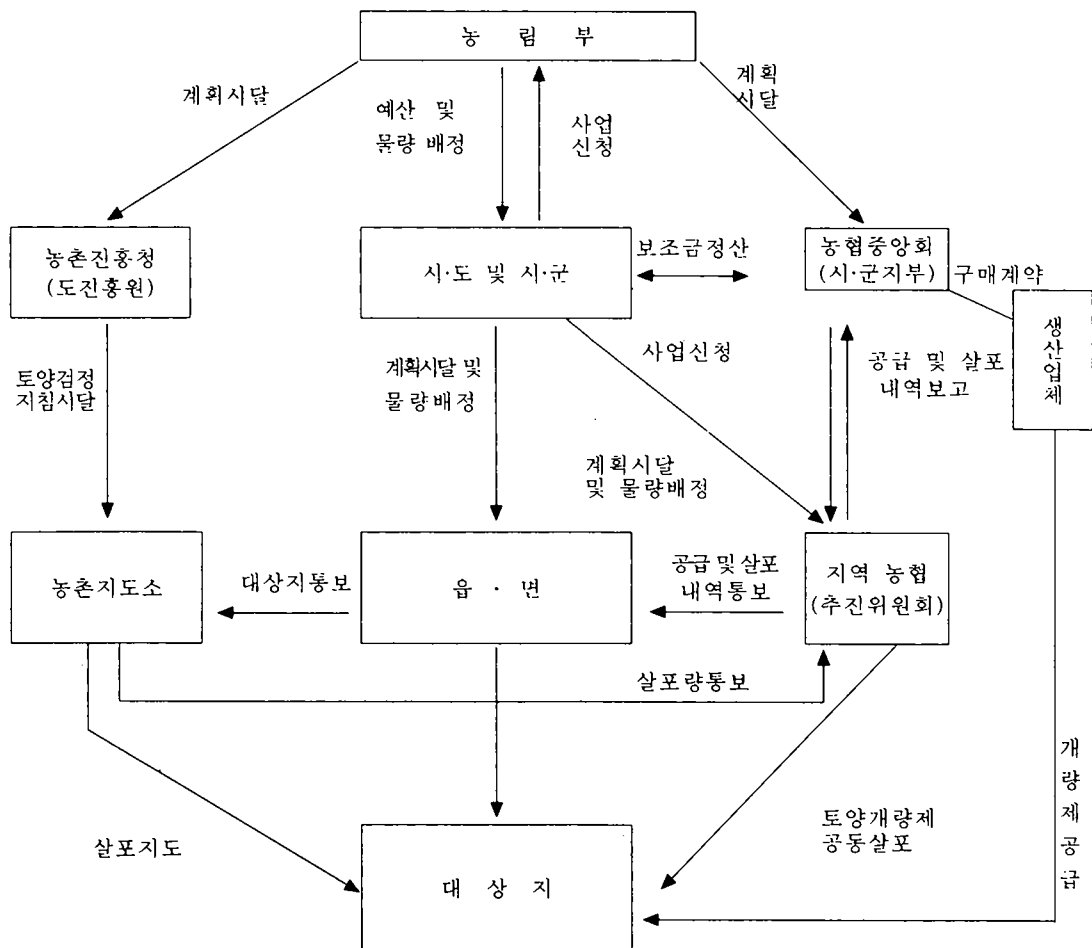
- 유효규산부족논과 산성밭에 규산·석회를 공급하여 토양개량
- 폐광산 인근등 중금속 오염 농경지에 석회 공급하여 오염해소

(2) 지원대상

- 규산 : 유효규산함량이 130 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 석회 : PH 6.5미만의 산성밭, 중금속 오염 농경지

(3) 지원조건 : 국고보조 80%, 지방비 20%

(4) 사업시행체계



나. '99 지원계획(안)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국 고	지방비
계	천톤 640	백만원 41,735	33,388	8,347
규 산	379	26,075	20,860	5,215
석 회	261	15,660	12,528	3,132

< 사업추진계획 >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시행기관 : 농협중앙회(지역농협)

다.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산원예국 환경농업과(02-503-7284-5)
- 시·도 : 농정국 농산과(특·광역시 : 농정과)
- 시·군(읍·면) : 산업·농정과(산업계)

라. 대상지 선정 및 우선순위

(1) 『읍·면 토양개량제 공급추진위원회』 구성

○ 지역농협장이 『읍·면 토양개량제 공급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추진위 구성 : 지역농협장, 읍·면장, 농촌지도소 읍·면상담소장, 이장, 작목반장, 영농지도자등

- 추진위 임무 : 시·군의 토양개량제 공급기본계획에 따라 읍·면별로 배정된 물량에 대하여 공급대상지역(들녘,리동,농가,필지등), 공급량, 살포방법, 살포시기등 세부계획 수립

(2) 대상지 선정 방법

○ 시장·군수가 수립시달한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에 의거 『읍·면 토양개량제 공급추진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대상지 선정

- 공급대상지는 읍·면에서 수립한 연차별 공급계획에 따라 선정하되, 『읍면 토양개량제공급추진위원회』에서 아래 공급우선순위를 참고하여 공급대상지 조정가능

- 공급우선순위

· 규 산

- ① 병충해, 냉해, 도복등 재해상습지
 - ② 농업진흥지역
 - ③ 친환경농업(IPNM)시범사업 실시지역
 - ④ 규산 시용후 5년이 경과한 논 및 객토지 등
- ※공급대상지역이 경지정리를 실시할 때는 다음해에 공급

· 석 회

- ① 중금속 오염농경지
- ② 농업진흥지역
- ③ 친환경농업(IPNM)시범사업 실시지역
- ④ 무사마귀병이 발병되었던 지역
- ⑤ 석회 시용후 6년이 경과한 농경지 등

마. 토양개량제 공급계획 및 살포

(1) 공급계획 수립 및 사업량 배정

- 농림부의 “99토양개량제 공급계획”에 의거 시·도지사는 시·군의 토양개량제 공급신청량, 경지면적, 과거 공급실적 등을 토대로 농촌진흥원장 및 농협중앙회 시·도지역본부장과 협의하여 『시·군별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량 배정
- 시장·군수는 농촌지도소장 및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장과 협의하여 『읍·면별 토양개량제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읍·면별로 사업량을 배정하여 지역농협장과 읍·면장에 통보
- 읍·면장은 시·군의 토양개량제공급계획에 의거 배정된 읍·면별 물량에 대하여 『읍·면토양개량제 공급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공급대상지역의 들녘, 리동, 지번, 지적, 주소, 농가를 [별지제1호서식]의 ①~⑤항까지 작성 농촌지도소장에게 통보

(2) 토양검정 실시 및 살포량 통보

- 농촌진흥청장은 토양검정실시 방법, 토양성분별 단위면적당 토양개량제 살포량 기준, 토양개량제 살포지도 등에 대한 지침을 수립 시달
- 농촌지도소장은 읍·면장이 통보한 토양개량제 공급대상지역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시달한 지침에 따라 살포량 등을 산정하여 [별지제1호서식]의 ⑥~⑦항까지 작성 지역농협장 및 읍·면장에게 통보
 - 규산은 들녘별 평균살포량 산정 가능
 - 석회는 필지별 살포량을 산정하되 동일 작물을 재배하는 집단화된 들녘은 들녘별 평균살포량 산정 가능

(3) 토양개량제 구매 및 공급

- 지역농협장은 『읍·면 토양개량제 공급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지역별(읍·면, 부락별, 들녘별등) 공급계획량을 농협중앙회장과 시장·군수에게 통보
- 농협중앙회장은 적기에 구매공급
 - 지역별 공급계획량에 대한 종류별(비종별), 월별 소요량을 파악하여 적기에 공급
 - 토양개량제 공급가격은 종류별(비종별)로는 전국 동일한 가격으로 함.
- 공급업자는 물량을 현지에 수송, 해당지역의 리·동장에게 인계하고, 리·동장으로 부터 인수증을 받아 지역농협장에게 제출
- 농협중앙회장은 토양개량제를 필요지역에 집단 공급함에 따라 토양개량제를 자비로 시용코자 하는 농업인을 위하여 사전에 지역별로 소요량을 파악하여 농업인에게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

(4) 토양개량제 살포

- 시장·군수, 농촌지도소장 및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장은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를 위한 인력동원, 기술지도 및 홍보를 실시하여 적기에 살포가 되도록 함.

- 토양개량제 살포는 지역농협장 책임하에 실시하되, 『읍·면토양개량제 공급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살포계획에 따라 농협, 농촌지도소 및 작목반 등의 보유농기계를 활용하여 공동 살포하고, 농협중앙회에서는 살포예산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역농협의 살포비용을 지원하고 수혜농업인은 해포작업등 인력을 지원토록 함.

- 다만 석회는 지역이 분산되고 작물생육시기가 다르므로 수혜농업인 개별살포 가능

- 지역농협장은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내역을 농촌지도소장이 통보한 [별지제1호서식]에 ⑧~⑩항까지 기록하여 읍·면장에게 통보

바.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장은 농협 전산시스템의 토양개량제 비종별 공급 및 살포(계통비료 수급 현황표)자료를 첨부하여 매월 시장·군수에게 보조금 지급을 신청

- 시장·군수는 토양개량제 보조금 교부시 농협에서 제출한 전산자료 (계통비료 수급 현황표) 이외의 자료가 필요할 때에는 사전 시·도 지사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자료를 징구

- 시·군은 지방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지방비 확보가 지연될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을 우선 지급 가능

< 행정사항 >

가. 관련기관별 담당업무

- 행정기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읍·면장)
 - 토양개량제 공급계획 수립 및 사업량 신청
 - 토양개량제 연차별 공급계획 수립(읍·면)
 - 공급대상지 들녘,리동,지번,지적,농가등 기초자료 관계기관에 통보(읍·면)
 - 사업량 보조금 배정 및 정산
 - 토양개량제 공급, 살포실태 확인 및 지도감독
 -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에 관한 행정지원

- 지도기관(농진청, 도 진흥원, 시·군지도소)
 - 토양검정 실시 및 토양개량제 살포 등에 관한 지침 수립 시달
 - 토양개량제 살포지역의 토양검정
 - 토양개량제 살포량 확정 통보
 - 토양개량제 살포지도
- 농협(중앙회, 지역회원농협)
 - 토양개량제 구매계약 및 공급(농협중앙회)
 - 「읍·면 토양개량제 공급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지역농협)
 - 토양개량제 살포 계획수립 및 살포작업 주관(지역농협)
 - 사업비 집행 및 보조금 정산

나. 보고사항

- 토양개량제 구매계약 체결 결과보고
 - 보고기관 : 농협중앙회장
 - 보고내용 : 구매가격 결정내역, 계약물량, 계약조건 등
 - 보고기한 : 전년 10월말
- 시·군별 공급계획 공급 및 살포실적
 - 보고기관 : 시·도지사(시장·군수)
 - 보고내용 : 공급계획, 공급 및 살포실적
 - 보고기한
 - 공급계획 : 매년 1월말 [별지 제2호 서식]
 - 공급 및 살포실적 : 매월 익월 10일 이내 [별지 제3호 서식]

6. 2000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나. 신청절차 : 지역농협장이 시·군의 토양개량제 공급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에게 사업량 신청

다. 구비서류 : 토양개량제 지원공급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라. 대상지(자)선정

- 이 사업시행 지침 <사업 추진계획> 라.항에 의함

(덧붙임1)

'99 토양개량제 공급 계획(안)

(단 위 : 톤, 천원)

시·도 별	규 산				석 회			
	사업량	사업비계	국 고	지방비	사업량	사업비계	국 고	지방비
계	379,000	26,075,198	20,860,160	5,215,038	261,000	15,660,000	12,528,000	3,132,000
서울	271	18,645	14,916	3,729	178	10,680	8,544	2,136
부산	2,019	138,907	111,125	27,782	847	50,820	40,656	10,164
대구	1,030	70,864	56,692	14,172	1,556	93,360	74,688	18,672
인천	5,845	402,136	321,709	80,427	2,440	146,400	117,120	29,280
광주	2,660	183,008	1,46,406	36,602	1,822	109,320	87,456	21,864
대전	1,050	72,240	57,792	14,448	803	48,180	38,544	9,636
울산	2,830	194,703	155,762	38,941	1,581	94,860	75,888	18,972
경기	47,504	3,268,272	2,614,618	653,654	28,107	1,686,420	1,349,136	337,284
강원	17,402	1,197,258	957,806	239,452	22,094	1,325,640	1,060,512	265,128
충북	19,425	1,336,440	1,069,151	267,289	19,180	1,150,800	920,640	230,160
충남	68,731	4,728,693	3,782,956	945,737	24,802	1,488,120	1,190,496	297,624
전북	53,882	3,707,080	2,965,665	741,415	21,973	1,318,380	1,054,704	263,676
전남	73,582	5,062,442	4,049,954	1,012,488	43,212	2,592,720	2,074,176	518,544
경북	44,164	3,038,480	2,430,784	607,696	47,693	2,861,580	2,289,264	572,316
경남	35,605	2,449,621	1,959,697	489,924	24,073	1,444,380	1,155,504	288,876
제주	3,000	206,409	165,127	41,282	20,639	1,238,340	990,672	247,668

< 별지 제1호 서식 >

'99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현황

(군 면 들녘)

공 급 지 역			경 작 자		시 용 량		공 급 내 역		
리 ①	지 번 ②	면 적 ③	주 소 ④	성 명 ⑤	10a당시용량 ⑥	총시용량 ⑦	공급비중 ⑧	살포량 ⑨	살포일 ⑩
		m ²			Kg	Kg		Kg	

* 비중명은 규산질 비료는 분상·입상으로 석회는 소석회·석회고토로 구분하여 기재

< 별지 제2호 서식 >

자체 가 26-35

'99 토양개량제 공급계획 보고

(단 위 : 톤)

시·도명	상 반 기			하 반 기		
	계	규 산	석 회	계	규 산	석 회
계						
시·군명						

< 별지 제3호 서식 >

자체 가 26-36

'99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실적 보고

<규산·석회 구분작성>

(단위:톤)

시·도명	공급계획 (년 간) (A)	공 급 실 적			살 포 실 적		
		당월	누계 (B)	비율 (B/A)	당월	누계 (C)	비율 (C/B)
계							
시·군명							

토양개량제 지원공급 신청서

	구 분		계	상반기	하반기
	신청내역	규 산	계		
분 말					
입 상					
석 회		계			
		석회고토			
		소석회			

위와 같이 토양개량제 지원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농협장 (인)

○○ 시장 · 군수 귀하

II. 객 토

1. 목 적

- 사질논 등의 저위생산지를 개량하여 농업생산성을 제고시키고 농산물의 품질향상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사질답 등 점질이 낮아 생산력이 떨어지는 농경지를 대상으로 점토함량 15%(논 18cm, 밭15cm 깊이까지)가 되도록 객토를 실시하여 농업생산성 제고

3. 근거법령

- 농지법 제20조(토양의 개량·보전) 및 동법시행령 제24조(토양의 개량·보전을 위한 사업의 시행)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백만원)

		'92-'95	'96	'97	'98	'99(P)	'00-'04
사업량(천ha)		96	16	17	18	10	
사 업 비	계	71,112 (71,112)	20,000 (20,000)	25,953	26,204	14,000	
	용 자	71,112 (71,112)	20,000 (20,000)	25,953	26,204	14,000	

※ ()내서는 농업경영자금

5. '98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지원대상자

- 객토사업 희망 농가

(2) 지원대상지

- 사질논·밭 등 생산력이 낮은 농지와 소규모 합배미 사업지역
 - 일반객토 : 대상지중에서 객토 미실시지역, 객토를 실시하였으나 적량 객토를 하지 않아 보완객토가 필요한 지역, 기타 병해충 및 재해상습·연작피해 등으로 객토가 필요한 지역
 - 합배미객토 : 토양을 개량하고 기계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소규모 합배미 지역

※ 오염농경지 객토는 지역특화 사업으로 통합

(3) 지원단가

- 일반객토 : 1,200천원/ha
- 합배미객토 : 2,200천원/ha

(4) 지원조건

- 국고 융자 100%(년리6.5%, 3년균분상환)

나. '99 지원계획(안)

(단위 : 백만원)

내 용 명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계	예 산(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계	ha						
	10,000	14,000	14,000	-	14,000	-	-
일반 객 토	8,000	9,600	9,600	-	9,600	-	-
합 배 미 객 토	2,000	4,400	4,400	-	4,400	-	-

※ 융자조건 : 연리6.5%, 3년균분상환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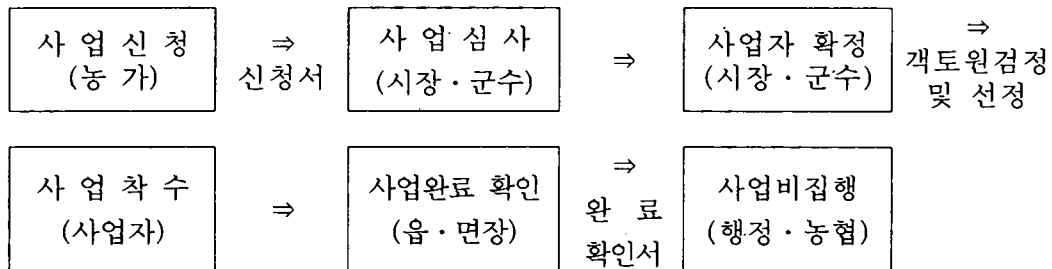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산원예국 환경농업과(02-503-7284-5)
- 시·도 : 농정국 농산과(특·직할시 : 농정과)
- 시·군(읍·면) : 산업·농정과(산업계)

다. 자금지원예정자 : '99 사업신청 농가

라. 사업시행

(1) 사업추진 체계



(2) 사업계획 수립 추진 및 변경

- 농림부의 '99 객토사업 계획(안) (덧붙임2)에 의거 시·도지사는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시·군별 사업량을 배정
- 시장·군수는 시·도의 객토사업계획에 의거 시·군 자체계획 수립
- 객토사업 계약은 사업자(농업인)와 객토 대행업자 간에 체결하고 시장·군수(읍·면장)는 조정
 - 농로, 논두렁 보수 및 객토원 채토지 원상복구 사항을 계약서에 삽입하여 민원 해소
 - 가급적 흙퍼기 작업과 동시 계약 추진

- 객토원 선정
 - 객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우량객토원 확보가 중요하므로 시장·군수는 지도소장 및 농가와 협의하여 객토원의 적극적인 발굴 및 선정
 - 시·군농촌지도소는 객토원 검정 실시
- 시장·군수 및 지도소장은 객토지역과 객토원의 질·양을 수시 확인
- 시장·군수는 객토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지원책 강구(재정지원 포함)
- 객토원 부족지역은 희망농가에 한하여 제오라이트 공급
- 객토지에는 유기물 더주기, 10a당 30톤이상을 객토한 논에는 삼요소 비료를 20-30% 더 주고 깊이갈이를 실시(가급적 2-3회)
- 사업계획 변경시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총 사업비 범위내에서 일반, 합배미의 종류별 사업내용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변경·추진 가능함.

(3) 객토방법

- 논 객토
 - 모래논 : 점토함량이 15%로 증대되도록 점질함량이 높은 흙을 객토
 - 질흙논 : 점토함량 15%로 조절되도록 점질함량이 낮은 흙을 객토
 - 밭 객토
 - 밭작토층 15cm 까지 점토함량이 15% 정도가 되도록 객토
- ※ 논·밭 객토량 산정방법 [덧붙임3] 참고

(4) 사업비 지원방법

- 객토를 완료한 사업자(농업인)는 완료 즉시 논밭을 갈기전에 읍·면장에게 완료 확인 요청

- 읍·면장은 객토완료 후 논, 밭을 갈기전에 반드시 현지확인을 거친 후 객토완료 확인서 발행
- 사업자는 읍·면장이 발행하는 객토완료 확인서를 발급받아 농협에 용자 신청 [별지 제2호 서식]
 - ※ 객토완료 확인서는 농업인 개별 또는 연명으로 확인 가능
- 용자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농림부 훈령 제948호: '98.7.23)에 의함

바. 기타사항

- 시·도지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과부족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로 사업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시·군간 사업비를 전배조치 할 수 있음.

< 행정사항 >

가. 보고

- 시·도지사는 객토사업 완료실적을 3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별지 제3호 서식]

6. 2000년도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읍·면)

나. 신청자격

- “5<사업개요>의 가(1)항”의 대상자에 “5의가(2)항에 해당되는 자로서 순수 농업생산 목적에 객토를 희망하는 자

다. 신청절차

- 개별 또는 공동(들녘별)으로 읍·면에 사업을 신청하되 들녘별 공동 신청시에는 희망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라.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객토사업신청서 [별지제1호서식]

마.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5 <사업개요> 의 가(1)항의 대상지에”. (2)항의 객토 종류별 희망지역을 대상으로 객토원 운반거리 등 객토여건을 감안하여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1순위 : 들녘별(공동) 객토

※ 토양개량제(석회·규산)를 시용하는 종합농토개량지역을 우선하여 객토실시

- 2순위 : 벼 재배농경지 객토

- 3순위 : 개별 객토

○ 선정절차

- 시장·군수가 신청서를 심사한 후 객토방법 및 대상지를 확정

'99 객토사업 계획(안)

구분	합 계		일 반		합 배 미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234	317,800	197	236,400	37	81,400
강원	3,283	4,184,600	3,038	3,645,600	245	539,000
충북	385	562,000	285	342,000	100	220,000
충남	527	856,400	303	363,600	224	492,800
전북	757	1,184,400	481	577,200	276	607,200
전남	577	894,400	375	450,000	202	444,400
경북	3,957	5,543,400	3,162	3,794,400	795	1,749,000
경남	280	457,000	159	190,800	121	266,200
제주						
합계	10,000	14,000,000	8,000	9,600,000	2,000	4,400,000

[덧붙임 2]

□ 논 객토량 결정

○ 10a당 객토량 (18cm깊이까지 15% 점토함량 증가시)

- 객토량 조건표

(톤/10a)

객토대상 논점질함량(%) \ 객토원점질함량(%)	20	25	30	35	비 고
8	131	93	72	58	아래식으로 환산
9	123	84	64	52	
10	113	75	56	45	
11	100	64	47	38	
12	84	52	38	29	
13	64	38	26	20	
14	38	20	14	11	

$$\text{객토량} = \frac{18(15 - \text{농경지점토}(\%))}{\text{객토원점토}(\%) - \text{농경지점토}(\%)} \times 1.25 \times 10$$

- 18 : 개량목표 깊이(cm)
- 15 : 개량목표 점토함량(%)
- 1.25 : 가비중
- 10 : 상수

□ 밭 객토량 결정

※ 작토층 15cm를 찰흙 함량 15%로 개량할 때의 객토(10a당)

대상 밭토양 \ 객토원토성	사 토	사 양 토	식 양 토	식 토
	톤			
사 토	-	-	60	40
사 양 토	-	-	36	23
식 양 토	120	144	-	-
식 토	124	158	-	-

< 별지 제1호 서식 >

객토사업신청서

성명(인)	대상지주소(지번)	객토종류	객토희망면적	희망객토량	사업비	비고
			ha	톤		

※ 연명 신청 가능함

[별지 제2호 서식]

객토완료확인서

성명	대상지주소(지번)	객토종류	객토면적	객토량	계약단가	용자대상금액
			ha	톤		

※ 연명. 확인 가능함

위와 같이 객토를 완료하였기 확인함.

1998. . .

○ ○ 읍 · 면 장 (인)

< 별지 제3호 서식 >

심 사 제 외

'99 객토사업 추진실적 보고

시·도별	사업계획량(ha)			실 적(반기)				
	계 (A)	상반기	하반기	합 계		일 반	합배미	오 염 농경지
				면 적 (B)	진 도 (B/A)			
				ha	%	ha	ha	ha

3 주요농작물 원원종및 원종생산*(공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종자관리소 종자유통과(과장 신인균, 농업사무관 송명식, 농업주사보 강창구) 입니다.

1. 목 적

- 벼 등 주요농작물에 대하여 순도높고 활력있는 고품질 우수품종을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하기 위함

2. 추진방향

- 순도높은 우량종자 보급종을 농가에 보급하여 단위수량 증대로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보급종의 상위단계인 원종 및 원원종생산을 확대
 - 식량의 자급화를 위한 주곡작물의 사업량 확대 및 농가기호도 변화에 따른 다양한 품종확보를 위하여 원종생산 지원면적 확대
 - 종자보급을 제고 계획

	보급을 확대계획 (%)		원종생산 지원면적 (a)	
	'99	2000	'99	2000
계	-	-	18,265	18,898
벼	26.3	27.8	5,548	5,825
보리	23.3	24.4	3,630	3,811
감자	27.1	28.7	5,087	5,087
옥수수	38.9	43.7	500	500
콩	20.0	20.0	3,500	3,675

- 감자원종을 '98년부터 전면적 망실재배함에 따라 씨감자 소요량 대비 망실면적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감자원종 망실재배 면적을 연차적으로 확대
 - 예산, 인력, 포장여건 등을 감안 원종장 직영포장중 망실설치가 가능한 면적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망실설치를 확대 추진하고
 - 감자원종장에서 직접 망실재배 할 수 없는 원종재배면적에 대하여는 시설치된 농가의 망실면적을 적극 활용코자 농가에 백망사구입비를 지원 원종을 위탁생산(익년도 보급종 생산 대상농가)하고, 생산된 원종은 차년도 보급종 생산용 종서로 사용

3. 근거법령 : 종자산업법 제121조(품종목록 등재품종의 종자생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92~'96	'97	'98	'99 (예산안)	2000	2001 ~2004	
원원종	사업량	75ha	20	20	20	22	88	
	사업비	계	671	182	183	188	206	824
		보조	671	182	183	188	206	824
원종	사업량	826ha	193	193	201	221	884	
	사업비	계	5,751	1,593	1,598	1,634	1,797	7,188
		보조	5,751	1,593	1,598	1,634	1,797	7,188
감자원종 농가망실 재배	사업량	1,703동	1,130	1,120	1,150	1,150	4,600	
	사업비	계	2,399	275	267	199	220	880
		보조	-	156	156	199	220	880
		응용자부담	1,679 720	83 36	78 33	- -	- -	- -

5. '99년도 사업시행 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배 경

- 상업성이 낮은 주요농작물 종자생산 사업은 품종개발, 종자증식 및 보급까지 정부가 수행하여야 하나 종자산업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동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 씨감자 수요량이 증대하고 있음에도 보급종 확대생산에 필요한 원종장의 원종망실 재배 가능면적이 부족하여 원종생산 일부를 농가에 위탁생산하고 있음

○ 지원대상자 : 지방자치단체

○ 지원조건

- 원원종 및 원종 : 지원면적에서 생산된 종자전량을 하위단계 채종을 위하여 무상인도
- 망실재배 백망사 : 지원면적에서 생산된 종서(생산목표량)는 익년도 보급종 채종 증서로 농가자체 사용

○ 지원종류 : 원원종 및 원종생산비 및 생산에 필요한 시설자금

(2) 9 9 사 업 비 (예 산 안)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 비	자부 담
			계	대출	보조		
계	ha 221 (1,150동)	백만원 2,021	2,021	-	2,021	-	-
○ 원원종	31	341	341	-	341	-	-
○ 원 종	190	1,481	1,481	-	1,481	-	-
○ 감자원종 망실재배 기존백망사 구입지원	1,150동	199	199	-	199	-	-

나. 추진체계

(1) 사업주관기관 : 농촌진흥청 종자관리소

(단, 감자원종 농가망실재배사업 주관기관은 강원도 감자원종장)

(2) 사업담당부서

○ 농촌진흥청 종자관리소 종자유통과 (☎ 0343-46-2433)

(3) 사업시행

<주요농작물 원원종 및 원종생산>

○ 사업계획 수립

- 각도에서는 원원종 및 원종생산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곡종별 생산목표량을 책임생산

<감자원종 농가위탁망실재배 백망사구입비>

○ 사업계획 수립

농 촌 진 흥 청
(종자관리소)

○ 사업계획의 종합조정
○ 사업총괄 지도감독

강 원 도

○ 사업계획 수립검토 및 조정
○ 사업 시행
○ 사업추진 지도 감독

강원도 감자원종장

○ 세부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 지원농가 선정
(종자관리소 대관령지소와 협의하여 대상자선정)
○ 사업자금 지원 및 사후 관리 점검

다. 행정사항

(1) 사후관리

<주요농작물 원원종 및 원종 생산>

- 원원종 및 원종생산 포장검사 및 합동진단 실시
 - 포장검사

{	감자, 옥수수 : 2회
	벼, 맥류 등 : 1회
 - 합동진단 : 곡종별 1회

<감자원종 농가망실재배>

- 사후관리 책임자 : 강원도 감자원종장
 - 사후관리 책임자는 백망사구입비 지원 후 현지 확인하고 기 비치 운영되고 있는 관리대장에 지원사실을 명기
 - '98년까지 완료한 망실용자 사업에 대하여 용자사업이 완료된 때부터 3년간 연별로 용자지원사업 운용상황을 평가하여 농촌진흥청장(종자관리소장)에게 보고
 - 기설치 완료된 망실시설은 휴경기간중 고랭지 채소, 화훼류 재배등에 활용할 수 있으나 차년도 감자원종 망실재배에 지장이 없어야 함

(2) 보 고 (보고처 : 농촌진흥청 종자관리소 종자유통과)

- 주요농작물(원원종, 원종) 종자생산실적 보고(보고기한 : 11. 30)
[별지 제1호 서식]
- 백망사 구입지원 농가선정상황 및 지원결과 보고(보고기한 : 7.30)
[별지 제2호서식]

6. 200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주요농작물 원원종 및 원종생산

- (1) 신청서 제출기관 : 농촌진흥청 종자관리소
- (2) 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장
- (3) 신청절차 : 각시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 사업 담당부서(종자관리소)에 신청
- (4) 구비서류
 - 원원종 및 원종생산 국고보조금 예산신청서 1부. [별지3호서식]
 - 예산신청 세부내역(산출근거 포함) 1부

나. 감자원종 농가망실재배

- (1) 신청서 제출기관 : 강원도 감자원종장 (☎ 0374 35-5961~3)
- (2) 신청자격 : 대관령지역의 익년도 감자보급종 채종대상 농가중 감자원종 생산희망농가

- (3) 신청절차 :
- | | | | |
|---|---------------|-------------------------------------|--|
| <u> 신 청 </u> | \rightarrow | <u> 접 수 </u> | |
| 익년도 보급종
채종 대상농가 | | 강원도 감자원종장 | |
| \rightarrow <u> 검 토 및 대 상 자 선 정 </u> | | | |
| 강원도 감자원종장이 종자관리소와 협의하여 대상자선정 | | | |

- (4) 구비서류 : 감자원종 백망사구입 지원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 (5) 지원대상자 선정<농가위탁 백망사구입비 지원사업>
 - 선정기준
 - 기존 망실설치 농가중 익년도 보급종 채종대상 농가로 채종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농가
 - 우선순위
 - 익년도 보급종 채종농가로 망실시설 확보농가
 - 감자원종의 위탁생산 희망농가
 - 포장관리 등 채종능력이 있는 농가

< 별지 제1호 서식 >

자체 가48-5

주요농작물(원원종, 원종) 종자생산 실적보고

채종단계	작물명	품종명	생 산 계 획			생산실적	비 율	비 고
			면 적	종자량	생산 목표			
			a	kg	. kg	kg	%	

< 별지 제2호 서식 >

자체 가48-3

백망사 구입지원 농가선정 상황

지역명	농가수	면 적	동 수	비 고
	호	a	동	* 100평형 동수로 기재 * 기타 특기사항 기재

- 주 1) 망실설치 포장약도 별첨
2) 농가별 선정내역 별첨

백망사 구입지원 결과 보고

- 지원방법 : (*현물지원, 자금지원 구분 명시)
○ 지원내역

구 분	백망사 구입지원 결과						백망사 설치결과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농가수	면 적	동 수	농가수	면 적	동 수	농가수	금액	농가수	금액
합 계	호	a	동							
지역별										

- 주 1) 망실설치완료 확인서 별첨(별지3호서식)
2) 농가별 설치내역 별첨

2000년도 원원종·원종생산 국고보조금 예산신청서

1. 요구내역 (총괄)

(단위 : 천원)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5
원원종	사업량	a						
	사업비 - 국비 - 도비							
원 종	사업량	a						
	사업비 - 국비 - 도비							

2. 2000 곡종별 예산신청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도 비
합 계		a			
원원종	소 계				
	벼 맥류 콩 ·				
원 종	소 계				
	벼 맥류 콩 ·				

※ 사업비 산출내역은 a당 인건비, 재료비(농약, 비료, 기타재료)등에 대한 내역을 자세히 작성 별도 첨부

< 별지 제 4호서식 >

감자 원종망실 백망사구입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명	외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백 망 사 지원신청		평 (동)			
소 재 지					
기 존 망 실 설 치 현 황		평 (동)	소 재 지		
망실재배계획		평 (동)			
익년도 보급종 생 산 계 획		a			

상기 본인은 19 연도 원종씨감자 농가위탁 망실재배를 위한

백망사구입 지원을 신청하오니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표자)

전화번호 :

4	밭기반정비 (공공)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시설관리과(과장 류성곤, 토목 사무관 민경남)입니다.

1. 목 적

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한 채소, 과수, 특작 등 주산단지 및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용배수시설, 농로개설, 밭경지정리 등의 기반을 정비하여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 등으로 농촌소득증대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밭작물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소득기반을 구축하고, 논에 재배하는 시설채소 등 밭작물을 밭으로 유도하여 논잠식 예방
- 정주권개발사업, 농어촌마을정비, 원예특작생산유통지원 및 경지정리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등 종합개발방식 추진 유도
- 용수개발, 용배수시설, 농로, 밭경지정리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유형별로 적정시설을 개발하고 사업비 차등지원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5조, 제6조 내지 제12조, 제89조(자금지원)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천ha, 백만원)

구 분		'92-'96년	'97년	'98년	'99년 (예산안)	2000년	2001-2004
사 업 량		13.6	8.0	8.0	6.0	10.0	64.4
사 업 비	계	232,225	197,320	198,715	154,974	258,290	1,536,901
	보 조	168,285	158,600	159,995	124,482	207,470	1,237,487
	용 자	-	-	-	-	-	-
	지방비	64,940	38,720	38,720	30,492	50,820	299,414
	자부담	-	-	-	-	-	-

5. '99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농로개설

- 진입로 : 국도, 지방도 등 기간도로에서부터 경작지까지의 연결도로를 말하며 아스팔트콘크리트, 시멘트콘크리트 등으로 확포장
- 경작농로 : 진입로에서 분기되어 경작지를 통과하고 농기계통행 등 발작물 재배에 주로 이용되는 도로로 진입로와 연계하여 확·포장

(2) 용수개발

- 시설수원공(저수지, 양수장, 보, 관정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수량이 부족하거나 수질이 부적합한 경우에 신규개발
- 관정개발시에는 가능한한 공당채수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급수면적을 늘려 개발공수를 적게 하므로써 사업비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도록 계획.
- 암반관정의 착정심도는 소요수량 확보가 가능한 적정심도까지 개발하고, 성공공의 1일 채수량은 200톤/공 이상으로 함. 다만, 지하수의 부존량이 적은 지역(산간, 해안 및 도서지역 등)은 시·도지사 책임하에 100톤/공 이상으로 조정시행이 가능함.
- 시추조사공은 개발 1공당 2공까지만 인정하되, 1공으로 성공시 1공만 인정
- 시설농업의 양액재배용수나 음용을 겸하는 용수는 수질검사를 엄격히 실시
- 관정에 사용되는 우물자재는 반드시 KS규격 자재(PE, PVC)를 사용토록 함.

(3) 용수로설치

- 용수로는 송수관로(수원공에서 저수조까지의 Pipe Line)와 급수관로(저수조에서 경작지까지의 Pipe Line)로 구분하며 송수관로는 내수압 등 소요강도가 확보될 수 있는 도복장강관류로, 급수관로는 사업비가 비교적 저렴한 PE관 등으로 계획하되, 수압, 구경 등을 감안 적정재질의 관을 사용하고, 적절한 장소에 분수공을 설치하여 농민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
- 살수관개(Splinkler)나 물방울관개(Drip Irrigation)등 수압유지가 필요한 경우 지역농민과 협의하여 적정수압이 유지되도록 계획

(4) 배수로계획

- 발경지정리지구에 한하여 계획하되, 지구내 유입수를 안전하게 지구외로 배제하기 위한 배수로는 가능한한 자연배제토록 하고, 부득이 구조물로 시행시 기준사업비 범위내에서 계획

(5) 발경지정리

- 경사가 완만하고, 토양·토심이 양호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구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무리한 정지계획으로 유기질 토양보존에 어려움이 없도록 계획. 다만, 토지소유자가 토양보존과 관계없이 시설농업 등 장기적인 영농계획이 있어 수평정지를 원할 때에는 지원할 수 있음.
- 정지방법은 지구여건에 따라, 정지를 하지않고 밭두렁만을 정리하는 밭두렁정리, 경사지에 원지형을 살려 정지하는 경사정지, 평탄지 또는 시설농업을 위한 수평정지 등으로 계획할 수 있으나 어느 경우라도 유기질 토랑이동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

나. '99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ha,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6,000	154,974	124,482	124,482	-	30,492	-
사 업 비	6,000	152,460	121,968	121,968	-	30,492	-
조사설계비	(6,000)	2,514	2,514	2,514	-	-	-

※ 사업비 예산단가 : 25,410천원/ha(국고 80%, 지방비 20%)

※ 지역여건을 감안한 개발유형을 설정하여 유형별 사업비 차등지원

- I 유형(단순정비) : 용수개발 또는 농로개설 단일공종 실시
- II 유형(표준정비) : 용수개발+농로개설 등 2개이상의 공종 실시
- III 유형(종합정비) : 용수개발+농로개설+발경지정리 등 종합정비 실시

* I 유형 : 예산단가의 90%, II 유형 : 예산단가, III 유형 : 예산단가의 110%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개발국 시설관리과(02-500-2668~9)
- 시·도 : 농정국 기반조성과(농산지원과, 농지개발과, 농업기반과, 농지개발과, 농정과 등)
- 시·군 : 건설과

다. 자금지원대상자 : 시장·군수

라. 대상지 선정

(1) 일반 선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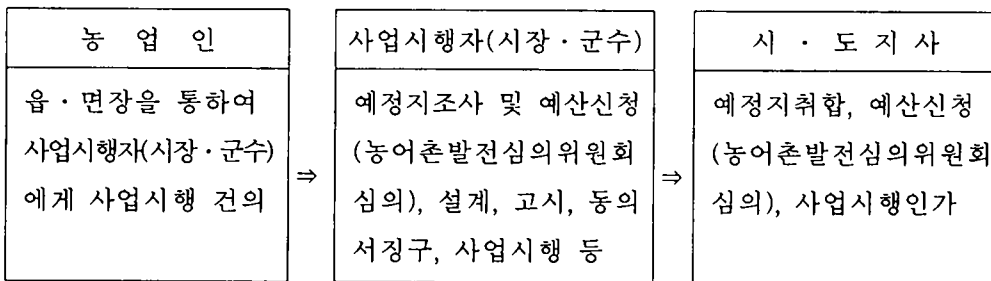
- 사업의 효율성 및 주민호응도가 높고, 지방비 부담이 가능한 지구를 대상으로 선정
- 밭 기반정비사업으로 조기에 밭작물의 소득기반을 구축하고, 논에 재배하는 밭작물을 밭으로 유도하여 논 잠식을 예방하기 위한 이전희망지역에 대하여는 최우선 선정
- '98 밭 기반정비사업 대상지 조사내역에 포함된 지구중 원예특작 생산유통지원사업 등과 연계추진이 가능한 지구와 상습가뭄지역을 우선으로 선정(대상지 선정시 밭 기반정비 부서는 생산유통지원사업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중복투자여부, 연계가능 여부 등에 대한 검토서를 지구별로 첨부)
- 대상지 선정시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사업간 사업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선정(시·군의 관련부서와 협조)
 - 작목별 주산(특산)단지중 기반시설이 미흡한 지역
 -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문화마을조성사업 지역
 - 농산물의 규격상품 출하가 잘 되고 있는 지역
 - 작목별 생산자단체가 조직되어 잘 운영되고 있는 지역
 - 경지의 집단화가 용이하고 경사, 토양, 토심 등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
 - 국도, 지방도 등 기간도로와 연결이 용이하여 유통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 지목이 전이나 과수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공부상 지목은 논이나 실제 밭작물 재배단지는 포함 개발할 수 있으며, 개발용수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인접한 논에 대한 용수공급도 가능.
- 아래와 같은 지역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 마을도로를 위주로 개발되는 지구
 - 생활용수개발목적으로 관정개발을 희망하는 지구
 - 주택단지, 공단 등 타목적으로 전용이 예상되는 지구

(2) 형태 및 규모별 기준

- 작목별 경사도 기준
 - 과수 : 36% (20°)이하
 - 특작, 화훼, 채소, 복합단지 : 27% (15°)이하
 - 밭경지정리 : 12% (7°) 이하
 - 작목별 최소개발 규모
 - 특작, 화훼단지 : 3 ha (1.5ha) 이상
 - 채 소 단 지 : 5 " (3.0ha) 이상
 - 과 수 단 지 : 10 " (5.0ha) "
 - 복 합 단 지 : 15 " (10.0ha) "
 - 밭경지정리지구 : 15 " (10.0ha) "
- ※ () : 실 수혜면적이며, 면적규모가 큰 지역을 우선 시행

(3) 선정 절차



라. 사업시행

(1) 사업추진일정

업 무 내 용	시행기관	완료기한	업 무 내 용	시행기관	완료기한
○ 사업예정지보고	시·도지사	전년 6.30	○ 지하수개발완료	농진공등	7. 31
○ 기본조사지시	장 관	전년 8.31	○ 세부설계완료	“	8. 15
○ 예산 가내시	장 관	전년10.15	○ 사업착수	시장·군수	9. 15
○ 사업량 및 예산내시	“	전년12.31	○ 추진상황보고	시·도지사	분기별
○ 기본조사완료	농진공	1.31	○ 완공보고	“	즉 시
○ 사업지구 선정 및 세부설계 지시	장 관	2.28			

(2) 기본계획수립

- 농림부장관은 시·도지사가 보고한 사업시행 예정지조사 내용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지구(50ha이상)에 대하여는 농어촌진흥공사에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지시하고 각 시·도에 통보.
- 기본조사는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계획내용의 신뢰성 및 책임성을 감안하여 50ha이상 지구는 전문기관인 농어촌진흥공사가 시행토록 하고 기본조사비는 농림부에서 직접 보조
 - * 50ha미만 지구는 기본조사를 생략하고 예정지 조사자료 등으로 기본계획 수립
- 농어촌진흥공사는 농림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시·도 및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기본조사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 기본조사중 제약사항으로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구는 기본조사를 중단하고 농림부와 협의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사업시행이 가능한 지구에 대하여는 지구별 우선순위와 농업인의 호응도, 지방비 부담능력, 타법 및 타사업과 관련성 등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등을 표기하여 제출

(3)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

- 원칙적으로 용수개발은 저수지 등 기존 수원공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기존 용수원 활용이 불가할 경우 암반관정 등으로 개발계획 수립.

- 세부설계후 시행계획 수립시에는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타사업과의 연계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2개 이상의 사업을 연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병행 및 종합개발방식을 적극 검토.
- 지하수의 개발시 시·도지사는 우선 지하수 부존량 평가를 위한 지질조사, 물리탐사(원격탐사 포함), 시추조사 등의 지하수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하수법에서 규정한 지하수조사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음. 또한,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영향조사를 지하수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토록 하여야 하며, 지하수법 제22조 및 제34조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하여금 개발토록 함
- 시·도지사 및 사업시행자로 부터 지하수 기초조사 및 개발에 대한 위탁을 받은 자는 지구별로 조사가 완료 되는대로 시추공의 위치, 심도, 채수량, 안정수위 등 세부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시행자의 확인을 받아 세부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
- 이용시설에 대한 세부설계는 지하수 개발결과를 토대로 실시

(4) 사업시행인가

- 시·도지사는 세부설계결과에 따라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농어촌정비법 제12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한 후 그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

(5) 사업기간 설정 및 공정계획 수립

- 발작물은 연중 계속 재배되는 지역이 많아 공사기간과 중복되어 휴경보상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며, 관정, 기계, 전기시설, 저수조, 송수 및 급수시설, 농로, 정지 등 공사내용이 다양한 점 등을 감안하여 2년 이상 장기 계속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음. 다만, 공종이 단순하고 사업규모가 작은 지구는 착수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을 설정.
 - 50ha 이하 및 단순공종 시행지구는 1년차 사업 시행
 - 50ha 이상인 복합공종사업 및 타사업연계지구는 2년차 사업 시행
 - 지역종합개발차원에서 시행되는 150ha 이상 지구는 3년차 사업 시행
- 사업시행자는 시공업체와 협의하여 착공과 동시에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

(6) 시행계획의 변경

- 사업시행자는 시공중 현장여건에 따라 시행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단, 사업지구를 변경하는 경우와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과 사전 협의

(7) 용지매수 및 보상

- 밭 경지정리로 감보처리 할 수 있는 지구는 용지매수 대상에서 제외
- 용지매수는 진입도로, 간선농로 등의 농로와 저수조, 관정 등의 공공시설 부지는 매수할 수 있으나, 농민들과 협의하여 필요한 부지를 매수없이 기부채납 등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구를 우선으로 하며, 용지매수시에도 예산단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단가를 초과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지방비 등 타재원을 확보하여 추진.
-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공공용지의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등 보상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

(8) 공사감리

- 공사감리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으나, 다양한 전문기술이 요구 되는 공종임을 감안 농어촌진흥공사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위탁시행
 - 일반용역업체에 위탁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농업토목 전문기술자는 물론 전기, 기계, 지하수 등의 전문가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있는 전문용역업체를 선정, 감리할 수 있도록 조치

(9) 준공검사

- 시·도지사는 공사가 완료되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시공상태 확인 등의 준공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일괄 보고

(10) 조사설계, 공사감리 및 관리비 집행

- 세부설계, 공사감리비 및 관리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에서 정하는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 요율의 범위내에서 시·도지사 및 사업시행자가 집행
- 농림부장관이 농어촌진흥공사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 기본조사 비용은 요율범위내에서 농림부장관이 직접 집행

(11) 사업비 집행

- 사업비는 개발유형에 따라 차등지원되므로 사업시행중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 부담

(12) 사업비 검정 및 결산

- 시·도지사는 예산회계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결산결과는 익년도 3월말까지 농림부에 보고

(13) 환지업무

- 대 구획경지재정리사업 지침을 준용

(14) 기 타

-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농어촌정비법, 지하수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따름.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완공된 관정 등 시설물에 대한 완공년월일, 채수량, 안정수위와 기타시설에 대한 준공사진이 첨부된 시설물의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별지 제6호 서식)하고 공종별로 시공전, 시공중, 준공사진 앨범을 제작 비치
- 시장·군수는 이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수혜농가들에 의한 관리조직을 만들어 관정 등 시설물의 선량한 유지관리를 하도록 함.
- 시설물의 점검정비는 1차적으로 수혜농민이 직접 실시하고, 자체점검이 불가능할 경우 농어촌진흥공사 등 전문기관에게 의뢰하여 점검·정비하고 수혜농민 또는 시장·군수가 예산을 지원
- 시장·군수는 관리조직으로 하여금 노후장비 및 시설교체비를 적립토록 하고, 전기료 등의 이용비용을 자체 부담토록 지도
- 지하수개발 및 이용시에는 지하수법에 의한 오염수유입방지그라우팅, 폐공처리, 수위측정관, 적산유량계, 수질검사용 출수장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수질검사는 관련규정에 의거 용도별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나. 보 고

보 고 사 항	서 식	보고기일	비 고
○ 사업시행예정지 조사결과보고	1	전년 6. 30	분기말실적
○ 기본계획수립결과보고	2	1. 31	
○ 세부설계, 사업시행인가결과보고	3	즉 시	
○ 사업추진상황보고	4	분기말 익월 10일	
○ 준공결과보고	5	준공즉시	

※ 수시보고 : 사업추진에 있어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농림부장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 보고를 하여야 함.

6. 2000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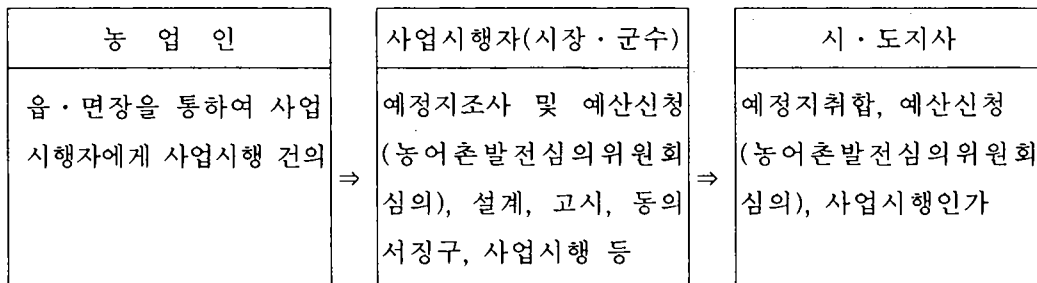
가. 신청대상지 : '98일제조사결과 발 기반정비 대상지에 포함된 지구

나.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담당부서(건설과)에 신청

다. 신청자격 : 대상지에 포함된 농업인

라. 신청절차 : 농업인이 읍·면장을 경유 시·군에 신청

마. 선정절차



자체 가26-16

발기반정비사업 예정지 조사 결과보고

< ○ ○ 도 >

(금액 : 백만원)

우선순위	code I No	지구명	위치		수해면적			소사업 요비		단지구분	개발유형	필요시설					토지 소유자	경사 도	주민 호응도	비 고
			시·군	읍·면	계	진 홍	비 진 홍	총 사업 비	ha 당			수원공 수원정 △ 관정 ▽	진입로	경작로	용수로	정지				
					ha	ha	ha					개소	m	m	m	ha	명	%		

- ※ ○ Code-No는 행정조사결과 부여한 고유번호임
- 수해면적은 용수공급 및 도로 등 기반정비사업의 혜택을 받는 실경지면적임
- 단지구분은 채소, 과수, 특작, 화훼 등 대표 재배작목을 기재
- 개발유형은 지역여건 및 재배작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3가지 유형으로 구분
 - I 유형(단순정비) : 용수개발 또는 농로개설비 등 단일사업 시행
 - II 유형(복합정비) : 용수개발+농로개설 등 2개이상의 복합공종 시행
 - III 유형(종합정비) : 용수개발+농로개설+발경지정리 등 종합정비 시행
- 타사업과의 연계 및 병행개발지구를 우선 추진토록 하고, 연계병행 사업명은 비교란에 기재

자체 가26-17

발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수립 결과 보고

< ○ ○ 도 >

(금액 : 백만원)

우 선 순 위	Code 1 No	지 구 명	위 치		수혜면적			소 요 사 업 비		단 지 구 분	개 발 유 형	필요시설					토 지 소 유 자	지 방 비 부 담 액
			시 · 군	읍 · 면	계	진 홍	비 진 홍	총 사 업 비	ha당			수 ^ 관 원 정 공 V	진 입 로	경 작 로	용 수 로	정 지 공 사		
					ha	ha	ha		천원			개소	m	m	m	ha	명	

연 계 병 행 가 능 사 업				주 민 호 응 도	사 업 시 행 예 상 점 제	조 사 설 계 여 부	비 고
사 업 명	관 련 기 관	예 산 확 보 여 부	관 련 기 관 과 협 의 내 용				

< 작성요령 >

- 단 지 구 분 : 채소, 과수, 화훼, 특작 등으로 기입,
- 지방비부담액 : 가능, 불가능으로 기입
- 예산확보여부 : 예산이 확보된 경우 예산액을 기입하고, 발기반정비가 끝난 후 별도 추진하는 경우 그 시행년도를 기입
- 주민 호응도 : 양호(90%이상 동의), 보통(67%이상 동의), 불량(67%미만 동의)으로 기입
- 조사설계여부 : 세부설계 대상지구는 ○표, 세부설계 제외지구는 ×표로 표시
- 비고란에는 원예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 정주권개발사업 등과 연계사업 지구는 연계사업명, 논에 재배되는 시설채소 등을 받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지구는 받으로 이동으로 표기

[별지 제3호 서식]

자재 가26-18

발기반정비사업 세부설계 및 시행인가 결과보고

< ○ ○ 도 >

(금액 : 백만원)

우선 순위	지구명	위 치		수혜 면적	총사업비			착수년도			완공년도			인 가 연월일	비 고
		시군	읍면		계	국 고	지방비	계	국 고	지방비	계	국 고	지방비		
				ha											

○ 비교란에는 원예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 정주권개발사업 등과 연계 사업 지구는 연계사업명, 논에 재배되는 시설채소 등을 받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지구는 받으로 이동으로 표기

※ 기본계획과 수혜면적, 시행공종이 변경될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와 협의후 인가

[별지 제4호 서식]

총26-45

발기반정비사업 추진상황 보고

○ ○ 도

(금액 : 백만원)

지구명	위 치		면적	총사업비	'98까지	'99계획			주요공종	추진실적		시행주	비고
	시군	읍면				계	국 고	지방비		실형액	%		
			ha										

[별지 제5호 서식]

심사제외

발기반정비사업 준공결과 보고

○ ○ 도

지구명	위치		수해면적	지역구분		재배작목				사업비(천원)			사업내용				
	시·군	읍·면		진흥	비진흥	채소	화훼	과수	특작	계	국고	자랑비	수원공정 ^관정 V	진입로	경작로	송급수관	정지
			ha	ha	ha	ha	ha	ha	ha				개소	m	m	m	ha

[별지 제6호 서식]

발기반정비사업 시설물 대장

코드번호 :	지구명 :	위 치 :	도	군	면	리	관리자 :	
사								진
○ 주요 공사내용								
- 경 작 로 : km								
· 진 입 로 : 조 m(노폭 m, 포장 m)								
· 경 작 로 : 조 m(노폭 m, 포장 m)								
- 수 원 공 : 개소								
· 관 정 : 공(구경 : mm, 평균심도 : m, 양수량 : m ³ /일)								
· 양 수 장 : Hp× mm× 대, 양수량 : m ³ /sec								
- 용 수 로 : 조 m(송수관로 m, 급수관로 m)								
- 발경지정리 : ha								
○ 공 사 기 간 : ~								
○ 사 업 비 : 백만원(국고 , 지방비)								
○ 시 공 회 사 :								
○ 공 사 감 리 :								
○ 기타 특기사항								

※ 관정시설 재원은 이면.

(후 면)

관 정 시 설 재 원

구 분	단위	1번공	2번공	3번공	4번공	5번공
구 경	mm					
심 도	m					
채수가능량	m ³ /일					
양 수 량	m					
우물파이프	m					
우물유공관	m					
자연수위	m					
안정수위	m					
수중모타펌프	Hp					
제 품 명						
설 치 심 도	m					
양 수 장 옥	m ³					
저 수 조	m ³					
(재 질)						
송 수 관	m					
(재 질)						

(덧붙임)

농촌정비사업 공사계약시 준수사항

1. 계약 기본원칙 및 대상

- 농촌정비사업 공사의 계약방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경쟁을 원칙으로함.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한 농어촌정비사업중 농림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시공회사를 입찰에 의거 선정하여야 하는 사업

2. 제한 또는 수의계약 적용시

- 불가피하게 제한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내지 제26조 등 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과도한 제한으로 인하여 선의의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 기회를 잃는 등 불이익이 없도록 제한요건을 신중히 하여야 함.

제한경쟁 적용

- 제한경쟁과 관련한 법규 및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 2200.04- 143-1, '97.1.1)등에 의하되 특히, 도급한도액 또는 실적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규모, 특수기술 또는 특수공법을 요하는 공사 등에만 적용
 - 단순 공종인 경지정리 또는 수리시설개보수 등의 공사는 일반 경쟁 입찰로 시행
- 또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중복제한을 하지 말 것.

수의계약 적용

- 수의계약은 경쟁원리가 배제되는 만큼 계약당사자의 자의성이 개입될 우려가 있어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산 절감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신중하고 합리적인 운용이 되도록 할 것.

- 수의계약을 적용할 경우에는 공사의 수의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 2200.04-139-1, '97.1.1)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하되, 장래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 작업상의 혼잡의 적용시에는 시간적, 공간적 중복여부 등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적용할 것.
- 특히, 배수개선, 농업용수 등과 경지정리사업이 병행되는 경우 동일 구역 내이더라도 공정과 공사의 범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수의계약적용 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조달청 공고 제1997-15호, '97.2.20) 등에 의한 평가기준을 명확히 하여 수의계약사유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할 것.
- 농업용수, 경지정리, 배수개선 등 2개 이상 사업의 병행추진이 예상될 경우에는 선행공사의 조사설계시 후속 공사내용이 반영되도록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를 하여 일괄 설계 및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추후 수의계약 발생 요인을 제거하여 농촌정비사업 공사계약과 관련한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

3. 조치계획

- 과도한 제한경쟁입찰이나 불필요한 수의계약을 하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는 관련자의 엄중 문책 및 예산지원 등에 불이익을 줄 계획임.
- 공사계약에 따른 불공정행위 적발시 사정기관에 고발 등 조치강구
- 공사계약관련 민원발생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 또는 우리부 감사관실에 통보하여 감시실시
- 계약방법을 분석·평가하여 과도한 제한경쟁입찰이나 불필요한 수의 계약을 하는 시행자에 대하여는 국고 예산지원 등에 불이익

4. 농촌정비사업 입찰제도 개선

가. 농촌정비사업과 관련된 공사입찰 관련 법규

- 관련법규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국가), 지방재정법(지방), 농조예산회계규정 준칙(농조)

○ 계약의 방법

- 일반경쟁 : 계약체결시는 일반경쟁 원칙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한,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음.
- 제한경쟁 :
 -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의 경우 기술보유상황 또는 특수공사실적
 - 공사금액 30억원 이상인 경우 도급한도액 또는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 수의계약 :
 -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책임구분이 곤란할 경우
 - 작업상의 혼잡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
 -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 **예정가 결정** : 15개의 예비가격(설계가격의 $\pm 2\%$)을 작성 공개,
이중 4개를 추첨 산술평균하여 예정가 결정

○ 낙찰자 결정

- 58.3억원이상 공사 :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격입찰자
(최저가낙찰제) (적격심사 결과 70점이상시 낙찰자로 결정)
- 58.3억원미만 공사 : 예정가격 90%이상 입찰자중 최저가격 입찰자
(제한적최저가낙찰제)

○ **공사발주자** : 사업시행자(시장·군수, 농지개발조합장, 농어촌진흥공사)

나. 제도개선 사항

공사시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철폐 및 불필요한 수의계약 근절

- 병행사업지구라 하더라도 공사여건상 별도 분리시공이 가능한 경우는 수의 계약 대신 일반경쟁입찰로 시공자를 선정

예) 배수개선병행 경지정리사업으로 배수장 공사만 시행할 경우와 이미 배수로 하천개수 등이 선행되어 동시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등

- 동일지역에 농업용수, 배수개선 및 경지정리 등 관련사업을 함께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동시에 설계를 실시하고 일괄 일반경쟁입찰 토록 하여 수의계약 개연성 배제
- 주요 특수공종이외는 도급한도액 또는 공사실적제한 등 제한경쟁 입찰배제
 - 단순 공종인 경지정리 또는 수리시설개보수 등 공사는 일반 경쟁입찰로 시행
- **과도한 제한경쟁입찰이나 불필요한 수의계약을 하는 시행자에 대하여는 관련자의 엄중문책 및 예산지원 등에 불이익을 줌으로서 공정한 경쟁입찰을 유도**
- 계약에 따른 불공정행위 적발시 사정기관에 고발조치 또는 민원 등 제보가 있을시 현지 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여 관계자 징계조치
- 계약방법을 분석·평가하여 국고 차등 하향지원 및 사업시행 우선 순위 하향조정

※ 참고사항 : 정비 51340-267('98.9.15)호.

5 경지정리사업(공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정비과(과장 권상필, 시설서기관 송태명, 토목사무관 김일환)입니다.

1. 목 적

- 불규칙한 농지의 논배미, 용·배수로, 농로를 영농기계화에 알맞도록 정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촌생활환경개선
- 경지정리된 영농여건이 불리한 평야부 우량농지를 대형농기계작업에 알맞도록 정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

2. 추진방향

- 일반경지정리는 2004년 쌀자급 계획 논면적 1,100천ha의 73%인 800천ha를 목표로 추진
 - '98봄까지 678천ha를 완료하여 목표면적의 85% 달성
 - '99봄마무리로 12천ha(구역면적 14천ha) 추진계획
- 대구획경지정리는 경지정리된 평야부 우량농지중 영농여건이 불리한 200천ha를 목표로 추진
 - '98봄까지 55천ha를 완료하여 목표면적의 28% 달성
 - '99봄마무리로 12천ha(구역면적) 추진계획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5조, 제6조 내지 제12조, 제89조 등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96	'97	'98	'99 (예산안)
○ 일반경지정리					
사업량(천ha)		114	27(23)	23(14)	14(9)
- 농업진흥지역		114	27(23)	23(14)	14(9)
- 농업진흥지역밖		-	-	-	-
사 업 비	계	2,351,191	749,649	612,122	329,201
	보 조	1,754,786	502,277	450,511	264,933
	지방비	572,959	247,372	161,611	64,268
	자부담	23,446	-	-	-
○ 대구획경지정리					
사업량(천ha)		25	16(14)	14(12)	12(6)
사 업 비	계	687,386	362,023	364,927	249,830
	보 조	554,086	292,119	294,164	200,956
	지방교부금	133,300	69,904	70,763	48,874
	자 부 담	-	-	-	-

※ ()는 가을착수 사업량임.

5. '98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지원대상자 및 사업시행자 : 경지정리를 시행하는 사업시행자
(시장·군수 또는 농지개량조합장)
- 지원단가 및 지원기준('99년)

(단위 : 천원/ha)

구 분	일반경지정리		대구획경지정리	
	봄마무리	가을착수	봄마무리	가을착수
○ 예산지원단가(평균)	27,011	27,011	25,460	27,907
- 기준 단 가	25,240(30%)	25,240(30%)	24,840(75%)	26,080(30%)
- 상 한 단 가	27,770(70%)	27,770(70%)	27,320(25%)	28,690(70%)
○ 지원기준	예산단가의 80 % 국고이외의 소요사업비		예산단가의 80% -	
- 국 고				
- 지 방 비				
- 지방교부금			예산단가의 20%	
○ 예 산 과 목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농특세전입금사업	

주. ()는 당해 연도 사업량의 적용비율임.

○ 사업내용

- 불규칙하고 세분화되어 있는 필지를 규격화 및 규모화하여 대형기계화 영농으로 노동력 절감 및 노동생산성 향상
- 농기계 출입이 용이하도록 농로정비
-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한 용수로와 배수로의 정비
- 토층개량 및 객복토로 작토심 확보
- 환지를 통한 농지의 집단화로 영농규모화 촉진
- 영농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공동이용 시설부지 조성

집하장, 건조장, 농기계보관소, 농막 등 농민들이 영농에 필요한 시설 설치

나. '99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천ha)	사 업 비(백만원)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지방교부금)	자부담
			보 조		
일반경지정리		329,201	264,933	64,268	-
○ 사 업 비		313,839	251,071	62,768	-
- 봄마무리	14	236,393	189,114	47,279	-
- 가을착수	9	77,446	61,957	15,489	-
○ 환 지 비	14	4,298	4,298	-	-
○ 조사설계	9	3,564	3,564	-	-
○ 간이경지정리	1	7,500	6,000	1,500	-
대구획경지정리		249,830	200,956	48,874	-
○ 사 업 비		244,271	195,397	48,874	-
- 봄마무리	12	204,138	163,311	40,827	-
- 가을착수	6	40,133	32,086	8,047	-
○ 환 지 비	12	3,684	3,684	-	-
○ 조사설계	5	1,875	1,875	-	-

6.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 사업시행자
 - 시·군 구역 : 시장·군수
 - 농조 구역 : 농지개량조합장
 - 시·군, 농조 병합구역 : 큰면적을 관리하는 시장·군수 또는 농지개량조합장
- ※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이를 조정하고자 할 경우는 우리부와 사전협의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개발국 농촌정비과(02-500-2664,5)
- 시·도 : 인천 농정과, 경기 농업정책과, 강원 농산지원과, 충북 농산지원과
충남 기반조성과, 전북 농지개발과, 전남 농업기반과, 경북 농지
개량과, 경남 농업지원과
- 시·군 : 시군 건설과 또는 농정과
- 농 조 : 농지개량조합 개발과

다. 자금지원예정자 :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시행자

라. 사업대상지 선정

< 대상지 선정 >

- '97년도에 조사한 경지정리 대상지에 포함된 지역
- 사업시행에 대한 농민(주민)의 호응도가 높은 지역
 - 소수의 농민이 사업시행을 적극 반대하는 지구나 지역은 제외
- 농업용수가 확보되었거나, 농업용수 개발중으로 영농에 지장이 없는 지구
 -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구는 용수확보대책을 강구한 후 대상지로 선정

- 예산단가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지구
- 타법, 타사업 등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지구
 - 도시, 공단, 도로계획 등 타용도로 전용이 예상되는 지구는 반드시 제외
- 비닐하우스설치비와 감보면적 보상 등 각종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지구
- 농업용수개발, 배수개선, 하천개수, 집단마을정비,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 등과 병행추진으로 사업효과 높은 지구
- 간척농지, 저습답, 하천주변 등 상습침수지역은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
 - 배수개선이 필요한 지역(예정지)
 - 배수개선이 기본조사, 세부설계중인 지구
 - 배수개선 사업이 착수는 되었으나 추진공정계획상 경지정리와 병행이 어려운 지구
- 시군농어촌발전계획에 포함된 지구

□ 일반경지정리

- 농업진흥지역내 경지정리 대상 논 우선 선정
 - 농지의 집단화 규모가 3ha이상으로서 경사도가 1/15미만인 지구
단, 쌀자급확충기반을 위하여 농업진흥지역밖이라도 농지의 집단화 규모가 2ha이상이고, 경사도가 1/15미만인 지구로 사업시행여건이 비교적 양호하여 계속해서 영농이 가능한 지구로서 사업시행후 농업진흥지역 편입이 가능한 지역
- 국고지원액 이외의 소요사업비를 지방비로 부담할 수 있는 지구

□ 대구획경지정리

- 경지정리된 지역중 농로가 없거나 협소하며, 용·배수로가 겸용 또는 토공으로 되어 있고 필지규모가 작아 물관리 및 대형기계화 영농이 곤란한 지역으로써 경사도가 완만(1/50이하)한 농지의 집단화 규모가 30ha이상인 지구

< 우선순위 >

- 주민호응도가 양호하고, 사업비가 저렴한 지구
- 사전환지 등 제도개선 시범사업지구
- 타사업과 병행 및 연계 추진으로 사업효과가 큰 지구
- 대구획경지정리는 사업시행연도가 오래되었고, 농지집단화 규모가 큰 지구

□ 시행절차

절 차	시 행 자 및 내 용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예정지조사</div> <small>(법제6조)</small>	○ 사업시행자, 시·도지사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기본계획수립</div> <small>(법제7조)</small>	○ 사업시행자, 시·도지사 - 용수원과 입지적, 기술적, 경제적 조건등 사업의 적부 판단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시행계획수립 (세부설계등)</div> <small>(법제8조)</small>	○ 사업시행자, 시·도지사 - 사업비 조달방안, 설계내용의 기술적 타당성 등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고 시</div> <small>(법 제10조)</small>	- 사업시행자가 고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동의서 징구</div> <small>(법 제10조)</small>	- 2/3이상 동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이의신청</div> <small>(법 제10조)</small>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업시행자에게 이의 신청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사업시행인가</div> <small>(법제12조)</small>	○ 시·도지사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고 시</div> <small>(법제12조)</small>	- 시·도지사가 고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사 업 착 수</div>	○ 사업시행자

※ 주) 법 : 농어촌정비법

< 사업추진 >

가. 추진 일정

구 분	'99봄마무리	'99가을착수	비 고
① 조사설계	'98. 8	'99. 4	시·도
② 착수지구선정	'98. 9	'99. 4 ~ 5	시·도, 농림부
③ 사업시행인가	'98. 9 ~ 10	'99. 5 ~ 7	시·도
④ 입찰 등	'98.10 ~ 11	'99. 8 ~ 10	사업시행자
⑤ 착 공	'98.10 ~ 11	'99. 11	사업시행자
⑥ 공사시공	'98.10 ~ '99.5	'99.10 ~ 2000.5	사업시행자
⑦ 준 공	'99. 4 ~ 5	2000. 4. ~ 5	사업시행자
⑧ 일시이용지지정	'98.12 ~ '99.4	'99.12~2000.4	사업시행자
⑨ 확정측량	'99. 6 ~ 9	2000.6 ~ 9	사업시행자
⑩ 본 환 지	'99. 9~2000.3	2000.9~ 2001.3	사업시행자
⑪ 등 기	2000. 6 ~ 8	2000.6 ~ 8	사업시행자

나. 예정지조사

- 예정지는 '97년 조사한 경지정리 대상지에 포함된 지역을 원칙으로 함.
 - 지역주민 요구 등 불가피하게 대상지외의 지역을 포함하고자 할 때는 농림부와 사전협의
- 예정지 조사는 농어촌정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 단,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7조의 단서조항에 의해 수혜면적이 3,000ha 이상이고 농업용수 등 2개이상 병행사업은 농림부장관이 실시
- 주민호응도, 구역면적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기본조사 또는 세부설계시 주민반대 등으로 지구제외, 면적 증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
- 농업용수, 배수개선 등과 병행하여 경지정리를 실시할 예정지에 대하여는 병행사업의 공정, 병행사업비 확보 여부등을 병행사업 관련부서와 사전협의한 후 예정지로 제출

다. 기본조사

- 농어촌정비법과 기정51350-354('95.10.13)호로 시달한 기본조사요령에 의하여 기본조사 실시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50ha이하지구는 기본조사 생략 가능
 - 50ha미만 지구 중 기본조사가 필요한 지구는 사유를 첨부하여 별도 보고

라. 세부설계

- 농림부에서 시·도지사가 실시한 기본계획 수립 결과를 검토한 후 세부설계 대상지구 선정·통보시 시달하는 세부설계지침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세부설계
- 시·도지사는 농어촌정비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에게 세부설계토록 위탁할 수 있음. 단,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7조의 단서조항에 의해 수혜면적이 3,000ha 이상이고 농업용수 등 2개 이상 병행사업은 농림부장관이 실시
 - 50ha미만지구는 기정51351-161('95.4.30)호로 시달한 시행지침에 의하여 세부설계
- 세부설계 위탁시는 농업용수, 배수개선 등과 병행지구는 병행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세부설계자를 정함.
- 세부설계는 농지개량사업설계기준(경지정리편) 및 대구획(논)경지정리설계요령(조성51306-54:'93.2.13)등에 의거 추진하고, 토양조사시 현장조사, 실내분석시험, 보고서확인요령 등은 경지정리사업 토양조사철저(조성51306-66 : '93.2.19)로 시달한 공문에 의함
- 배수개선 병행 대구획경지정리지구는 대구획경지정리 예정지 조사 및 기본조사계획수립후 배수개선사업과 병행하여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을 하되, 배수개선사업시행지침 『하. 배수개선 및 경지정리병행사업추진』에 따름

마. 공정계획

- 공사기간이 추수후에 시작하여 익년도 모내기 이전으로 제약되어 있으므로 지역별 표준이앙기, 기상, 인력·장비·자재확보, 영농방식(직파)등을 고려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공정계획을 수립·추진(당해 연도 말까지 30%이상 최대한의 공정을 달성)
 - 공정계획서 작성·제출 및 승인 등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련법률 등 관련 규정에 의함
 -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설계기간과 착수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조기 착수토록 함.
 - 농민들이 직파 재배를 원하는 지구는 착공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정밀 시공을 할 수 있도록 레이저빔이 장착된 장비의 활용방안 등을 강구할 것이며, 물정지 등의 공사를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불도저 등을 최대한 투입, 공사완료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직파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예 : 4월중 직파 가능하도록 공사 추진)

- 경지정리사업지구내에 못자리를 설치할 경우에는 못자리 용수의 낭비 및 공사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집단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

< 지역별 못자리설치 및 이앙적기 >

지역별	구 분	못자리 설치			이 앙		
		조생종	중생종	중만생종	조생종	중생종	중만생종
○북 부 (한강이북)	중 모	4.15-30			5.15-30		
	어린모	5. 5-15			5. 5-25		
○중 부 (수 원)	중 모	4.10-5.5	4.10-30	4.10-25	5.10-6.5	5.10-30	5.10-25
	어린모	5. 1-20	5. 1-15	5. 1-10	5.10-30	5.10-25	5.10-20
○중 남 부 (대 전)	중 모	4.10-5.10	4.10-5.5	4.10-30	5.10-6.10	5.10-6.5	5.10-30
	어린모	5. 1-25	5. 1-20	5. 1-15	5.10-6. 5	5.10-30	5.10-25
○남 부 (이리대구)	중 모	4. 5-5.15	4. 5-5.10	4. 5-5. 5	5. 5-6.15	5. 5-6.10	5.5-6.5
	어린모	4.25-6. 1	4.25-5.25	4.25-5.20	5. 5-6.10	5. 5-6. 5	5. 5-30
○극 남 부 (광주진주)	중 모	4. 1-5.20	4. 1-5.15	4. 1-5.10	5. 1-6.20	5. 1-6.15	5.1-6.10
	어린모	4.20-6. 5	4.20-6. 1	4.20-5.25	5. 1-6.15	5. 1-6.10	5.1-6. 5

※ 자료 : 농촌진흥청('95농업기술지도사업 추진지침)

바. 시행계획수립

농어촌정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기본조사, 세부설계를 실시한 후 농어촌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 청구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시행인가후 사업시행

사. 시행계획변경

- 시행계획변경은 농어촌정비법 제12조 규정에 의함.
- 사업추진과정에서 면적증감, 계획변경 등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고, 주민 요구 등 불가피하게 면적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우리부와 사전협의.
- 물량변동 등 시행계획변경으로 사업비가 지원사업비 보다 초과할 때에는 시도지사 및 사업시행자가 초과사업비를 지방비 등에서 부담
- 노임 및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을 관련규정에 의함

아. 공사감리

-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을 축적한 해당분야 공사감독원을 공사규모에 맞게 적정인원으로 고정배치하여 현장주재 감독토록 조치하고 공정계획 수립 및 품질관리 철저
 - 부실공사 등 민원발생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사감리는 가급적 농어촌정비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여 신고증을 교부받은 전문감리기관에 위탁시행
 - 사업시행자가 전문기관에 공사감리를 위탁할 경우 감리원의 기술력, 적정인원배치 등을 검토하여 문제가 있을시 감리원의 교체, 추가증원 등 적정한 조치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공사감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체의 기술력, 업무량, 소요비용 등을 검토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 타업무와 중복 등 업무량 과다, 공사감리의 자격이 있는 기술직(정규직, 임시직) 적정 소요인원 배치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
- 공사감리원으로 임명된 자는 공사기간중 공사현장을 이탈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각도에서는 공사감리원의 적정배치와 현장 주재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 이행
- 공사감리기관은 공사감리원으로 임명된 자가 시공중에 인사 조치되어 공사감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함
 -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조치
-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 소홀로 부실공사가 발생한 지구에 대하여는 농어촌 정비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부당업자로 처리하여 책임감 부여
- 배수개선, 농업용수 등 병행지구의 공사감리는 병행사업과 경지정리사업의 업무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소장 등 겸임할 경우는 사업시행자와 협의
 - 이때에는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 능력, 소요인원 적정배치, 공사감리비 등을 위탁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민원사항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민원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지역주민이 공사에 참여하는 명예감독제를 도입하여 공사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
-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시토록 하고, 부실시공이나 불법하도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지사, 사업시행자, 감리자 등은 수시로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

자. 준공검사

- 준공검사는 농어촌정비법 제 94조의 규정에 의함

차.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지원 및 집행은 예산지원기준에 의하되, 노임·물가변동에 따라 조정되는 사업비와 면적증가없이 사업시행중 증가되는 사업비는 지방비로 부담
 - 지구별 집행단가가 예산단가 이내일 경우에는 집행단가의 80% 해당액을 국고에서 지원
- 기본조사, 세부설계,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율 범위내에서 집행
- 농업용수개발, 배수개선, 하천개수 등 병행지구의 관련사업비는 당해 사업비에서 확보지원

카. 사업비 검정 및 결산

- 별도로 시달하는 사업비 검정 및 결산요령에 의함.

타. 기 타

사업비 절감

- 기본조사단계에서 부터 지역여건에 따라 차등화하게 사업수준을 달리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조사설계를 하고, 철저한 공사감리로 부실공사 방지 및 사업비 절감

동의서 징구

- 농어촌정비법 제10조에 의한 동의서징구는 법적 동의율에 불구하고 최대한 많은 이해관계 농민으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하고, 부재지주를 비롯한 참여자격자에게 동의서 서식을 송부하는 등 조치로 참여자격자가 사업내용을 알지 못하므로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 공사계약

- 경지정리 공사계약시에는 정비51340-267('98.9.15)호로 이미 시달한 『농업 생산기반조성사업 공사계약시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경지정리 공사계약 과 관련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기 바람.

※ 본 시행지침에서 규정하지않은 사항은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고, 본 지침과 상이한 부분은 관련 법령을 우선함

< 환지업무 >

가. 환지업무 요령

- 환지업무는 농림부에서 시달한 환지업무추진요령에 따라 추진
- 사업시행자는 수혜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 총회시 통보하는 등의 조치로 환지로 인한 민원발생 방지
- 영농규모 확대 및 농지의 집단화 등을 위한 집단환지, 농업경영합리화 및 농업구조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이용시설 등의 부지조성을 위한 창설환지제도 활용
 - 사업시행인가 고시후 필요한 경우 창설환지에 관한 사항을 14일이상 공고하여 신청접수
 - 창설환지계획은 반드시 수혜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은 시설부지에 한하여 시행
 - 사업시행자는 농지관리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집단환지(교환·분합) 청산금 지원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농지가 집단화될 수 있도록 추진

- 사업시행자는 환지업무를 수혜자, 환지업무대행자, 지적관서, 대한지적공사, 등기소 등 환지업무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아래 일정에 따라 추진

- 공사착수전 (사업시행자)

창설환지계획수립, 증·감환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접수, 실경작지 조사, 국공유지관리청과 협의, 수혜자총회소집, 환지청산금 지원대상 및 절차홍보, 공사착수신고

- 공사착수후

업 무 구 분		시 행 자	기 한
일시이용지 지정 (가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인계 · 일시이용지 지정 계획서 제출 · 일시이용지 지정 도서 납품 · 일시이용지 지정 계획서(안) 통지 및 공고 	사업시행자 → 농조연	'99. 12.10
		농조연 → 사업시행자	'99. 4. 30
		농조연 → 사업시행자	'99. 5. 10
		사업시행자 → 수혜자	즉 시
확 정 측 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측량 계약 · 확정측량도서 납품 · 확정측량도서 인계 · 이동정리 신청 	사업시행자 → 대한지적공사	'99. 5. 31
		대한지적공사 → 사업시행자	'99. 8. 31
		사업시행자 → 농조연	'99. 9. 10
		사업시행자 → 관할지적관서	'99. 9. 15
환지계획(본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인계 · 국공유지 무상양여 증여 신청 · 행정구역 변경신청 · 환지도서 납품 · 환지계획인가 신청 · 환지계획인가 및 고시 	사업시행자 → 농조연	'99. 9. 10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	'99.10. 20
		사업시행자 → 관할지방자치단체	'99.10. 20
		농조연 → 사업시행자	'99.11. 20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	2000. 2. 10
		시·도지사	2000. 3. 10
환지청산금정산	· 환지청산금 징수 및 교부	사업시행자 → 수혜자	환지계획 인가일 부터 90일 이내
등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및 대위등기 촉탁 · 환지등기 촉탁 · 환지 등기 	사업시행자 → 등기소	2000. 5. 31
		사업시행자 → 등기소	2000. 6. 30
		등기소 → 사업시행자	2000. 9. 30

< 사전환지 시범추진 >

- 목 적 : 농지의 규모화, 집단화로 농업구조개선에 기여
- 대 상 : 주민호응도가 양호하고, 농가의향조사결과 농지의 규모화, 집단화를 원하는 지구
- 추진계획 : '98가을착수 시범지구에 대한 성과를 평가·분석하여 확대추진 방안 결정
- 추진방법, 예산지원기준 등 세부추진계획은 별도 시달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과정에서 제도적인 문제점, 개선사항 등을 발굴하여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농림부에 보고
 - 사업시행 전후의 작부체계 및 경운.이앙.물관리.수확 등 영농형태 등의 변화, 노동시간 절약 및 영농환경 변화, 주민 소득증대 효과, 주민호응도 등을 조사·분석한 후 문제점을 발굴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수립하여 농림부에 보고
- 영농과정 등에서 논두렁 및 수로부지를 잠식하지 않도록 하고, 잠식된 사례가 있는 경우 원상복구토록 하여 본래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조치함
- 사업시행전·후의 전경사진을 동일한 장소에서 촬영하여 보관함.
- 사업지구내에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내용, 조사설계자, 사업시행자, 시공업체, 공사감리자 등이 표기된 안내판을 설치하여 사업내용 홍보 및 조사설계와 시공의식 고취토록 함.
- 경지정리공사지연 등으로 직파 재배나 이앙 등 농업용수 공급이 필요한 시기에 관개급수 차질로 인한 민원이 야기 되지않도록 사업시행자와 공사감리자는 사전에 물관리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함.

나. 보고사항

서식번호	보고사항	보고기일	비고
1	○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 조정결과 보고	3월	
2	○ 경지정리 조사·설계 및 시설계지구 보완 결과보고	4월	
3	○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시행계획인가결과보고	승인후 즉시	
4	○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입찰결과보고	입찰후 즉시	
5	○ 경지정리사업 추진상황 보고(월보)	익월5일	
6	○ 환지청산금징수 및 교부현황보고	1.15	
7	○ 가을착수 대상지구 선정보고	5월	
8	○ 경지정리 예정지 조사보고	9월	
9	○ 환지업무 납품실적 보고	가환지 5.31 본환지 12.10	
10	○ 확정측량 계약현황 보고	7. 10	
11	○ 확정측량 결과보고	10. 10	

7. 2000년도 사업신청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관할 시·군청 또는 농지개량조합

나. 신청자격

- 경지정리는 공공사업으로서 개인별, 소유토지별, 필지별로 부분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으므로, 대상지 선정기준에 적합한 지구로서 해당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2/3이상 사업시행을 희망하는 지역의 대표, 리동장 등
 - 비닐하우스, 감보면적 등에 대한 영농보상을 원하지 않은 지역.
 - 농업용수, 하천개수 등 경지정리와 병행추진에 문제가 없고 용수확보에 지장이 없는 지역
 - 사업시행으로 영농환경이 개선되며, 대형농기계작업으로 사업효과가 큰 지역

다. 신청절차

- 농민들은 해당 시장·군수 또는 농지개량조합장에게 사업신청
-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
- 시·도지사는 농림부 장관에게 신청

라. 구비서류

- 농민들은 사업시행자에게 임의서식이나 구두로 사업시행을 희망한다는 의사표시
- 사업시행자 및 시도지사는 경지정리 예정지를 현지조사한 후 조사보고서식에 의함

마. 선정절차

- 사업시행절차에 의하여 조사설계후 타당성을 검토하여 선정기준에 적합하고,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사업대상지구로 선정하여 사업비 지원 및 사업시행
- 2000년 가을착수 사업시행 예정지에 대하여는 2000년 예산신청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

8. 간이영농기반개선(간이경지정리) 시범사업

가. 목적 및 추진방향

- 개발여건이 불리한 중산간지역 농경지의 영농조건을 개선하여 휴경화를 방지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개선하여 식량자급기반 유지

나.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 제6조, 제7조내지 제12조, 제89조 등

다. 연도별 지원계획

- '99가을착수로 1천ha에 대하여 시범사업추진
 - '99년도 계획
 - 사업량 : 1,000ha
 - 사업비 : 총사업비 7,500백만원(국고 6,000, 지방비 1,500)
- '98~'99년 간이용농기반개선사업 대상지를 조사하여 연차별 계획 수립

라. '99년도 사업시행요령

- 지원대상자 : 경지정리를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시장·군수, 농지개량조합장 또는 토지소유자)
 - 시·도별 1~3개 지구는 농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범사업 실시
- 지원단가 및 지원기준
 - 단 가 : 15,000천원/ha
 - 지원기준 :
 - 국고 80% · 지방비 : 국고지원이외의 소요사업비
 - ※ 가을착수 사업을 : 50%
- 사업내용
 - 기반정비에 필요한 사업종류를 제시하고 현지에서 꼭 필요한 시설을 선택적으로 선정 시행
 - 사업종류
 - 농로개설 · 용·배수로 정비 · 관정 등 간이용수개발
 - 휴반정비(합배미) · 토지교환 분합

○ 사업대상지 선정

< 선정기준 >

- 농지집단화 규모가 소규모이고 경사도가 높아 일반경지정리 시행이 어려운 지구
- 경지정리 대상지 중 개발여건이 불리하여 소요사업비가 많이 드는 지역
- 경지정리 계획이 유보된 중산간지대의 계곡답으로서 휴경화가 진행되거나 예상되는 지역

< 우선순위 >

- 농업진흥지역내 경지정리 대상지중 개발여건 불리지역
- 농업진흥지역밖 경지정리 대상지
- 농업진흥지역내 경지정리 대상지에서 제외된 지역
- 발기반정비사업과 연계 추진이 가능한 지역

○ 사업추진

- 예정지, 기본조사,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 등은 경지정리사업 지침에 의함.

단, 가을착수는 당해 연도말까지 50%이상의 공정 달성

총26-44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 조정결과 보고

사업명 :

코드	위 치		지구 명	면적	사업 시행 자	면 적			면적 조정 사유	ha사업비		기승인사업비			조정사업비			
	시군	읍면				기승 인	조정	증감		기승 인	조정	계	국고	지방 비	계	국고	지방 비	
						①	②	③= ② ①			④				⑤			

(단위:ha, 천원)

증 감			전년도집행액			금년도소요액			금년도예산액			금년도부족액			비고
계	국고	지방 비	계	국고	지방 비	계	국고	지방 비	계	국고	지방 비	계	국고	지방 비	
⑥= ⑤- ①			⑦			⑧			⑨			⑩= ⑧- ⑨			

<작성요령>

- 전년도 집행 조사·설계비는 < >로 외서로 작성하고, 비고란에 집행연도를 기재
- 농업용수, 배수개선 등 병행사업비는 { } 외서로 작성

총26-66

경지정리 조사·설계(기설계지구 보완)결과 보고

사업명 :

구분	순위	코드	지구명	위치		구역면적(ha)			수혜면적(ha)			감보율(%)	농업진흥지역여부(ha)			
				시군	읍면	계	농조	시군	계	농조	시군		계	진흥지역	진흥지역밖	
금회시행																
기시행																

사업시행자	설계사업비		조정사업비		조정사유	차등화계획(ha)				참여농가수
	총액	ha당	총액	ha당		대구획	중구획	소구획	간이식	
	백만원	천원	백만원	천원						세대수

토양개량 대상면적(ha)				용수로구조물			배수로구조물			농로길이	주수원공	용수확보율
계	객복토등	습지	기타	연장	구조물	율	연장	구조물	율			
				Km	Km	%	Km	Km.	%	Km		%

경사도	주호응도	병행사업				설계연도	설계기관	설계자의견	사업시행자의견	시도자의견	대상지선정		비고
		사업명	지구명	공사진도	완공년도						공사감리기관	실시	
1/00	%										○	X	

< 작성요령 >

- 코드는 '97년도 경지정리대상지조사시 부여된 코드번호 전체를 기재
- 구분란 기시행지구는 가을착수예정지 중 이미 조사설계가 된 지구를 기재
- 비고란에 당시 조사설계후 미착수 된 사유를 기재
- 농업용수, 배수개선 등 타사업 지원사업비는 < >로 외서 표기
- 기설계지구 보완결과보고는 사업시행인가결과보고 양식에 당초를 상단에()로 표시하여 두줄로 기재, 비고란에 보완사유를 기재

[별지 3호 서식]

총26-75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시행계획인가 결과보고

<총괄표>

사업명 :

구분	지구명	위 치		면적(ha)			차등화(ha)				사업시행자	공사감독기관	세부설계기관	사업비		
		시군	읍면	계	농조	시군	계	대구획	중구획	소구획				간이식	총	ha당
계																
착공																
미착공																

(단위 : 천원)

재원내역		세 부 내 역							비 고
국고	지방비	공사비	공감비	관리비	기본조사비	세부설계비	확정측량비	기 타	

<작성요령>

- 미착공지구에는 기본조사후 미세부설계지구도 포함, 당해년도 가을착수를 위하여 설계하여 미착공지구만 작성
- 기본조사비중 전년도 기집행비는 ()내서로 표시

< 지구별 >

○○지구 ○○ 경지정리사업 사업비 수지예산서

수 입

과 목	총사업비	1차년도		2차년도		비 고
			%		%	
계						
국 고						
지방(교부)비						

※ 기집행분은 ()내서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집행년도 표시

지 출

과 목	총사업비	1차년도		2차년도		비 고
			%		%	
계						
공사비						
공감비						
관리비						
기본조사비						
세부설계비						
확정측량비						
기 타						

※ 기집행분은 ()내서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집행년도 표시

[별지 4호 서식]

총26-67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입찰결과 보고

사업명 :

지구명	위 치		사업 시행자	사업량	총사업 비	설 계 가 격(A)	예 정 가 격(B)	낙찰가 격(C)	낙찰율(%)	
	시군	읍면							C/A	C/B

입찰 일자	입찰 방법	응찰 회사수	낙찰자			계약사항			공사감 독일자	비고
			소재지	회사명	대표자	계약일자	착공일자	준공일자		

<작성요령>

- 낙찰자 소재지 : 본사 소재지 시군명 기입
- 입찰방법은 일반경쟁(전국), 실적(지역)제한, 지명경쟁, 수의계약으로 구분작성
- 일반경쟁외의 입찰방법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비교란에 기재

[별지 5호 서식]

총26-45

경지정리사업 추진상황 보고

사업명 :

지구 명	위 치		면적	사업 시행 자	총사 업비	계 획			실 행			진도(%)		부진 사유
	시군	읍면				계	가을 착수	봄마 무리	계	가을 착수	봄마 무리	③/②	③/①	
					①	②			③					

<작성요령>

- 부진사유 : 간략하게 작성

[별지 6호 서식]

총26-77

경지정리사업 환지청산금 정수 및 교부상황 보고

사업명 :

시행청	지구명	인원	확정액	정수액	미정수액		교부액	미교부액		자연사유 및 대책
					인원	금액		인원	금액	

[별지 7호 서식]

자체 가26-24

가을착수 경지정리 대상지구 선정보고

순위	code No	지구명	위 치		면 적			진흥지역		차 등 화				
			시군	읍면	계	농조	시군	진흥	비진흥	대구획	중구획	소구획	간이	

감보율	설계금액		조정금액		조정 사유	사업 시행자	경사도	토양처리대상		용수확 보율	용수로			
	총액	ha당	총액	ha당				객복토	습지		총연장	토공	구조물	

(단위 : ha, 천원, Km)

배 수 로			주민 호응도	설계 년도	설계 기관	병행사업				타용도전용 여부	기타특 기사항
총연장	토공	구조물				사업명	지구명	공사 진도	완공 연도		

< 작성요령 >

- 면적계와 진흥지역, 차등화면적이 일치

자체 가26-25

경지정리사업 예정지 조사 보고

사업명 :

우선 순위	코드 NO	지구명	위 치		면 적			진홍지역 여부		추정사업비		사업시행 예정자	기시행 연도
			시군	읍면	계	농조 구역	시군 구역	진홍 지역	진 홍 지역밖	총액	ha당		
					ha			ha		백만원	천원		

조사·설계완료여부			지 역 여 건									용수확보			
신규	기본 조사 완료	세부 설계 완료	경사 도	객 복토	습지	농 로		용·배수로				필지 규모	수원 공	수리 답	%
						폭	포 용 필지수	검용	분리	토공	단면 협소				
			1/000			m		○×	○×			m ²			

주 민 호응도 (%)	병 행 사 업					타 사 업 관련여부 (도시계획등)	비닐하우스, 감보보상 등 각종 보상 제기가능 여부	농 어 촌 발전계획 포함여부	사전환지 대 상
	사업명	진도	완 공 예정일	조사설계등 추진 상황	병행사업부서 와협의여부				

<작성요령>

- 기시행년도 : 경지정리 시행년도를 착수기준으로 기입하되 여러년도에 걸친 경우 연도별로 물량을 기재하고, 도면에도 색채를 구분하여 기재
- 농 로
 - 포용 필지수 : 1개의 경작도로가 포용하는 필지수를 기입
(예) · 필지마다 농로가 붙게 설치된 경우 : 2필지
· 4필지마다 농로가 설치된 경우 : 4필지
- 조사·설계가 완료된 경우는 조사설계완료여부란에 조사설계 연도를 기재
- 경지정리 조사·설계 결과보고 양식에 따라 첨부.

[별지 9호 서식]

자체 가26-26

환지업무 납품 실적 보고

사업명 :

도별	지구명	위 치		사 업 시행자	업 무 량(ha)			납품 일자	비 고
		시군	읍면		승 인	납 품	증 감		

[별지 10호 서식]

자체 가26-27

확정측량 계약 현황 보고

사업명 :

(단위 : ha)

지구명	위 치		시행자	면 적	계약일자	완료예정일	비 고
	시군	읍면					
개 지구							

[별지 11호 서식]

자체 가26-28

확정측량 결과보고

사업명 :

지구명	위 치		시행자	면 적			착수 일자	납 품 예정일	납품 일자	측량비 정산액
	시군	읍면		계 약	확 정	증감				

6 기계화경작로확포장(공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시설관리과(과장 류성곤, 토목 사무관 김종하)입니다.

1. 목 적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내의 주요농로와 이에 연계되는 농산물의 가공 유통시설간의 농로를 확포장하여 기계화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농촌생활환경 개선

2. 추진방향

-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 대형농기계 영농 및 농로 연결이 가능한 평야지역을 들녘단위의 주요농로부터 우선추진
- 생산성 향상등 사업효과가 높은 대구획경지정리 시행지구 주요농로 우선 추진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5조, 제6조 내지 제12조, 제89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천km, 백만원)

구 분	계	'95-'97	'98	'99 (예산안)	2000-2004
사업량	22	3.5	2.1	1.8	14.6
사업비	2,926,200	347,680	212,980	187,902	2,177,638
- 국 고	2,343,800	278,524	170,560	150,451	1,744,265
- 지방비	582,400	69,156	42,420	37,451	433,373

5. '99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설명

- 사업대상 : 농경지내의 농로폭이 4m이상의 주요농로
- 지원대상자 :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시장, 군수 또는 농조장)
- 지원단가 : 104,000천원/Km
- 지원기준 : 국 고 80%, 지방비 20%
 - 재정여건등을 감안하여 국고보조율 차등보조(별표 1)
 - 인하지자체 : 지방교부세법의보통교부세불교부단체
(국고 75%, 지방비 25%)
 - 인상지자체 : 재정자립도가 낮은 하위 20% 해당 지자체
(국고 85%, 지방비 15%)
- 사업내용
 - 포장규모 : 농로폭 4m이상의 농로를 폭 3m기준으로 포장
 - 포장방법 : 비포장 농로를 시멘트콘크리트(이하 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이하 아스팔트) 및 기타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포장공법을 도입하여 포장가능
 - 확 장 : 농로폭이 좁아 농기계 통행에 지장이 있는 농로는 확포장가능
 - 용배수로 개거화 : 농로와 부설된 흙수로의 구조물 공사 병행 추진
 - 용배수로 관수로 : 농로와 부설된 흙수로의 관수로 공사 병행 추진

나. '99사업비(예산안)내용

구 분	사 업 량 (Km)	사 업 비(백만원)		
		계	국 고	지방비
계		187,902	150,451	37,451
○사업비	1,800	187,254	149,803	37,451
○조사설계비	1,800	648	648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 사업시행자
 - 농조구역 : 당해농지개량조합장이 시행
 - 시군구역 : 당해 시장·군수가 시행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농촌개발국 시설관리과(02-504-9408-9)
- 시 도 : 농정국
- 시 군 : 당해시군 건설과
- 농 조 : 당해 농조개발과

다. 자금지원예정자 : 기계화경작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

라. 사업대상지 선정

- 선정기준
 - 사업시행예정자는 예정지조사시 다음사항을 검토하여 기본조사지구를 선정하여 한다
 - 국고지원에 따른 지방비 확보가 가능하고, 사업여건과 주민호응도가 양호한 지구
 - 농업진흥지역으로서 대형농기계·영농이 가능한 대중규모 평야지로서 들녘 단위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지구
 - 대구획경지정리 시행 완료된 지구
 - 농기계 보급 및 수혜마을이 많은 지구
 - 부설된 용배수로가 이미 구조물로 설치되어 있거나 구조물화가 필요없는 사업추진이 용이한 지구
 - 농촌소득사업 등과 연계개발이 가능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지구
 -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의 우수생산조직으로 선정된 자가 신청하는 지구
 - 수리시설개보수사업과 병행 확포장이 동시 가능하여 사업효율이 높은 지구
 - 주변상위도로와의 연계개발이 가능하여 사업효율이 높은 지구
 - 도시·공단 계획등 타법, 타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에 제약요인이 없는 지구
 - 경작로중횡단구조물(교량,암거등)의 개보수 등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지구 단, 지방비 등이 확보되어 중횡단구조물 개보수계획이 있는 경우는 제외.
 - 특히 사업시행 예정자가 농지개량조합장일 경우 지방비 확보 및 타사업 시행 여부등을 해당 시장·군수와 사전협의하여야 함

- 우선순위
 - 농업진흥지역으로서 대중규모(500ha이상) 평야부 들녘단위로 사업시행이 가능한 지구
 - 대구환경지정리정리사업 완료된 지구
 - 부설된 용배수로가 이미 구조물화되어 있거나 구조물화가 필요없는 지구 또는 중형단구조물의 개보수가 필요없는 지구
 - 수리시설개보수등 타 관련사업과 병행지구
 - 주변상위도로와 연계하여 사업효과가 높은 지구
 - 농기계 보급 및 수혜마을이 많은 지구
 - 시군농어촌발전계획에 포함된 지구
- 선정절차
 - 예정지조사 → 기본조사 → 사업비지원 → 사업대상지구 선정 → 세부설계 → 시행계획수립 → 사업시행인가

마. 사업시행

(1) 기본조사

- 사업시행예정자는 기본조사 대상지를 라항의 사업대상지 선정기준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의뢰하여야 함.
- 기본조사기관 : 농어촌진흥공사
- 기본조사 세부지침은 별도로 시달
- 농어촌진흥공사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기본조사

(2) 세부설계

- 농림부의 예산지원에 따라 시·도지사는 기본조사가 완료된 지구를 선정하여 세부설계를 실시
- 사업시행자는 세부설계시 기본조사내용을 파악하여 세부설계에 반영
단, 기본조사 미실시 지구는 기본조사후 세부설계 착수
- 세부설계는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설계 및 시공요령에 의하되 이 요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도로구조령,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규칙(행자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설계기준(농도편) 등을 적용
- 세부설계시 인근 농지의 농로 및 타도로와의 연결부분을 포함하여 도로의 연결성, 편리성을 고려
- 사업시행자가 직접 세부설계 담당

(3) 사업시행계획

- 세부설계가 완료된 지구를 대상으로 하며, 년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들녘별로 실시하되 지구별 완공위주로 시행계획 수립
 - 상위도로, 타관련사업 등 시행계획수립
- 사업시행자는 농로에 부설된 흙수로의 개보수계획이 있을 때에는 병행시행
- 포장대상노선은 중횡단구조물중 노후,파손등으로 개보수가 필요한 구조물은 별도예산을 확보 병행시행하여 관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
- 사업시행계획은 세부설계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립
 - 사업시행자가 농조장일 경우에는 당해시장,군수와 사업계획을 미리 협의하여 지방비 확보

(4) 사업비 집행

- 사업시행자가 세부설계,공사감리,공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농어촌정비법 제97조(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지구의 대상공사비에 해당하는 사업관리 위탁요율범위내에서 실비로 사용
- 사업시행자는 세부설계등에 사용한 실제비용은 사업비와 함께 정산
- 사업시행자가 불가피하게 세부설계 및 공사감리를 직접담당하지 못하고 다른 기관에 위탁시행하고자 할 경우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우리부와 사전협의
 - 세부설계 및 공사감리의 대행비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담당할 경우의 실비용 지급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하는 대행비는 사업시행자가 지방비로 추가부담

(5) 사업시행인가

-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인가시 국고지원에 따른 지방비확보여부 검토
 - 소요단가가 예산단가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사업비 추가확보여부를 검토
 - 타사업과 병행일 경우 병행사업비 확보 여부 검토

(6) 사업시행요령

- 지구별 완공위주로 사업을 시행하되, 대중규모 평야지구는 2-3년차로 사업시행하여 완료
- 지원되는 Km당 예산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배정된 예산상의 사업물량을 시행(차등보조에 따른 물량은 증감 가능)
 - 포장폭은 지원되는 예산범위내에서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3.0m이상)시행하거나, 필요시 교행장소(대피소)등을 설치하여 농기계교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행하되, 기준단가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지방비로 부담

- 본사업과 관련한 시설부지 등의 용지매수보상은 가급적 억제하되, 불가피하게 용지매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단가 범위내에서 실시토록 하고 부족사업비는 지방비 부담.

(7) 공정계획

- 가급적 조기 착수하여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여 영농에 이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영농피해를 주지 않도록 공사기간을 조정 시행

(8) 계획변경

- 사업시행자가 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함
 - 현지여건변동으로 인한 사업시행 대상지구내에서 기본조사가 완료된 노선간의 시행변경. 단, 사업시행지구의 변경은 우리부와 협의
 - 현지여건변동으로 인한 포장공법의 변경
 - 기타 경미한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변경시행후 시도지사에 보고
- 사업계획변경으로 증가되는 사업비는 지방비 등으로 확보
-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우리부에 보고

(9) 기술지원 및 공사감독

- 사업시행자는 세부설계,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농어촌진흥공사에 요청
- 공사감독요령은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계획설계 및 시공요령을 참고
- 공사감독자는 포장시공시 현장에 주재감독하여 부실공사를 방지
- 공사감독자는 사업시행전, 시행중, 시행후 등의 전경사진을 동일장소에서 촬영하여 시행전후 공사상황이 바로 비교될 수 있도록 비치

(10) 준공검사, 사업비검정 및 결산

- 사업시행자는 사업완료한때에는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 사업비검정 및 결산은 별도시달하는 지침에 의함

(11) 기타

- 이 지침 내용과 관계법령이 상충되거나 이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농어촌정비법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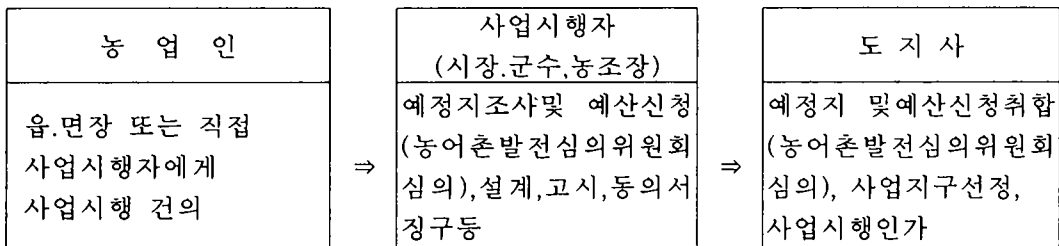
- 사업시행자는 기본조사 및 사업시행현황을 별도로 정리하여 관리
- 사업시행자는 완공한 후 선량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안내판을 경작로 입구 등 주민들이 잘보이는 곳에 설치하여 주민스스로 포장노면을 선량하게 관리
- 도로포장파손 등으로 유지관리비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재원으로 확보
- 사업시행자는 덤프트럭 등 중차량 통행으로 포장균열 등 파손이 우려될 경우 통행을 제한 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전후의 전경사진을 동일한 장소에서 촬영하여 보관

나. 보고사항

서식번호	행 정 사 항	보고기일
1	기본조사대상지 보고	9월말까지
2	예산배정 결과보고	배정완료후
3	입찰상황 보고	전체 입찰완료후
4	분기별 추진상황 보고	익월 10일까지
5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준공결과 보고	익년 1월말까지

6. 2000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안내

-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사업시행자(시장.군수, 농조장)에게 사업신청
- 나. 신청자격 :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 다. 신청절차 : 농업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신청
- 라. 선정절차



[별표 1]

□ 차등보조율 적용기준 및 지자체

구 분	보 조 율(%)		해당 지자체
	국 고	지방비	
○ 기준보조율	80	20	인하, 인상 지자체 이외의 시·군
○ 차등보조율			
- 국 고 보 조 인하 지자체 (11개 시)	75	25	광역시 : 부산, 울산 (2) 경 기 :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안산, 고양, 과천, 군포, 용인 (9)
- 국 고 보 조 인상 지자체 (33개시·군)	85	15	강원 : 정선, 영월 (2) 충북 : 보은, (1) 충남 : 청양 (1) 전북 : 고창, 임실, 진안, 순창, 장수 (5) 전남 : 신안, 장흥, 보성, 강진, 함평, 완도, 고흥, 진도 (8) 경북 : 영양, 봉화, 영덕, 예천, 청송, 울릉, 문경, 군위, 의성, 청도, 상주 (11) 경남 : 산청, 함양, 의령, 남해, 거창 (5)

자체 가26-20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기본조사 대상지 보고

(단위 : ha, Km)

구분	우선 순위	들녘 명	지구 명	위 치		면적	농로 길이	포장대상조사계획			사업 시행자	비고
				시군	읍면			계	○까지완료	○대상		
계												

<작성요령>

- 시군별로 작성하되 농조구역은 해당시군에 포함
- 구 분 : 우선순위에 따라 대중규모, 대구획경지정리, 연계 및 병행, 시험, 기타지구로 구분하여 각항목별 소계로 작성
- 우선순위 : 구분의 각항목별로 우선순위 부여(동일조건일때는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사업량 조정계획임)
- 들 녘 명 : 해당지역의 대표적인 들녘명으로 계속해서 사용가능한 들녘명
- 지 구 명 : 경지정리사업시행시 지구명
- 면 적 : 지구별로 작성하되 지구별 합계면적을 들녘면적으로 함
- 농로길이 : 해당지구 및 들녘의 간지선, 지거를 합한 총농로길이
- 기본조사대상 : 농로길이중 주요간지선으로 포장대상 길이(평균 1ha당 30m 정도)
- 비 고 : 대구획경지정리와 연계 및 병행지구는 해당사업 지구명

[별지 제2호 서식]

자체 가26-22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예산배정 결과보고

(단위 : Km, 천원)

지구명	위치		면적 (ha)	사업시행자	총사업비				○○까지				○○계획				○○이후				관련사업
	시군	읍면			물량	계	국고	지방비	물량	계	국고	지방비	물량	계	국고	지방비	물량	계	국고	지방비	

<작성서식>

- 시군별, 지구별로 작성(농조장일 경우 해당시군에 포함)
- 본사업비로 배정한 사업비외 추가지방비와 농조수리시설개보수 등 병행 사업비는 ()로 외서로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총26-67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입찰상황 보고

지구명	위치		사업시행자	사업량	총사업비	설계가격(A)	예정가격(B)	낙찰가격(C)	낙찰율 (%)		입찰일자	입찰방법	응찰회사수	낙찰자			계약사항			공사감독자	비고		
	시군	읍면							C/A	C/B				소재지	회사명	대표자	계약일자	착공일자	준공일자				

<작성요령>

- 지구별로 작성(농조장일 경우 해당시군에 포함)
- 단, 노선별로 분리하여 입찰한 지구는 노선별로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심사제외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추진상황 보고

(단위 : Km, 천원)

지구명	위치		사업시행자	○년계획		○월계획		○월실적		진도(%)		부진사유	비고
	시군	읍면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C/B	C/A		

<작성요령>

- 시군별로 작성(농조장일 경우 해당시군에 포함)
- 진도는 사업량 기준
- 부진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

7	배수개선(공공)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시설관리과(과장 류성곤, 토목 사무관 이성홍)입니다.

1. 목 적

- 매년 홍수시 침수피해가 되풀이 되는 지역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를 방지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정영농 도모
- 수렁논 또는 저습답의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영농작업환경 및 작물재배 토양환경을 개선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어촌자원조사를 바탕으로 지역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함.
- 시·군단위 농어촌발전계획에 포함된 지역으로서 농업진흥지역내의 상습침수 지역을 우선 개발함.
- 수계별로 홍수조절댐 또는 저수지, 하구둑이 설치되고 하천제방 등 방재 시설이 기본적으로 정비된 지역을 우선 개발함.
- 수해 피해가 심하거나 빈번한 지역을 우선 개발함.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1조내지 제12조, 제16조 내지 제18조, 제90조, 제94조, 부칙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천ha, 백만원)

구 분	'92-'97	'98	'99(예산안)	2000	2001-2004
사업량	24	4	6		
사업비계	496,711	179,500	137,500		
- 보 조	496,711	179,500	137,500		
- 지 방 비	-	-	-		
- 자 부 담	-	-	-		

* 주) 42조원 구조개선사업 위주로 작성

5. '99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1) 지표배수개선 : 배수장, 배수로, 배수문 등 홍수배제시설을 설치하여 홍수시 농작물 피해 최소화
- (2) 지하배수개선 : 수렁논 또는 저습답에 지하배수 암거나 흡수관을 설치하여 지하수위를 낮추어 작물의 생육에 알맞게 토양수분을 조절
- (3) 지원대상
 - 농업진흥지역내의 예상되는 수해상습 농경지
 - 농어촌발전계획에 반영된 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도시계획구역은 제외함
- (4) 지원조건 : 국고 100%(농림부장관이 선정한 사업에 한함)

나. '99사업비(예산안)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사업비계	예산안(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기타		
계		137,500	137,500	137,500	-	-	-
사 업 비	88지구	136,310	136,310	136,310	-	-	-
기본조사비	5,000ha	1,190	1,190	1,190	-	-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개발국 시설관리과(02-504-9408-9)
- 시·도 : 농정국 기반조성과(농지개량과, 농업기반과, 농산지원과, 농업지원과, 농정과)
- 시·군 : 건설과 농지계(기반조성계)
- 농지개량조합 : 당해지역 농지개량조합 관리과(개발과, 사업과)

다.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구청장, 농지개량조합장

라. 사업추진절차

사업추진절차는 사업시행자의 사업신청, 도지사의 예정지조사, 기본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의 수립, 사업시행인가, 공사계약, 착공 및 완공의 순으로 하며, 사업추진체계도는 붙임(표 1)과 같음

<사업계획수립·시행>

가. 사업대상지구 선정

(1) 선정기준

- 사업대상지는 시군단위 농어촌발전계획에 포함된 농업진흥지역을 대상으로 함. 다만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제주도의 농촌지역으로 지정되어 상당기간 영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등 특별한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밖을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음.
- 수해면적이 50 ha 미만인 경우는 가능한 시·도에서 지방비로 부담하거나 차부담으로 시행함. 다만, 극심한 수해피해 지역 등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국고 지원 가능함.

(2) 우선순위.

- 시군단위 농어촌발전계획 및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상습침수지역
- 주민호응도, 타법·타사업저촉등 사업시행에 제약사항이 없는 지구
- 수계별로 홍수조절댐 또는 저수지, 하구둑이 설치되고 하천제방 등 방재시설이 기본적으로 정비된 지역
- 수해 피해가 심하거나 빈번한 지역

나. 사업시행예정자의 사업예정지 신청

- (1) 사업시행 예정자(시장·군수, 농지개발조합장)는 예정지에 대한 사업시행을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경우에는 예정지에 대한 답사보고서를 제출함. 이때, 시군단위 농어촌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수계의 하천상태와 정비계획, 농경지의 수해상황(과거 10년간) 등을 기술함.

다. 예정지 조사

- (1)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예정자가 사업시행을 신청하거나 수해상습지 해소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정지 조사를 실시함.
- (2) 시·도지사가 예정지를 조사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하는 사항과 시군단위 농어촌발전계획의 수립 여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면적과 하천의 상황 및 정비계획 등 수계의 홍수대책을 조사하고, 수해자들의 동의 여부 등을 예정지조사서에 기술하여야 함.
- (3) 예정지조사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있으면 수해면적이 50ha이상이거나 경지정리 등 다른 사업과 병행하는 경우에는 예정지조사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에 기본조사를 신청함.

- (4) 수혜면적이 50ha 미만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함. 기본계획 수립에 전문기술을 필요로 할 때는 기술용역으로 기본조사를 실시한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정지 조사서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이때 소요되는 기술용역 비용은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비용으로 함.

라. 기본조사 실시와 기본계획수립

- (1) 수혜면적 50ha 이상의 기본조사는 농어촌정비법 및 동법시행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예산형편,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실시함.
- (2) 기본조사자는 타법·타사업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확인하여 사업시행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기본조사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지사 및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3) 기본조사자가 실시하는 기본조사는 시·도지사의 예정지조사서를 참고하여 구역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하천개수, 경지정리, 수해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인접지역을 함께 1개지구로 구성하여 조사할 수 있음
- (4) 기본조사자는 당해 농어촌지역에 대한 자원조사가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마을의 분포와 인구 변동의 추이, 산업별 배치사항및 경제활동 상황, 농지의 분포상태와 이용, 농지의 경사도, 토양 및 배수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여야 함.
- (5) 기본조사자는 현지 하천관리기관 등 행정기관과 농지개량조합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함.
- (6) 경지정리, 정주생활권개발사업과 함께 실시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농업경영의 합리화에 기여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사를 병행할 수 있음.
- (7) 기본조사자는 지구별 수혜면적이 50ha미만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조사를 중단하고 계속조사여부를 해당 시·도지사 및 농림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현지의 여건이 시·도지사가 보고한 예정지조사서와 상이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대안을 마련하여 농림부와 협의를 하여야 함.

(8) 기본조사자가 현지조사를 완료하고 기본 계획서(안)를 작성할 때에는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가) 하천의 상태와 하천관리청의 하천정비계획

나) 배수장 및 배수갑문의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설계기준 강우의 시간별 유출량과 홍수위에 대한 조건표와 운용지침

다) 배수개선사업으로 인하여 하천의 상·하류에 미치는 영향과 하천개수정비대책

라) 수해지역의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업진흥지역 편입여부와 미편입지역에 대한 해당 시·도지사 및 사업시행예정자의 조치계획

(9) 기본조사자가 기본계획서(안)를 제출하면 농림부장관은 계획내용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함.

기본계획수립 확정시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농림부장관의 지시에 의거 기본조사자는 이를 보완하여야 함.

(10) 기본조사비는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하는 요율에 의하여 산정함.

(11) 농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기본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송부함.

마.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 수립

(1) 농림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지구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시급성 등에 따라 세부설계지구를 선정하고 시·도지사로 하여금 세부설계를 실시하도록 하며,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발조합연합회,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 받은 자 중에서 세부설계자를 선정함.

(2) 세부설계 실시자는 사업시행 예정지구에 대한 측량 설계 실시계획을 제출하고, 지체없이 조사반을 편성하여 측량설계를 실시하여야 함.

(3) 세부설계자는 타법·타사업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 사업시행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기본조사 또는 세부설계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지사 및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4) 세부설계실시자는 수립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측량설계를 실시하고 실시 과정에서 사업계획 수혜면적의 변경 또는 기본계획의 주요한 사항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지사 및 농림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함.

- (5) 세부설계에는 공사가 완공된 후 배수장 및 배수갑문의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설계기준 및 평년빈도강우에 대한 시간별 추정홍수유하량과 홍수위에 대한 조건표와 운용지침을 제시하여야 함.
- (6) 세부설계실시자는 사업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조사설계에 철저히 기하여야 하며, 개산 설계는 허용되지 않음.
- (7) 시·도지사가 세부설계 성과품을 검토하여 세부설계비를 산정할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에게 주요 설계내용과 사업비 내역을 보고함.
이때 시·도지사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제3조에 의거 계획변경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세부설계 성과품의 검수를 실시하여야 하고, 설계내용이 미흡하면 세부설계실시자에게 설계를 보완하도록 함.
- (8) 세부설계가 완료되면 시·도지사는 경제성과 타당성 또는 시급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의 개요와 세부설계비 산출내역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함.

바.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 (1) 농림부장관이 신규사업 시행지구를 선정 통보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 고시내용과 동의서를 첨부하고, 준공 후 시설의 인수·관리에정자를 사전에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 시·도지사가 사업시행인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인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2) 시행인가보고시에는 농림부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내역과 검토내역을 첨부하여야 하며, 공사비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시행계획 변경내역을 첨부하여야 함.
- (3) 지시조건의 보완은 조기에 이행토록 하여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함.
- (4)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용지매수를 하고, 공사발주를 공고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가액, 계약방식, 예정가액, 입찰가액, 낙찰율, 도급회사와 착공예정일을 농림부장관에게 FAX(02-507-3964)로 상황 보고하여야 함.

사. 공정 계획

- (1) 사업시행자가 공정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배수장, 배수갑문 등의 공사 시기를 신중히 검토하여 효과를 가능한 조기에 거양할 수 있도록 하고 배수로 등 간단한 공작물이나 잔사업량이 경미한 공정 등은 영농기 이전에 완공하도록 하며,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2) 사업시행자는 하절기 우기시 기간중에는 수해를 대비하여 수방자재(마대, 말뚝, 중장비 등)를 확보하고,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현장 관리를 하여야 함.
- (3) 사업시행자는 당해년도예산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을 별첨 서식에 따라 월별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당해년도 2월말까지 시·도를 거쳐 농림부에 보고 하여야 하며, 예산변경 또는 계획보완으로 공정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아. 시행계획의 변경

- (1) 기 착공하여 시행중인 사업에 대한 물가변동에 의한 단가변경은 그 사유가 발생한 후 3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시·도지사는 승인결과를 보고토록하며 (단가변경은 가급적 계획변경에 우선하여 별도 처리토록 함.), 물량변경에 의한 계획변경은 가능한 억제하도록 함. 다만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3조 제1,2호에서 규정한 사항과 같은 조 제3조규정으로 정하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배수장, 배수갑문 규모·구조 변경과 주요 배수로 노선변경, 제수문·취입보 등 유수장애 시설물의 신설 및 위치 변경

- (2) 시·도지사가 농림부장관의 계획변경승인을 받고자 할 때는 다음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함.

① 준공예정지구인 경우에는 재원확보계획 등 향후조치계획

② 사업계획 위치 평면도 (1/25,000~1/50,000, 1/3,000~1/6,000)

③ 변경되는 공종의 주요설계도면 (평면도, 표준도, 주요구조도)

(설계도면 작성요령 : 보완전 청사진 도면에 보완사항을 붉은색 선으로 삽입하여 비교가 쉽도록 하고, 복잡한 도면은 변경 전·후 도면을 함께 첨부토록 할 것.)

④ 보고 서식 (별지 제4-1호~ 제4-11호 서식)

⑤ 기타 주요사항

- (3) 시·도지사가 농림부장관의 권한 위임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결과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상기 제(2)항을 준용하여 보고하여야 함.

자. 용지매수 및 보상

- (1)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과 농어촌정비법 보상규정에 의함.
- (2) 농작물 보상 등은 공사기간과 용지매수 등의 시기를 조정하여 원칙적으로 피하도록 함.

차. 공사감리

- (1) 공사감리는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 시행함.
- (2)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배치상황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배치상황을 검토한 후 시·도지사에게 결과보고 하여야 함.
- (3)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업무를 장기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현장을 일시적으로 떠나거나 교체시에는 사업시행자와 사전협의 하여야 함.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이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공사감리자는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교체하여야 함.
- (4) 공사감리원은 착공전에 설계도면과 현지를 대조하여 설계의 미비 여부 및 공정 순위를 파악하고 시공중에는 철저한 공사감리 뿐만 아니라 굴착, 집토, 골재의 야적 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수혜민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5)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전담자로 지정하고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공사를 촉진하고, 시공상황을 파악하며 수시 현장확인(사진촬영 포함), 공정계획의 수립 및 업무일지를 기록하게 하여야 함.

(6)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감리위탁계약서에 의하여 함.

카. 사업비 지원

(1) 예산의 지원

가) 사업시행지구의 사업기간을 가능한한 확정 관리토록 하고, 사업지구별로 사업기간과 년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조기 완공위주로 사업비를 지원함.

나) 준공지구를 우선하여 지원함.

다) 배수장시설 등 핵심공종은 수해 대비 공정을 감안하여 지원함.

라)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세부설계와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시·도지사 책임하에 지방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2) 자금의 운용관리

가) 사업시행자가 국고보조 사업비를 받았을 때는 세부설계비와 용지매수 보상비를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자는 사업비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 잡수입 등 수익은 당해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조치하여 재투자하고, 재투자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고에 반납함.

다) 시·도지사는 사업지구의 국고 지원 자금의 운용관리상황을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야 함.

(3) 사업비 검정 및 결산

시·도지사는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비를 검정 및 결산하고 결산 결과는 익년도 3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함.

타. 기타사항

배수개선사업과 연계되는 미정비 하천이 있는 경우에는 하천법에 의한 하천정비개수사업(직할·지방·준용하천)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연계성을 검토함.

파. 사업준공

(1)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완료한때에는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어야 함),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공사감리자가 작성), 예비검사 결과, 매수한 토지 등의 현황을 포함하여 사업준공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함.

- (2) 시·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 준공 정산을 하며, 시설물 인수 관리자에게 시설을 인수토록 함.
- (3) 준공지구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동일 시도에서 사업시행중인 기존 계속 지구에 배정된 예산을 조정하여 충당하고, 예산이 남는 경우에는 타지구 사업비로 예산배정을 조정하여 예산불용이 없도록 함.

하. 배수개선 및 경지정리 병행사업 추진

(1) 예정지 조사

시·도지사는 예정지조사 결과보고시 배수개선사업과 경지정리사업을 병행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행지구임을 명기하여 각 사업별로 기본조사를 요청함.

(2) 기본 조사

수혜면적 50ha 이상의 기본조사는 병행지구임을 감안하여 실시하되, 농어촌 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서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함.

(3) 세부 설계

- 가) 병행지구 세부설계실시자는 배수개선부분과 경지정리부분을 총괄하여 설계하되, 배수개선사업계획과 경지정리사업계획을 구분하여 작성함.
- 나) 병행하는 배수개선사업계획은 하류부 배수장과 연결되는 배수간선으로 하되, 배수로에서 발생하는 토량은 경지정리사업에서 유용하도록 계획함.
- 다) 복토계획은 경지정리사업으로 최대한 계획하고, 배수로(인수로)부지는 감보처리토록 계획함.
- 라) 병행지구 세부설계실시자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설계를 실시하고, 설계과정에서 사업계획 수혜면적의 변경 또는 기본계획의 주요한 사항 변경 등이 불가피할 때는 시·도지사 및 농림부장관(시설관리과)에게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함.
- 마) 공정계획수립
병행지구 하류에 위치한 배수장, 배수문 등의 시설물이 홍수배제에 지장 없이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경지정리공사를 실시토록함.

(4) 예산 지원

- 가) 세부설계비는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산정하되, 사업비는 해당 사업별로 지원 및 정산함.
- 나) 배수개선사업계획서 및 정산서 : 경지정리사업 해당 물량, 공사비 및 사업비 등을 별도로 산출하여 ()내서로 표시함.

다) 경지정리사업계획서 및 정산서 : 배수개선사업계획상의 경지정리사업비에 의거한 사업비 수지예산서, 공사비 내역 등에 []외서로 표시함.

(5) 사업추진절차

사업시행자의 사업신청, 도지사의 예정지조사, 기본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의 수립, 사업시행인가, 공사계약, 착공 및 완공의 순으로 하며, 사업추진체계도는 붙임(표 2)과 같음

(6) 기 타

기타사항은 배수개선사업, 경지정리사업 통합지침서에 따름.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농림사업평가실시요령』에 의거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전산입력 관리하여야 함.
- 전산입력 절차 및 요령은 『농림사업평가실시요령』에 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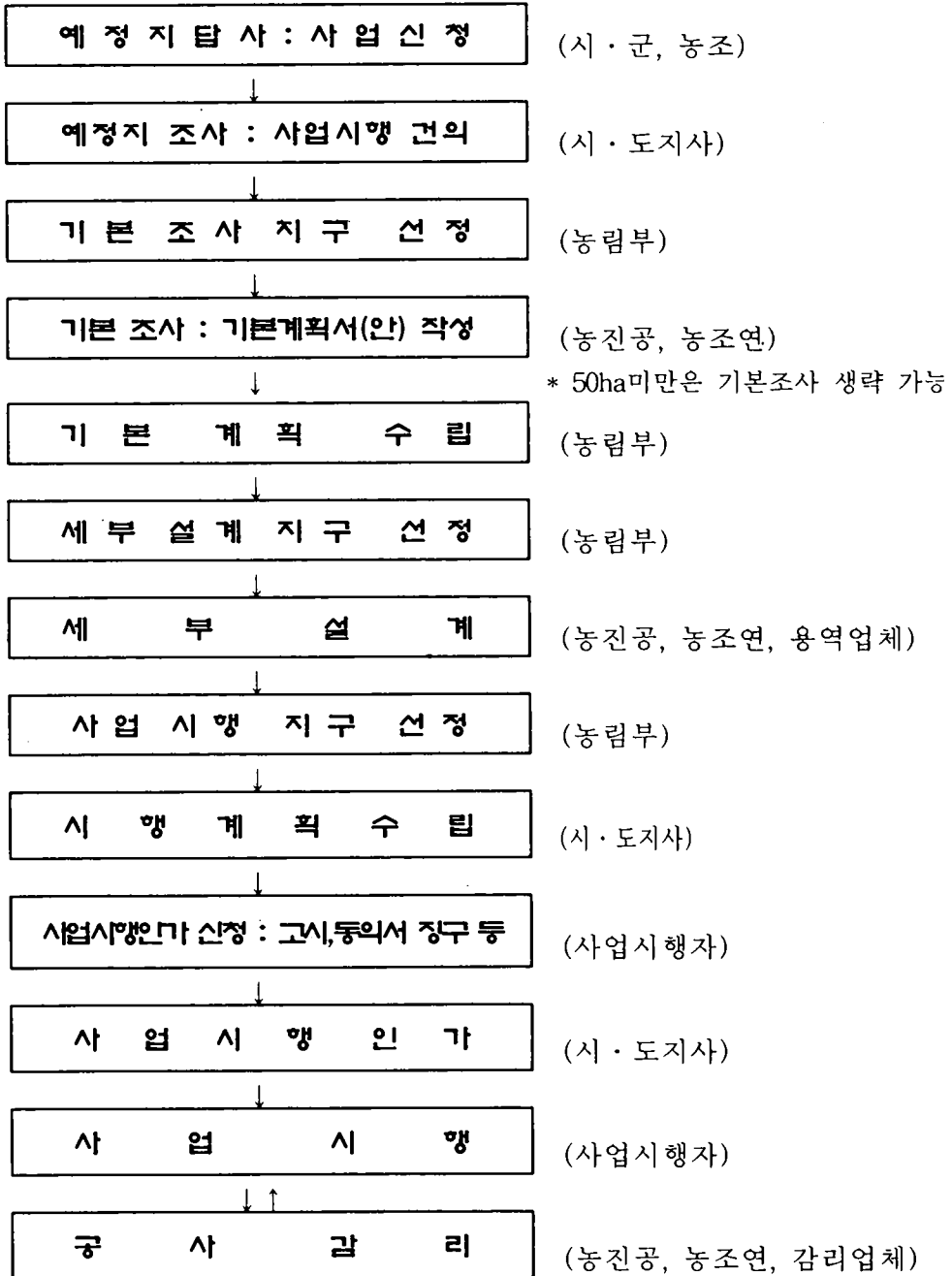
나. 보고 및 기타

- (1) 사업시행인가 및 공정계획보고(시도 총괄표 포함) : 즉시 보고 (별지 제1호 서식)
- (2) 사업진도보고 : 분기말 현재를 익월 10일까지 보고 (별지 제2호 서식)
- (3) 준공처리결과보고 : 즉시 보고 (별지 제3호 서식)
- (4) 시행계획변경 승인 신청·결과보고 : 즉시 보고 (별지 제4호 서식)

< 표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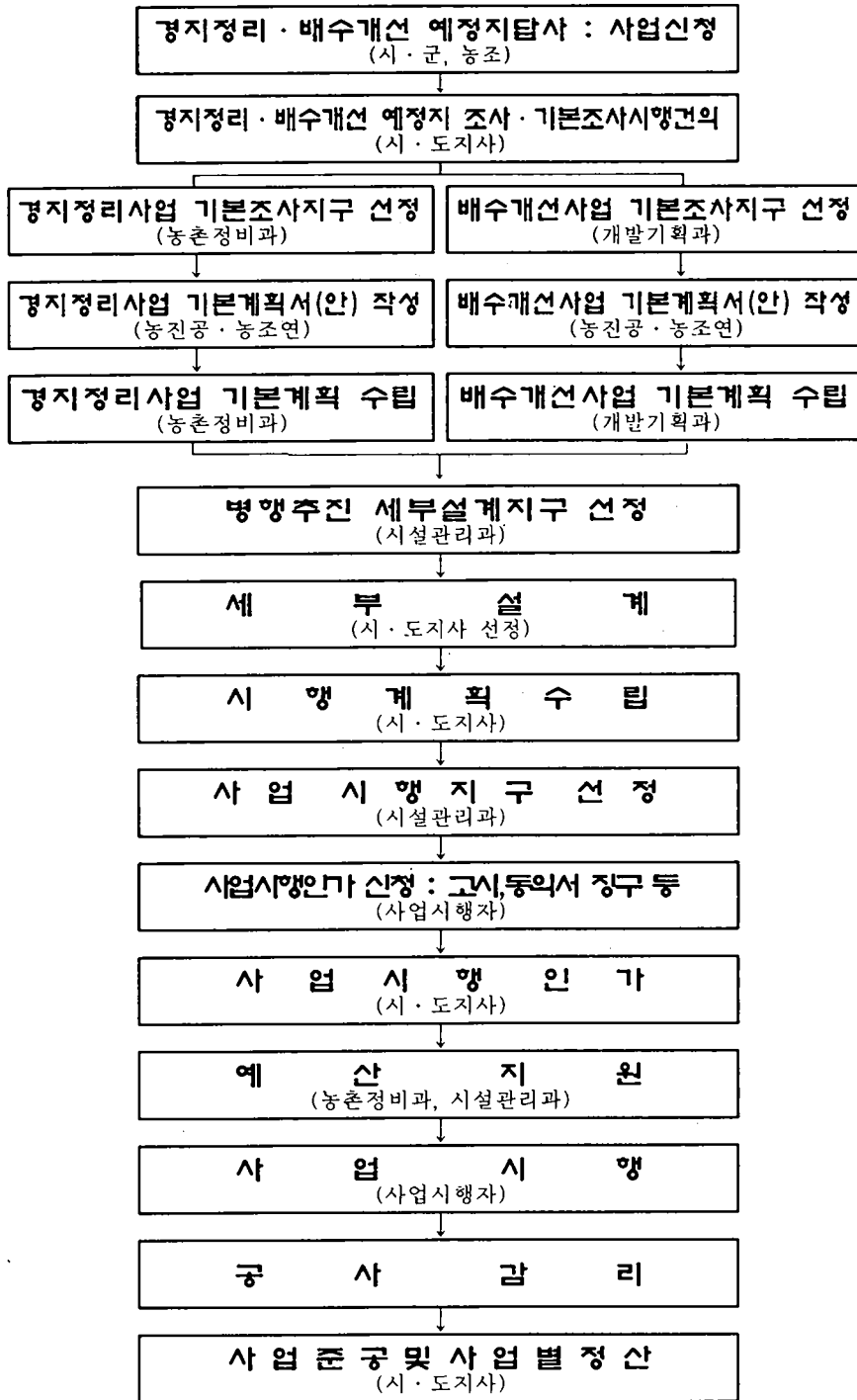
배수개선사업 추진체계도

(근거 : 농어촌정비법)



< 표 2 >

배수개선 및 경지정리 병행사업 추진체계도



[별지 제1호 서식]

총26-68

배수개선사업사업시행인가 및 공정계획보고

확인자 : (인), 사업시행자 : (인), 시공업자 : (인), 작성자 : (인)

○ 위 치 : 도 군 면

○ 사업시행자 :

○ 지 구 명 : (내지구명 :), 면 적 : ha,

○ ha당 증수량 : M/T, 당초승인 : 착공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 종 승인액	년까지 정 산 액	년이후 잔사업비	년도 예 산 액	공정(%)
과 목	공 종 별					
합	계					
공	사 비					
- 순공사비	소 계					
	배수장부					
	- 평야수로					
	- 배수로					
	- 배수로					
- 자재대	소 계					
	-					
	-					
용지매수및보상비						
기	타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지출기타						
- 예 비 비						

월 별 계 획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1	2	3	계	%	4	5	6	계	%	7	8	9	계	%	10	11	12	계	%

[별지 제2호 서식]

총26-46

배수개선사업 진도보고

도

(단위 : 백만원, 년 월 일 현재)

지구명	위 치		사 업 시행자	구분	면적 (ha)	총사업비	기정산액	잔사업비	당해연도예 산
	시·군	읍·면							
계									
실행액	진도 (%)		착공이래 누계실형	누계진도 (%)	부진사유				
	계 획	실 적							
계									

- 주 : 1) 매분기말 현재를 익월 10일까지 농림수산부에 보고할 것
 2) 추가예산내시사업이 있을 때에는 이를 추가한다.
 3) 구분을 준공 계속으로 구분
 4) 진도(%) : 계획은 당분기까지, 실적은 예산대비

배수개선사업 준공처리 결과보고

1. 사업지구현황

- 지구명 :
 - 위치 :
 - 면적 : 구역면적 : ha, 수혜면적 : ha
 - 총사업비 : 천원
 - 사업시행자 :
 - 주요시설 및 규모
 - 배수장 : m x m x 대 (Q = m³/sec), 유역면적 ha
 m x m x 대 (Q = m³/sec), 유역면적 ha
 - 배수로 : m (최대단면 : b= , B= ,h= ,H=)
 - 승수로 : m (최대단면 : b= , B= ,h= ,H=)
 - 배수문 : m x m x 량, SILL m, 유역면적 ha,
 m x m x 량, SILL m, 유역면적 ha
 - 사업시행인가일 :
 - 착공 년월일 :
 - 준공년월일 :
 - 설계기관 :
 - 공사감리 :
 - 시공업체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명)
 - 사업효과
 - 증수량 : M/T, - I.R.R : - B/C :
- ※ 준공지구 도면(1/25,000) 및 수로조직표를 첨부할 것.

[별지 제3-2호 서식]

2. 년도별 검정내역

가. 수 입

(단위 : 천원)

구 분	인가액	준 공 검정액	증감	연도별 검정내역					비고
계									
국 지 기	고 비 타								

나. 지 출

(단위 : 천원)

구 분	인가액	준 공 검정액	증감	연도별 검정내역					비고
합 계									
공 사 비 - 순공사비 - 자 재 대 용지매수 및 보 상 비 기 타 -측량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잡지출기타 -예 비 비									

3. 준공처리의견

[별지 제4-1호 서식]

총26-70

배수개선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신청 · 결과보고

심 사 서				
1. 지 구 명 :				
2. 위 치 :				
3. 면 적 : 구역면적 : ha, 수혜면적 : ha				
3. 사업시행자 :				
4. 주요공사 : 배수장 : 개소, 배수문 : mx mx 런, 배수로 : km, 승수로 : km				
6. 사업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까지	계획	이후계획	비고
7. 공사개요				
총계획	까지	계획	이후계획	비고
8. 공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별지 제4-2호 서식]

9. 보완내용		
구 분	보 완 내 용	보완내용 및 심사의견
< 주의사항 > 승·배수로 변경시는 계획 변경 전 후의 수로조직표와 표준단면도를 첨 부 또는 제시		

[별지 제4-3호 서식]

10. 지시조건 11. 심사자 종합의견	년 월 일 심사자 : 인
------------------------------	------------------

[별지 제4-4호 서식]

사업비 수지예산서

○ 수 입

(단위 : 천원)

과 목	기승인액	금 회 승인액	증(△)감	년 도 별 내 역			비 고
				년까지	년계획	년이후	
계							
국 고							
지 방 비							

○ 지 출

(단위 : 천원)

과 목	기승인액	금 회 승인액	증(△)감	년 도 별 내 역			비 고
				년까지	년계획	년이후	
계							
공 사 비 - 순 공 사 비 · 배 수 장 · 평 야 부 · 부 대 공 사 - 자 재 대							
용지매수및보상비							
기 타							
- 측량 설계 비							
- 공사 감리 비							
- 사업 관리 비							
- 잡지출 · 기타							
- 예 비 비							

[별지 제4-5호 서식]

연도별 공사비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기 승인액	금 회 승인액	년까지	년계획	년이후	비 고
공사명	공종별						

- ※ 1. 본 조서는 순공사비, 자재대를 대상으로 작성할 것
- 2. 순공사비는 공종별 제잡비를 포함하여 작성할 것

[별지 제4-6호 서식]

용지매수 및 보상비 내역													(면적 : m', 금액 : 천원)		
구분	공종	지목	기승인액		금회승인액		증(△)감		년 도 별						비고 (증감사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년까지 정산액		년계획		년이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 ※ 증감사유를 반드시 작성할 것

[별지 제4-7호 서식]

계획보완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기 승인액	금 회 승인액	정 산 내 역			보완전 잔공사비	보완후증감액				비고
공사명	공종별			년까지	년	계		단가 인상	단가 개정	수량 이동	계	
합계												

- ※ 1. 본 조서는 순공사비, 자재대에 대하여 작성할 것
- 2. 순공사비는 공종별 제잡비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별지 제4-8호 서식]

단가개정에 따른 공사비 이동조서								
								(단위 : 천원)
공종명	공사 물량명	단위	단 가			물량	공사비	단가개정사유
			변경전	변경후	증(△)감			
합 계								

- ※ 단가개정사유를 반드시 작성할 것

[별지 제4-9호 서식]

계획보완에 따른 공사비 이동조서								
(단위 : 천원)								
공종명	공사 물량명	단위	물 량			단가	공사비	공사물량이동사유
			변경전	변경후	증(△)감			
합 계								

- ※ 1. 공사물량 증감사유를 반드시 작성할 것
- 2. 본 조서는 자재대도 포함하여 작성할 것
- 3. 공사물량명에는 변동이 있는 것에 한한다.

[별지 제4-10호 서식]

설 계 자 의 견			
당초 설계자 의견		금 회 설 계 자 의 견	
당초설계자 : 소속		성명	인
금회설계자 : 소속		성명	인

※ 주요계획의 변경사항만 작성

[별지 제4-11호 서식]

농림부장관 지시사항 이행 검토 내역			
지 시 사 항		이행여부 및 검토의견	
		확 인 자 : 소속	성명 인
		검 토 자 : 소속	성명 인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시설관리과(과장 류성곤, 토목 사무관 조홍제)입니다.

1. 목 적

- 저수지, 양·배수장 등 수리시설과 국가관리방조제중 시설을 설치한지 오래 되어 기능이 저하되었거나 집중호우, 태풍, 해일 등으로 재해우려가 있는 취약시설을 개보수하여 재해예방과 시설의 기능 복원
- 저수지내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여 오염물질제거 및 부족한 저수량확보

2. 시책 및 추진방향

- 저수지, 양·배수장, 방조제 등 균열, 파손된 노후 및 재해취약시설 개보수 - 수원공은 우선하여 개보수
- 양·배수장이 노후되고 작동이 잘안되는 시설은 개보수
- 용수로 등 흡수로는 구조물(수로구조물)
- 저수지내 토사가 많이 퇴적되어 물이 부족한 저수지는 준설(저수지준설사업)
- 해일 등에 취약한 방조제는 단면 보강
- 노후 및 작동이 잘안되는 배수갑문은 개보수

3. 근거 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1조 내지 제12조, 제16조 내지 제18조, 제89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준공지구수, 백만원)

사업명	구분	'92~'96	'97	'98	'99	2000이후
농조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량	367	144	109(400)	95(400)	631
	사업비계	257,375	159,500	219,777	189,291	1,193,300
	- 보조 - 지방비등	257,375 -	159,500 -	219,777 -	189,291 -	1,193,300 -
농조 저수지 준설	사업량	923	96	81	80	530
	사업비계	65,341	30,395	8,000	8,000	49,900
	- 보조 - 지방비등	65,341 -	30,395 -	8,000 -	8,000 -	49,900 -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량	18	9	9(40)	8(37)	52
	사업비계	74,078	19,818	26,142	24,736	213,858
	- 보조 - 지방비등	74,078 -	19,818 -	26,142 -	24,736 -	213,858 -

* () 시행지구수

5. '99년도 사업시행요령

가. 농조수리시설개보수사업

< 사업개요 >

(1) 사업내용

- 저수지, 양·배수장, 취입보 등 노후 및 재해취약시설 개보수
- 흙수로 구조물
- 물 관리시설 현대화

(2) 지원대상 : 농지개량조합이 관리하는 수리시설

(3) 지원조건 : 국고 100% 보조

(4) 사업시행자 : 농지개량조합

(5) '99사업비(예산안) 내용

사업량 (지구)	사 업 비 (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사업비계	예산안(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계		
		계	보조	융자			
400	189,291	189,291	189,291	-	-	-	

< 추진체계 >

(1) 사업주관 및 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개발국 시설관리과 (02-500-2668~9)
- 시·도 : 농정국 기반조성과, 농지개량과, 농업기반과, 농산지원과, 농정과
* 시도에 따라 국, 과명칭이 다름
- 농지개량조합 : 당해 지역 농지개량조합 관리과, 개발과, 사업과
* 농지개량조합에 따라 담당부서가 다름

(2) 사업 추진절차

- 안전점검(시설관리자) → 안전진단(농진공) → 기본계획수립(시도지사) → 세부설계 실시 (사업시행자) → 시행계획의 수립(시도지사) → 예산지원 (농림부) → 사업시행인가(시도지사) → 발주 및 공사시행(사업시행자) → 준공 (사업시행자)
- 사업추진체계도는 붙임 표1과 같음.

< 사업추진 >

(1) 사업대상지구 선정

○ 선정기준

- 농지개량조합장이 관리하고 농업진흥지역 내를 급수하는 수리시설 중 재해위험시설 또는 개보수사업이 필요한 시설을 대상으로 함.
다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상당기간 영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급수를 담당하고 있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시설도 대상이 됨.
- 대구광역시정리, 배수개선, 지표수보강개발 등 타사업계획이 수립되었거나 타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사업효과가 높은 지역은 개보수사업대상에서 제외

○ 우선순위

- 안전진단 결과 재해위험 저수지
- 재해에 취약한 요소가 있는 저수지, 양·배수장
- 시설의 운용관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시설
- 생활오수 등으로 수질오염 용수로

(2) 사업시행예정자의 사업 건의

- 농지개량조합장은 농업기반시설 관리규정에 따른 1종 및 2종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에 의거 당해시설의 개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다만, 3종시설은 시급히 개보수를 요할 경우 개보수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농지개량조합장이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을 건의할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면적과 안전점검결과 보고서나 안전진단 보고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3) 예정지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가) 예정지 조사

- 시·도지사는 농지개량조합장이 사업시행 건의서를 제출하거나 재해 위험 해소, 수자원 확보, 시설의 운용관리체계의 획기적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선정 기준과 우선순위에 따라 예정지 조사를 실시함.
- 시·도지사가 예정지를 조사할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구현황, 공종별 사업비, 사업효과, 위치도, 사업타당성 판단에 필요한 재정부담, 농업구조개선에 기여, 재해위험의 시급성과 해소방안 및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면적 등을 포함하여야 함.
- 시·도지사가 예정지조사시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가능한 기술용역으로 실시하며, 이때 소요되는 기술용역 비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함.
 -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1종시설을 개수하는 경우
 - 저수지 제당을 덧쌓기 하면서 물넘이 길이를 변경하는 경우
 - 저수지 물넘이 형식을 측구식에서 게이트, 사이폰 등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 홍수배제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배수장을 확장하거나 준용하천 이상의 하천또는 감조구역에 설치된 농림부 소관의 배수갑문을 개수하는 경우
 - 수원공이 500ha 이상을 관개하는 지역의 용수로와 200ha 이상을 배수하는 배수로를 구조물화 하는 경우
- 예정지 조사시 당해 농어촌지역에 대한 자원조사가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마을의 분포와 인구변동의 추이, 산업별 배치사항 및 경제활동 상황, 농지의 분포상태와 이용, 농지의 경사도, 토양 및 용·배수 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여야 함.
- 시·도지사가 예정지조사에 따라 예정지조사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수자원 확보·이용체계의 개선 또는 수해대책을 위하여 유역 또는 당해 시설의 체계나 계통별로 조사하고,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저수지》

- 물 수지계산이 10년빈도에 적합한지와 단위저수량이 현재 기준에 맞는지 검토하고, 그 대책(안)
- 저수지 제당의 안정성(사면 안전도 부족, 누수 등), 여수로 방수로의 홍수배제능력이 충분한지를 검토하고, 그 대책(안)
- 지역 수자원의 수급에 대한 전망과 수질의 변화 전망

《양수장》

- 하천의 수량감소와 수질의 악화에 대한 검토 의견 및 대책
- 홍수시 침수 방지대책과 취입부의 퇴적에 대한 대책

《용·배수로》

- 수자원 이용·배분 체계의 개선 방안
 - 용수로는 수원공 시점부터 전체 수로계획도와 수로조직표를 작성한 후 개보수 구간을 표시하고, 주요수로의 상류부터 하류의 순서로 시행하는 계획(안) 다만, 배수로는 하류부터 상류의 순으로 계획
 - 토공수로를 최소단면의 구조물로 하고, 단면축소에 따라 생기는 부지는 유지관리도로 등으로 활용하는 계획(안)
 - 용수로개보수사업 시행구간에 오폐수가 유입되거나, 유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해지역의 시장·군수에게 우회수로 설치 등 오염방지대책을 협의한 내용과 그 결과
- 대단위농업종합개발,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등의 농촌정비사업을 인접지역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나) 기본계획수립

- 시·도지사는 안전진단 보고서 및 예정지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수립 요령
 - 기본계획은 원칙적으로 수원공과 평야부(용수로)로 분리하여 기본계획수립
 - 수원공은 단위시설별로 수립함을 원칙으로하되, 총사업비가 10억 원미만 소규모지구는 10억원 수준으로 타수원공시설, 용수로개보수를 포함하여 일괄 계획수립
 - 용수로는 수원공별로 전체계획(Master Plan)을 구상하고, 지구별사업비를 20억원수준으로 하고, 대규모지구는 40억원수준으로하여 단계적 추진
 - 20억원이상 용수로 지구는 수원공 단위별 기본계획 수립
 - 20억원미만 소규모 용수로 지구는 지역단위별 기본계획수립 가능

-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개보수하여야 할 수리시설은 진단후 그 결과에 따라 기본계획수립 등 추진
-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은 기본계획서의 단계별 계획에 따라 추진

○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수원공
 - 1순위 : 농어촌진흥공사 수리시설 정밀안전진단 결과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물
 - 2순위 :
 -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위험관리 지구로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물
 - 수리시설 안전관리 실태 확인점검시 재해취약시설로 지적되어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물
 - 재해위험이 있어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물
- 용수로
 - 1순위 : 수질오염으로 용수대체가 필요한 수로, 산비탈 성토구간이 수시로 붕괴되는 수로
 - 2순위 : 물손실이 많아 유지관리가 어려운 흙수로

(4)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 수립

- 농림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수립한 기본계획에 대하여 사업의 규모, 시급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사업을 시행할 지구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함. 다만, 재해위험으로 대책이 시급한 시설은 긴급조치를 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사업비 지원지구에 대하여 세부설계자를 선정하여 세부설계를 추진함.
- 세부설계실시자는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자 중에서 선정하도록 함. 다만, 사업시행자가 직접 세부설계를 하는 경우는 일반 단순공사이거나, 공종의 필요에 따라 수문, 수리, 기계, 전기, 토질, 토목분야의 기술직원을 보유한 농지개량조합에 한함.
- 세부설계실시자는 수립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적정규모로 조사 측량설계를 실시하되, 조사측량 과정에서 사업량 확장 등 주요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세부설계실시자는 수자원 이용·배분 체계의 개선을 목적으로 용수로를 설계할 경우에는 수원공 시점부터 전체 수로 선형기본계획 및 수로조직표를 작성하고, 구조물로 개수계획하는 주요수로는 사업비 재정부담, 시설 내구년한, 용수공급능력 조절(유속에 의한 시간단축, 사전 공급배분), 자연형태 유지로 환경친화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원형암거시설은 충분히 여유고가 있도록 함. 다만, 용·배수의 흐름에 장애가 되는 제수문, 취입보는 최대한 설치를 억제하고, 최소구조로 함.
- 세부설계실시자는 저수지, 양·배수장 설계를 제출할 때에 시설관리자가 시설물 운용지침을 요청할시에는 제공하여야 함.
- 세부설계실시자는 사업 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조사 설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개산설계는 허용하지 않음. 시·도지사는 주요 공종이 현지와 부합되지 않는 등 매우 부실하게 설계된 경우에는 세부설계실시자에 대하여 용역 입찰참가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세부설계 성과서를 납품받으면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계획변경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성과품을 엄격히 검수, 설계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농림부장관의 예산지원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시행자에게 계획서를 송부하여 고시 및 동의서징구 등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이행토록 함.

(5)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 농림부의 사업추진 기본방침에 따라 시·도지사가 신규사업을 추진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 고시 내용과 동의서(필요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인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인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가 사업시행인가를 하면 용자매수를 하고, 공사계약방법 및 착공일정에 대한 자료를 농림부장관에게 FAX(02-507-3964) 송부함.

(6) 공정계획

- 시·도지사는 시행중인 개보수사업 지구에 대하여는 준공예정년도를 미리 정하여 년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준공지구에 소요되는 예산을 우선 지원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가 공정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공종과 공사시기를 신중히 검토하여 사업효과를 가능한 조기에 거양할 수 있도록 하고,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세부설계가 된 후 3년이 경과된 저수지, 양·배수장, 용·배수로, 배수갑문, 제수문 등 주요공정에 대하여는 착공하기 전에 현지여건을 세밀히 재 검토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하절기 우기중에는 수해를 대비하여 수방자재(마대, 말뚝, 중장비 등)를 확보하고,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현장관리를 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당해연도 예산에 의한 시도별 사업추진계획을 별첨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당해연도 2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예산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추진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7) 시행계획의 변경

- 기 착공하여 시행중인 지구에 대한 계획변경(물가변동에 의한 단가변경은 제외)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억제하며, 다만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호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과 같은 조 제3호 규정으로 정하는 다음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사전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시 계획되지 않은 타 수원공(저수지, 양수장, 취입보) 추가
- 시·도지사가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의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 ① 준공예정지구인 경우에는 재원확보계획 등 향후 조치계획
 - ② 사업계획 위치평면도(1/25,000~1/50,000, 1/3,000~1/6,000)

- ③ 변경되는 공종의 주요설계 도면 (평면도, 표준도, 주요구조도)
(설계도면 : 보완전 청사진 도면에 보완사항을 붉은색 선으로 삽입하여 비교가 쉽도록 하고, 복잡한 도면은 변경전·후 도면을 함께 첨부함)
- ④ 보고 서식 (별지 제4-1호~제4-4호 서식)
- ⑤ 기타 주요사항

- 준공지구에 대하여는 시행계획변경을 억제하여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시·도지사가 농림부장관의 권한위임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결과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상기 제(2)항을 준용하여 보고하여야 함.
 -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시행계획변경은 기본계획 등에 있는 공종에 한한것이며, 신규공종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8) 용지매수 및 보상

-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감정평가에관한법률,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 보상규정에 의함.
- 농작물 보상 등은 공사기간과 용지매수 등의 시기를 조정하여 원칙적으로 피하도록 함.

(9) 공사감리

- 공사감리는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발조합연합회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자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 시행함.
다만, 사업시행자가 직접 공사감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배치상황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배치상황을 검토한 후 시·도지사에게 결과 보고하여야 함.

-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업무를 장기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현장을 일시적으로 떠나거나 교체시에는 사업시행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이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공사감리자는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교체하여야 함.
- 공사감리원은 착공전에 설계도면과 현지를 대조하여 설계의 미비 여부 및 공정순위를 파악하고, 시공중에는 철저한 공사감리뿐만 아니라 굴착, 집토, 골재의 야적 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수혜민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전담자로 지정하고,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공사를 촉진하고, 시공상황을 파악하며 수시 현장확인(사진촬영 포함), 공정계획의 수립 및 업무일지를 기록하게 하여야 함.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감리위탁계약서에 의하여 함.

(10). 사업비 지원

(가) 예산의 지원

- 준공지구를 우선하여 지원함.
- 정밀안전진단으로 개보수하는 저수지는 조기완공토록 집중 지원함.
- 농지개량조합의 수혜면적 규모, 사업기간과 년차별 투자계획, 사업추진평가 결과 등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 시·도지사는 농조단위로 개보수사업비를 통합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저수지 및 양·배수장 시설은 재해 대비 및 공정을 감안 지원함.
- 시·도지사는 지방비를 투입하여 직권으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음.

(나) 자금의 운용관리

- 사업시행자가 국고보조 사업비를 받았을 때는 세부설계비와 용지매수 보상비를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비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 잡수입 등 수익은 당해 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조치하여 재투자하고, 재투자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고에 반납함.

- 시·도지사는 사업지구의 국고지원 자금의 운용관리상황을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야 함.

(다) 사업비 검정 및 결산

- 시·도지사는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비를 검정 및 결산하고, 결산결과는 익년도 3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함.

(11) 사업 평가

- 시·도지사는 농지개량조합장이 준공기한 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였는지 또한 우선순위에 따라 집중투자를 하였는지를 평가함.
- 농림부장관은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 규모를 증감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12) 사업 준공

-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완료한때에는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어야 함),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공사감리자가 작성), 예비검사 결과, 배수한 토지 등의 현황을 포함하여 사업준공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함.
- 시·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준공 정산을 함.
- 준공지구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기존 계속지구 예산을 전·이용하여 충당하고, 예산이 남는 경우에는 타지구 사업비로 전·이용하여 예산 불용이 없도록 함.

(13) 기타 사항

- 동일권역 내에 대단위 농업종합개발, 대·중규모 농업용수개발, 배수개선 등의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연계성을 검토함.
- 건설교통부의 하천정비개수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은 계획과 추진상황의 연계성을 검토함.

나. 농조저수지준설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저수지에 퇴적된 토사를 준설
- 저수지에 퇴적된 오염물질 제거

(2) 지원대상 :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3) 지원조건 : 국고 100%

(4) 사업시행자 : 농지개량조합

(5) '99사업비(예산안)내용

사업량 (지구)	사 업 비 (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사업비계	예산안(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융자		
		계	보조	융자			
80	8,000	8,000	8,000	-	-	-	

< 추진체계 >

(1) 사업주관 및 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개발국 시설관리과 (02-500-2668~9)
- 시·도 : 농정국 기반조성과, 농지개량과, 농업기반과, 농산지원과, 농정과
* 시도에 따라 국, 과명칭이 다름
- 농지개량조합 : 당해 지역 농지개량조합 관리과, 개발과, 사업과
* 농지개량조합에 따라 담당부서가 다름

(2) 사업 추진절차

- 예정지조사(사업시행자) → 기본계획수립(시도지사) → 세부설계 실시(시도지사) → 시행계획의 수립(시도지사) → 예산지원(농림부) → 사업시행인가(시도지사) → 발주 및 공사시행(사업시행자) → 준공(사업시행자)
- 사업추진체계도는 붙임 표1과 같음.

<사업추진>

(1) 기본방향

- 준설대상저수지는 가뭄상습지역으로 주수원공의 내한능력이 부족한 저수지 우선 추진
- 저수지준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몰량을 조사하고 규모화 가능성을 판단한 후 지구선정(다수지구 분산지원 방식은 억제)
- 각 사업은 당년 또는 2개년으로 집중지원하여 조기 완공위주로 추진
 - 계속지구는 우선 마무리
 - 신규사업도 가능한 완공 위주로 추진
- 공사관리는 준설공사 지역과 사토장관리 철저히 부실공사를 방지
- 저수율에 따라 준설이 가능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시행

(2) 대상저수지 선정

(가) 일반사항

- 농어촌발전계획에 포함된 지구
- 준설여건양호, 사업비저렴, 사업효과 높은지구
- 준설토를 이용할수 있는 지구
- 사토장 확보용이 및 운반거리가 가까운 지구
- 준설시 부산물인 골재를 매각하여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지구

(나) 선정기준

- 근본적으로 단위저수량이 적은 상태에서 장기간 매몰되고, 다른용수원은 없어 가뭄피해가 빈번한 저수지를 우선 선정함.
 - 단위저수량은 적고, 유역배율은 큰 저수지
 - 매년 만수가 쉽게되는 반면 가뭄시는 쉽게 고갈되는 저수지
 - 저수지 유역내의 토사 유출은 많고 장기간이 경과한 저수지
 - 현재 실경작면적 대비하여 단위저수량이 적은 저수지(400mm수준)
 - 단위저수량이 400mm~650mm 범위이면 「농업용수개발필요수량기준」의 10년빈도 단위저수량과 비교하여 수량이 부족한 저수지
 - 강우량(측후소별), 유역배율, 삼투량, 수로손실, 임상상태
- ※수리시설물 수원공 일람표(1987. 12. 발간) 내한능력 조사 자료 등을 활용.

- 시급성이 적거나 효율성이 낮은 저수지는 순연
 - 하천을 보충수원으로 평야부를 양수 급수할 수 있는 저수지
 - 수혜면적이 저수지 축조당시 보다 많이 감소된 저수지
 - 2개이상 저수지가 수계의 상하류로 연계되어 저류량이 충분한 저수지
 - 퇴적된 현재의 단위저수량이 충분한 저수지 (650mm수준)

(다) 우선순위

- 사업시행 예정지구 우선순위 결정은 상기요령에 따라 선정된 지구를 지역단위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종합 검토하여 우선 순위 결정

(3) 사업시행 예정자의 사업예정지 신청

- 시설물관리자(농지개량조합장)는 수혜자의 건의 또는 유지관리시 나타난 물 부족지역에 대한 예정지를 현장 답사후 시·도지사에게 신청
- 가뭄지역 시설관리자는 저수지의 저수율을 파악하여 준설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저수지를 선정(선정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으로 제출)

(4) 예정지조사

- 시·도지사는 예정지조사를 실시하여 현지의 준설여건 및 가뭄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준설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
- 시설관리자가 시설유지관리 자료 및 현지답사자료를 기초로 수립한 대책을 예정지조사로 갈음할 수 있음.
- 예정지 조사시 저수율을 고려하여 준설효과와 공사의 난이도 파악
- 사토장 확보에 관한 사항

(5)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수립

- 시·도지사는 예정지조사 결과 시설물의 안전성, 시급성, 사업효과 등을 검토하고 배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구에 대하여 신규사업 지구를 선정
- 세부설계는 설계의 난이도, 사업시행자의 기술인력 및 능력 등을 감안하여 자체설계하거나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또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실시
- 측량설계비는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준함.

○ 세부설계시 유의사항

- 모래 및 자갈 등의 골재가 함유된 지역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 법령 등 관련 법규에 따른 골재의 품질 및 매장량에 대한 조사 실시
- 저수지 당초의 내용적 평면도가 있는 지구는 내용적 평면도를 참고하여 퇴적부위별 퇴적사항, 준설가능량과 적정한 공법 선정
- 사토장의 선정시 홍수시 재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유역 이외의 장소에 사토장 선정

(6)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가) 사업시행인가 : 시·도지사

- 농지개량조합에서 실시하는 저수지 및 담수호 준설사업은 농어촌정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의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여 실시함.
다만, 농지개량조합에서 일상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도 농어촌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타공공시설물의 안전상 위해나 선의의 제 3자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발주 등 : 사업시행자(농지개량조합장)

(7) 공정계획

- 당해년도 예산에 맞춰 가능한한 갈수기에 육상작업으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공정계획을 수립
- 관개기전에 완공하여 영농기에 최대한 활용토록 함.
- 준설공사 시행을 위하여 저수지의 물을 배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8) 사업관리

○ 저수지당 준설량(사업의 규모화)

- 저수지규모별 준설량은 단위저수량의 제고, 유효저수량의 비율 또는 퇴적량 중 1개조건 이상을 만족하는 수량으로 규모화 함.

저수지 규모	단위저수량 제고	유효저수량 비율	퇴적량	비고
50ha 미만	50mm 이상	20% 이상	2만m ³ 이상	
50~200ha	40mm 이상	15% 이상	3만m ³ 이상	
200~500ha	30mm 이상	10% 이상	5만m ³ 이상	
500ha이상	20mm 이상	5% 이상	10만m ³ 이상	

- 적정 사업량의 추진과 조기완공
 - 사업지구는 당년완공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저수율 변동으로 부득이한 경우는 2개년 완공 계획
 - 시·도별 지원예산 범위내에서 당해년 총사업량에 의한 우선순위별 적정 사업지구를 선정 추진

- 준설현장 관리
 - 사업착수전 내용적측량을 하고, 저수지 상류 유입부의 좌·우측에 20m 간격 격자망의 기준점을 각각 상하류로 2개소 설치하고, 만수위(물넘이 표고)를 기준한 假BM을 설치함.
 - 내용적측량(준설지역)은 저수지 평면도 또는 지적도에 水準측량 결과를 표시하고, 水準측량은 기준점에서부터 20m간격으로 종횡단의 격자망 위치에 대하여 지반고를 측량함.
다만, 소규모 저수지에서는 종단면도와 횡단면도를 작성할수 있음
 - 준설공사를 완공 또는 중단할 경우에는 즉시 시행후 내용적 측량을하고 시행전후의 내용적 비교에 의하여 준설토량을 산정함

- 사토장 관리
 - 사토장 위치도(1:1200) 및 2개 방향 사진 (pole대를 비교) 제출
 - 위치도에 운반거리 및 사토량 기입
 - 위치도 및 사진 (별첨)
 - 사토장 종횡단도 및 평면도 제출
 - 사토장 가B.M 위치 및 지반고 기입
 - 사토량 산출내역서 첨부
 - 저수지에서 준설토량의 반출은 반출대장에 일시·위치·용도·차량대수 및 수량을 기재하고 농조의 공사감독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함.

- 검 사
 - 저수지내 검측은 농조 기술직원 2인이상이 하며, 공사를 일시 중단시에 는 중간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는 검사자가 저수지 평면도 및 내용 적계산서(또는 종횡단도)에 날인후 연도말 검정서류로 제출함.
 - 저수율이 상승하여 수중으로 확인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심측량을 하여야 함

- 사토장 검측을 실시한후 용적을 산정하고 연도말검정 서류로 함께 제출함

구 분	준설지역	사 토 장
착공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수지 평면도 위치표시 ○수준측량 또는 종·횡단면도 ○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적도 면적 산출 ○지반높이 측정(가B.M 설치) ○종·횡단면도 ○사진
공사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진
공사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측량 성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고및면적을 기재한 평면도 - 토량산출 계산서 ○작업일지(기종, 대수, 토량, 반출대장) ○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측량 성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고가 기재된 평면도 - 토량산출 계산서 ○사진

(9) 시행계획의 변경

- 사업시행계획 변경은 당초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와 현저한 사업효과 향상을 위한 경우에만 한함.
- 사업시행자는 현지여건으로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때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시행계획변경 승인과 동시에 그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준설공사중 부수적으로 골재가 채취되는 경우 골재매각대는 준설사업비에 우선 충당함.

(10) 용지매수 및 보상

- 준설토는 토질 및 토양조사를 하여 가능한한 유용토록하여 사토비 절감(객.복토용, 도로성토용, 저습지 매립용, 쓰레기매립장 복토용 등)
- 보상비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에 규정하는바에 의하여 집행.
- 보상 업무는 농한기에 시행하여 작물보상이나 실농보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11) 공사감리

- 시공은 관련 시방서에 부합되게 완벽한 시공이 되어야함.
- 시공감독은 사업시행자가 담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난이도 기술 인력 및 능력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발조합 연합회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지역주민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내실화를 기함.
- 공사감리비는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준함.

(12) 사업비지원

(가) 예산의 지원

- 예산의 지원은 가목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지원함.
- 준설토가 골재 또는 객·복토용으로 적합하여 사업비가 절감되는 경우
-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음.

(나) 자금의 운용관리

- 사업시행자는 사업비에 대하여 각각 별도계정을 설정 운영
-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설계와 용지매수보상비를 우선하여 지원
- 사업시행자는 배정받은 사업비 자금의 집행을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하지 못함.
- 시·도지사는 자금의 운용관리상황을 수시로 확인점검 하여야 함.

(다) 사업비 검정 및 결산

-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실행검정 및 결산 요령에 준함.

(13) 사업준공

-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당해 계약의 이행 여부의 확인과 공사의 기성부분에 대하여 계약에 따른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는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함.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

< 행정사항 >

(1) 사후관리

- 시설관리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2) 보 고

- 사업시행인가결과 보고(시도총괄표 포함) : 즉시보고 (별지 제1호서식)
- 사업추진상황보고 : 분기말 현재를 익월 10일까지 보고(별지제2호서식)
- 준공결과 보고 : 즉시 보고 (별지 제3호 서식)
- 시행계획변경승인결과 보고 : 즉시보고 (별지 제4호서식)
- 저수지준설사업계획 : (별지 제5호서식)

다. 국가관리방조제개보수

<사업개요>

(1) 사업내용

(가) 사업추진 배경

○ 시설이 노후되고 설계기준에 미달되어 태풍 및 해일 발생시 재해가 우려되는 국가관리방조제를 사전에 개보수하여 재해예방 필요

(나) 지원대상 : 방조제관리법 제3조에 의한 국가관리방조제

(다) 사업내용 : 방조제, 배수갑문 및 부속시설물의 개보수

(라) 지원조건 : 국고 100%

(2) '99사업비(예산안) 내용

(금액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지구)	사 업 비					
		사업비계	예 산 안 (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기타		
계	37	24,736	24,736	24,736	-	-	-
국가관리	37	24,736	24,736	24,736	-	-	-

<추진체계>

(1)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2)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개발국 시설관리과(전화 : 02-504-9408~9)

○ 시·도 : 농정국

○ 시·군 : 건설과 농지계(시·군에 따라 기반조성계)

(3)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또는 농지개량조합장

(4) 사업추진절차 : [별표1] 참고

○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예정지 신청) → 예정지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수립 → 사업시행인가 → 공사계약 및 착공 → 준공

<사업 대상지구 선정>

(1)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관리방조제로서 시·군 농어촌 발전계획에 반영된 지구

(2) 우선순위

- 안전진단 결과 재해가 우려되는 방조제
- 재해에 취약한 요소가 있는 방조제
- 시설 운용관리상 획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시설
- 태풍, 해일, 호우 피해 방조제중 개량복구가 필요하나, 지원되는 복구비가 부족하여 재해 반복이 예상되는 시설은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음.

<사업추진>

(1) 사업시행예정자가 예정지 조사신청

시설물 관리자(시장·군수, 농지개량조합장)는 안전점검 결과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 현지답사 후 사업시행 건의를 시·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2) 예정지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 신청된 예정지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재해예방 조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예정지 조사를 실시한다.
- 시·도지사는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하여 사업시행자가 예정지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사업시행자의 기술능력을 판단하여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 조합 연합회 및 엔지니어링 기술 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용역업체에 의뢰 하여 예정지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 시행자의 부담으로 함.
- 시·도지사는 농림부시행방침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개보수사업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 기본계획의 개요(수혜면적 포함)

- 사업별 추정사업비 현황 · 사업별 추정사업비 내용(공사비포함)
- 사업효율 분석결과 · 사업대상지역의 위치도(사진포함)
- 기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 유의사항

- 시·도지사는 신청되거나, 예정지 조사시 긴급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시설물관리자에게 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여야 함.
- 예정지 조사시 시설물 개보수 우선순위 결정은 농업기반시설 관리규정 제17조 ④항에 의하여 결정한다.
- 기본계획수립시 사업시행과정에서 변경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방조제 및 부속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중에 대하여는 제외함

(3)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 수립

- 농림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기본계획에 대하여 사업의 규모, 시급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사업을 시행할 지구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함.

다만, 재해발생으로 긴급을 요하는 시설은 긴급조치를 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사업비 지원지구에 대하여 세부설계를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연합회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용역 업체에 의뢰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단, 설계의 난이도 사업시행자의 기술인력 및 전문성을 판단하여 시·도 지사의 책임하에 사업시행자가 세부설계토록 할 수 있다.

- 세부설계 실시자는 수립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시설관리자의 의견을 청취 하여 측량설계를 실시하되, 기본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때는 시·도지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함.

- 세부설계시 유의사항

- 방조제 높이 및 단면이 현 설계기준에 부합한지 여부 검토

B.M설치가 되어있지 않은 지구는 필히 설치하여 보존 관리토록 함.

- 배수갑문의 홍수배제 능력이 현 설계기준에 부합한지 여부 검토

- 세부설계는 사업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조사설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개산설계는 허용하지 않음.

- 시·도지사는 세부설계를 완료한 때는 성과품을 엄격히 검수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후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하며,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고시 및 동의서 징구(필요시)등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사업시행>

(1)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 사업시행자는 사업 계획 고시내용과 동의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함.
- 시·도지사는 신청된 사업계획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시행인가후 다음사항을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별지 제1호서식)
 - 사업시행 위치평면도(1/50,000, 1/25,000)
 - 방조제 및 배수갑문 보수, 보강 단면(시행전후 구분)

(2) 공정계획

- 재해위험 공종은 우기전에 완공토록 공정계획 수립 함.
-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 및 공사도급자와 협의하여 예산에 맞는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예산액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공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도 또한 같음.
- 시·도지사는 제출된 공정계획서를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무리한 공사시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를 위한 계획의 적정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 공사감리원, 공사도급자는 공정계획을 준수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현저하게 공정계획이 미달되었을 경우 공사도급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3) 시행계획의 변경

- 사업시행계획 변경(물량변동)은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와 현저한 사업효과 향상을 위한 경우에만 한함.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3조 제1,2호에서 같은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다음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사전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방조제 및 배수갑문의 규모 형식, 구조의 변경 및 공법변경 등
- 상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는 다음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① 준공예정지구인 경우에는 재원 확보계획
 - ② 사업계획 위치평면도
 - ③ 변경되는 공종의 주요설계도면(평면도, 표준도, 구조도)
(보완사항은 붉은색으로 표시하여 변경 전후 비교가 쉽도록 작성)
 - ④ 보고서식(별지 제4-1호~제4-4호 서식)
- '99년도 준공지구에 대한 시행계획 변경은 별도 배정하는 단가인상 유보액('99사업비의 10%)범위내에서 실시하고 부족예산은 지방비에서 부담토록 한다.

(4) 용지매수 및 보상

-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 보상규정에 의함.
- 농작물 보상등은 공사기간과 용지매수 등의 시기를 조정하여 원칙적으로 피하도록 함.

(5) 공사감리

- 공사감리는 사업시행자가 담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난이도 기술인력 및 능력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연합회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에 의한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음.
- 공사감리원은 착공전에 설계도면과 현장을 대조하여 설계의 미비여부 및 공정순위를 파악하고 철저한 공사감리뿐만 아니라 공사상 원인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사업 담당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시공상황을 파악하며, 수시 현장 확인(사진촬영) 공정계획의 이행상태를 업무일지에 기록하게 하여야 함.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감리 위탁계약서에 의함.

(6) 사업준공

-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함.
- 공사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음.
-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

<사업비지원>

(1) 예산의 지원

- 재해대비 긴급성을 고려하여 지원한다.
- 준공지구를 우선하여 지원한다.
- 사업기간이 오래된 지구를 우선 지원하여 사업효과 조기거양
-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세부설계와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다.

(2) 자금의 운용관리

- 사업시행자는 사업비에 대하여 각각 별도계정을 설정 운영
-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설계비와 용지매수보상비를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배정받은 사업비 자금의 집행을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하지 못함
- 시·도지사는 자금의 운용관리상황을 수시로 확인점검 하여야 함

(3) 사업비 검정 및 결산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실행검정 및 결산 요령에 준한다.

<행정사항>

(1) 사후관리

- 시·도지사는 『농림사업평가규정』에 의거 공정한 평가를 실시 하고 이를 전산입력 관리하여야 한다
- 전산입력 절차 및 요령은 농림사업평가실시요령에 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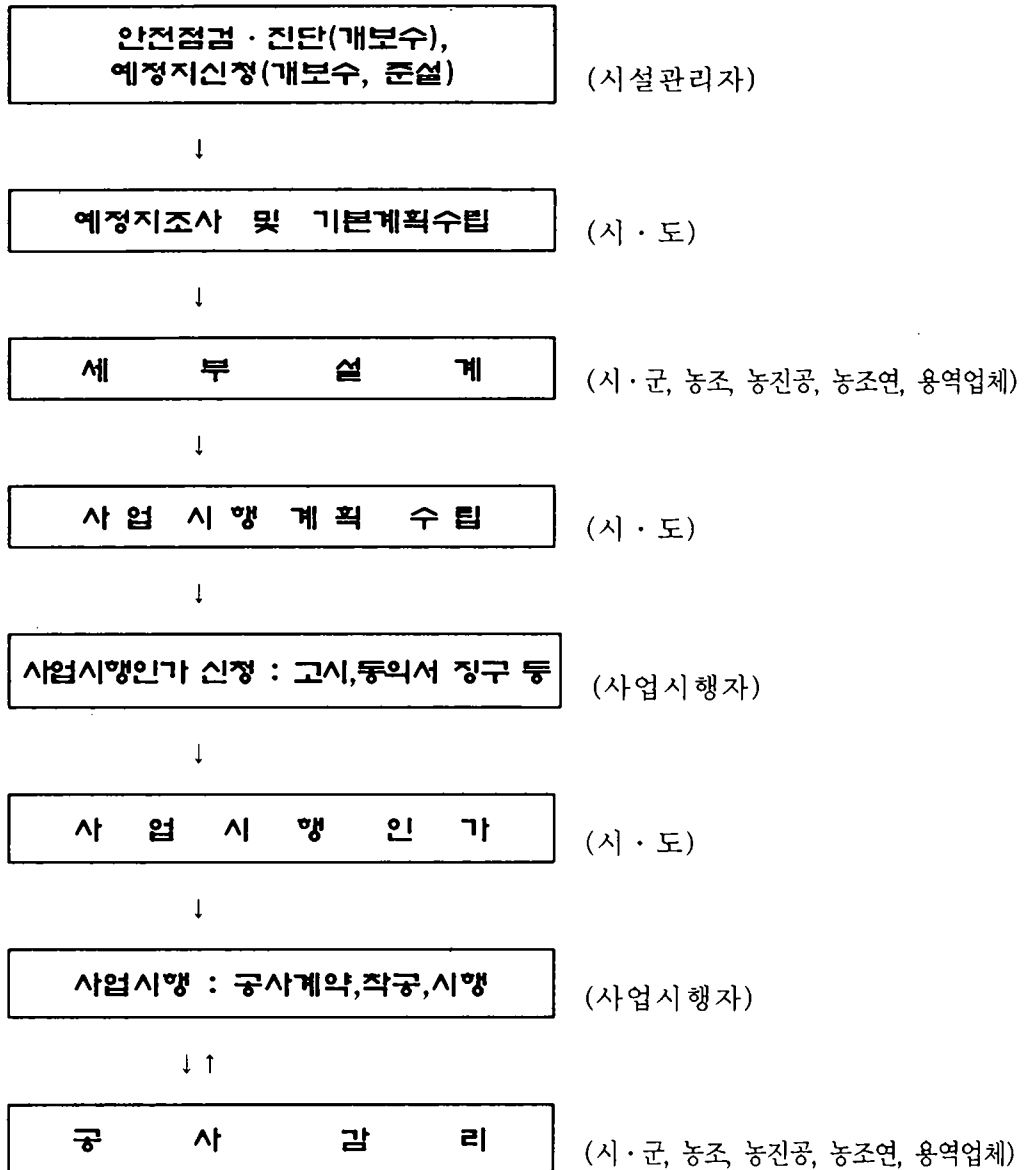
(2) 보 고(농조수리시설개보수사업 보고서식에 준함)

- 사업시행인가 결과보고 : 당해연도 2월말까지 보고
- 추진상황 보고 : 매 분기말 현재 추진 실적을 익월 10일까지 보고
- 시행계획변경승인 결과보고 : 승인후 즉시보고
-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준공 결과보고

[표 1]

농조수리시설개보수 및 농조저수지준설, 국가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 추진체계도

(근거 : 농어촌정비법)



[별지 제1-3호 서식]

00지구(수리시설, 방조제, 준설) 개보수사업 추진현황

- 위 치 :
- 수혜면적 : ha
- 사업기간 : 년 ~ 년
- 사업시행자 : , 시공회사(토목: 기전 :)
- 주요사업내역(예)
 - 방조제(제당) : 총연장 m, 높이(→ m), 폭(→ m), 사석 m'(m')
 - 배수갑문(수문) : 기존 련 → 보수 련(교체 련, 보수 련)
 - 수제공(용수로) : 신설 개소, 보강 개소
 - 기 타 :
- 공사추진현황(예)

(단위: 백만원)

구 분	총 계 획		'98 까 지		'99 계 획		2000이후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계 국 비 지 방 비								
○순공사비								
- 방조제								
· 사석								
· 승상								
- 배수갑문								
· 교체								
· 신설								
· 보수								
- 수제공								
· 신설								
· 보강								
○지급자재대								
○용지매수비								
○측 설 비								
○공 감 비								
○관 리 비								
○잡 지 출								
○예 비 비								

[별지 제2-1호 서식]

총 26 - 13

‘99. /4분기 사업 추진상황 보고
(농조수리시설개보수, 국가관리방조제개보수)

(시·도)

농조명	지구명	위 치			사업 착수 년도	수혜 면적 (ha)	개보수공종		총사업비	기 정산액
		시·군	읍·면	리·동			수원 공명	용수로 (km)		
합 계										
- 준공										
- 계속										
- 신규										
00농조계										

- ※ 1) 매분기말 현재를 익월 1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할 것
- 2) 추가예산내시사업이 있을때에는 이를 추가함
- 3) 방조제개보수는 수원공명에 방조제연장, 용수로에 배수감문 런수 표시
- 4) 지구별 계만기재(한줄)

(단위 : 백만원)

당해연도 예산액	실형액	진도 (%)		착공이래 누계실형	누계 진도 (%)	차년도이후		부진 사유
		계획	실적			금 액	공종	

[별지 제2-2호 서식]

총 26 - 13

'99. /4분기 사업 추진상황 보고
(농조저수지준설)

(사업량 : 천m³, 금액 : 백만원)

농조명	지구명 (저수지명)	위 치		수혜적 수면적 (ha)	총 계 획		전년도 까지		당해년도 추진현황					부진유 사유
		시 군	읍 면		사업 량	사업 비	사업 량	사업 비	계 획		실 적		진 도 (%)	
									사업 량	사업 비	사업 량	사업 비		
계														

[별지 제3호 서식]

총 26 - 9

준공결과 보고

(농조수리시설개보수 및 저수지준설, 국가관리방조제개보수)

1. 사업지구 현황

- 지 구 명 : (시설명 :)
- 위 치 :
- 총사업비 : 천원 ○수혜면적 : ha
- 사업시행자 :
- 주요공사 : -
-
-
-
- 사업시행인가 연월일 :
- 착공년월일 : ○준공년월일 :
- 설계 기관 : ○공감 기관 :
- 시공 회사 :

2. 사업 시행전후 시설변동 현황

당 초	준 공 후

3. 년도별 사업비. 검정내역

구 분	총사업비	년도별 검정내역 (백만원)								비고
		'92년까지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계										
국 고										
지방비										
기 타										

※ 준공지구 도면(1/25,000)을 첨부함.

[별지 제4-1호 서식]

자체 가26-37

시행계획변경승인결과(신청) 보고
(농조수리시설개보수 및 저수지준설, 국가관리방조제개보수)

심 사 서

- 1. 사업명 :
- 2. 위치 :
- 3. 수혜면적 : ha
- 4. 공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5. 공사개요

총 계획	전년도까지	당해연도 계획	차년도이후 계획	비 고

6. 보완내용

구 분	보 완 내 용	보완내용 심사의견
	당초, 변경, 증감이 나타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수로조직표 및 수로표준단면도 첨부

[별지 제4-2호 서식]

사업비 수지예산서

○수 입

(단위 : 천원)

과 목	기 승인액	금회승인액	증(△)감	연도별 내역			비 고
				까지	계획	이후	
합 계							
국 고							
지 방 비							
기 타							

○지 출

(단위 : 천원)

과 목	기 승인액	금회승인액	증(△)감	연도별 내역			비 고
				까지	계획	이후	
합 계							
공 사 비							
- 순 공사비							
· 저 수 지							
· 양 수 장							
· 평 야 부							
· 부대공사							
- 자 재 대							
용지매수보상비							
기 타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 지 출							
- 예 비 비							

※ 방조제개보수는 순공사비 구분을 방조제, 배수갑문 등으로 함

[별지 제4-3호 서식]

용지매수 및 보상비 내역

(면적 : m², 금액 : 천원)

구분	공종	지목	기승인액		금회승인액		증 감		기정산액		당해년도		차년도이후		비고 (증감 사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 증감사유를 반드시 명기할 것

[별지 제4-4호 서식]

계획보완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내역

(단위 : 천원)

공종별	기승인액	금회승인액	연도별 내역			보완후 증감액				비고
			기정산액	당해년도	차년도이후	계	단가인상	단가개정	수량이동	
계										

※ 순공사비, 자재대에 대하여 작성.

[별지 제5호 서식]

'99○○지구농조저수지 준설사업 계획

(시설 관리자 : ○○농조)

1. 시설개요

- 위치 : 시·도 시·군 읍·면 리·동
- 수혜면적 : 준공인가면적 : ha, 현재급수면적 : ha
- 유역면적 : ha (유역배율 : 배)
- 시설규모 (축조년도 : 년)
 - 제 당 규 모 : 높이 H= m, 길이 L= m
 - 만 수 면 적 : ha 만수시 평균수심 : m
 - 총 저 수 량 : 천m³, 유효저수량 : 천m³, 사수량 : 천m³
 - 단 위 저 수 량 : mm

2. 준설 사업 계획

- 단위저수량 제고의 목표
(축조시: mm) → (현재: mm) → (준설후: mm)
유효저수량기준 (평야부 삼투량 : mm/일)
- 최근 10년간 저수지가 고갈되었는지 여부 ? (년도)
- 현재의 저수율 : % ('99년 월 일 현재)
- 준설 사업 계획

구 분	총계획	'97까지	'98실적	'99계획	2000이후	비고
사업량 (천m ³)						
사업비 (백만원)						

※ '99준설 1m³당 단가 원, 사토거리 km

3. 추진상황

- 설계완료일 : (설계자) ○ 시행인가일 :
- 계약 일 : ○ 착 공 일 :
- 본격적인 공사기간(전망) : '99. .~'99.
- 준설토 활용계획 : (별도 계획이 있으면 기재)

4. 기 타 (저수율이 높아 공사가 어려울 경우 예산집행대책)

9 대·중규모 용수개발 (공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용수과(과장 허유만, 시설서기관 이승찬)입니다.

1. 목 적

수혜면적 50ha이상 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농촌용수 확보 및 원활한 공급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업진흥지역내의 가뭄상습지역을 우선 개발
- 사업효과 조기거양을 위하여 준공위주로 집중투자
- 공사중 부분급수가 가능하도록 시행
- 경지정리등 사업과 병행추진으로 사업효과 제고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4. 년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92-'95	'96	'97	'98	'99 (예산안)
사업량(천ha)		90	6	5	5	6	3
사 업 비	계	4,470,419	515,407	240,344	352,913	443,022	291,465
	보 조	4,470,419	515,407	240,344	352,913	443,022	291,465
	용 자	-	-	-	-	-	-
	지방비 자부담	-	-	-	-	-	-

※ 주 : 42조원 구조개선사업 및 농촌용수 10개년 계획에 의함

5. '99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저수지, 양수장 등을 설치하여 농촌용수 확보
- 용·배수로를 설치하여 용수공급 체계 구축
- 사업범위
 - 대규모 용수개발 : 수혜구역 3,000ha 이상
 - 중규모 용수개발 : 수혜구역 50 ~ 3,000ha
 - 가뭄상습지역 특별대책 : 가뭄상습지역 특별대책 추진 34지구
- 지원조건

나. '99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ha)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67,182	백만원 291,465	291,465	291,465	-	-	-
- 대 규 모	11,746	44,788	44,788	44,788	-	-	-
- 중 규 모	36,555	192,302	192,302	192,302	-	-	-
- 가뭄상습지역 특별 대책	18,881	54,375	54,375	54,375	-	-	-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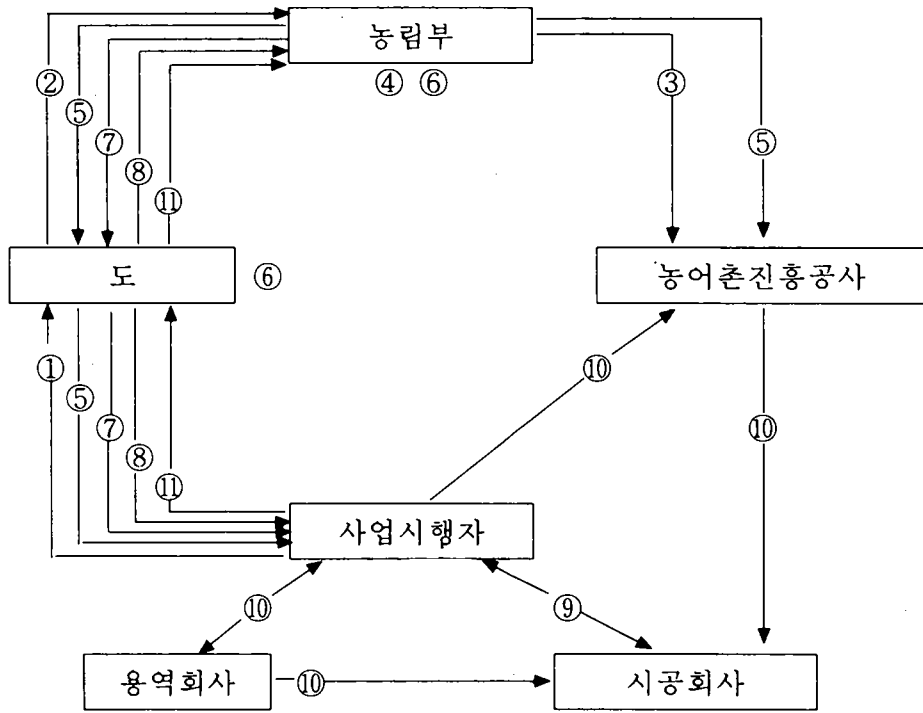
가. 사업 주관기관 : 시도지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농촌개발국 개발기획과 (전화 : 02- 504- 9402, 9403)
농촌용수과 (전화 : 02- 504- 9406, 9407)
- 시 도 : 농정국 기반조성과(농지개량과, 농업기반과, 농산지원과)
- 시·군·자치구 : 건설과
- 농지개량조합 : 당해지역 농지개량조합 관리과(개발과, 사업과)

다. 사업시행자 : 시장, 군수, 구청장, 농지개량조합장

< 사업시행체계도 >



(2) 사업추진절차

- ① 사업시행신청
- ② 예정지 조사보고
- ③ 기본조사 지시
- ④ 기본계획 수립
- ⑤ 세부설계 지시
- ⑥ 시행계획 수립
- ⑦ 신규지구결정 및 예산내시
- ⑧ 사업시행인가 및 보고
- ⑨ 공사발주 및 공사 시행
- ⑩ 공사감리위탁 및 감리
- ⑪ 사업추진상황 준공보고

<사업대상지구선정>

가. 선정기준

- (1) 수혜면적이 50ha이상이며 사업시행에 제약사항이 없고 효율이 양호한 지구
- (2) 농업진흥지역을 원칙으로 하며 농업진흥지역 외에는 우량농지로서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하는 조건하에 선정 (도시개발계획등에 포함되어 타용도로 전용될 지역은 제외함)
- (3) 신규개발면적 비율이 50%이상이거나 주수원공의 신규설치가 필요한 지구
- (4) 지역주민 2/3이상의 동의와 광업권등 관리자 모두의 동의가 가능한 주민숙원사업지구
- (5)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시행가능지구

<사업계획수립·시행>

가. 계획수립시 유의사항

(1) 저수지

- (가) 저수지 위치선정은 지역실태(저수지 상류부 포함), 주민의 개발 희망 사항, 수문, 입지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여러 안을 충분히 비교 검토하여야 하며, 기존농지가 과다하게 수몰되거나 마을이 수몰되어 집단 이주되지 않도록 위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
- (나) 가뭄상습지역에서는 지역 가뭄특성에 맞는 가뭄대응능력을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함.
- (다) 유역면적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수지 계산을 Carry - over System 등으로 비교 검토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하고 특히 간접유역에서 도수할 경우에는 그 유역의 하류부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함.
- (라) 축제용 토취장 및 석재장은 가까운 거리순으로 매장량을 조사한후 토지 소유자의 사용동의 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함.

(마) 신설되는 저수지의 수혜구역내 소류지, 취입보 등 소규모 수리시설에 대하여는 저수지 설치후의 기능을 정확히 검토하여 이를 저수량 결정에 반영하여야 함.

(바) 저수지 하류부에서의 생활용수, 공업용수, 과수, 축산, 초지, 화훼, 특용단지 등의 용수수요도 조사하여 저수지 규모결정시 고려하여야 함.

(2) 양수장

(가) 양수장 위치는 하천유심변동으로 매몰되지 않을 장소에 선정하여야 하고, 홍수시 침수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함.

(나) 갈수량 산정시는 상·하류부에서의 취수량을 충분히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함.

(다) 유사가 많은 곳은 양수기 기중선정과 취입구조에 대하여 유의하여야 하고 도수 암거의 퇴적토사 제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3) 용·배수로

(가) 용·배수로 설계는 경지정리사업을 고려하여 설계함이 원칙임

(나) 용수지거는 조립식 구조물을 활용함.

(다) 마을, 집단분묘, 과수원 및 특작지역 등에서는 민원발생 요인이 많으므로 설계시 신중을 기하여야 함.

나. 사업신청 및 예정지조사

(1) 사업시행예정자(시장·군수, 농지개량조합장)는 예정지에 대한 답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을 신청함.

(2)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예정자의 사업시행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중장기계획에 따라 예정지조사를 실시함

(3) 시·도지사는 전문기술자의 참여하에 농촌용수개발사업 시행 예정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4) 예정지조사 보고서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사업예정지구 현황(농업진흥지역지정 및 시군농어촌발전계획포함여부 수리현황, 농지이용현황, 경지정리현황, 배수현황 등)
- 공사계획과 소요사업비
- 사업시행 효과
- 위치도
- 지역개발 여건(사업의 필요성, 사업제약 여건, 연관사업계획 등)
- 지역주민 의견

다. 기본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수립

- (1) 시·도지사는 예정지조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기본조사를 건의함(매년 3월말까지)
- (2) 수혜면적 50ha 이상의 기본조사는 농어촌정비법 및 동법시행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 중장기계획의 추진, 예산 형편,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실시함.
- (3) 기본조사자는 타법·타사업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확인하여 사업시행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기본조사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지사 및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4) 기본조사시에는 수혜민의 개발희망도 조사(비농업진흥지역일 경우 농업진흥지역 편입의향 조사 등)와 지역행정기관 및 사업시행예정자의 의견을 듣고 지역의 특수성(기존 수리시설의 물리 및 내한능력, 생활용수확보계획등)을 감안하여 사업예정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되 용수개발외에도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연계개발이 가능한 사업이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함.
- (5) 평야부는 특수한 지형여건을 제외하고는 경지정리사업과 병행을 전제로 한 용수로 간·지선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6) 기본조사시에는 사업시행후 유지관리를 감안하여 TC/TM에 의한 집중물 관리시스템(홍수예경보, 급수관리, 수질관리 등) 구축 및 용수로의 관수로 (Pipe Line)화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함.

- (7) 기본조사자는 기본조사가 완료되면 기본계획서(안)을 작성하여 농림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서(안)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함.
- 기본계획의 개요
 - 기본설계도서
 - 사업비 수지예산서
 - 사업비 내역
 - 사업효과
 - 사업지구현황(진흥지역 지정, 시·군농어촌발전계획 포함여부, 수리현황, 농지이용현황, 경지정리 현황 등)
 - 개발계획 내용과 주요공사
 - 사업시행 여건(지역주민 사업시행동의 여부, 시장·군수·농조장 의견, 연관사업, 권리설정 내역, 제약사항 등)
 - 조사자 인적사항
 - 종합의견
- (8) 농림부장관은 기본계획서(안)의 내용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함. 이때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기본조사자는 농림부장관의 지시에 의거 내용을 보완하여야 함.
- (9) 기본조사비는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하는 요율에 의하여 산정함.
- (10) 농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기본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송부함.

라.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수립

- (1) 농림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중에서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시급성 등에 따라 세부설계지구를 선정하고 시·도지사로 하여금 세부설계를 실시하도록 함.
- (2) 세부설계 위탁대상자로는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발조합연합회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 중에서 우수한 설계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 완벽한 설계가 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3) 세부설계서는 시도지사 및 사업시행예정자와 수혜민의 희망사항등에 관하여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지사 및 농림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시행하여야 함.
- (4) 세부설계자는 타법·타사업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 사업시행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기본조사 또는 세부설계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지사 및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5) 주요 시설의 설계도에는 현장 시공시 기능공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공상세도를 포함하여야 하며, 용역발주시에는 과업지시서에 시공상세도 작성을 의무화하여야 하고, 적정한 용역기간을 부여하여 완벽한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함.
- (6) 시·도지사는 세부설계 내용을 심의확정하고 농림부장관에게 주요 설계 내용과 사업비 내역을 보고하여야 함. 이때 설계내용이 미흡하면 세부설계자에게 설계를 보완토록 하여야 함
- (7) 세부설계가 완료되면 시·도지사는 경제성과 타당성 또는 시급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함.

마.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 (1) 농림부장관이 신규착공지구를 선정통보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을 고시하고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며,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인가를 한 즉시 인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2) 사업시행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제규정에 의거 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자를 선정함.
- (3) 공사입찰은 과도한 제한경쟁이나 불필요한 수의계약으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

바. 공정계획

- (1)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 및 공사도급자와 협의하여 당해년도 예산에 맞는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함. 또한 예산액 또는 시행계획의 변경에 따라 공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음.(별지 제3호 서식)
- (2) 공사의 추진은 사업의 효과를 조기에 거양하고 가뭄발생시 시설물의 이용 가능성과 재해방지를 고려하여 당해년도 사업목표량을 설정함.
- (3) 공정계획은 인력, 장비 및 자재의 확보외에도 기상여건 및 각종 절차를 고려하고 무리한 공기단축 등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립하여야 함.
- (4) 시·도지사는 제출된 공정계획서를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 무리한 공사 시행으로 인한 사고 및 재해방지를 위한 계획의 적정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5) 사업시행자, 공사감리원 및 공사도급자는 공정계획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공정계획에 미달하였을 경우 공사도급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6) 평야부 공사는 경지정리사업과 병행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년도로 지정되기 전에 평야부 계획을 재검토하여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야 함.
- (7) 경지정리사업과 병행시행할 때에는 농촌용수개발사업계획서와 경지정리사업 계획서를 별도로 분리하여 작성하되, 농촌용수개발사업은 수원공, 도수로, 용수간지선 및 경지정리구역외의 용수로 등으로함.
- (8) 준공예정지구는 전년도 8월이전에 사업계획을 재검토하여 준공지구 지정후 설계변경이 없도록 하고, 준공지구 지정후의 설계변경으로 준공이 불가능한 지구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응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9) 준공지구로 지정된 지구중 사업비가 부족한 지구는 부족한 사업비를 지방비 또는 타지구에 배분된 사업비에서 조정하여 년내 준공토록 조치하여야 함. 다만, 단가인상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에 대하여는 국고 추가지원 또는 지구간 사업비를 조정하여 준공토록 함.
- (10) 시·도지사는 공정계획에 의거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매분기별 현재의 추진상황을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별지 제4호서식)

사. 시행계획변경

- (1)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지여건상 부득이한 사유로 시행계획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가) 수혜면적의 10%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 나) 길이 100m 이상의 교량공사의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 다) 터널, 댐등의 특수한구조물공사의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 라) 수원공의 위치 변경
 - 마) 댐,여수토 및 양수장의 규모 및 형식의 변경
- (2)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설계보완 내용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사유와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여 책임설계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3) 계획변경시 공사비 증감액이 공사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초설계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함.
- (4) 시·도지사가 시행계획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별지 제5호서식)

아. 용지매수 및 보상

- (1)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의 보상 규정에 의하여 집행하되,
 - 다음년도 공사계획물량은 전년도에 매입토록 하여 협의불용을 이유로 계획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 보상평가서는 대법원판례, 공시지가, 타지구 보상사례 등과 비교 검토 하여 적정보상이 되도록 할 것.
- (2) 농작물 보상등은 공사기간과 용지매수등의 시기를 조정하여 원칙적으로 피하도록 함. 다만, 공사추진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급박한 공사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작물보상을 할 수 있음.

- (3) 용지매수 및 보상비를 지급한 수물대상가구의 건물 및 토지에 대해서는 미이주 경작 등으로 인하여 공사추진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집단민원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사전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수물지내 오염원은 담수전에 필히 제거하여야 함.
 - 건 물 : 계약서에 정한 기간내에 철거조치를 하여야 함.
 - 농경지 : 경고문 등을 제시하여 임의경작을 방지할것.
- (4) 과목 등의 보상은 물건조사를 철저히 하고, 평가서 검토시에는 경제수령 등도 검토하여 보상에 적정을 기할것

자. 공사감리

- (1) 공사감리는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발조합연합회,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에 의하여 신고된 공사감리용역업체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시행함.
다만, 사업시행자가 직접 공사감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감리회사 감리규정에 의거 적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감리를 시행하고 시·도지사는 승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2)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배치상황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배치상황을 검토한 후 시·도지사에게 결과보고 하여야 함.
- (3)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업무를 장기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교체시에는 사업시행자와 사전협의하여야 함.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이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공사감리자는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교체하여야 함.
- (4) 공사감리원은 착공전에 설계도면과 현지를 대조하여 설계의 미비여부 및 공정순위를 파악하고 시공중에는 철저한 공사감리 뿐만 아니라 굴착, 집토, 골재의 야적 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수혜민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5) 공사감리원이 특별한 사유로 현장을 떠날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사전에 통지하여야 함.

- (6)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전담자로 지정하고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공사를 촉진하고 시공상황을 파악하여 현장확인, 공정계획의 수립 및 업무일지를 기록하게 함
- (7) 공사감리비는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의 요율에 의거 산정. 단, 당초 구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의 요율을 적용하여 공사감리를 위탁한 지구는 구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의 요율을 적용하나 공사비의 변경으로 요율을 변경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의 요율을 적용함(용수 51317-828('96.10.4) 참고)
- (8)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부 고시 제1996-31호('96. 6.18)로 제정하여 시행중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기준과 공사감리위탁계약지침(용수51340-893('96. 10. 25)호)에 의하여야 함.
- (9) 시·도별로 3개지구 이상 사업지구에 명예감독원을 선정하여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감시는 물론, 대농민홍보, 민원 사전해소등 사업주체와 지역주민간의 교량역활로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한다.

차. 사업준공 및 검사

- (1)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계약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련서류에 의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함. 계약에 의하여 공사의 기성부분에 대하여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음.
- (2) 사업시행자는 (가)항의 검사업무에 대하여 공사감리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음.
- (3) 준공검사 실시후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에게 준공검사 결과를 보고하고 사업준공 인가를 받음
-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 기준(우리부 고시 제1996-31호, '96. 6. 18)에 의하여야 함.

카. 사업비 지원

(1) 예산의 지원

- (가) 시·도지사는 익년도 사업예산을 신청할 때에는 대규모용수개발과 중규모용수개발 및 가뭄상습지역특별대책사업을 별도로 구분하여 신청함
- (나) 사업지구의 예산은 예산범위내에서 사업기간과 년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 (다) 사업시행자는 사업비에 대하여 각각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운영함
- (라) 시·도지사가 예산을 배정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즉시 보고(별지 제1호서식)하며,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 하여야 함.
- (마) 사업시행자는 배정받은 사업비 자금의 집행을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 시켜서는 안됨.
- (바) 사업시행자는 배정받은 사업자금을 용지매수 및 보상비로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공사비는 자금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회계 관계규정에 의거 개산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사)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의 자금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자금집행상황을 매분기말 현재로 다음달 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별지 제2호서식)
- (아) 시·도지사는 행정지원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사업추진현황을 신속, 정확하게 보고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자) 농림부장관은 사업평가결과 우수한 지역(농지개량조합, 시·군 등)에 대하여는 여타 농촌용수관련사업비 및 유보예산지원시 확대지원방안을 강구함.

타. 기타사항

(1) 자재 공급 및 관리

- (가)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공사도급자 책임하에 공급하거나 관급으로 조달하게 함
- (나) 자재를 사업시행자가 관급으로 조달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95. 7. 6)제83조(건설공사에 대한 주요 자재의 관급)의 규정에 의함.
- (다) 지급자재를 구매공급함에 있어서는 공장도, 분공장도, 레일도, 하치장도 등의 가격과 수송 제조작비를 포함한 가격을 비교하여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여야 함.
- (라) 지급자재는 사업시행자가 관리하되, 지급자재 수불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함.

(2) 풍수해 사전대비

- (가) 공사현장에는 가마니, 새끼, 말뚝, 폐합판 등의 수방자재를 비치함
- (나) 저수지 공사현장의 가제당은 우기 이전에 계획고까지 시공완료
- (다) 공사현장에서는 기상정보에 따라 사전대비하고 공사장 내의 배수, 장애물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여야 함.
- (라) 기자재의 유실에 대비하고 전동기등의 침수방지등 사전대책을 강구하며 공사 진행중인 저수지의 제당 및 하천제방의 월류, 토공수로의 붕괴시 피해의 최소화 대책을 사전에 검토함.

(3) 자금운용 및 관리

- (가) 교부된 국고금은 지구별로 경리함을 원칙으로 함
- (나) 자금은 용지매수 및 보상비를 공사비 보다 우선하여 집행함
- (다) 사업시행자는 사업비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 잡수입 등 수익은 당해 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조치하여 재투자하고, 재투자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고에 반납함

(4) 타법 관련사항

- (가)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하천법 등 타법에 의한 허가·면허는 농어촌정비법 제87조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허가·면허관청과의 협의로서 갈음할 수 있으므로 타법에 의한 허가·면허 협의는 사업시행인가권자가 사업시행인가전에 행하도록 하여야 함
(예) 하천법에 의한 허가·면허의 경우 치수과와 사전 협의
- (나) 농어촌정비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국공유인 도로, 관개용수로, 배수로, 제방, 구거, 저수지 및 하천부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으나, 같은조 제3항에는 국공유인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및 산림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토록 되어있어 유상매입을 하므로써 사업비의 증액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는 국공유지외의 국공유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이 관리환을 받아 사업시행에 제공하게 하므로써 사업비를 절감하여야 함.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1) 공사감리자는 사업준공시 준공도서 및 시설물관리규정을 검토하여야 함.
- (2) 하자 및 미비사항은 즉시 보완조치후 시설물을 사업시행자 및 관리자에게 인계인수 하여야 함.

- (3) 관리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 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4) 인계·인수 등과 관련한 사항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 기준(우리부 고시 제1996-31호, '96.6.18)에 의하여야함

나. 보 고

- 시행계획수립 보고 : 시행계획 수립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 사업시행인가 보고 : 사업시행 인가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 시행계획변경 보고 : 시행계획 변경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 예산배정결과 보고 : 예산확정 또는 변경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 공정 계획 보고 : 공정계획 작성또는 변경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 추진 상황 보고 : 매분기말 현재상황을 다음달 10일 까지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 자금집행상황보고 : 매분기말 현재상황을 다음달 10일 까지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6. 2000년도 사업 신청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도지사

나. 신청자격 : 사업시행예정지역 관할 시장·군수, 농지개발조합장

다. 신청절차 :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 → 농림부

라. 구비서류 : - 사업시행자 : 예정지답사보고서
- 시·도지사 : 예정지조사보고서

마. 기타사항 :

- 시·도지사는 전문기술자의 참여하에 사업시행예정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예정지조사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함.
(사업예정지구의 현황, 공사계획과 소요사업비, 사업시행효과, 위치도, 지역개발여건, 지역주민의견 등)

[별지 제1호서식]

농촌용수개발사업예산배정결과

시·도

(단위 : 천원)

사업 시행자	위 치			지구 명	주 요 시설명	면적 (ha)	총 사업비	년 까지	년 계 획					년 이후	비 고
	군	면	리						계	국고	지방 비	용자	자부 담		
계															

주) 비고란에는 준공 또는 계속지구별로 구분 표시할것

[별지 제3호서식]

용수개발사업공정계획

사업시행자 : 농조장 (인), 시공자 : (인), 작성자(공감소장) : (인)

도 명 :

농조명 : 지구명 : 물리면적 : ha, 착공년월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물량 단위	연도 계획		분기별 공정계획								비 고	
		물량	금액 (C)	1/4		2/4		3/4		4/4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합 계													
순공사비													부분급수면적 ○ 98까지 : ha ○ 99년도 : " ○ 99이후 : "
개답비	ha												
자재대													
양회	대												
철근	M/T												
기타													
용지매수 및보상비	ha												
수원공	ha												
평야부	ha												
측량설계비 공사감독비 관 리 비 감 지 출 조합채 비 영 선 비 예 비 비													

용수개발사업추진상황

_____도

(단위 : 천원, 년 월 일 현재)

위치		사업자	지구명	구분	시설명	용리면적	총사업비			기정산액	잔사업비	당해년도예산			실영액	진도 (%)		공후계형 착이누실	%	비고 (부진사유)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획	실적				

- 주) 1. 구분은 준공, 계속으로 구분
 2. 시설명 : 저수지, 양수장
 3. 진도(%) : 계획은 당월까지, 실적은 예산대비

[별지 제5호서식]

용수개발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 및 승인신청시 도지사가 첨부할 서류

1. 시행계획변경승인공한사본
2. 시행계획변경승인신청내용(장관에게 승인신청시만 첨부)(별첨㉠서식)
3. 심사서(기술 및 관리)
4. 사업계획 개요
5. 사업비 수지예산서 및 증감대비표
6. 보조금산출내역
7. 보조금 재원별내역
8. 용지매수보상비, 공사감독비, 관리비등 사무비에 대한 항목별산출및 변경내역
9. 시행계획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내역
10. 년도별 공사비 명세서
11. 지급자재조서
12. 공사수량 이동조서(별첨㉡서식)
13. 시행계획변경도서 (농업용수개발사업 수지예산서 작성요령에 의함)
14. 기타 필요한 사진 및 기타 증빙서류

[별지서식 ㉔]

시행계획변경승인신청내용

공 종	당 초 계 획	변 경 계 획	도지사검토의견

- ※ 1.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과 도지사가 승인한 내용을 기재한다.
- 2. 농림부장관 및 시도지사 지시사항 이행여부를 기재할 것

[별지서식 ㉔]

공사 수 량 이 동 조 서

공 정	규 격	단 위	공사수량		증감내역			사 유
			당초	변경	수량	단가	금액	
소 계 잡 기 타 계								잡비,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부가가치세

[별지 제6호서식]

공사감독배치상황

도	농 조	지구명	공사감독소장		공 감 독 원 수	비 고
			직급	성명		

주) 비고란에는 소장임명(배치) 년월일을 기재할것

[별지 제7호서식]

자 재 수 불 부

결 재		년 월 일	품명	규격	수 입 량		출 고 수 량			재고량	부기
책임자	담당자				금 회	누 계	번호	금 회	누 계		

중규모용수개발사업지급자재공급상황추진상황

년 월 일 현재

도	조합	지구명	자재명	총 소요량 (A)	분기별계획 (B)				분기별계획 (B)				(B/A) 누계진도	비 고 (부진사 유)
					1/4		2/4		3/4		4/4			
					계 획 실 적	진 도	계 획 실 적	진 도	계 획 실 적	진 도	계 획 실 적	진 도		
계			양회 철근 기계,전기	대 kg 조										

10 지표수보강개발 (공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시설관리과(과장 류성곤, 토목사무관 민경남)입니다.

1. 목 적

내한능력이 부족한 기존 수원공(저수지, 양수장)의 시설 규모확장 또는 기존 수혜구역의 퇴수이용시설(양수장, 취입보)의 설치로 가뭄대비 능력향상

2. 시책 및 추진방향

- 내한능력 부족지역의 물 해결로 상습 가뭄지역의 해소
- 하천 등 수질오염 지역의 깨끗한 농촌용수 확보
- 수원공 위주의 집중개발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효율성 제고

3. 근거 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1조 내지 제12조, 제16조 내지 제18조, 제90조, 제94조, 부칙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천ha, 백만원)

구 분		'92~'96	'97년	'98년	'99년 (예산안)	2000년	2001-2004
사업량		13.4	3.1	1.2	2.0	4.0	29.8
사업비	계	93,650	32,482	37,180	30,000	88,000	696,500
	보조	63,209	32,482	37,180	30,000	88,000	696,500
	용자	-	-	-	-	-	-
	지방비	30,441	-	-	-	-	-
	자부담	-	-	-	-	-	-

* 사업량은 준공면적 기준임

* 사업비는 '96까지 국고 70%, 지방비 30%, '97이후 국고 100%임

5. '99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사업추진배경

수원공 시설이 열악하고 내한능력이 부족하거나 직파재배 등 영농기술의 발전으로 물 사용량 증가와 기상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수자원을 추가 확보하여 항구적인 가뭄 대책 필요

(2) 사업내용 : 저수지, 양수장 시설규모 확장 또는 퇴수 및 보충수 이용시설 설치

(3) 지원대상 : 시장·군수 또는 농지개량조합장

(4) 지원조건 : 국고 100%

*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비 등 추가투입 지구 우선 지원

나. '99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사업비 합 계	예산액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음 자		
지표수보강개발	90지구	30,000	30,000	30,000	-	-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개발국 시설관리과 (02-500-2668~9)
- 시·도 : 농정국 기반조성과 (농지개량과, 농업기반과, 농산지원과, 농정과)
- 시·군 : 건설과
- 농지개량조합 : 관리과, 개발과, 사업과

다. 자금지원대상자 : 시장·군수, 농지개량조합장

라. 사업시행

(1) 사업대상지구 선정

(가) 선정기준

- 시장·군수 또는 농지개량조합장이 관리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내·수리시설(지하수 이용시설 제외)중 내한능력이 부족하여 시설확충이 필요한 지역. 다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계속하여 영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농업진흥지역 밖도 개발가능

(나) 우선순위

- 시·군 단위 농어촌발전계획에 포함되고, 가뭄 상습지에 급수하는 수리시설
- 수자원을 추가 확보하기 용이한 유역배율이 큰 저수지 및 갈수량이 풍부한 지역의 양수장 및 취입보
- 장기적으로 수질 오염의 우려가 없고, 충분한 수량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시설

(2) 사업시행예정지 신청

- (가) 사업시행예정자(시장·군수, 농지개량조합장)는 우선 기존 수리시설의 내한능력을 검토한 후 예정지를 답사하고, 저수지나 양수장의 규모확장 등 보강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을 신청.

- (나) 사업시행예정자가 시·도지사에게 개발을 신청할 경우에는 내한능력조사표, 시·군단위 농어촌발전계획 포함 여부, 시설물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및 농업진흥지역 구역도면, 위치도 등을 첨부.

(3) 예정지 조사 및 조사설계

- (가) 시·도지사는 신청된 예정지에 대하여 내한능력의 부족여부를 판단하여 수자원의 추가확보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되면 보강개발계획을 위한 예정지조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을 수립.

- (나)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하는 사항과 시·군단위 농어촌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지 여부 및 농업진흥지역 면적 등을 보고서에 포함.

(다)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기본조사는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에 등록된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사 및 계획수립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함.

(라)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수자원 확보·이용 체계의 개선 또는 재해 대책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포함

< 공통 >

-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기존시설에 대한 보충용수 개발이므로 유역상황 또는 당해 시설의 이용체계나 용수계통을 고려하여 기본계획 수립
- 대단위농업종합개발,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등의 농촌정비 사업을 당해지역내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계 또는 병행가능여부 검토

<저수지>

- 수혜지역 수자원의 수급과 수질의 변화 전망
- 기존저수지 유역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자원
- 내한능력을 10년빈도 이상으로 제고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미흡할 시 그 대책안
- 저수지 제당의 안정성(단면부족, 누수 등), 여수토방수로의 홍수배제 능력을 검토하고, 불충분할 시 그 대책안

<양수장>

- 하천의 갈수량 감소와 수질의 오염에 대한 검토 의견 및 대책
- 홍수시 침수 방지대책과 취입부의 퇴적에 대한 대책

<용수로>

- 현행 용수 이용체계와 수로조직표 및 수로조직 체계 개편 구상안

(4)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 수립

(가)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50ha 미만 지구에 대하여는 세부설계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50ha 이상 지구는 우리부와 신규지구 선정 협의후 세부설계 실시.

(나) 세부설계는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 중에서 하도록 함. 단, 경미한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세부설계토록 할 수 있음.

- (다) 세부설계자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실시설계를 하고, 조사측량 과정에서 기본계획서의 주요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 하되, 기본조사 미흡으로 변경될 경우 기본조사자에 대하여는 조사비 감액 등 응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라) 세부설계자는 저수지, 양수장의 설계도서를 제출할 때에 시설관리자가 시설물운용지침을 요청할시는 제공하여야 함.
- (마) 세부설계자는 사업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조사설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개산설계는 허용하지 않음.
- (바) 시·도지사는 성과품을 엄격히 검수하여 설계미비사항에 대하여는 사유를 규명하고 사업시행전에 보완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
- (사) 수혜면적은 수리안전담면적, 보강개발면적 및 신규 편입면적의 합계 면적과 개별 면적으로 표시
 - (예) 수혜면적 100ha(수리안전담 60ha, 보강개발 30ha, 신규 10ha)
 - 개발면적 40ha(보강개발 30ha, 신규 10ha)

※ 면적구분

- 수리안전담 : 내한능력 10년빈도 미만의 기설 수원공의 수리담을 내한 능력 10년빈도 담면적으로 환산한 면적
- 보 강 개 발 : 기설수원공의 수리담면적에서 수리안전담 면적을 뺀 면적
- 신 규 : 보강개발로 인근 수리불안전담 신규 편입

(5) 신규지구 추진계획 수립(신규지구 신청 및 선정)

- (가) 수혜면적이 50ha미만인 지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책임하에 세부 설계를 전문기관에서 실시토록 하여 신규지구를 신청
- (나) 수혜면적이 50ha 이상인 지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기본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신규지구를 신청
- (다) 신규지구는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농림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추진
- (라) 50ha미만은 세부설계후, 50ha이상은 기본조사후 기본계획에 따라 신규 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므로, 사업시행지구 선정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변경이 없도록 조사설계에 철저를 기할 것.
- (마) 다만, 재해피해 등으로 시급히 보강개발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 긴급 조치할 수 있음.

(6)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 (가) 사업시행자는 세부설계후 신규지구로 선정된 지구에 대하여는 사업 계획서, 사업계획 고시내용 및 동의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 시행인가를 신청.
- (나) 시·도지사는 신청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시행인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인가서 사본(계속지구 예산배정결과 포함)을 첨부하여 농림부에 보고.(별지 제1호서식)
- (다) 시행인가 보고시는 사업계획 관련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 및 검토내역을 첨부하여야 하며, 공사비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시행계획의 변경내역서를 첨부.
- (라) 사업계획과 관련된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착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조기 이행.

(7) 공정계획

- (가) 사업시행자가 공정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공사중 영농급수와 하절기 홍수대책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고,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인한 부실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나) 사업시행자는 하절기 우기중에는 수해를 대비하여 수방자재(마대, 말뚝, 중장비 등)를 확보하고,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현장관리를 하여야 함.

(8) 시행계획의 변경

- (가) 기 착공하여 시행중인 지구에 대한 계획변경(물가변동에 의한 단가 변경은 제외)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억제하며, 다만 농어촌 정비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다음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사전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수혜면적의 100분의10을 초과하여 수혜면적을 증감하는 경우
 - 시행계획에서 정한 공사비의 100분의10을 초과하여 공사비를 증감하는 경우. 다만, 공사비를 국비외의 재원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
 - 저수지의 제당높이, 만수위, 물넘이 형식의 변경과 양수장 규모의 변경 등

(나) 시·도지사가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 ① 준공예정지구인 경우에는 재원확보계획 등 향후 조치계획
- ② 사업계획 위치평면도(1/25,000~1/50,000, 1/3,000~1/6,000)
- ③ 변경되는 공종의 주요 설계도면(평면도, 표준도, 주요구조도)
 - 설계도면은 보완전 도면에 보완사항을 붉은색 선으로 삽입하여 비교가 쉽도록 하고, 복잡한 도면은 변경전·후 도면을 함께 첨부
- ④ 보고 서식 (별지 제3-1~3-5호 서식)
- ⑤ 기타 주요사항

(다) 시·도지사가 농림부장관의 권한위임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결과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상기 (나)항을 준용.

(라) 기본조사 또는 세부설계 소홀로 보완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초 조사설계자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 조치토록 하고, 현저한 과오로 당초 조사설계내용이 전반적으로 달라질 경우에는 조사설계비를 감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9) 용지매수 및 보상

(가)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 보상규정에 의함.

(나) 공사기간과 용지매수 등의 시기를 조정하여 원칙적으로 농작물 보상 등은 피하도록 공정계획을 수립.

(10) 공사감리

(가) 공사감리는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발조합연합회,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 시행.

(나)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배치상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

(다)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업무를 장기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현장을 일시적으로 떠나거나 교체시에는 사업시행자와 사전협의 하여야 하며, 시·군직원 등을 공사감리자로 임명하여 공사감리 업무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

- (라)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이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하고, 용역업체는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감리원을 교체하여야 함.
- (마) 공사감리원은 착공전에 설계도면과 현지를 대조하여 설계의 미비 여부 및 공정계획을 파악하고, 시공중에는 철저한 공사감리뿐만 아니라 굴착, 집토, 골재의 야적 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혜민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함.
- (바)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전담자로 지정하고,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공사를 촉진하고, 시공상황을 수시 확인(사진촬영 포함)하여 업무일지 등의 기록을 남겨놓아야 함.
- (사)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감리위탁계약서에 의함.

(11) 사업비 지원

(가) 예산의 지원

- 저수지 승상, 양수장 확장 등 보충수 확충 위주로 지원하고, 불가피한 경우외에는 평야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존사업지구 중 '99년도 이후까지 추진되는 농지개량조합의 평야부 공사는 농조수리시설개보수사업으로 전환.
- 사업촉진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방비를 추가지원하여 추진할 경우에는 우선하여 국비 지원.

(나) 자금의 운용관리

- 사업시행자가 국고보조 사업비를 받았을 때는 조사설계비와 용지매수 보상비를 우선하여 지급.
- 사업시행자는 사업비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 잡수입 등의 수익은 당해 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 조치하여 재투자하고, 재투자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고에 반납.
- 시·도지사는 사업지구의 국고 지원 자금의 운용관리상황을 수시로 확인 점검.

(다) 사업비 검정 및 결산

- 시·도지사는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비를 검정 및 결산하고, 결산결과는 익년도 3월말까지 농림부에 보고.

(12) 사업준공

- (가)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어야 함),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공사감리자가 작성), 예비 검사 결과, 매수토지 등의 현황을 포함하여 사업준공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 (나) 시·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조치
- (다) 준공지구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기존 계속지구 예산을 전·이용하여 충당하고, 예산이 남는 경우에는 타지구 사업비로 전·이용하여 예산 불용이 없도록 함.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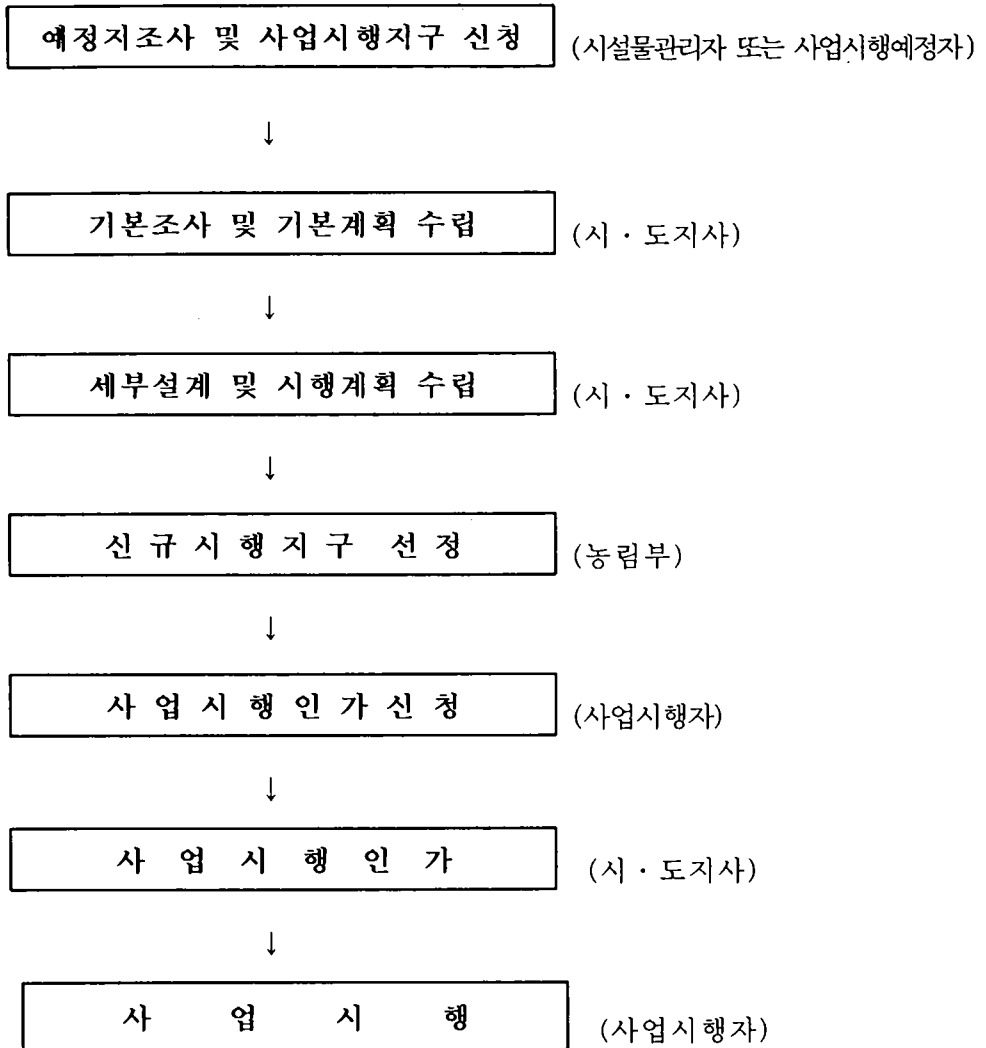
- 시설관리자는 농어촌정비법 및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나. 보 고

- 사업시행인가결과보고(시·도 총괄표) : 즉시 보고 (별지 제1호 서식)
- 사업추진상황보고 : 분기말 현재를 익월 10일까지 보고(별지 제2호 서식)
- 시행계획변경승인결과보고 : 즉시 보고 (별지 제3호 서식)
- 준공결과보고 : 즉시 보고 (별지 제4호 서식)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추진체계도

(근거 : 농어촌정비법)



총 26-36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시행인가(예산배정) 결과보고(총괄)

(시·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시·군, 농·조)	지구명	위 치		수원공		평야부		사업 착수 년도	사업비 현황				'99 주 요 공 사	'99분기별 사업비					
		시· 군	읍· 면	시 설 명	개 발 면 적	시 설 명	사 업 량		총 사 업 비	'98 까 지	'99 계 획	'00 이 후		1/4	2/4	3/4	4/4		
합 계																			
- 준 공																			
- 계 속																			
- 신 규																			
00시·군, 농·조 계																			

※ 1) 사업시행자별 지구내역은 준공, 계속, 신규지구 순으로 작성

2) 평야부란은 실제 보강개발시행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만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총 26-36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추진상황 보고('98년 /4분기)

(시·도)

(단위 : 백만원)

구분 (시군, 농조)	지구명	위 치		시 설 명	개발면적 (ha)	사업착수년도	총 사 업 비	'98 까 지	'99 예 산	'99년 실형액	진도(%)		공래계 착이누실	누계 진도 (%)	'00 이후	기 타 (부진 사유)
		시· 군	읍· 면								계	실 적				
합 계																
- 준공																
- 계속																
- 신규																
00농조계																

- ※ 1) 매분기말 현재를 익월 1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할 것
- 2) 예산추가지원이 있을 때에는 가산하여 보고

총 26-36

○○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신청 (결과보고)

1. 사업계획개요

- 위치 : 도 시·군 읍·면 리·동외(※사업구역위치도 S=1:25,000 첨부)
- 수해면적 : ha(기설 , 보강 , 신규)
- 사업시행자 :
- 주요공사내역
 - 저수지 : L= → m, H= → m(제당승상 m)
 - 여방수로 : L= → m, H= → m
 - 양수장 : HP × mm × 대 → HP × mm × 대
 - 용수로 : L= m(B×H= ×)
 - 이설도로 : L= m(B= m, con'c포장, 아스팔트포장, 사리부설 등 구분)
 - 기타
- 공사기간 : 19 . . ~ (당해년도 준공계획지구 표기)

2. 주요 보완내용

- 단가인상 : 백만원(%)
- 단가개정 : 백만원(구체적인 사유 및 금액변동내역 기재)
- 낙찰차액 : 백만원
- 물량변경 : 백만원

(작성예)

- 제당 덧쌓기(L= m, H= m →) : 백만원
- 여수로·방수로 (L= m, H= m →) : 백만원
- 양배수장 (HP x mm x 대 →) : 백만원
- 용수로 (B x L x H m →) : 백만원
-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까지	계획	이후	증감내역				
	기승인	변경				계	단가인상	단가개정	낙찰차액	물량변경
합계										
공사비										
- 순공사비										
·저수지										
·양수장										
·평야부										
·부대공사										
- 자재대										
용지매수보상										
기타										

[별지 제3-2호 서식]

심 사 서

1. 사업명 :

2. 위치 :

3. 수혜면적 : ha(기설 , 보강 , 신규)

개발면적 : ha(보강 , 신규)

4. 공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5. 공사개요

총 계획	'97까지	'98계획	'99이후 계획	비 고

6. 보완내용

구 분	보 완 내 용	보완사유 및 심사의견
		수로조직표 및 수로표준단면도 첨부

7. 설계자 의견

구 분	전 설계자 의견	금회 설계자 의견
	소속 성명	소속 성명

8. 지시조건

- 농림부장관 지시사항의 이행 조치사항

- 도지사 지시사항

9. 심사자 종합의견

년 월 일
 심사자 : (인)

[별지 제3-3호 서식]

사업비 수지예산서

수 입

(단위 : 천원)

과 목	기승인액	금회승인액	증(△)감	연 도 별 내 역			비 고
				'98까지	'99계획	'00이후	
합 계							
국 고							
지 방 비							
기 타							

지 출

(단위 : 천원)

과 목	기 승인액	금회승인액	증(△)감	연 도 별 내 역			비 고
				'98까지	'99계획	'00이후	
합 계							
○ 공사비							
- 순공사비							
· 저수지							
· 양수장							
· 평야부							
· 부대공사							
- 자재대							
○ 용자매뉴얼상비							
○ 기 타							
-측량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잡지출							
-예비비							

[별지 제3-4호 서식]

용지매수 및 보상비 내역

(면적 : m², 금액 : 천원)

구분	공종	지목	기승인액		금회승인액		증 감		'98까지		'99계획		'00이후		비고 (증감 사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 증감사유를 반드시 명기할 것

[별지 제3-5호 서식]

계획보완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내역

(단위 : 천원)

공종별	기승인액	금회승인액	연도별 내역			보완후 증감액				비고
			'98까지	'99계획	'00이후	계	단가인상	단가개정	수량이동	
계										

※ 순공사비, 자재대에 대하여 작성.

총 26-9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준공처리 결과보고

1. 사업지구 현황

- 지구 명 :
- 위 치 :
- 총사업비 : 천원
- 수혜면적 : ha(기설 , 보강 , 신규)
- 개발면적 : ha(보강 , 신규)
- 사업시행자 :
- 주요 공사내용
-
-
- 사업시행인가연월일 :
- 착공년월일 : ○ 준공년월일 :
- 설계 기관 : ○ 공사 감독 :
- 시공 회사 :

2. 사업 시행전후 시설변동 현황

당 초	준 공 후

3. 연도별 사업비 검정내역

구 분	총사업비	연도별 검정내역 (백만원)					비 고
		년	년	년	년	년	
계							
국 고 지방비 기 타							

※ 준공지구 도면(S=1/25,000 지형도) 첨부

11 농촌생산기반조사 및 생산기반종합정비시범사업 (공공)

I. 지하수개발조사

※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용수과(과장 허유만, 토목사무관 김재홍)입니다.

1. 목 적

- 수맥조사 : 가뭄상습지역의 지하수개발 예정지역에 대한 지하수의 부존상태 및 개발 가능량 등을 조사하여 개발성공율을 제고하고, 지하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여 합리적인 지하수개발 추진
- 해수침투조사 : 해안 및 도서지역의 지하수 과다 개발·이용으로 인한 지하 해수침투의 영향을 조사하여 피해예방대책 수립

2. 시책 및 추진방향

- 가뭄우심지역에 대한 수맥조사로 지하수개발 성공률 제고
- 도서 및 해안지역의 지하 해수침투 영향을 조사하여 피해 예방대책 수립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지하수법(제5조, 시행령 제27조)

4. 연도별 지원계획

(금액 : 백만원)

구 분		계	'92-'96	'97	'98	'99 (예산안)	2000이후
사업비 합계		46,601	13,991	4,480	5,191	4,457	
수맥조사	사업량	57,183 ^{ha}	15,189	6,000	7,000	6,000	
	사업비 (국고)	44,561	13,455	4,380	5,110	4,380	
해수침투 조사	사업량	180 ^{개소}	60	12	9	7	
	사업비	1,500	500	100	81	77	

5. '99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 개요 >

가. 사업내용 설명

(1) 사업추진배경

- 효율적인 지하수개발·이용과 암반관정 개발성공을 제고를 위한 지하수 개발 예정지구에 대한 수맥조사 실시
- 지하 해수유입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한 해안 및 도서지방의 지하 해수 침투조사 실시

(2) 지원대상 : 농어촌진흥공사

(3) 사업내용

- 수맥조사
 - 기본조사 : 지구답사, 지표지질조사 및 기설관정조사로 지하수부존성 검토
 - 물리탐사 : 선구조조사, 전기탐사로 대수층의 분포확인
 - 수위관측공조사 : 지하수의 수위 및 유향 확인
 - 시추조사 : 지하지질구조, 대수층의 수리특성, 수질특성, 이용가능량 확인
 - 수문 및 토목조사 : 지표수와의 관계, 개발가능면적, 이용시설 설계
 - 보고서(도면) 작성 : 제 조사자료를 포함하는 보고서, 도면 작성
- 지하수영향조사 : 수맥조사 결과 지하수개발·이용 가능지구에 대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예측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
- 광역수맥조사 : 기존의 수맥조사 결과와 개발·이용중인 암반관정의 수위, 수질조사자료 등을 이용하여 시·군 또는 농어촌 용수 구역 단위의 광역적 수맥조사
 - ※ 시·도지사가 가뭄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요청할시, 시·군단위 (농어촌용수구역별 구분 표시)의 광역수맥조사를 시행할 수 있음
- 해수침투조사 : 지하수 관측정설치 등으로 해수침투 및 채수량변화 관측 (관측정은 기존의 관정 및 조사 시추공을 최대한 활용)

(4) 지원조건 : 국고 100%

나. '99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계	예 산 액 (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기 타		
계		4,457	4,457	4,457	-	-	-
수 맥 조 사	6,000ha	4,380	4,380	4,380	-	-	-
해수침투조사	7개소	77	77	77	-	-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개발국 농촌용수과(전화 : 02-500-2666~7)
- 시·도 : 농정국 기반조성과
(시·도에 따라 농지개량과, 농업기반과, 농산지원과, 농정과)
- 시·군 : 건설과 농지계(시·군에 따라 기반조성계)

다. 사업시행자 : 농어촌진흥공사

라. 사업추진절차(추진체계도)

예산내시 → 사업시행계획수립 및 승인 → 지구선정(시·도협의) → 조사시행
→ 성과품 제출(해수침투조사 관측정은 시군에 이관)

< 사업계획수립 >

가. 사업대상지구선정

(1) 선정기준

- 수맥조사
 - 농업진흥지역내의 가뭄상습지역으로 농어촌발전 계획에 반영된 지구
- 해수침투조사
 - 장기관측계획 우선순위에 의거 시·도지사가 요청한 지구

(2) 우선순위

○ 수맥조사

- 당해연도 지하수개발 예정지역을 우선하여 선정
- 시·도지사가 가뭄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음

○ 해수침투조사

- 시·도지사가 요청한 지구중 우선순위에 의한 장기관측 계획에 의함

나. 세부설계실시 및 시행계획수립

농어촌진흥공사사장은 당해연도에 내시된 예산 범위내에서 '99암반관정개발 및 해수침투조사 대상지구를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농림부에 사업시행계획승인 신청을 함.

< 사업시행 >

가. 사업시행인가 및 조사시행

농림부의 사업시행계획승인에 따라 농어촌진흥공사사장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세부조사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당해연도 암반관정 개발대상지를 우선하여 조사를 시행함

나. 공정계획

당해연도 지하수개발 예정지역을 우선하여 공정계획을 수립하되, 지하수개발 물량이 많을 경우에는 조사물량을 조정하는 등 가뭄대책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공정계획을 수립함

다. 용지매수보상

지하수개발조사사업 수행시 편입용지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과 협의하여 시행하되,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공공용주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 보상규정에 의함.

라. 사업 준공

- 사업시행자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당해연도 사업시행인가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농림부장관에게 완료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농림부장관은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선별 점검 및 시행계획에서 정한 조사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함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

마. 시추공 처리

- (1) 시추조사 성공공(150m³/일 이상, 단 도서지역은 100m³/일 이상)은 확공 개발을 하기전까지 시장·군수에게 인계인수함
- (2) 시추조사 실패공
 - 지역주민이 시추조사 실패공의 이용을 요청시는 농어촌진흥공사가 지하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하수오염방지조치를 취한 후, 시장·군수에게 인계하여 지역주민이 활용토록 함
 - 지하수법시행령 제23조(원상복구의예외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음
 - 지하수의 수위관측망 또는 수질관측망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 지형여건상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 상기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시추조사 실패공은 지하수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원상복구 규정에 의거 폐공처리함
 - 폐공처리되는 시추공은 관정 및 양수장비관리지침 제1호 서식에 의거 기록관리하고, 타용도 이용 및 폐공처리 완료시까지 철저히 관리함
- (3) 시추조사공을 관측정으로 활용할 경우 건설교통부 및 환경부와 사전협 의하여 중복설치되는 일이 없도록 함

< 사업비 지원 >

가. 예산지원

- (1) 지역별로 가뭄상황에 따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2) 당해연도 지하수개발 대상지구에 대하여 우선 지원함.
- (3) 투자계획에 의한 조사면적이 많은지구를 감안하여 지원함.
- (4) 농림부장관이 지시 또는 승인한 지구는 가능한 한 국고 지원.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조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지방비로 시행할 수 있음

나. 자금의 운용관리

- (1) 사업시행자는 사업비에 대하여 각각 별도계정을 설정 운영
- (2) 사업시행자는 배정받은 사업비 자금의 집행에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하지 못하며, 집행잔액에 대하여 농림부 장관의 승인없이 사용할 수 없음

다. 사업비 검정 및 결산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실행검정 및 결산 요령에 준함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1) 사업시행자는 조사된 자료는 전산화 및 도면화 하여 관리하여야 함
- (2) 사업시행자는 가뭄시 즉각 활용이 가능하도록 수맥조사보고서를 시·도 시·군에 배부 하여야 함

나. 보 고

지하수개발조사 추진상황보고 : 매 분기말 현재 추진실적을 익월 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별지 제1호 서식)

II. 농업용수 수질조사·연구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시설관리과(과장 류성곤, 행정 사무관 남궁선)입니다.

1. 목 적

- 농업용수원에 정화되지 않은 생활하수·축산분뇨 및 공장폐수 등의 오·폐수가 유입되어 수질오염이 확산 또는 심화되고 있어 종합적인 수질관리체계 구축으로 양질의 농업용수 확보
- 농업용수원에 대한 수질조사 등 적극적인 수질보전대책 추진으로 깨끗한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

2. 시책 및 추진방향

- 수질조사 및 수질실태조사 확대로 수질관리 정책자료 확보
- 수질개선대책 수립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시험사업 추진
- 수질 개선공법 연구 및 수질정보관리시스템 개발로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수질관리 도모

3. 근거법 : 환경정책기본법 제15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19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96	'97년	'98년	'99년 (예산안)	2000년	2001-2004	
사업량 (지점)	150	175	200	350	500	550	
사업비	계	1,349	1,500	1,750	1,677	1,820	7,830
	보조	1,349	1,500	1,750	1,677	1,820	7,830
	융자	-	-	-	-	-	-
	지방비	-	-	-	-	-	-
	자부담	-	-	-	-	-	-

5. '99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사업추진배경

- 농업용수의 수질오염이 심화 또는 확산되고 있어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수질관리 필요
- 수질이 나쁜 농업용수의 수질개선대책 추진을 위한 수질개선공법의 개발 및 시험사업 추진 필요

(2) 사업내용

(가)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운영

- 조사내용 : 350지점에 대한 연 2회 수질 및 오염원 현황 등 조사
- 수질조사항목
 - 현장조사(5항목) : PH, 수온, EC, DO, BOD
 - 실내실험(13항목) : PH, EC, COD, SS, T-N, T-P, 중금속류 등

(나) 농업용수원 수질실태조사

- 조사내용 : 농업용수원(50지구) 및 상류 유입하천 등에 대한 수질조사 및 유역에 대한 오염원 현황 등을 조사하여 수질개선대책 수립
- 수질조사항목 : 수질측정망조사와 동일

(다) 수질개선 시험사업(충남 아산시 마산저수지)

접촉산화수로, 호안생물서식공간, Bio-park 등을 설치하여 수질개선효과 시험

(마) 수질정보 종합관리시스템 개발(충남 당진군 삽교호)

호소 및 유역에 대하여 GIS기법을 이용한 수질오염원 등의 D/B구축, 수질예측모형 개발 및 수질개선을 위한 처리대안 시스템 개발 등

(바) 수질개선공법 등 연구(2건)

수생식물에 의한 수질개선공법, 수질개선을 위한 수처리조 배열기법 연구 등

(3) 지원대상 : 농업생산기반시설

(4) 지원조건 : 국고 100%

나. '99년도 사업비(예산안)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소계	보조	용자		
계		1,677	1,677	1,677	-	-	-
농업용수 수질측정망조사	350지점	700	700	700	-	-	-
수질실태조사	50지구	150	150	150	-	-	-
수질개선시험사업	1지구	327	327	327	-	-	-
수질정보종합관리시스템개발	1식	250	250	250	-	-	-
수질개선공법 등 연구	2건	250	250	250	-	-	-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 당해년도 예산이 내시되면 농어촌용수 전문검사기관(농어촌진흥공사사장등)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한다.
- 농림부장관은 농어촌용수 전문검사기관, 농어촌진흥공사사장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을 검토하여 승인한다.
 - 계속사업은 기 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시행계획을 제출토록 하여 승인할 수 있다.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농촌개발국 시설관리과(전화 : 02- 504- 9408)

다. 자금지원대상자

- 수질측정망조사 및 수질실태조사는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8조의 농어촌용수 전문검사기관
- 수질개선시험사업, 수질정보종합관리시스템개발 및 수질개선공법 등 연구 사업은 농어촌진흥공사 농어촌연구원(전화 : 0345- 400- 7186)

※ 연구 및 시험 사업은 학계 또는 시설관리자 등과 공동시행 가능

라. 사업시행

- 사업시행계획 승인 신청(2월말까지) → 사업시행계획 승인(3월) → 사업시행(3월~11월말까지) → 정산신청(12. 15까지) → 보고서 제출(12. 30까지)
-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의 예산내시를 기준으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단위 사업별로 세부공정별 추진일정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는 연도중에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비의 집행은 사업시행계획 승인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조금교부결정을 한 후에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산급 지급 및 연도말검정에 의하여 실비정산한다.
- 사업시행자는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자금을 성실히 운영하여야 하며, 배정 받은 자금의 집행을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하지 못하며, 집행잔액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사용할 수 없다.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완료한 후 당해 연도 사업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정산서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연도말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농림부장관은 제출된 정산서의 내용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서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여부 및 사업비의 집행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사업비 검정 및 결산은 농림부의 “농촌개발사업 실행검정 및 결산요령” 및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바. 기타사항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련 법령, 지침, 규정 등을 적용한다.

Ⅲ. 해외농업 투자환경조사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무역진흥과(과장 최희중, 행정 사무관 조일호)입니다.

1. 목 적

- 세계식량시장의 수급불안과 통일에 대비, 안정적인 식량공급원 확보를 위하여 민간의 해외농업개발여건 조성
 - 민간의 해외농업투자 희망지역 및 투자유망지역에 대한 투자환경조사 지원을 통하여 민간기업의 해외농업투자 촉진
 - 민간기업의 해외농업투자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시 겪는 정보 및 기술부족 등 애로사항 해결

2. 시책 및 추진방향

- 기본방향
 - 정부주도의 개발보다 수익성에 바탕을 둔 민간주도 방식으로 추진하되 정부는 기술, 정보, 금융 등 간접지원
 - 농진공의 「해외농업투자기술지원단」을 활용, 투자환경조사 및 기술지원
- 지원방안
 - 해외농업 투자환경조사
 - 해외농업 투자유망지역의 투자환경을 조사, 민간업체에 정보제공
 - 농진공, 농진청 등의 분야별 전문가를 통하여 기후, 토양, 수송, 투자관련 제도 등 조사분석
 - 해외농업투자 기술지원
 - 해외농업투자업체의 요청에 따라 기술지원단에서 분야별로 기술자문
 - ※ 지원분야 : 기반조성, 농장설계, 저장, 가공 등 관련기술
 - 해외농업투자 상담실 설치·운영 : 정보제공 및 애로사항 해결 등

3. 근거법령 : 해외자원개발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9조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92-'96	'97	'98	'99 (예산안)
사 업 량		-	2지역	2지역	1지역
사업비	계	-	500백만원	498	120
	보 조 용 자	-	500	498	120
	지방비	-	-	-	-
	자부담	-	-	-	-

5. '99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사업추진배경

- WTO체제 출범 및 수입자유화로 농산물의 해외의존도는 점차 늘어날 전망이므로 안정적인 해외식량공급기지 확보필요
- 민간기업들의 해외농업개발에 따른 위험부담 사전제거와 관련전문기술 지원필요

(2) 사업 대상

- 투자환경조사
 - 사업지역 :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1개 지역
 - 지원대상 : 민간기업

(3) 사업시행주체 및 지원방식

- 사업시행주체 : 농어촌진흥공사
- 지원형태 및 수준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나. '99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사업비합계	예산액(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1개지역	120	120	120	-	-	-
투자환경조사	1개지역	120	120	120	-	-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국제농업국 무역진흥과 (02-503-7298)

다. 사업시행

(1) 사업시행계획

- 투자환경조사(민간기업과 합동조사)
 - 곡물별 개발가능지 및 투자환경조사로 개발적지 파악
 - 투자환경에 따른 투자개발방안 연구
 - 곡물별 중장기 개발계획 및 투자계획 수립
- 사업소요기간 : 1999. 1. 1~1999. 12. 31(1년)
- 사업규모
 - 투자환경조사 :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1개지역

(2) 사업비 집행방법

- 투자환경조사
 - 사전조사 : 국고보조 100%
 - 예비타당성조사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3) 추진일정

- 세부사업계획수립 및 승인 : '99. 1월
- 수요조사 공고 및 접수 : '98. 12
- 조사대상국가 결정 : '99. 2월
- 조사시행 및 보고서 작성 : 5월말~11월중순
- 사업비 정산 : 12월말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사업 추진평가

(1) 목적

-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해외농업투자환경조사사업에 대한 평가 실시
- 평가결과는 차기 조사에 반영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함

(2) 평가방법

-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각 분야별 전문가 의견 수렴
- 농진공에서 조사 평가서를 작성하여 연말에 해외농업투자환경조사사업 평가회 개최

(3) 조치사항

- 평가결과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향후 조사계획에 반영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함

조사결과 활용방안

(1) 조사결과 및 관련 정보는 농진공에서 지역(국가)별, 농장별 분석·정리

- 민간기업 단체, 개인 등의 조치결과도 농진공에서 제공받아 해외농업투자 정보로 관리

(2) 관련정보는 투자 희망기업 및 민간인에 제공하여 해외농업투자사업으로 연계토록 지원

- 투자 자문을 통해 해외농업투자 상담실 운영
- 관련정보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민간기업 관련단체 회원지에 수시로 게재

- 천리안 등 전산 통신망에 관련 정보를 검색 가능토록 게재
- 투자 관심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역별 투자 설명회 등을 통해 당해 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 유도

나. 보고 및 기타

- 국가별 투자환경 세부조사계획 : 투자환경조사단 파견 7일전
- 국가별 투자환경 조사결과보고 : 조사후 30일 이내(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사업실적 및 평가보고서 : 최종 조사후 30일 이내

6. 200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농어촌진흥공사 국제협력처(해외농업투자 기술지원단)

나. 신청자격

(1) 기본요건

- 대한민국에 본사의 소재지를 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민간기업에는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축산업협동조합,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실수요 업체도 포함

(2) 농지확보

- 자체 개발계획안이 수립되고 투자 대상국 정부와 토지구입 또는 임차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구체적으로 진행중일 것

(3) 농업생산물 적합성

- 콩 , 옥수수, 밀 등 곡물생산을 목적으로 할 것

(4) 기업경영 안정성(모든 항목 해당; 다만, 중소기업 및 실수요업체의 경우 이에 준한 기준 적용)

- 신청일 현재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 상시종업원수가 30인 이상인 기업
- 최근 결산년도 자산총액이 5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결산년도의 부채비율이 800%를 넘지 않는 기업
- 조달청 등 공공기관의 응찰규제업체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등록되지 아니한 기업

다. 신청절차

- 농진공 기술지원단의 신청공고에 의하여 기간내 신청서 접수

라.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양식 별첨)

- 신청자격 유무판단
- 기업현황
- 사업 계획서

마.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중소기업 및 실수요업체의 경우 이에 준한 기준을 적용)
 - 기업건실도 :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총자본 경상이익율, 총자본회전율 등 평가
 - 기업경력 : 사업경력, 해외사업경력 등
 - 기술인력 보유 : 종업원수, 박사·기술사 보유현황, 해외사업종사인원 등
 - 사업계획 평가 : 농산물품목, 진출희망국, 개발계획규모, 기업조사수준, 계획실현성, 계획의 적절성, 경영의지 등
 - 타분야 진출효과 : 타분야 연계진출 가능성, 국산영농자재·농기계 수출 효과 등

○ 신청 및 심의(지원) 절차

- 농진공에 신청, 지원자격요건 검토
- 농진공 해외농업투자환경조사지원 기술심의회 심의
- 농림부 해외농업투자지원 실무협의회 심의 및 정책심의회 심의(필요시)
- 농진공에서 조사지원 계약 체결 및 조사시행

신청자격	있음	없음
------	----	----

I. 신청자격 유무 판단

1. 개발후 생산하고자하는 농산물명 :

2.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 사업자등록증상 설립일자 년 월 일 (사업기간 : 년 월)

3. 상시 종업원수가 30인 이상인 기업

*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최근 3개월분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상의 종업원수

월	월	월	합 계	평 균	비 고
명	명	명	명	명	

4. 최근년도 자산총액이 5억원 이상인 기업

*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최근 결산년도 (연도) 재무제표상의 자산 총액 :

5. 최근 결산년도 부채비율이 800% 이하인 기업

6. 조달청등 공공기관의 응찰규제업체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이 아닌 기업

* 신청자격 미달자는 접수하지 않음

* 기재한 내용이 제출한 증빙자료와 맞지않는 경우 신청이 무효가 됩니다.

II. 기 업 현 황

1. 회사 연혁 (농업분야사업을 중심으로)

연 월 일	주 요 내 용

* 기재요령 : 회사설립, 상호변경, 대표자 변경, 기술도입, 합작투자, 법인전환 등을 기입

2. 자본금 현황

(최근 3개년 값)

구 분	199 년	199 년	199 년	평 균 값
총 자본금액				
자기자본율(%)				
총 부채금액				
부채비율(%)				

3. 총자본 경상 이익률 및 총자산 회전율(%)

(최근 3개년 값)

구 분	199 년	199 년	199 년	평 균 값
매출액				
경상이익				
부채				
자본				
총자본 경상 이익율(%)				
총자산 회전율(%)				

* 총자본 경상 이익률(%) = [경상이익 / (부채+자본)] × 100

* 총자산 회전율(%) = [매출액 / 총자산] × 100

4. 최근 결산년도 손익계산서 (년도) (단위 : 백 만원)

과 목	금 액	
1. 매출액		
2. 매출원가		
3. 매출총이익		
4.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5. 영업이익		
6. 영업외 수익		
7. 영업외 비용		
8. 경상이익		
9. 특별이익		
10. 특별손실		
11. 법인세차감전 순이익		
12. 법인세등		
13. 당기 순이익		

5. 해외사업 인력보유 현황

가. 조직 (조직표)

부 서 명 칭	근무인원	설치년도	업 무 개 요
XXX 처			
YYY 부			
ZZZ 과			

나. 기술인력 보유현황

현 직위	성 명	기술분야	기술등급

* 기술등급 : 박사, 기술사 로 구분

Ⅲ. 사 업 계 획

1. 사업개요

가. 의뢰국가명 :

나. 조사지역명 :

다. 시험재배지역명 :

라. 사업규모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추진일정 ○ - -						
사업비 (천USD)						
개발면적 (ha)						
품목별 생산량(ton) - -						

※ 추진일정은 항목별로 분리하여 기록

2. 사업내용

가. 사업업종 :

나. 운영주체 :

다. 생산품목 :

라. 가공 또는 판매계획 (국내반입 여부 포함)

마. 타분야 연계진출계획 (계수화)

※ 복합 영농계획시는 그 내용도 세부적으로 기술

3. 조사구분

농업투자환경조사(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농장개발기술지원을 구분하여 명시

4. 현장조사계획

가. 조사대상 지역 :

나. 조사기간 : 1999. 부터 1999. 까지 (일간)

다. 조사분야 및 항목

조사분야	조사항목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성 명	학 력

라. 조사비용

항 목	세 부 산 출 내 역	금 액 (원)
총 액		
1. 항공료		
2. 여 비		
3. 조사재료비		
4. 현지인건비		
5. 기 타		

* 항목별 세항을 분리·기록하고, 세부산출내역에는 객관성있는 단가를 적용

5. 사업진행현황

6. 향후계획

7. 기타사항

<사 업 명: 해외농업투자환경조사>

구분	현행('98)	변경안('99)	변경사유
I. 신청자격	<p>(1) 농업생산물 적합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콩, 옥수수, 밀 등 곡물 생산을 목적으로 할 것 <p>(2) 기업경영 안정성(모든 항목 해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일 현재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 상시종업원수가 30인 이상인 기업 ○ 최근 결산년도 자산 총액이 5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결산년도의 부채 비율이 800%를 넘지 않는 기업 ○ 조달청 등 공공기관의 응찰규제업체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등록되지 아니한 기업 	<p>(1) 기본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에 본사의 소재지를 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민간기업에는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축산업협동조합, 농수산물유통공사등 실수요업체도 포함 <p>(2) 농지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개발계획안이 수립되고 투자대상국 정부와 토지구입 또는 임차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구체적으로 진행중일 것 <p>(3) 농업생산물 적합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콩, 옥수수, 밀 등 곡물 생산을 목적으로 할 것 <p>(4) 기업경영 안정성(모든 항목 해당; 다만, 실수요업체의 경우 달리 적용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일 현재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 상시종업원수가 30인 이상인 기업 ○ 최근 결산년도 자산 총액이 5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결산년도의 부채 비율이 800%를 넘지 않는 기업 ○ 조달청 등 공공기관의 응찰규제업체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등록되지 아니한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8 해외농업투자 환경조사지침('98.4.9 차관결재)에 의거 전년도 사업시행 지침과 달리된 점 보완

IV. 농업생산기반종합정비 시범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용수과(과장 허유만, 토목사무관 김재홍)입니다.

1. 목 적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등의 생산기반정비사업을 수계 등 권역중심으로 종합·일체화하여 추진하므로서 사업효과 극대화

- 단위사업간 연계성 유지 및 중복투자 방지
- 기본조사·세부설계·입찰·계약 등의 사업시행절차를 일원화하여 시간과 비용 절감

2. 시책 및 추진방향

- '98년까지 완료되는 전국의 464개 용수자원조사 결과를 종합·정리하여 권역단위로 종합개발 지표 설정
 - 종합개발 지표의 우선 순위에 따라 권역단위로 연차별 개발·추진
- '99년도에는 종합개발방식의 시범모델 개발을 위해 조사설계후 시범사업 착수
 - 사업량 : 4지구 1,800ha (지구당 300~600ha)
- 수로구조물화, 대구획화, 자동물관리시스템 도입 등 시설 현대화로 미래 지향적이며 규모화된 영농기반 조성
- 전국의 464개 용수구역중 사업시행여건이 양호한 지역으로서 시범사업으로서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
 - 경사도가 완만하고 집단화된 경지
 - 소요사업비가 저렴하고 주민 호응도가 양호한 지역
 - 도시·공단 등 타용도로 전용가능성이 없는 지역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조 내지 제21조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92-'96년	'97년	'98년	'99년 (예산안)	2000이후
사업량(지구)			(2)	2 (2)	
사업비(백만원)			1,769	3,814	
- 국 고			1,769	3,592	
- 지방비				222	

※ ()는 세부설계지구수

5. '99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 개요 >

가. 사업 내용

(1) 추진 배경

- 지금까지 단위사업별 예산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되어온 농업용수, 경지정리 등 생산기반정비사업을 수계 또는 권역단위로 다양한 개발 공종을 package화하여 연계 추진하므로써 비용절감과 절차간소화 등 사업효과 극대화
- 세부사업간 연계성을 유지하는 한편, 투자 및 사업시행절차의 중복 등의 문제점을 제거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중규모 종합 개발 지원방식의 도입이 필요
- '98~'99년 시범사업지구 조사설계후 '99년 하반기에 사업 착수
 - 시범사업 추진과정에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체계 정착과 확대 추진

(2) 주요 사업내용

- 사업규모 : 지구당 수혜면적 300~600ha
- 사업내용 (선택가능한 세부사업)
 - 농업진흥지역내 용수개발 대상지역내에서 복수의 사업을 선택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종합개발
 - 농업용수 신규·보강개발 (저수지·양수장·용수로 설치 및 보강)
 -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받기반정비
 - 경지정리 (일반경지정리 및 대구획경지재정리)
 - 배수개선
 - 기타 종합개발이 가능한 생산기반정비사업

(3) 지원 대상

- 시장·군수(사업시행자)
 -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당해지역을 관리하는 농지 개량조합장에게 위탁시행 가능

(4) 지원 조건

- 소요재원부담 : 사업비는 국고90%, 지방비10% (조사설계비는 국고 100%)
 - ※ 사업비 부담율은 개별사업별 지원보조율의 평균치임
- 지원액 : '99년에 시범사업 착수비 우선 지원후, 2000년이후는 예산확보 결과에 따라 년차별 지원

나. '99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사업량 (지구)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산액 (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응 자		
(2) 2	3,814	3,592	3,592	-	222	-

※ ()는 세부설계지구수

< 추진 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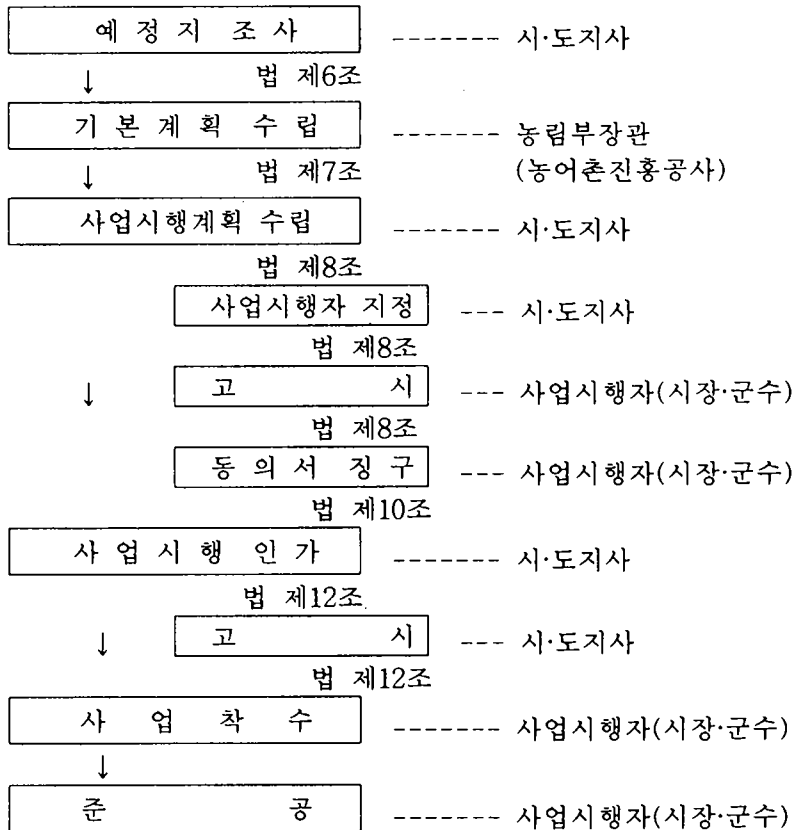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1) 농림부 농촌개발국 농촌용수과 (02-500-2666,2667)

(2) 사업시행자 : 사업지역 시·군 건설과

《 사업추진 체계도 》



다. 사업시행

(1) 예정지조사

- (가) 시·도지사는 당해 시도에 배정된 사업량·예산액 등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시장·군수)의 신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지역에 대한 예정지조사를 실시함
- (나) 농업생산기반의 권역단위 종합개발을 통하여 투자효율을 높이고, 시범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함
 - 전국의 464개 용수자원구역중 농업진흥지역내
 - 단위사업간 연계성 유지가 가능하고, 공사비·용지매수비, 입찰경비, 설계·공사감리비 등을 절약할 수 있는 지역
 - 개발대상지역이 경사도가 완만하고 집단화되었으며, 소요사업비가 저렴하고 주민호응도가 양호한 지역, 도시·공단 등 타용도로 전용가능성이 없는 지역 등 사업시행여건이 양호한 지역
- (다) 예정지조사시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개발계획 등을 수립하고 사업타당성을 분석하여야 하며, 예정지조사 보고서에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2)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 (가) 기본조사는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형편,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실시함. 기본계획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개별사업별 추진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함
- (나) 기본조사시에는 공종(工種)별로 기본설계를 실시하여 사업비를 산출하고, 주요 공종에 대하여는 대안별 비교 설계를 통하여 최적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여야 함

(3)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계획수립

- (가)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의 타당성·경제성, 예산형편 등을 감안하여 농어촌진흥공사 사장에게 세부설계를 위탁하거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체를 선정하여 용역시행을 실시할 수 있음

- (나) 세부설계시에는 최신기술 도입과 충분한 비교설계를 통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최적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주요구조물(방조제, 배수갑문, 저수지, 대형 수로구조물, 관수로, 양·배수장, 터널 등)을 설치할 곳에 대하여는 기존지반의 지질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공사시행중 계획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마) 세부설계를 완료한 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2조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 설계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세부설계 내용을 검토하고, 지구여건·예산형편 등을 감안한 추진계획 등을 포함하여 사전에 농림부와 협의한 후 사업시행계획을 수립 함

(4) 환경영향평가

-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명시된 공사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나) 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항목은 환경영향평가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함
- (다)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실비로 정산

(5)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 (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사업참여 자격자의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함
- (나)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인가를 한때에는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고, 인가내용을 고시하여야 함
- (다) 사업시행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제규정에 의거 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자를 선정함
- (라) 공사입찰은 과도한 제한경쟁이나 불필요한 수의계약으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

(6) 연도별 사업시행

- (가) 사업시행자는 내시된 예산에 따라 연도중 시행해야 할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나) 시·도지사가 연도별 사업시행계획 승인에 앞서 사업시행계획내용을 농림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다) 사업효과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공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분산투자를 지양하여야 함

(라) 연도별 사업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가장 최근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 | |
|-------------------|------------------|
| 1) 사업추진경위 | 2) 사업계획개요 |
| 3) 사업추진현황 및 계획 | 4) 공종별 추진물량 및 금액 |
| 5) 연도별 수지예산서(재원별) | 6) 기타사항 |

(마) 투자사업비는 개별사업별로 구분하여 연도별로 작성함

(바)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의 승인이 있는 후 20일이내에 월별 세부공정(工程)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농림부에 보고하여야 함

(7) 시행계획변경

(가) 계획변경(설계보완)은 최대한 억제하되, 특별한 사유로 부득이한 때에는 시·도지사 책임하에 계획변경을 실시하고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다만,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다 음 》

- 주요시설의 구조물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수원공과 배수장·방조제·배수갑문 및 터널의 규모·형식·위치 등의 변경
- 길이 100m이상 교량공사의 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 터널·댐 등의 특수한 구조물 공사의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 기타 특수 전문기술의 추가 또는 공법의 변경
 - 중요 수문처리기법의 변경
 - 기초지반개량공법 및 토취장의 변경
 - 특수공종의 신설 또는 변경

(나) 설계변경으로 총사업비가 변경하는 경우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라) 계획변경에 있어 당초 설계자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설계비 회수 및 관계자에게 책임을 물음

(8) 용지매수 및 보상

(가)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되, 사전에 대상물건 조사를 철저히 하여 보상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장애물 보상은 보상비 지급후 철거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나) 공사시행 시기에 부합하도록 용지매수 및 보상의 적정시기를 판단하여 집행하므로써 공사시행의 원활을 기하고, 보상 적기를 놓쳐 작물경작 등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함

(다) 용수로의 경우 연속적인 시공이 가능하도록 용지의 매수 및 보상을 실시하되, 용지매수 불응 등을 이유로 공사를 분산 시행하여 용수 공급이 지연되는 등 사업효과의 조기 달성에 차질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

(9) 공사감리

(가) 공사감리원은 전문기술자를 복수로 고정 배치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나) 공사감리는 시범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하거나, 자격있는 감리전문업체에 용역시행 할 수 있음

(다) 공사감리원은 공종에 따라 자격있는 기술자가 담당하고, 공사물량에 상응하는 적정인원을 배치하여야 함

(라) 공사감리원은 공사감독업무규정, 계획도서 등을 숙지한 후 감리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공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하여야 함

(마) 주요구조물의 경우에 시공후 매설되는 부분(기초처리 포함)과 특수 기술을 요하는 전문분야의 공종에 대하여는 복수확인제를 실시하고, 시공 확인자료와 현장일지를 상세히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함

(바) 주요구조물(양배수장, 댐, 배수갑문, 평야부의 대형공작물 등)의 기초 터파기 공사는 공사감독을 직접 담당하지 않는 전문기술 요원과 2급 기술자의 공동검사결과 보고서에 사진을 첨부하여 보존하여야 함

(10) 검 사

(가) 기성고 확인

○ 사업시행자는 기성고 확인을 필한 후 기성금액을 확정함

(나) 연도말 검정

○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실행검정 및 결산요령에 준함

(다) 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 시·도지사는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공사계약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도서, 기타 관련서류를 기초로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준공검사시 지적사항이 있어 이를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인가를 함
 - 사업준공시에는 사업비, 개발면적, 시설물의 관리상황 등을 확인 하여야 함

(11) 기타 사항

(가) 종합개발을 통하여 최대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경지정리 병행시 지구내 도로, 용·배수로, 배수로구역의 감보처리 (용지매수비 절약)
- 용·배수로, 정지 굴찰토량의 유용성토 처리(공사비 절감)
- 세부사업을 일괄 설계함에 따른 설계·공사감리. 요율 인하(설계감리비 절약)
- 기타 입찰공고료 등 절감

(나) 사업효과를 조기에 거둘 수 있는 공종을 우선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다) 하천개수가 되지않은 지역의 경지정리, 배수개선사업 시행은 하천 관리청과 사전 협의하여 하천개수사업을 병행 시행하고, 하천개수 사업비는 하천관리청이 부담토록 함

< 행정 사항 >

가. 사후관리

- 사업시행자는 부분 완공된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함
- 공사감리자는 사업준공시 준공도서 및 시설물관리규정을 검토하여야 함
- 공사하자 및 미비사항은 즉시 보완조치후, 사업시행자 및 시설관리자에게 시설물을 인계인수하여야 함
- 시설관리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나. 보 고

- (1) 사업시행계획수립보고 : 시·도지사 → 농림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사항[별지 제1-1호, 제1-2호 서식 포함]
- (2) 사업추진상황보고 : 매 분기말현재 실적을 익월 1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
[별지 제2호 서식]

다. 기 타

- 본 요령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개별사업의 시행지침과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함

6. 200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 '98년에 선정된 사업대상 4개지구에 대하여 '99년이후 시범사업 추진과정에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체계 정착과 확대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 이므로 “해당 없음”

[별지 제1-1호 서식]

농업생산기반종합정비 사업비수지예산서

지 구 명 : _____ 착 공 일 : _____ 준공예정일 : _____
 사업시행인가일 : _____ 증 수 량 : _____ M/T
 개 발 면 적 : _____

< 수 입 >

(단위 : 천원)

과 목	총사업비	단 위 사 업 별 내 역						비고
		농업용수	배수개선	경지(재)정리	경지정리	발기반정비	기계화경작도	
국 고 지 방 비 지방교부금 기 타								
계								

< 지 출 >

(단위 : 천원)

과 목	총사업비	단 위 사 업 별 내 역						비고
		농업용수	배수개선	경지(재)정리	경지정리	발기반정비	기계화경작도	
공 사 비 o순 공사비 o지급자재대 용지매수보상비 기 타 o측량설계비 o공사감리비 o사업관리비 o잡 지 출 o								
계								

[별지 제1-2호 서식]

농업생산기반종합정비 사업비수지예산서

지 구 명 :
 사업시행인가일 : 착 공 일 : 준공예정일 :
 개 발 면 적 : 증 수 량 : M/T

< 수 입 >

(단위 : 천원)

과 목	총사업비	연 도 별 내 역			비 고
		전년까지	금년계획	내년이후	
국 고					
지 방 비					
지방교부금					
기 타					
계					

< 지 출 >

(단위 : 천원)

과 목	총사업비	연 도 별 내 역			비 고
		전년까지	금년계획	내년이후	
공 사 비					
○순 공사비					
○지급자재대					
용지매수보상비					
기 타					
○측량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잡 지 출					
○					
계					

※ 총괄표 및 공구별로 작성

○○지구 농업생산기반종합정비사업 진도보고

< 수 입 >

(단위 : 백만원)

과 목	총 계 획		전년 까지		금 년 계 획					누계 진도 (%)	내년 이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진도 (%)	총계획 (A)	○/4분기 계 획 (B)	○/4분기 까지실적 (C)	C/A (%)	C/B (%)		
국 고 지 방 비 지방교부금 기 타											
계											

< 지 출 >

(단위 : 백만원)

과 목	총 계 획		전년 까지		금 년 계 획					누계 진도 (%)	내년 이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진도 (%)	총계획 (A)	○/4분기 계 획 (B)	○/4분기 까지실적 (C)	C/A (%)	C/B (%)		
공 사 비 ○순 공사비 ○지급자재대 용지매수 및 보 상 비 기 타 ○측량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잡 지 출 ○											
계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용수과(과장 허유만, 토목사무원 전경구)입니다.

1. 목 적

강이나 하천 등 수계 중심의 특정권역에 대하여 수자원 확보, 농촌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간척지개발 등 농업생산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영농 및 생활환경 개선

2. 시책 및 추진방향

- 종합개발을 통한 투자효율 제고
- 준공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신규지구는 시행중지구의 준공계획과 연계하여 착수 추진
- 사업효과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공종을 대상으로 부분완료 위주로 사업시행
- 시설물 인수예정 농조를 조기에 지정하고, 부분 완공된 시설물 관리 철저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조-제21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92~'97	'98	'99 (계획)
사 업 량		2지구 완공 7지구 계속	1지구 완공 6지구 계속	1지구 기본조사 6지구 계속
사업비	계	11,640	3,335	2,582
	국 고	8,980	1,675	1,682
	기 금	2,660	1,660	900
	지방비 자부담			

주) 42조원 구조개선사업 및 농어촌용수 10개년계획 위주로 작성

5. '99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 내용

(1) 사업추진 배경

- '70년초까지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하여 영농환경열악 및 식량부족
 -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재원 및 기술부족으로 소규모 저수지, 경지정리, 간척 등의 단위사업별로 추진되고 그 실적도 미미
 - 한·수해 발생, 인력·축력에 의한 영농 등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저조
 - 외국인조에 의한 국민식량 조달
- 대규모 종합개발방식의 농업생산기반정비의 필요성 대두

(2) 주요 사업내용

- 저수지·방조제·하구둑·양수장 등의 건설로 용수를 확보하여 농촌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간척지개발 등 농업생산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

(3) 지원 대상

- 농어촌진흥공사 (새만금지구 보상비는 전북도지사)

(4) 지원 조건

- 국고 및 농지관리기금에서 전액 지원 (대행사업비)
 - 농지관리기금은 간척지 개발이 있는 지구에 한하여 지원

나. '99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지구별	개발면적 (ha)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산액 (국고·농지관리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기 금		
계	119,289	258,200	258,200	168,200	90,000	-	-
금 강Ⅱ	43,000	27,000	27,000	27,000	-	-	-
미호천Ⅱ	4,430	19,200	19,200	19,200	-	-	-
홍 보	8,100	18,000	18,000	18,000	-	-	-
영산강Ⅲ-1	13,160	20,000	20,000	15,000	5,000	-	-
영산강Ⅲ-2	7,840	10,000	10,000	8,000	2,000	-	-
새만금	28,300	163,000	163,000	96,000	67,000	-	-
영산강Ⅳ	14,459	1,000	1,000	1,000	기본조사	-	-

< 추진 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1) 농림부 농촌개발국 농촌용수과 (02-500-2666,2667)

(2) 사업시행자

가) 영산강Ⅲ-1·Ⅲ-2·금강Ⅱ·미호천Ⅱ·홍보 : 농어촌진흥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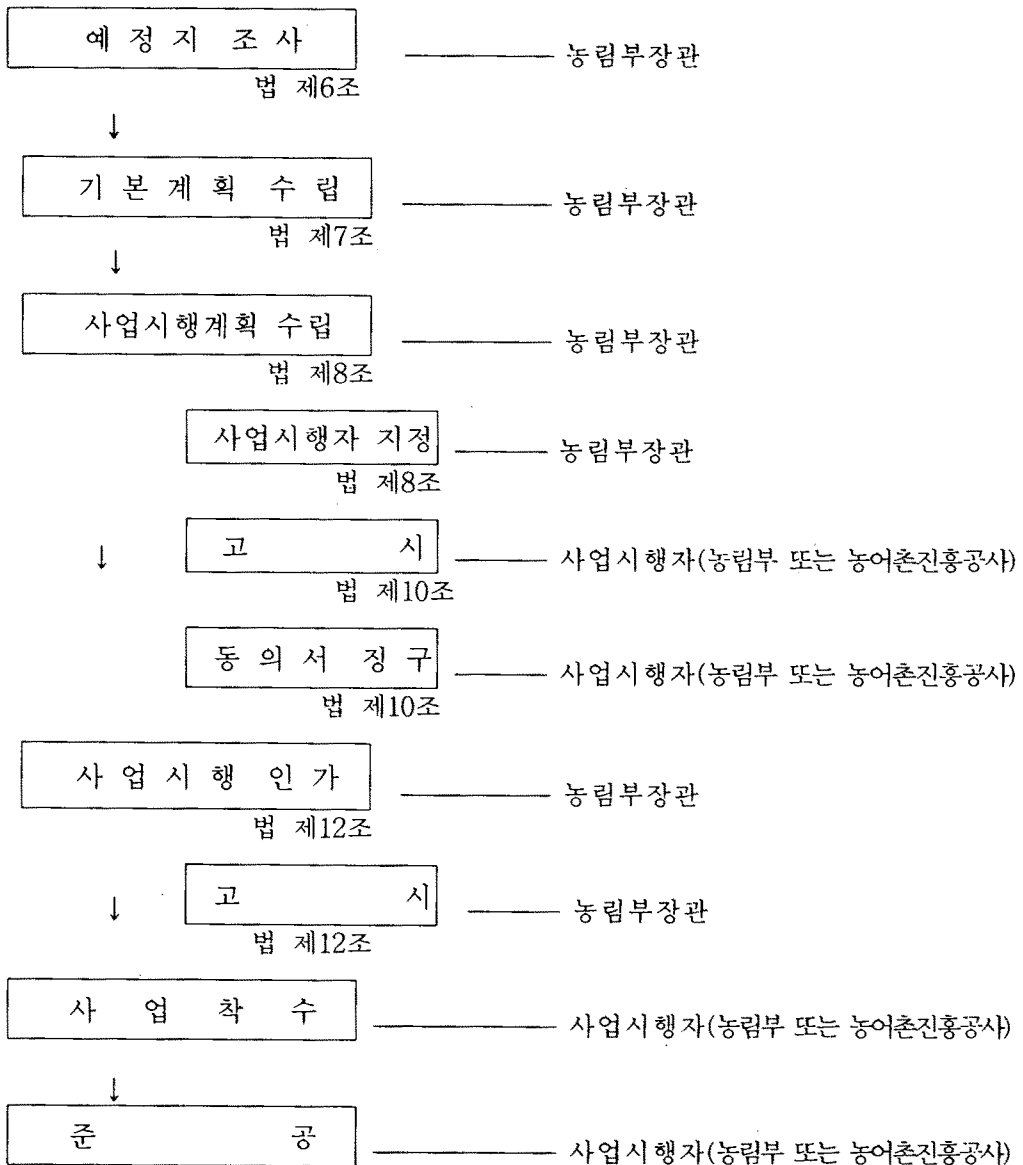
- 본 사 : 농어촌진흥공사 대단위사업처 (0343-420-3450)
- 영산강Ⅱ·Ⅲ-1·Ⅲ-2지구 : 농어촌진흥공사 영산강사업단 (0631-276-2191-5)
- 금강Ⅱ지구 : 농어촌진흥공사 금강사업단 (0654-453-0843)
- 미호천Ⅱ지구 : 농어촌진흥공사 충북지사 (0431-279-3330)
- 홍보지구 : 농어촌진흥공사 홍보사업단 (0451-634-2808)

나) 새만금 : 농림부

- 사업대행자

- 공사 분야 : 농어촌진흥공사 새만금사업단 (0658-540-5821)
- 보상 분야 : 전라북도 새만금지원사업소 (0652-282-8518~9)

《 사업추진 체계도 》



다. 사업 시행

(1) 예정지조사

- (가) 농림부장관은 사업시행자의 신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지역에 대한 예정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나) 농촌용수, 배수개선, 경지정리, 간척지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으며 수혜면적이 3,000ha이상인 지구를 대상으로 함.
- (다) 예정지 조사시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개발계획 등을 수립하고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여야 하며, 예정지조사 보고서에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7조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2)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 (가) 농림부장관은 예정지 조사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구에 대하여 농어촌진흥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기본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기본계획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나) 기본조사시에는 『생산기반정비사업의 측량 설계에 관한 업무기준, '96.1.27, 농림수산부 고시 제1996-7』을 적용, 공종별로 기본설계를 실시하여 사업비를 산출하고, 주요 공종에 대하여는 대안별 비교 설계를 통하여 최적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여야 함.

(3)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계획수립

- (가) 농림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경제성, 예산확보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농어촌진흥공사 사장에게 세부설계를 실시토록 지시함
- (나) 세부설계시에는 『생산기반정비사업의 측량 설계에 관한 업무기준, '96.1.27, 농림수산부 고시 제1996-7』을 적용, 최신기술 도입과 충분한 비교설계를 통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최적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주요구조물(방조제, 배수갑문, 저수지, 대형 수로구조물, 관수로, 양배수장, 터널 등)을 설치할 곳에 대하여는 기초지반의 지질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공사시행중 계획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다) 농어촌진흥공사 사장은 세부설계를 완료한 후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 설계도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농림부장관은 세부설계 내용을 검토하여 사업시행 계획을 수립함

(라) 일시에 전면적인 세부설계를 실시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에는 공구별로 구분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조기 착공이 필요한 공구부터 세부설계를 실시토록 하고, 세부설계가 실시되지 않은 공구는 기본계획서상의 사업비를 기초로 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마) 필요한 경우 세부설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1조를 준용하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처장관의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체를 선정하여 용역시행할 수 있음

(4) 환경영향평가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명시된 공사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나) 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항목은 환경영향평가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함

(다)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실비로 정산

(5) 사업시행인가

(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사업참여 자격자의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함

(나) 농림부장관이 사업시행인가를 한때에는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고 인가내용을 고시하여야 함

(6) 년도별 사업시행

(가) 사업시행자 또는 대행자(이하“사업시행자”라 함)는 내시된 예산에 따라 년도중 시행해야 할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별지 제1호서식)

(나) 사업 효과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공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분산투자를 지양하여야 함

(다) 년도별 사업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가장 최근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1) 사업추진경위
- 2) 사업계획개요
- 3) 사업추진현황 및 계획
- 4) 과목별 추진물량 및 금액
- 5) 년도별 수지예산서(재원별)
- 6) 기타사항

(라) 투자사업비는 개발형태별로 구분하고, 년도별 개발실적은 대단위사업 이외의 여타 일반사업과 지역주민의 자력개발실적을 포함하여 작성함

(마) 년도초의 사업시행계획수립은 전년말 가격으로 우선 작성할 수 있음

(바) 사업시행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후 20일 이내에 월별세부공정 계획서를 제출(별지 제2호서식) 하여야 함.

(사) 사업시행자는 신규지구(공구)의 공사발주시 대상지구(공구)의 발주시기·발주방법 등에 대하여 농림부장관과 사전 협의후 시행하여야 하며, 입찰이 완료된 경우에도 예정가격·낙찰가격·시공회사 등 입찰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특히, 공사발주할 지구(공구)는 예산청과의 총사업비 변경 협의를 하여야 함.

※ 입찰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함.

(아) 사업시행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매년도 사업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3월 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1)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개요
- 2) 사업비 투자계획 및 실적
- 3) 차관 및 채무상환 현황
- 4) 사업별 추진상황
- 5) 기타사항

(7) 시행계획변경

(가) 물가변동에 의한 사업비 변경은 사유 발생후 3개월 이내에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나) 계획변경(설계보완)은 최대한 억제하되, 특별한 사유로 부득이한 때에는 사업시행자 책임하에 계획변경을 실시하고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그러나 당초설계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함. 다만,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3조 2호 규정에 의하여 공사물량의 증감이 앞으로 사업시행할 대상공사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기술심의위원회 심의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 음》

- 주요시설의 구조물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수원공과 배수장·방조제·배수갑문 및 터널의 규모·형식·위치 등의 변경
- 길이 100m이상 교량공사의 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 터널·댐 등의 특수한 구조물 공사의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 국내에서 시공실적이 없는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공사의 변경
- 기타 특수 전문기술의 추가 또는 공법의 변경
 - 중요 수문처리기법의 변경
 - 기초지반개량공법 및 토취장의 변경
 - 특수공종의 신설 또는 변경

(다) 주요 사업계획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정리하여 사업구역의 관할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라) 계획변경에 있어 당초 설계자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설계비 회수 및 관계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

(마) 계획변경시에는 계획변경 원인과 책임소재 등의 규명 및 당초 설계자의 검토의견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고, 총사업비 증액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산청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총사업비 변경협의를 하여야 함

(8) 용지매수 및 보상

(가) 용지매수 및 지장물보상

- 1)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되, 사전에 대상물건 조사를 철저히 하여 보상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지장물 보상은 보상비 지급후 철거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2) 공사시행 시기에 부합하도록 용지매수 및 보상의 적정시기를 판단하여 집행하므로써 공사시행의 원활을 기하고, 보상적기 일실에 따른 작물보상 등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지 않도록 함
- 3) 용수로의 경우 연속적인 시공이 가능하도록 용지매수보상을 실시하되, 용지매수 불용 등을 이유로 공사를 분산 시행하여 용수공급 지연 등으로 사업효과 조기 달성에 차질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
- 4) 분할측량후 확정된 용지매수비는 조속히 지급하고, 이전등기 처리를 하여야 함
- 5) 전년도까지 매수한 용지는 당해년도내에 분할측량을 실시하고 사업시행자 명의 또는 농업기반시설 인수 예정자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함

(나) 어업권보상

1) 보상물건조사 실시

- ① 당해 사업지구내의 공유수면에 권리를 가진 자와 매립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 구역 어업권자에 대한 보상물건 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② 물건조서 작성시는 정당한 보상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점검·확인하여야 함

2) 평가기관의 선정 및 의뢰

- ① 사업시행자는 관련규정에 의거 평가기관을 선정하여 평가 의뢰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② 평가기관 선정시 평가실적 등을 사전에 조사하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함
- ③ 평가용역은 작업과정별, 단계별로 감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집행 중에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함

3) 보상액의 산정

- 보상평가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상평가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심의·확정후 관계보상규정에 의하여 산정

(9) 공사감리

- (가) 공사감리원은 전문기술자를 복수로 고정 배치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나) 공사감리는 사업시행자가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특수분야에 대하여 자격이 있는 감리전문업체에 용역시행할 수 있음
- (다) 공사감리원은 공종에 따라 자격있는 기술자가 담당하고, 공사물량에 상응하는 적정인원을 배치하여야 함
- (라) 공사감리원은 공사감독업무규정, 계획도서 등을 숙지한 후 감리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공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하여야 함
- (마) 주요구조물의 경우에 시공후 매설되는 부분(기초처리 포함)과 특수 기술을 요하는 전문분야의 공종에 대하여는 복수확인제를 실시하고, 시공 확인자료와 현장일지를 상세히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함
- (바) 주요구조물(양·배수장, 댐, 배수갑문, 평야부의 대형공작물 등)의 기초터파기 공사는 공사감독을 직접 담당하지 않는 전문기술 요원과 2급 기술자의 공동검사결과 복명서(사진첨부)를 보존하여야 함
- (사) 지급자재는 입출고시 대장정리와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아) 기타 공사착수이전, 공사착수단계, 공사시공중, 인수 인계 등 단계별 공사감독 업무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공사감리에관한규정('96.6.18, 농림부 고시 제1996-31)』에 의함

(10) 검 사

(가) 기성고확인

- 사업시행자는 기성고 확인을 필한 후 기성금액을 확정함

(나) 연도말검정

- 1) 사업시행자는 연도말 검정을 실시하고 검정결과를 12월 1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2) 농림부장관은 주요 공종을 확인한 후 연도말 검정액을 확정

(다) 준공검사

1) 공사준공

- ① 사업시행자는 공사준공계획을 수립하고, 준공검사 10일전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② 공사준공을 위한 검사는 사업시행자 책임하에 실시하고, 농림부는 인수예정 농조입회하에 주요공종을 발채·확인함
- ③ 사업시행자의 공사완공증명 발급은 농림부의 주요공종 발채확인이 끝난 경우에 할 수 있음. 다만, 발채확인 결과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한 후 공사완공증명을 발급함

- ④ 공사준공후에는 조사설계자, 공사감리자와 시공회사가 표기된 표석을 설치하여야 함

2) 사업준공

- ① 공사준공 완료 후 2년 이내에 사업시행자 책임하에 총사업비의 집행내역을 재확인 검사하고 준공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② 사업준공 보고서가 접수되면 농림부장관은 사업비, 개발면적, 시설물의 관리상황 등을 확인한 후 사업준공을 확정함

(11) 유지관리

- (가) 사업시행자는 기완공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당해년도 1월31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나) 유지관리사업비는 실비정산함
- (다) 유지관리비 예산이 별도로 확보된 지구는 책정된 예산으로 집행하고 책정된 예산을 유지관리비 이외 타사업비로 충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며, 예산 미확보지구와 사업시행중인 지구는 잡수입으로 충당하되 잡수입이 부족할시 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음
- (라) 유지관리비사업 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1) 목 적
 - 2) 사업시행자가 유지관리하여야할 사항
 - 3) 유지관리비 부과 징수
 - 4) 유지관리요원관리
 - 5) 유지관리사업내역
 - 6) 시설물현황
 - 7) 유지관리인원현황
 - 8) 세부운영지침
 - 9) 사업수지예산표
 - 10) 지구별 예산내역서

(12) 자금관리

- (가) 교부된 국고금은 지구별로 경리함을 원칙으로 함
- (나) 자금은 용지매수 및 보상비를 공사비에 우선하여 집행함
- (다) 차관선과 관계되는 주요 사항은 반드시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라)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비 국고의 예치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수입금은 당해 사업에 재투자하거나 국고에 반납하여야 함

(13) 기타 사항

- (가) 사업효과를 조기에 거둘 수 있는 공종을 우선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나) 하천개수가 되지 않는 지역의 경지정리, 배수개선사업 시행은 하천관리청과 사전 협의하여 하천개수사업을 병행 시행하고, 하천개수사업비는 하천관리청이 부담토록 함
- (다) 사업구역내의 경지정리, 배수개선사업 등에 대하여 조기시행이 요망되거나 단위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유리한 조건이라면 전체 대단위사업계획에 맞추어 단위사업별로 추진할 수 있음

< 행정 사항 >

가. 사후관리

- (1) 농지개량조합에 인계하여야 할 시설물이 준공된 경우에는 선량한 유지관리를 하여 기능발휘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조속히 해당 인수예정 농지개량조합에 인계하여야 함
- (2) 사업이 준공된지구에 대하여는 준공한 다음 년도에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보 고

- (1) 매월 25일 현재의 지구별 추진상황을 각공구 단위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분기별 사업추진상황을 당해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함
- (2) 분기별 자금집행상황을 매분기종료 다음 달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3) 간척지 매각대금 집행현황은 매분기 종료 다음 달 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다. 기타

본요령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함

【별지 제1호서식】

자체 가264-4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비수지예산서

지 구 명 :

사업시행인가일 :

개발면적 :

착공일 :

증수량 :

M/T

준공예정일 :

< 수입 >

(단위 : 천원)

과 목	총사업비	연도별내역			비 고
		1998까지	1999계획	2000이후	
국외농지잡수입 · ·					
계					

< 지 출 >

(단위 : 천원)

과 목	총사업비	년도별내역			비 고
		1900까지	1900계획	2000이후	
1. 순공사비 ○ ○ ○					
2. 지급자재대					
3. 용지매수 및 보상					
4. 기 타 ○ 측량설계비 ○ 공사감독비 ○ 일반관리비 ○ 잡 지 출 ○ ○					
계					

※ 총괄표 및 공구별로 작성

【별지 제4호서식】

총민 26-3

○○지구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 진도보고

< 수 입 >

(단위 : 백만원)

과 목	총 계 획		1998까지		1999계획					누계 진도 (%)	2000이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진도 (%)	총계획 (A)	당월계획 (B)	당월까지 실적(C)	C/A (%)	C/B (%)		
국 외 자 농지기금 잡 수 입											
계											

< 지 출 >

(단위 : 백만원)

과 목	총 계 획		1998까지		1999계획					누계 진도 (%)	2000이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진도 (%)	총계획 (A)	당월계획 (B)	당월까지 실적(C)	C/A (%)	C/B (%)		
1.순공사비											
○											
○											
○											
○											
○											
2. 지급자재대											
3. 용지매수보상											
4. 기 타											
○ 측량설계비											
○ 공사감독비											
○ 일반관리비											
○ 잡 지 출											
○											
계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투자심사담당관실(과장 김종진, 행정사무관 이희태)입니다.

1. 목적

- 지방자치단체에 포괄보조금 형태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 추진하게 함으로써 농림사업추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
 - 지역특화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농업비중 등을 감안하여 지원
 - 실적가산금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사업추진노력, 쌀 생산노력 등을 평가하여 실적가산금을 차등 지원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림사업 추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에서 꼭 필요한 분야에 투자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사업 추진노력을 평가하여 실적가산금을 차등 지원함으로써 농정추진에 대한 책임감을 증대시키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함

3. 근거법령

- 농림사업 평가규정(농림부 훈령 제945호 '98. 6. 13)

4. 연도별 지원계획(국고)

(단위 : 억원)

	'92-'96	'97	'98	'99예산	2000-2004
○ 지역특화사업	-	667	670	930	5,750
- 지역특화예산	-	637	420	570	3,750
- 실적가산금	-	300	250	360	2,000

※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포함

5. '99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사업배경

- 지역특화예산은 '97년부터 소액보조사업을 단일 세항으로 통합편성하여 지자체에서 소액보조사업 세부사업간에 탄력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99부터는 포괄보조금형태로 지원하여 추천된 사업에 대해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실적가산금예산은 지자체의 효율적 농림사업추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97부터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실적가산금을 차등 지원함으로써 지역특화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사업내용 : 아래 추천사업중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한 사업

- 전국계획에 따라 기존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 및 농업이외 부문에 대한 지원은 제외

< 추천 사업 >

공동항공방제, 개량물꼬, 고령지체소암반관정, 오염농경지객토, 유기 자원 생산활용사업, 환경농업교육장설치, 지하수개발, 소규모지표수개발, 특산품전 시판매장설치, 돼지인공수정센타설치, 지역특산품브랜드화지원

* 시·군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실적가산금 예산사업으로 추진

*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감귤복합가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별도의 시행지침에 따름

○ 지원대상자 : 시·도지사, 시장·군수,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 지원기준 : <붙임1>지역특화사업 세부사업별 지원기준 참조

○ 지원조건

- 지역특화예산 : 국고 50%, 지방비 50%(지방비는 50%이상 부담 가능)
-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 국고70%, 지방비30%(지방비는 30%이상 부담가능)
- 실적가산금예산 : 국고 70%, 지방비 30%(지방비는 30%이상 부담가능)
- * 지원사업의 종류에 따라 유사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조건을 참고하여 자부담 비율 등을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음

나. '99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역

	'98예 산		'99예산(안)		증△감	
	사업량	금액(A)	사업량	금액(B)	(B-A)	%
합 계	-	67,000	-	93,000	26,000	38.8
○ 지역특화예산	-	84,000	-	98,000	14,000	16.7
- 국 고	-	42,000	-	57,000	15,000	35.7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20,000)		(28,000)	(8,000)	(40.0)
- 지방비	-	42,000	-	41,000	△1,000	△2.4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20,000)		(12,000)	(△8,000)	(△40.0)
○ 실적가산금예산	-	50,000	-	51,428	1,428	2.9
- 국 고		25,000		36,000	11,000	44.0
- 지방비		25,000		15,428	△9,572	△38.3

※ ()는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 내서이며, 시도별 국고보조 지원액은 [별표] 참조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기획관리실 투자심사담당관실(02-503-7247~8)
- 시·도 : 농정국 농정과
- 시·군·자치구 : 농정과(또는 산업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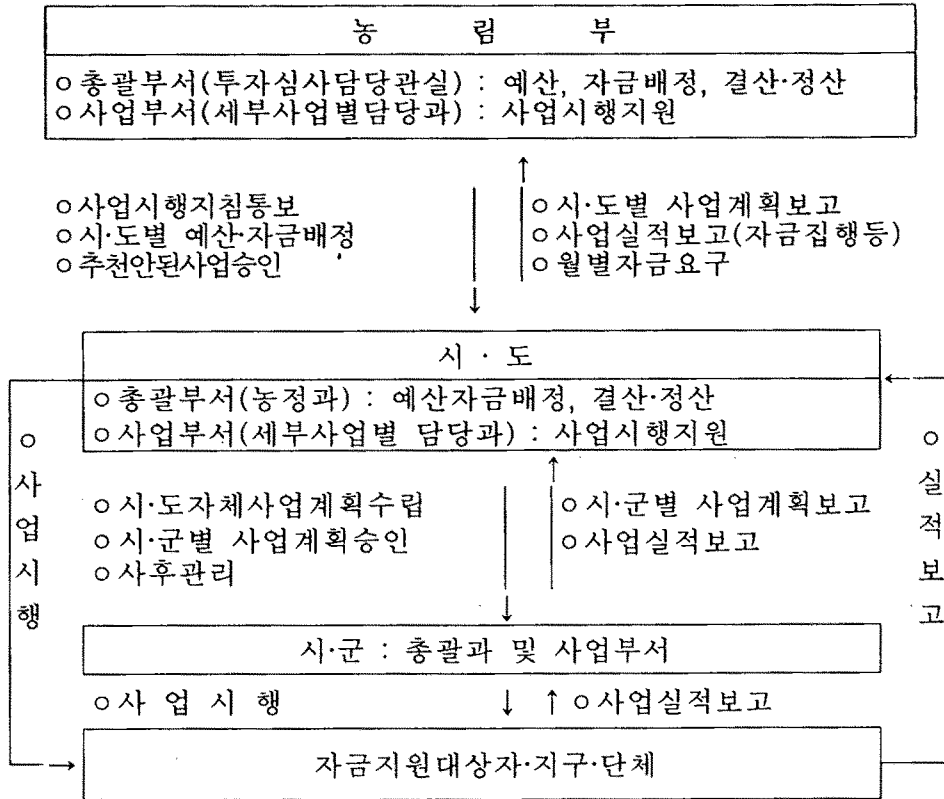
다. 자금지원대상자 : 시·도지사, 시장·군수,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라. 사업시행

(1) 사업시행방법

- 지역특화예산 : 시·도별 농업비중 등을 감안하여 배정된 예산총액 범위내에서 추천사업중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확정하여 농림부에 보고하고 추진
 - 시·도지사가 우리부(투자심사담당관실)에 [별지 제1호서식]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 추천안된 사업(지역특수시책 등)은 <붙임2>의 서식에 따라 우리부에 승인신청
 - 사업의 선택, 지역별 배정, 사후관리 등 제반사항을 시도지사 책임하에 추진
- 실적가산금예산 : 평가결과에 따라 실적가산금을 차등 지원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을 정하여 사업시행
 - 시도에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별지제1호서식]에 의거 농림부에 보고하고 시행

(2) 사업시행체계



(3) 사업추진절차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전년도 예산신청시 [별지제1호서식] 을 작성하여 예산을 신청하되, 추천안된 사업을 추진코자할 경우 <붙임2> “신규지역특화 사업계획서”를 사업지구별로 작성·첨부하여 농림부에 신청
- 농림부는 신청된 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예산편성요구와 『지역특화사업지원』 사업의 추천사업에 포함
- 시·도지사는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추천사업중 필요한 사업을 선택하여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별 사업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 에 의거 농림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년도의 여건변화에 따라 추천안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붙임2> “신규지역특화 사업계획서”를 사업지구별로 작성하여 사전에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마. 사업점검 및 사업비 정산

- 자금지원대상자에게 농림사업 집행관리 기본규정(훈령 제948호 '98. 7. 23) 제4조 사업자금집행의 원칙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기타사항

- 지역특화예산은 농가구, 경지면적, 농업진흥지역면적 등 농업비중을 고려하여 시·도별 예산을 배분
 - 시·도에서는 시·도자체 특화사업, 특별시책사업 등에 소요되는 예산(시·도직접사업비)을 제외하고 농업비중 등을 활용하여 별도의 예산배분 계획을 수립, 시·군별 예산배분액을 결정하고 시·군별 사업추진을 지원하여야 함
 - 시도에서는 시군별 사업추진 및 자금집행 상황을 반기 1회 점검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
 - 시도별 자금집행의 적합성, 사후관리실태 등을 조사검토하여 다음년도의 예산배분에 반영
- 실적가산금 예산은 농림업무 평가규정 및 쌀생산대책 평가요령에 따라 배분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된 시설물 설치, 기계·자재 공급 등의 여부를 사업완료후 1개월이내에 현지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훈령 제913호 '97. 10. 29)제39조에 의한 사업의 관리책임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 세부사업별로 유사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

나. 보고·기타

- 실적보고 : 전반기 사업추진실적은 사업시행년도 7. 31까지, 하반기사업 추진실적은 다음년도 1.31까지[별지 제2호서식]으로 우리부로 보고
- 정산보고 : 사업비 정산내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다음년도 3월말까지 우리부로 보고
- 자금요구 : 월별 소요자금을 파악하여 매월 우리부로 자금을 요구

6. 200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 지역특화사업 >

- 시·도지사는 2000년도 지역특화사업 예산요구시 총액을 요구하여야 하며 세부사업별 요구액은 [별지제1호서식] 에의해 참고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99년도 추천사업이 아닌 신규지역특화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붙임2> 의 서식에 의한 신규 지역특화사업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세부사업별 신청은 지자체의 투자우선 순위를 반영하여 요구하여야 함

< 실적가산금 지원사업 >

- 실적가산금 지원사업은 농림부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농림사업평가 결과 등에 의하여 우수지자체에 지원함

지역특화사업지원 세부사업별 지원기준

세부사업명	사업소관	지 원 기 준
<p>○ 공동·항공방제 - 공동방제</p> <p>- 항공방제</p>	<p>농산정책과</p>	<p>○ 지원대상 : 벼 재배농가</p> <p>○ 지원단가 : 30천원/ha</p> <p>○ 지원내용 - 병해충방제 농약대(벼물바구미·도열병·벼멸구 및 농림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병해충)</p> <p>○ 지원조건 : 국비 50% 정액보조(지방비 50%이상 부담)</p> <p>○ 사업주관 : 시장·군수</p> <p>○ 지원대상 : 벼 재배농가</p> <p>○ 지원단가 : 22천원/ha</p> <p>○ 지원내용 - 병해충방제 헬리콥터 용역대(벼물바구미·도열병·벼멸구 및 농림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병해충)</p> <p>○ 지원조건 : 국비 50% 정액보조(지방비 50%이상 부담)</p> <p>○ 사업주관 : 시장·군수</p>
<p>○ 개량물꼬지원</p>	<p>생산지원과</p>	<p>○ 지원대상 : 벼 재배농가</p> <p>○ 지원대상물꼬 : 농업시험연구기관등에서 성능등이 인정된 제품</p> <p>○ 개당지원액 : 8천원 이내</p> <p>○ 지원개수 : 1ha당 4~6개</p> <p>○ 지원조건 : 국고 50% 정액보조(지방비 50%이상 부담)</p>

세부사업명	사업소관	지 원 기 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사업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는 농업진흥지역면적, 벼재배 면적 및 농가희망량 등을 감안, 시·군(구)별 공급계획 수립 시달 - 시장·군수 책임하에 구매 공급하며 불량품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농가당 지원한도는 농가경영규모, 필지당 면적 등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가 결정 ○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군수(읍·면장)는 지원공급된 개량물꼬의 설치여부를 공급후 1개월이내에 현지확인하고, 개량물꼬 설치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지원일로부터 2년간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지원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역특화사업지원』 사업시행지침에 따름
○ 고랭지채소 암반관정	채소특작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지역 : 고랭지채소 주산지로서 동일시군내에 고랭지채소 재배면적이 5ha 이상인 지역 ○ 지원대상자 : 대상지역의 법인경영체 또는 3호 이상이 결성한 작목반등 생산자조직과 이에 가입한 농업인, 전업농 ○ 지원기준단가 : 45백만원/공 ○ 시설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 경 : 200mm - 채수량 : 200m³이상(고지대등 수원이 근본적으로 부족한 경우 100m³까지 시장·군수가 하향조정가능) ○ 지원조건 : 국고50%, 지방비 50% ○ 사업주관기관 : 시장, 군수

세부사업명	사업소관	지 원 기 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염농경지객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농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휴·폐광 주변 중금속 오염농경지 - 농촌진흥청 등 전문조사기관 토시오염도 조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 이상인 농경지 ○ ha당 지원한도액 : 5,950천원/ha ○ 지원조건 : 국고 50% 정액보조(지방비 50%이상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자원생산활용 사업 - 목재파쇄기(톱밥, 나무칩) - 자운영종자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농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 ○ 개당지원한도액 : 5천만원이내 ○ 지원조건 : 국고 50% 정액보조(지방비 50%이상 부담) ○ 기타조건 : 생명의 숲가꾸기 대상지역 및 산림이 많은 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필요시 지원하는 목재파쇄기의 보관시설 설치 지원도 가능 ○ 지원대상 : 자운영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 ha당 지원한도액 : 200천원(종자 50kg) ○ 지원조건 : 국고 50% 정액보조(지방비 50%이상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농업교육장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농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환경농업교육장 설치가 필요한 지역의 농업인 ○ 개소당지원한도액 : 3억원이내 ○ 지원조건 : 국고 50% 정액보조(지방비 50%이상 부담) ○ 기타조건 : 부지는 자부담 조건으로 함

세부사업명	사업소관	지 원 기 준
○ 지하수개발	농촌용수과	○ 덧붙임
○ 소규모지표수개발	농촌용수과	○ 지원대상 : 50ha미만 가뭄상습지를 대상으로 소규모지표수 개발 ○ 지원단가 : 80,000천원/ha 기준 ○ 지원조건 : 국고 50%(지방비 50%이상 부담) ○ 단 위 : ha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특산품전시판매장	가공산업과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 지원한도액 : 500백만원 ○ 선정기준 - 농업진흥지역은 지원대상 제외(논의 타목적 전용이 수반될 경우 우선 순위 결정시 가장 낮은 순위 부여) - 지역특산단지 제품의 전시판매가 용이한 지역 - 특산단지 제품의 시장정보제공 등 홍보 활용이 용이한 지역 - 특산단지 제품의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한 단지간 공조활용이 용이한 지역 ○ 지원조건 : 국고50%, 지방 50%(지방비 50%이상 부담 가능)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장·군수)

세부사업명	사업소관	지 원 기 준
○ 돼지인공수정센터 설치지원	축산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도 축산진흥원 ○ 지원내용 : 돼지 정액 생산시설 및 장비 ○ 지원액 : 425백만원이내 ○ 지원조건 : 총사업비중 50% 보조(지방비 50%이상 부담) ○ 사업추진기관 : 도지사
○ 지역특산품등 우수 농산물공동브랜드 개발사업	유통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단위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POOL 운영하고 있거나 통합개발 사용하고자 하는 생산자조직·단체를 관할하는 시군 및 농협시군지부 ○ 지원계획 : 시도당 5개 시군이내 시군당 1개 브랜드이내 ○ 개소당 사업비 : 25,000천원(국고지원50%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브랜드 개발비 : 5,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단위 공동사용 포장디자인 개발비, 등록비 - 공동브랜드 농산물홍보·판촉 : 2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군수가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우수농특산물의 공동브랜드 홍보·판촉비 ○ 품목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브랜드를 상표로 등록한 품목에 우선 지원 - 농산물유통량이 많고 품질관리가 우수하며 상표단위 차별화가 가능한 품목 - 견본, 통명거래를 실시하고 등급별 경매가 가능한 품목 - 포장디자인 개발에 의한 유통개선 효과가 큰 품목 ○ 지원조건 : 품목별로 전문화하여 생산·선별·포장·판매를 일괄지도·지원하며 시군단위 공동브랜드를 사용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 50% 정액보조(지방비 50%이상 부담)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덧붙임 : 지하수개발사업 지원기준 】

※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용수과 입니다.

< 사업개요 >

가. 사업목적

- 지표수개발이 어려운 가뭄 상습지역에 합리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하여 가뭄에 효과적으로 대처

나. 지원근거 : 농어촌정비법, 지하수법, 자연재해대책법

다. 지원대상 : 시장·군수, 농지개량조합장

라. 사업내용 : 암반관정 개발 (수원공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 시행)

- 수원공시설 : 착정공사, 우물자재 설치, 양수시설 및 수질검사 등
- 이용 시설 : 수중모타펌프, 전기시설, 양수장옥 및 송수관 등

마. 지원조건 : “지역특화사업지원”예산으로 지원

- 암반관정 : 1공당 40백만원 (국고 50%, 지방비 50%이상)
 - 수맥조사(지하수영향조사 포함)를 실시하지 않은 지역은 지방비에서 조사비 추가지원
- 집수정 : 국고 50%, 지방비 50%이상

바. 시설 설치기준

- 암반관정

우물구경(mm)	150	200	250
착정구경(mm)	200	250	300
착정심도(m)	50~100		

※ 암반관정의 기준채수량은 150톤/일/공. 단, 도서 및 해안지역, 산간오지 및 대체수원개발이 어려운 특수지역은 시·도지사 책임하에 100톤/일까지 조정 시행 가능

- 집수정 : 심도 8m내외 구경 3,500mm, 채수량 4,000~7,000톤/일

< 추진체제 >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개발국 농촌용수과(전화 : 02-500-2666~7)
- 시·도 : 농정국 기반조성과
(시·도에 따라 농지개량과, 농업기반과, 농산지원과, 농정과)
- 시·군 : 건설과 농지계(시·군에 따라 기반조성계)

다.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농지개량조합장

라. 사업추진절차

- 예정지 신청 → 수맥조사(지하수영향조사 포함)[집수정 : 예정지조사·기본계획수립] →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수립 → 개발·이용허가 및 신고 → 계약 및 시공 → 준공

< 사업대상지구 선정 >

가. 선정 기준

- 암반관정
 - 가뭄상습지역으로 농어촌발전계획에 반영된 지구
 - 지방비 또는 수혜자의 일부 사업비 부담이 가능한 지구
 - 시·도지사(시장·군수)가 신청하여 실시한 수맥조사 결과, 채수가능량이 150m³/일 이상인 시추공은 본예산으로 확공·개발하거나, 시장·군수가 인수하여 지하수개발을 시행하여야 함
- 집수정
 - 농업진흥지역으로서 자갈, 모래층이 잘 발달되어 다량의 지하수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
 - 지하수 함양원이 되는 넓은유역이 있거나, 하상의 구배가 완만한 지역
 - 수혜지구가 경지정리가 되었거나, 예정지구로 병행사업 실시가 가능하여 지구내의 용수로 공사비 부담이 없는 지구

나. 우선순위

- 가뭄상습지역으로 지표수개발이 어려운 지역
- 수맥조사가 완료되었거나, 개발전에 수맥조사 실시 및 조사보고서 활용이 가능한 지역
- 최근 2~3년간 가뭄현황을 분석하여 특별히 가뭄상습지역을 우선 지원하기 위한 우선순위 변경은 가능

< 사업 추진 >

가. 사업시행예정자의 사업예정지 신청

- (1) 지표수개발이 불가능한 답작지역에 대하여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요청
- (2) 요청받은 시장·군수는 가뭄의 시급성, 영농여건 등을 현장확인 후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농발위 심의등)

나. 예정지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 암반관정

- 시·도지사는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시·군별 사업예정지를 확정하고, 수맥조사가 필요한 지구는 농림부장관에게 수맥조사를 신청하여야 함
- 농림부장관은 예산범위내에서 수맥조사를 실시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익년도 지하수개발 대상지를 선정하여 9. 20일 까지 농림부에 보고함 [별지서식 참조]

○ 접수정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사업시행신청 또는 장기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예정지 조사를 실시함
- 시·도지사는 예정지조사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구를 대상으로 기본조사를 실시하게 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시행이 시급하거나, 층적층의 지하수가 충분한 하천변에 개발할 경우 기본조사를 생략하고 예정지조사 결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개발예정지구는 철저한 현장확인조사를 거쳐 타 사업과의 연계성 검토를 철저히 하여야 함.

다.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

- (1) 사업시행자는 지하수개발조사(수맥조사) 결과, 개발적지로 선정된 지구에 대하여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 등이 실시한 세부설계를 바탕으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함
- (2) 착정후 양수시험 등 각종 대수층시험을 통하여 안정지하수위, 적정양수량 등을 확정하고, 스트레나의 위치, 양정의 계산 등에 따른 수중모타펌프의 사양을 결정하기 위하여 (1)항의 전문기관에 의한 검토를 받아 세부설계(지하의 실여건을 반영한 세부설계)
- (3) 지하수법 및 기타 관련법규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 지하수오염방지 시설, 폐공처리비, 수질검사비 및 유량계, 수위계, 출수장치 등 관련 사업비를 계상하여야 함
- (4) 본 요령 <사업비지원>-가-(4)항에 의거 시·도지사가 지하수개발조사(수맥조사)비 및 지하수영향조사비를 조사비에 포함하여 지원하는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조사 전문기관에서 실시토록 함을 원칙으로 함.
- (5) 첨부서류(지하수법 제7조, 제8조)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 지하수영향조사서
 -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원상복구계획서
 - 굴착공사비 산출내역서

< 사업시행 >

가. 지하수개발·이용허가

- (1) 조사용역 발주 : 시장·군수, 농지개량조합장
- (2) 조사시행 : 지하수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나.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 (1) 사업시행인가 : 시장·군수(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지하수개발사업은 시·도지사)
- (2) 공사발주 : 시장·군수, 농지개량조합장

다. 공정계획

- (1) 조기에 완료하여 영농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공정계획 수립
- (2) 사업시행자는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되지않도록 하여야 함.

라. 시행계획변경

- (1) 사업비는 『지역특화사업지원』 예산에서 포괄 지원되므로 예산 및 사업 계획변경이 필요시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함
- (2) 집수정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지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의 시행계획변경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3) 시·도지사는 예산 및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그 결과를 농림부 장관에게 보고함

마. 용지매수 및 보상 : 농업용수개발사업에 준함.

바. 공사감리

- (1) 수원공개발 : 사업시행자 또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
- (2) 이용시설 : 사업시행자,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에 등록된 용역업체
- (3) 수원공개발(착정)시는 사업시행자, 공사감독원, 주민대표 등의 입회하에 오염방지 시설 설치여부 등을 필히 확인하고 사진촬영을 하여 보존함
 - 착정공사는 지표면에서 암반층까지 굴착후 케이싱을 삽입하여 그라우팅을 실시한 후 양생이 된다음 암반층 굴착
 - 개발실패공은 폐공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지하수개발·이용 폐쇄 모식도에 따라 폐공처리
- (4) 이용시설은 지하수시설 표준설계도, 지하수법령 및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계획설계요령 및 관련지침을 참고하여 현지여건과 부합되게 설계

사. 사업준공

- (1)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함.
- (2) 공사의 기성부분에 대하여 계약에 따른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때도 또한 같음.
- (3)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
- (4) 준공처리시 양수시험은 사업시행자, 몽리민대표 및 공사감독원 입회하에 실시

- (5) 사업시행자는 공사완료후 채수량, 관개면적 등을 재확인하여 조정 보완
- (6) 시행계획수립시 반영된 폐공처리비는 시공결과 및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 처리 하되, 부족예산은 지방비에서 추가부담
- (7) 지하수개발의 시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옥에 시공회사명, 시공기술자명, 시설제원 등을 기재한 준공상황판을 부착 보존하여야 함.
(별표 준공상황판 참조)

< 사업비 지원 >

가. 예산의 지원

- (1) 가뭄우심지역을 우선하여 지원함
- (2) 지하수의외의 타 수원공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농조편입을 원하거나, 농지개량계 조직 운영이 양호한 지구
- (3) 지방비 또는 수혜자의 일부 사업비 부담이 가능한 지구
- (4)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세부설계와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음.

나. 자금의 운용관리

- (1) 사업시행자는 사업비에 대하여 각각 별도계정을 설정 운영
- (2)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설계와 용지매수보상비를 우선하여 지원
- (3) 사업시행자는 배정받은 사업비 자금의 집행을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하지 못함.
- (4) 시·도지사는 자금의 운용관리상황을 수시로 확인점검 하여야 함.

다. 사업비 검정 및 결산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실행검정 및 결산 요령에 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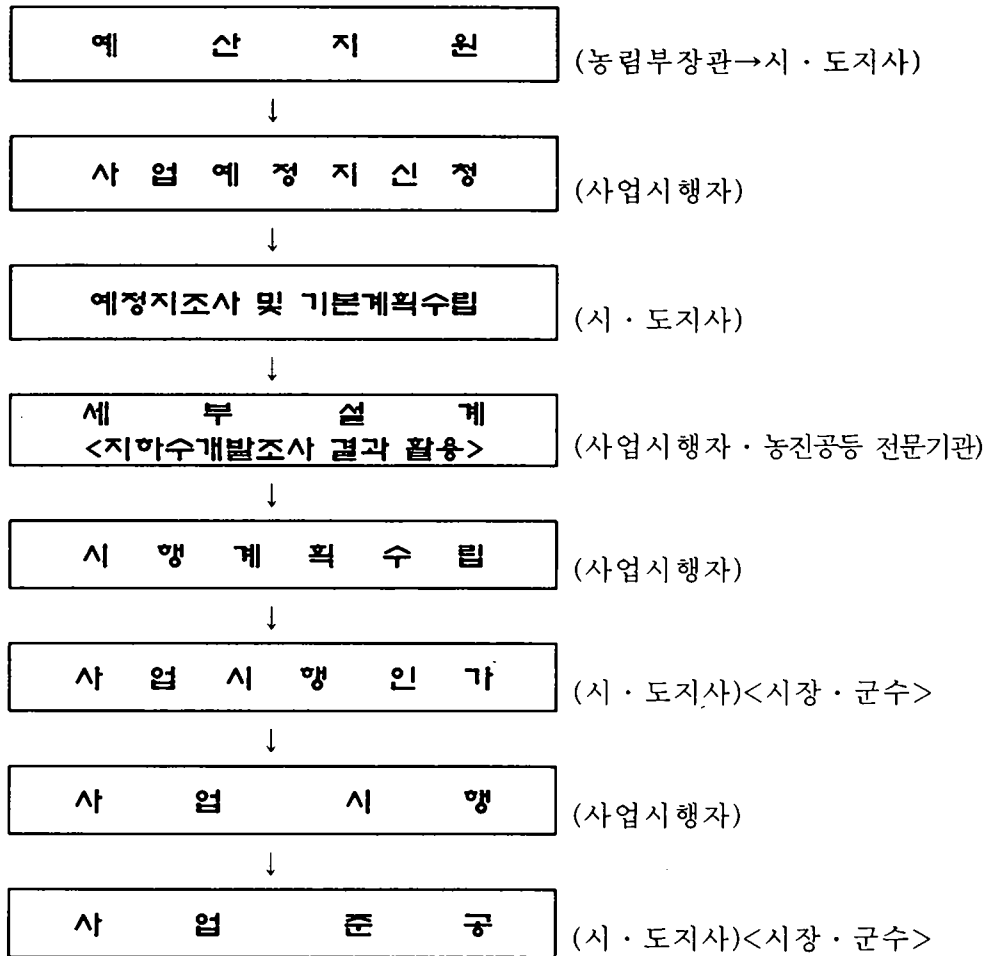
< 기타사항 >

-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5의 요율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함
- 시·도지사는 “관정 및 양수장비 관리지침”(수리51322-444('94. 9.23))에 따른 관리책임자지정 및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참 고]

지하수개발사업 추진체계도

(근거 : 농어촌정비법)



※ < >는 암반관정 개발의 경우

[별지서식]

지하수개발사업 익년도 대상지보고

시·도

사업별	지구명	위 치			용수활용계획				수맥조사		비 고
		시군	읍면	리동	답 작	전 작	생활용수	기 타	실시	미실시	
계					ha	ha	m ³ /일				
암반 관정											
집수정											

※ 수맥조사를 실시한 경우는 실시한 연도 명기

< 붙임 2 >

신규지역특화사업 사업계획서(안)

사업명 :

필요성

사업내용

○ 시 설 :

○ 자 재 :

○ 소요예산 : 백만원(국고 , 지방비 , 자부담)

-사업내역별 :

운영(활용)계획 등

기대효과

* 양식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정하게 변경할 수 있음

[별지 제1호서식]

심사제외

지역특화사업지원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고	지방비	자담	
계						
○ 공동방제	ha					
○ 항공방제	ha					
○ 개량물꼬	개					
○ 고랭지채소암반관정	공					
○ 오염농경지객토	ha/톤					
○ 유기자원생산활용사업						
-						
-						
-						
○ 환경농업교육장설치	평/동/개소					
○ 지하수개발	공					
○ 소규모지표수개발	개소					
○ 시군수리시설개보수	개소					
○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km/개소					
○ 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	평/동/개소					
○ 돼지인공수정센터 설치	개소					
·						
·						
·						

[별지 제2호서식]

심사제외

지역특화사업 추진실적

(1999, 월말 현재)

세부사업명	사업추진상황				사업비 집행실적					
	사업 계획량	착공 (공급)	완료	공정 (%)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계					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방제 ○ 항공방제 ○ 개량물꼬 ○ 고랭지채소 암반관정 ○ 오염농경지 객토 ○ 유기자원생산 활용사업 - - - ○ 환경농업교육 장 설치 ○ 지하수개발 ○ 소규모지 표수개발 ○ 시군수리시 설개보수 ○ 지방관리방 조제개보수 ○ 특산품전시 판매장설치 ○ 돼지인공 수정센타 설치 · · 										

I.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시설관리과(과장 유성곤, 토목 사무관 김종하)입니다.

1. 목 적

노후된 지방관리방조제의 제방, 배수갑문 및 부속시설을 사전에 보수·보강하여 시설물의 붕괴, 파손을 방지하고 바닷물 유입으로부터 농경지를 보호하여 안전영농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가.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5개년('98~2002)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사업추진
나. 완공위주의 사업추진으로 사업효과 조기거양

3. '99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추진 배경

시설의 노후 및 설치당시 설계기준이 현 설계기준에 미달되는 시설이 많아 태풍 및 해일 발생시 재해가 우려되어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인명, 재산, 농작물 피해는 물론 복구비가 과다 소요됨으로 사전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여 재해예방

나. 지원대상 :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에 의한 지방관리방조제
다. 사업내용 : 방조제제방, 배수갑문 및 부속시설물의 개보수
라. 지원조건 : 국고 70%, 지방비 30%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개발국 시설관리과(전화 : 02-504-9408~9)

○ 시·도 : 농정국

○ 시·군 : 건설과 농지계(시·군에 따라 기반조성계)

다.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또는 농지개량조합장

라. 사업추진절차 : [별표 1] 참조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예정지신청)→예정지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세부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사업시행인가→공사계약 및 착공→공사시행 →준공

<사업대상 지구선정>

가. 선정기준

- (1) 방조제관리법 제3조2에 의한 방조제로서 시·군 농어촌 발전계획 및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5개년계획』에 반영된 지구
-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해가 우려되는 지방관리방조제

나. 우선순위

- (1)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5개년계획』의 시·도별 우선순위에 의함.
단, 안전진단결과 재해발생이 심히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도내 우선순위 조정가능
- (2) 태풍, 해일 및 호우피해 방조제중 개량복구가 필요하나, 지원되는 복구비가 부족하여 재해 반복이 예상되는 시설은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음.

<사업추진>

가. 사업시행예정자의 사업예정지 신청

시설관리자(시장·군수, 농지개량조합장)는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5개년계획』의 우선순위를 원칙으로 하되, 안전점검 결과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현지 답사후 재해의 반복성, 위험성, 노후정도, 지방비 확보능력등을 종합판단하여 시·도지사에게 예정지 신청을 하여야 함.

나. 예정지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 (1) 신청된 예정지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재해예방 조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정지조사를 실시한다.
- (2) 예정지조사는 농업기반시설 관리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결과를 기초로하여 실시하고, 예정지조사가 완료되면 사업시행자에게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함.
- (3) 기본계획수립은 사업시행자 또는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연합회 및 엔지니어링 기술 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용역업체에 의뢰 하여 실시하되, 소요되는 비용은 시행자 부담으로 함.

(4) 기본계획 내용 및 유의사항

○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 사업 예정지구의 현황 - 사업별 투자소요액
- 사업시행의 효과 - 사업시행예정지의 위치도
- 기타 사업의 타당성 판단에 필요한 사항(개보수대상 시설의 사진)

○ 유의사항

- 시·도지사는 예정지 신청 또는 예정지 조사시 긴급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시설물관리자에게 대책을 수립토록 하여야 함.

다.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수립

- (1)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이 예산배정시 통보하는 신규착수 지구수 범위 내에서 세부설계지구를 선정하여야 한다.
- (2) 세부설계는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발조합연합회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용역 업체가 시행함이 원칙이나, 설계의 난이도 사업시행자의 기술인력 및 전문성을 판단하여 시·도 지사의 책임하에 사업시행자가 세부설계토록 할 수 있음.
- (3) 시·도지사는 세부설계 성과서를 납품받으면 성과품을 엄격히 검수하고, 사업시행계획수립 및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이행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4) 세부설계시 유의사항
 - 방조제 높이 및 단면이 현 계획 설계기준에 부합한지 여부 검토
 - 방조제 인근에 B.M 설치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필히 견고한 장소에 석 B.M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배수갑문의 홍수배제 능력이 현 계획 설계기준에 부합한지 여부 검토

<사업시행>

가.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 (1)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 고시 내용과 동의서(필요시) 등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함
- (2)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인가를 실시하고 다음사항을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별지 제1-1~1-3호 서식)
 - 사업시행 대상지의 위치평면도(1/50,000, 1/25,000 도면)
 - 사업시행 표준단면(방조제, 배수갑문) : 시행전·후 표시

나. 공정계획

- (1) 재해위험 공종은 우기전에 완공토록 공정계획 수립
- (2)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 및 공사도급자와 협의하여 예산에 맞는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예산액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공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음.
- (3) 시·도지사는 제출된 공정계획서를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무리한 공사시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를 위한 계획의 적정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4) 사업시행자, 공사감리원, 공사도급자는 공정계획을 준수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현저하게 공정계획이 미달되었을 경우 공사도급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다. 시행계획의 변경

- (1) 사업시행계획 변경(물량변동)은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와 현저한 사업효과 향상을 위한 경우에만 한함.
- (2)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3조 제1,2호내지 같은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다음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사전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방조제 및 배수갑문의 규모 형식, 구조의 변경 및 공법변경 등
- (3) 상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는 다음 관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함
 - ① 준공예정지구인 경우에는 재원 확보계획
 - ② 사업계획 위치평면도
 - ③ 변경되는 공종의 주요설계도면(평면도, 표준도, 구조도)
(보완사항은 붉은색으로 표시하여 변경 전후 비교가 쉽도록 작성)
 - ④ 보고서식(별지 제4-1호~제4-4호 서식)

라. 용지매수 및 보상

- (1)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 보상규정에 의함.
- (2) 농작물 보상등은 공사기간과 용지매수 등의 시기를 조정하여 원칙적으로 피하도록 함.

마. 공사감리

- (1) 공사감리는 사업시행자가 담당하거나,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발 조합 연합회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에 의한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음.
- (2) 공사감리원은 착공전에 설계도면과 현장을 대조하여 설계의 미비여부 및 공정순위를 파악하고 철저한 공사감리뿐만 아니라 공사상으로 인한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함.
- (3)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사업 담당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시공상황을 파악하며, 수시 현장확인(사진촬영)으로 공정계획의 이행상태를 업무일지에 기록하게 하여야 함.
- (4)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감리 위탁계약서에 의함.

바. 사업준공

- (1)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함.
- (2) 공사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음.
- (3)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

<사업비지원>

가. 예산의지원

- (1) 준공지구를 우선하여 지원한다.
- (2) 재해대비 긴급성을 고려하여 지원한다.
- (3) 사업기간이 오래된 지구를 우선 지원하여 사업효과 조기거양

나. 자금의 운용관리

- (1) 사업시행자는 사업비에 대하여 각각 별도계정을 설정 운영
- (2)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설계비와 용지매수보상비를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함.
- (3) 배정받은 사업비 자금의 집행을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하지 못함.
- (4)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의 운용관리상황을 수시로 확인·점검
- (5) 현지확인, 지도·감독에 필요한 여비 및 관리비로 필요한 경비를 일한 관리비 등 요율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음.

다. 사업비 검정 및 결산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실행검정 및 결산 요령에 준한다.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1)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농림사업평가실시요령』에 의거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전산입력 관리하여야 한다
- (2) 전산입력 절차 및 요령은 농림사업평가실시요령에 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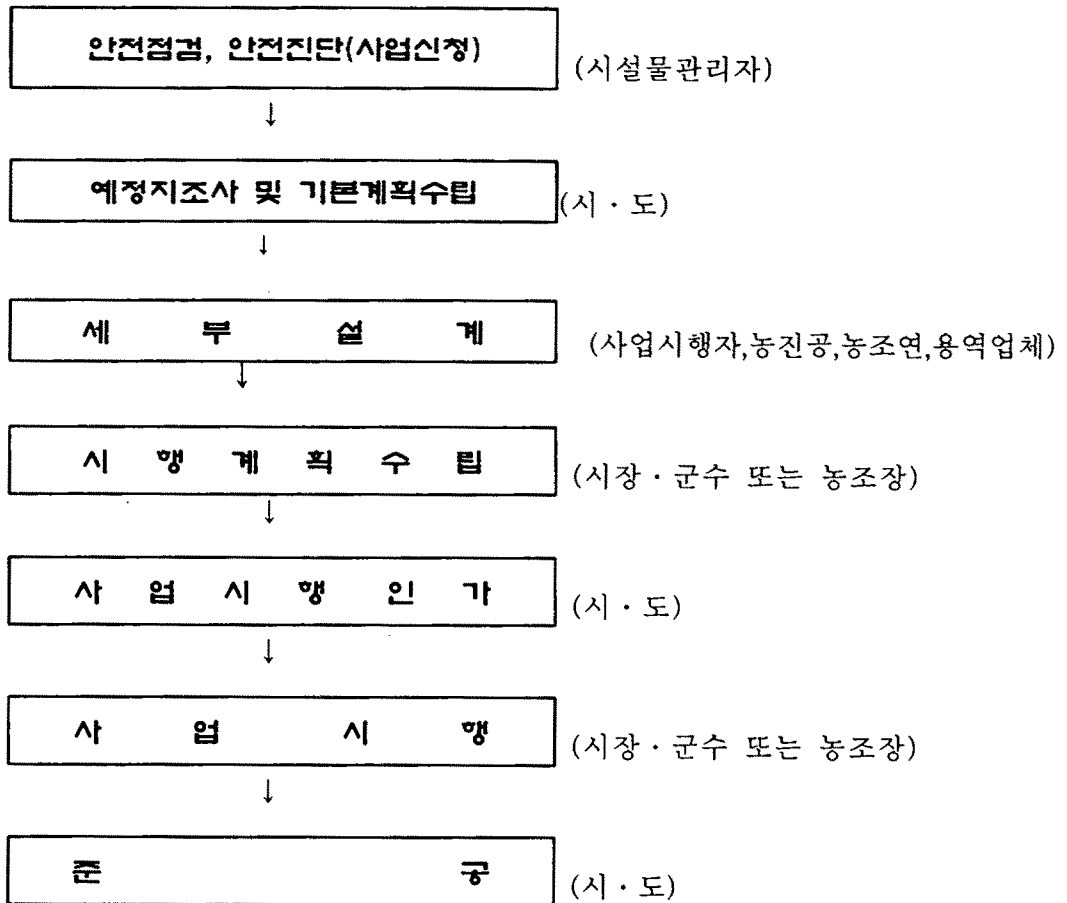
나. 보 고(수리시설개보수사업 보고서식에 준함)

- (1) 예산배정결과(시행인가 포함)보고 : 완료후 즉시 보고[별지 제1호서식]
- (2) 추진상황 보고 : 매 분기말 현재 추진 실적을 익월 10일까지 보고
시·도지사 →농림부장관[별지 제2호 서식]
- (3) 시행계획변경승인신청 및 결과보고 : 시·도지사 →농림부장관[별지 제4-1~4-4호서식]

[별표1]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 추진체계도

(근거 : 농어촌정비법)



II. 감귤복합가공처리시설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가공산업과(과장 정병학, 농업사무관 김판중)입니다.

1. 목 적

- 감귤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 상품감귤의 수매가공처리로 상품성제고 및 가격지지를 통한 생산농가 소득증대 및 소비자 보호

2. 시책 및 추진방향

- 제주도내에 비 상품감귤을 처리할 수 있는 복합처리시설 설치
 - 감귤농축액 가공으로 예상되는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 채소·펙틴·주류 가공을 포함한 복합시설지원
-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잠정) 이 사업을 추진하여 생산농가 공동참여로 비 상품 감귤처리문제 해결

3. '99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기간 : 1999~2000

나. 사업규모 : 1개소(건물 1,650평, 부대시설, 기계 및 장비 등)

다. 총사업비 : 13,000백만원(국비 5,000, 지방비 5,000, 자담 3,000)

* 가공처리규모 : 감귤 생과 2만톤

라.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99계획	2000년	비 고
계	13,000	4,000	9,000	○ 부지매입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국 비	5,000	2,000	3,000	
지방비	5,000	2,000	3,000	
자 담	3,000	-	3,000	

* 구체적 사업비 집행계획은 제주도가 의뢰한 전문기관 용역조사결과('99.2)에 의거 재검토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제주도지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유통정책국 가공산업과(전화 : 02-504-9417-8)
- 시·도 : 제주도 감귤과(전화 : 064-740-1189)
- 시·군 : 감귤담당과

다. 지원대상자 : 생산자단체[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잠정)]

라. 사업시행

- 제주도지사는 연내에 사업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99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주도지사는 적정사업 규모 등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용역기관에 조사 의뢰(조사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 제주도지사는 동 조사결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사업변경 여부를 협의 결정
- 사업추진체계
 - 농림부(사업총괄 및 예산승인) → 제주도(사업계획수립 및 지방비 확보) → 생산자단체(복합처리시설 사업추진)
- 사업비 지원방법
 - 국고, 지방비(기금포함) 확보비율기준(50:50)이상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 국고보조금 감액 지원
 - 농림부장관은 제주도지사가 수립한 연간 사업비 집행계획 및 사업 추진진도에 의거 자금배정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제주도지사(소재지 시장·군수)
 - 제주도지사는 사업기간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 철저
 - 시설, 장비, 기기 등은 보조금의 지원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감독
 - 기타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 분 제 한 기 준
	부 터	까 지	
복합처리시설물 (건물등)	준공일	10년	○사후관리 기간내 목적외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등 처분금지 - 사후관리 기간내에 처분시 제주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기계 및 장비	구입년도	5년	

나. 보고(제주도지사 → 농림부장관)

- '99세부사업추진계획 및 지방비 확충상황 : 2월말까지
- 사업추진실적 : 매분기 익월말 까지
- 사업비 정산내역을 익년도 3월말까지(사업의 총액 및 세부사업별로 작성)

지역특화사업 시·도 추가요구 메뉴 검토

추가 요구 사업	검 토 의 견
<p>< 충청북도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별 생산 및 유통개선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반영(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과 중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8년부터 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은 개소당 사업단위를 축소시키고 소규모단위로 지원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임
<p>< 충청남도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온저장고(중·소형)지원 ○ 소규모예냉시설 설치사업 ○ 농산물포장기자재사업 ○ 인삼건조시설 현대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온저장고 지원사업과 중복 ○ 미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시설로 필요시 자부담으로 설치 ○ 미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표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선별·포장·결속기 등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불필요 ○ 미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삼제조업은 업체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므로 제외
<p>< 전라북도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마을진입 및 경작로 확포장사업 ○ 돼지인공수정센터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과 내용이 유사함 ○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축산진흥원에 돼지정액 생산시설 및 장비지원

추가 요구 사업	검 토 의 견
<p>< 전라남도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산물브랜드화 지원 ○ 축산환경오염예방 ○ 자가사료생산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단위 농산물의 공동브랜드 개발 ○ 미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과 중복 ○ 미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자가배합사료 제조장비지원에서 발효기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므로 불필요
<p>< 경상남도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휴경지경작로 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9년부터 시행하는 간이영농조건 개선사업 (간이경지정리)으로 추진 가능
<p>< 제주도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정종돈생산공급기지화 사업 ○ 농산물복합처리시설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지역에만 해당하는 사업은 메뉴로 불인정 하고 필요시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 ○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승인사업으로 시행
<p>< 농림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직거래장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9년부터 농민시장을 개설 지원할 계획이므로 중복투자 우려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권한은 농림부 농촌용수과(과장 허유만, 토목 사무관 이봉훈)에 있습니다.

1. 목 적

서남해안에 산재되어 있는 간석지와 유희지를 우량 농경지로 개발하여 줄어드는 농지를 대체조성함과 동시에 농업 생산기반구조를 개선하고 농업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함에 있음.

2. 시책 및 추진방향

가. 사업추진 기본방침

- 시행중인 사업의 조기완공 및 농지매각
- 다목적 개발 및 농지구모 대 구획화로 개발효과 제고
-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관리 철저 시행으로 환경피해 최소화
- 피해어업권 등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행될 수 있는 방안 강구

나. 사업효과

(1) 국토의 확장과 우량농지 확보

- 경지구모 확대와 농지의 집단화로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
- 농경지의 절대면적 감소에 따른 우량농지의 대체 개발
- 담수호 조성에 따른 농업·산업 용수공급기반등 수자원개발

(2) 국토종합개발 및 균형 발전 촉진

- 해안오지개발로 수산업 위주에서 복합영농구조로 변경
- 도로재정비 및 해안선 단축으로 육로거리 단축

3.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 제14조 내지 제28조,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내지 제29조의 3,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4. 연도별 지원계획

(금액 : 백만원)

구 분		'97까지	'98	'99 (예산액)
간척면적 (ha)		-	438	-
사 업 비	계	968,266	129,537	76,000
	국 고 (농지관리기금)	968,266	129,537	76,000
	지방비	-	-	-
	용 자	-	-	-
	자부담	-	-	-

※ 연도별 면적은 준공면적임.

5. 사업개요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간 척

근해의 간석지 또는 호소에 제방의 축조 등 제방의 공사를 시행하고, 간만의 차를 이용해서 내부의 물을 배제한 후 간석지를 매립하여 새롭게 토지를 창출하여 필요한 용도로 사용키 위한 사업임.

2) 주요시설

- 방조제 ○ 배수갑문
- 양·배수장 ○ 용수로
- 배수로 ○ 방수제
- 도 로

(2) 지원조건

국고(농지관리기금) 100%

나. '99사업비(예산안) 내역

(금액 : 백만원)

지구별	농지조성 (ha)	사 업 비					
		사업비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국 고 (농지관리기금)	용 자		
계	(666) 17,265	76,000	76,000	76,000	-	-	-
진 촌	323	2,771	2,771	2,771	-	-	-
화 용	4,482	20,784	20,784	20,784	-	-	-
남 포	(666) 1,135	4,169	4,169	4,169	-	-	-
석 문	2,050	7,500	7,500	7,500	-	-	-
이 원	700	2,655	2,655	2,655	-	-	-
군 내	400	3,841	3,841	3,841	-	-	-
고 금	157	2,255	2,255	2,255	-	-	-
고 흥	1,860	11,787	11,787	11,787	-	-	-
해 남	1,842	5,879	5,879	5,879	-	-	-
사 내	400	2,148	2,148	2,148	-	-	-
삼 산	280	9,817	9,817	9,817	-	-	-
시 화	3,636	2,414	2,414	2,414	-	-	-

※ 면적 ()내서는 부분준공 면적

< 추진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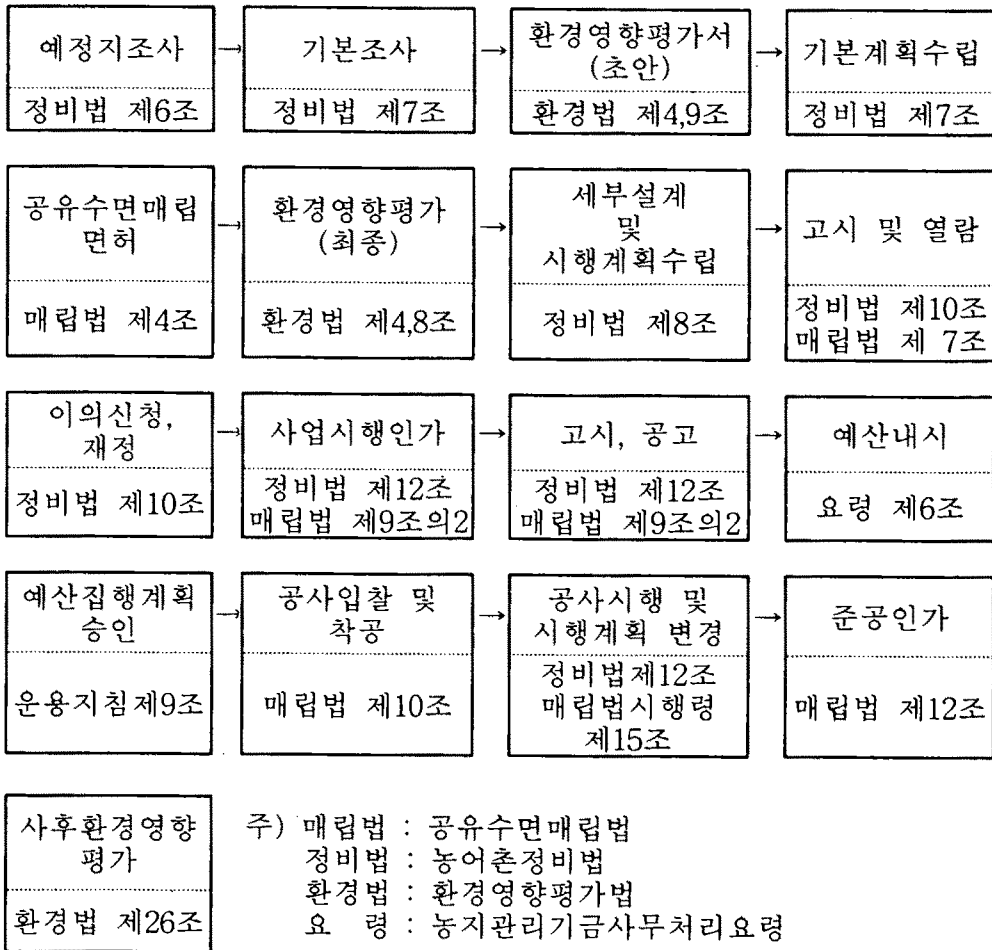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개발국 농촌용수과(☎ 02-504-9406~7, 500-2666~7)
- 시·도 : 농정국 농업정책과, 기반조성과, 농업기반과
- 시군자치구 : 건설과

다. 사업시행자 : 시장, 군수, 농어촌진흥공사장, 농지개발조합장

< 사업시행체계도 >



라. 대상지 선정

(1) 선정기준

- (가) 환경영향조사 결과 수산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지구
- (나) 수산자원보전지역 등 기타 개발계획과 중복되지 않는 지구
- (다) 사업비가 저렴하고 투자효율이 높은 지구
- (라) 공유수면매립면허 협의결과 관련기관의 이견이 없는 지구
- (마) 사업시행시 어업권보상 등에 따른 마찰이 예상되지 않는 지구
- (바) 주변지역개발 연계 효과가 양호하고 지역주민이 열망하는 지구

마. 사업계획수립

(1) 사업계획수립

(가) 시·도지사는 공유수면매립법제3조의4에 의해 결정된 매립기본계획지구 및 간척자원조사가 완료된 지구중 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발조합, 이하같음)의 신청이 있거나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지구에 대한 예정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나) 시·도지사의 예정지조사결과 기본계획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함.

(다) 예정지조사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1) 사업예정지구의 현황
- 2) 사업별 투자소요액
- 3) 사업시행효과
- 4) 사업시행 예정지의 위치도
- 5) 사업시행에 따른 어업피해,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 6) 기타 사업시행시 다른 사업과의 관련성 등

(2) 기본조사실시 및 기본계획수립

(가) 농림부 장관은 예정지 조사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구에 대하여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함.

(나) 농림부 장관은 매립면적 50ha이상 사업지구의 기본조사는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함.

(다)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유수면매립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을 수립·결정하여야 함.

(라) 농어촌진흥공사는 농림부장관으로부터 기본조사실시를 위탁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마) 기본조사시는 주민의 의견이 수렴된 환경영향평가(초안)와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당해지구의 사업시행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함.

(바) 기본조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기본계획서(안)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서(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1) 기본계획의 개요(매립면적 포함)
- 2) 사업별 기본설계도서
- 3) 사업비 수지예산서
- 4) 사업비 내역(공사비 포함)
- 5) 사업효율분석결과(B/C, IRR 등)
- 6) 사업대상지역의 위치도
- 7) 환경영향평가서(초안)
- 8) 피해영향 조사서
- 9) 기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사) 농림부장관은 농어촌진흥공사가 제출한 기본계획서에 대해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의견과 기본계획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그 내용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함.

(아) 농림부장관의 권한위임에 의해 시·도지사는 매립면적 50ha이하 지구의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 때 소요되는 기술용역비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으로 함.

(3) 환경영향평가(사후환경영향조사) 및 피해영향 조사

(가) 기본조사실시자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피해영향조사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동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은 기본조사 업무와 병행하여 실시함.

(나)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간척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9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주민의견수렴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함.

- (다)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전의 환경영향평가(초안작성 포함)는 사업시행자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에 의한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라) 환경영향평가(최종)는 세부설계와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사업의 시행계획 인가 신청전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거나 협의 요청하여야 함.
- (마)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관리 조사항목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의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위한 평가항목과 환경부장관의 최종협의내용의 이행계획과 평가서상의 저감방안 및 사후환경관리를 내용으로 함.
- (바)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사업시행자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기관에 위탁시행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도지사는 승인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사)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수질, 대기질, 생태계 등 계절에 따른 환경변화를 조사해야 하므로 사업승인 이전이라도 행정지시로 영향평가·조사에 착수할 수 있음.
- (아) 담수호를 오염시킬수 있는 오폐수 발생요인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발생요인에 대하여는 정비법 제19조에 의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등 관련 기관에 시정을 요구하여 담수호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자) 담수호 수질보전을 위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의 필요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차)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실비로 정산함.

(4) 세부설계실시 및 시행계획수립

- (가) 시·도지사는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농어촌 정비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에서 규정된 자를 선정하여 세부설계를 위탁실시함.
- (나) 세부설계시에는 사업시설물 부지의 지질조사, 연약지반처리에 필요한 조사시험, 축제재료와 조·세골재의 매장량 및 필요한 조사시험 등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 (다) 세부설계자는 설계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설계내용에 대하여 농림부장관과 사전 협의후 계획을 확정하고, 계획확정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라) 세부설계자는 사업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조사설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요 공종이 현지와 부합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설계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혀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에 상당하는 설계비 회수, 세부설계자의 문책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마) 세부설계가 완료되면 예산형편과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의해 시·도지사가 사업시행 계획을 수립함.
- (바) 농림부장관은 제(마)항에 의한 시행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시행계획서가 사업시행자에게 송부되도록 함.
- (사) 사업시행자는 내시된 예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해 면허관청의 면허를 받아야 함.

바. 사업시행

(1) 사업시행인가 및 사업시행

- (가)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고시하는 등 적법 절차를 거쳐야 함.
- (나)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재정을 한 때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 및 농어촌정비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허관청에 실시계획인가(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여야 함.

(다) 매립면허관청이 농림부장관인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로 부터 실시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처분안을 포함한 처리의견을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실시계획인가(시행계획인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면허관청이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시행계획에 대하여 사전 농림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인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라) 실시계획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함.

- 1)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규정된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필요한 사항
- 2) 시행계획의 개요(매립면적 포함)
- 3) 세부설계도서
- 4) 사업비 수지예산서
- 5) 사업비 내역 명세서(공사비 포함)
- 6) 사업시행자의 위치도
- 7) 기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마) 실시계획을 인가한 면허관청인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2 규정 및 농어촌정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가내용을 고시하여야 함.

(2) 공정계획

(가) 공사의 발주 및 계약공종은 세부설계가 완료되어 실시계획(시행인가)이 인가된 공종에 한함.

(나) 사업시행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고, 입찰계약 상황을 도지사 경우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월별 사업추진상황은 제2호 서식에 의거 농림부장관(기금수탁관리자)에게 보고(제출) 하여야 함.

(다) 사업시행자인 시장·군수가 조달청장에 공사계약을 요청함에 있어 우수 시공업체에 의한 시공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심사강화와 제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 (라) 사업시행자(시장·군수 또는 농진공 사장)는 내시된 예산에 따라 당년도에 시행해야 할 사업시행계획서를 매년1월15일까지 작성하여 시·도지사(농진공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하며,(별지 제3호서식) 시·도지사는 승인한후,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마) 당년도 사업시행계획은 사업효과를 조기달성할 수 있는 공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가장 최근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1) 사업추진경위(공유수면매립면허일, 시행인가일, 착공 등)
 - 2) 사업개요(매립면적, 개발면적, 간척농지면적 등)
 - 3) 사업추진현황 및 계획
 - 4) 공종별 추진물량 및 금액
 - 5) 연도별 수지예산서
 - 6) 기타사항
- (바) 사업시행자(시장·군수, 농진공 사장)는 인가권자(시·도지사, 농림부장관)의 승인통보가 있는후, 20일 이내에 월별 세부공정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가권자(시·도지사)는 향후 단가인상, 투자효과 면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특히, 공정계획 작성시 인력, 자재확보이외에도 기상여건 및 각종절차를 고려하여 무리한 공기단축 등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립하여야 함
- (사) 이상의 공정계획은 사업시행계획승인을 받은후 수립함을 원칙으로 하나, 공종이 단순하여 공정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기일이 소요되지 않고, 인가권자와 시행자가 사전에 협의하므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원안승인 가능할 경우, 사업시행계획과 공정계획을 동시에 승인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절차는 (라)~(바)항에 따름.
- (아) (바),(사)항의 사업시행계획 및 공정계획의 임의변경은 불가하나 천재지변, 예산변경 또는 투자효과제고, 집단민원발생 등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변경코자 할 때에는 (라)~(사)에 따름

(자) 시·도지사(농어촌진흥공사장)는 시행중인 사업에 대해 상·하반기에 각 1회 이상 주요시설물(방조제, 배수갑문, 교량, 터널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3) 시행계획변경

(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은 시·도지사가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나) 시행계획의 변경(물량증감)은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을 수 없거나 현저한 사업효과 향상을 위한 경우외에는 최대한 억제하여야 하며, 당초 설계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함.

(다) 시·도지사는 현지 여건상 부득이 시행계획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12조에 의거 시행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변경승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다만,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요시설의 규모, 형식, 구조변경, 기초지반개량공법 등의 변경 및 수혜면적의 10%를 초과하는 증감, 재해대책지원에 의한 보강 등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물량의 증감이 앞으로 사업시행할 대상공사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이때, 시행계획변경에 따른 시·도지사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함. (단, 단가변경으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과 10% 초과 공사비를 지방비 등의 재원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승인함)

(라) 제(라)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시공한 물량변동 결과의 대가지급은 계약당사자가 자체 해결하여야 함.

(마) 시행계획변경 승인신청이나 결과보고 서식은 배수개선사업의 별지서식 4-1호 내지 4-11호를 준용함

(4) 공사감리

(가) 공사감리는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에 의하여 신고된 공사감리 용역업체 중에서 선정하여 사업시행자가 위탁시행함.

다만, 사업시행자가 직접 공사감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나)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배치상황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배치상황을 검토한 후 시·도지사에게 결과보고 하고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함.
- (다) 공사감리자는 현장에서 연약지반의 처리와 같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종 및 구조물 시공시에는 복수감리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해당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반시험 및 기술을 검토토록 하여 계획공정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라)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업무를 장기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교체시에는 사업시행자와 사전협의 하여야 함.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이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공사감리자는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교체하여야 함.
- (마) 공사감리원은 착공전에 설계도면과 현지를 대조하여 설계의 미비여부 및 공정순위를 파악하고 시공중에는 철저한 공사감리 뿐만 아니라 굴착, 집토, 골재의 야적 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수혜민의 의견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함.
- (바) 공사감리원이 특별한 사유로 현장을 떠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사전에 통지하여야 함.
- (사)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전담자로 지정하고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공사를 촉진하고, 시공상황을 파악하여 현장확인, 공정계획의 수립 및 업무일지를 기록하게 하여야 함.
- (아)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감독위탁계약서에 의하여 함.

(5) 어업권 보상

(가) 보상물건조사 실시

- 1) 당해 사업지구 내의 공유수면에 권리를 가진 자와 매립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 구역 어업권자에 대한 보상물건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2) 물건조사서 작성시는 정당한 보상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확인하여야 함.

(나) 평가기관의 선정 및 의뢰

- 1) 사업시행자는 관련 규정에 의거 평가기관을 선정하여 평가 의뢰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2) 평가기관 선정시 평가실적 등을 사전에 조사하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함.

(다) 보상액의 산정

보상평가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상평가의 적정여부를 검토 확정 후 관계 보상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

(6) 검 사

(가) 검정 및 정산

- 1) 사업시행자는 기성고 확인을 필한 후 기성금액을 확정함.
- 2)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연도말에는 농림부장관이 시달한 사업 실행검정요령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권자에게 실행검정신청을 하여야 함.
- 3) 사업시행인가권자는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검정신청 즉시 연도말 검정은 12월 20일까지 검정을 실시하고 실행검정 조서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4) 사업시행자는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행검정결과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관계문서 사본 및 검정정산서(사업실적조서 첨부)를 첨부하여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연도말에는 12월 25일까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정산신청을 하여야 함.
- 5) 사업시행자는 기금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기금예치이자) 등은 농지조성계정에 납입하여야 함.

(7) 사업준공

(가) 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준공인가 필증을 교부하여야 함. 다만, 면허관청이 농림부장관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준공인가 처분안을 작성 농림부의 관인날인을 받아, 농림부장관 명의의 준공인가 필증을 교부하여야 함.

(나) 농어촌진흥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면허관청인 농림부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함.

(8) 사후관리

(가) 사업시행자는 사업준공전이라도 일시위탁경작이 가능한 토지에 대하여는 농지관리기금에 의한 조성토지매각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일시위탁경작을 실시하여 농가소득 및 농업생산에 기여토록 할 수 있음.

(나) 사업시행자는 사업준공된 지구에 대하여는 농어촌정비법 및 매각규정에 따라 분배·매각이 조기에 시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다) 일시위탁경작, 매각관리비, 유지관리비 등에 대하여는 매각규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함.

(9) 측량설계비, 공사감리비 및 관리비

(가) 측량설계비, 공사감리비 및 관리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거 산정하여야 함.

(나) 사업비(개발비)에 계상된 측량설계비 및 공사감독비, 환경영향평가비 및 환경관리비 등의 수령자가 농어촌진흥공사인 경우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수탁관리자가 농진공에 직접 지급할 수 있음.

(다) 관리비는 요율범위내에서 계상하되 재산적 성질의 물건 구입을 최대한 억제하여 사업비의 절감을 기하여야 함.

(라) 잡지출인 이전등기, 공부정리비는 사법서사법에 규정한 요율기준에 따라 정확히 산정하여야 함.

(10) 예산 및 자금의 운용관리

(가) 사업시행자는 사업주무부처의 장이 내시한 예산액에 의거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인가권자의 승인을 득한 후 인가서 사본 및 월별 자금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자금지원 계약체결 요청을 하여야 함.

(나) 기금수탁관리자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의거 자금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월별 자금집행계획서를 검토, 실행자금집행계획(변경계획) 및 분기별 자금배정요구서를 작성 기금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하여야 함.

(다) 사업시행자는 통보 받은 분기별 자금배정액내에서 월별 자금집행계획 또는 사업시행실적에 의한 자금 교부요청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하고 기금수탁관리자는 자금집행계획과 비교 검토하는 등 타당성을 검토한 후 배정함.

(라) 사업비 자금을 배정(교부) 받았을 때에는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집행하되 보상비, 순공사비 등의 직접비용은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함.

(마) 농지관리기금에서 지원받은 자금은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일반회계와 구분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 하여야 함.

(바) 배정받은 농지관리기금은 지정된 목적이외로 전용하여서는 안되며 특히, 자금의 전용으로 인하여 사업의 진도부진 또는 물의를 야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

< 행정사항 >

(1) 월별공정계획보고 (제1호 서식)

(2) 월별사업추진현황 (제2호 서식)

매월 25일 현재의 지구별 추진상황을 각 공구별 공종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3) 당해년도 사업시행계획승인 결과보고 (제3호 서식등 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

(4) 분기별 자금집행상황을 매분기 종료 다음 달 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함(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 시행지침 서식5 준용)

【별지 제1호 서식】

자체 가26-45

공 정 계 획 표

- 확인자(사업시행자) : _____ , 검토자(공사감독소장) :
- 작성자(현장대리인) :
- 시 행 자 :
- 개발면적 : ha(농지조성 : ha, 배후지 : ha)
- 사 업 명 :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종총인액	년까지사업비	년이후잔사업비	년도예산액	공정 (%)	월 별 계 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	2	3	계	%	1	2	3	계	%	1	2	3	계	%	1	2	3	계	%
순공사비																										
지급자재																										
양 회 철 근 기 타																										
용지매수 및 보상비																										
기 타																										
-측량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잡 지 출																										
-환경영향 평가관리비																										
수 입 재 원	농지기금																									
	기타()																									
	계																									

- ※ 순공사비는, 방조제, 배수갑문, 내부개답, 용수로, 양수장 등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작성함.
- ※ 순공사, 지급자재, 용지매수물량에 대한 월별계획은 위 서식에 준하여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함.

【별지 제2호 서식】

총26-71

월 별 사업 추진 현황

< ○○○도 >

(금액 : 백만원)

지 구 명	공 종	총계획		년도까지			년도 계획 대 실적							총 누 계 진 도 % (A/C)	년이후		
		사업 량	사업 비 (A)	사업 량	사업 비 (B)	진 도 (B/A)	년도 계획		월말까지 누계				당 해 연 도 진 도 % (E/C)		사업 량	사업 비	
							사업 량	사업 비 (C)	계 획		실 적						진 도 % (E/D)
									사업 량	사업 비 (D)	사업 량	사업 비 (E)					
○○○	계																
	· · ·																
○○○	계																
	· · ·																

※ 공종은 공사비(방조제, 배수갑문, 용수로), 자재대, 용지매수보상, 등으로 작성하되, 사업물량을 정확히 기재

※ 계획대 실적이 85%에 미치지 못하는 부진공종에 대하여는 부진사유 및 만회대책을 별지에 작성 제출

【별지 제3호서식】

승인번호 : 40513-14611보

서남해안 간척농지개발사업비 수지예산서

- 지 구 명 :
- 매 립 면 허 일 : 면 허 자 : 매 립 면 적 :
- 사 업 시 행 인 가 일 : 착 공 일 : 준 공 예 정 일 :
- 개 발 면 적 : ha(간척농지 ha) 증 수 량 : M/T

< 수 입 >

(단위 : 천원)

과 목	총사업비	년 도 별 내 역			비 고
		1997까지	1998계획	1999이후	
농지관리기금					
계					

< 지 출 >

(단위 : 천원)

과 목	총사업비	년 도 별 내 역			비 고
		1997까지	1998계획	1999이후	
1. 순공사비					
○					
○					
○					
2. 지급자재대					
3. 용지매수 및 보상					
4. 기 타					
○ 측량설계비					
○ 공사감독비					
○ 일반관리비					
○ 잡 지 출					
○					
○					
계					

※ 총괄표 및 공구별로 작성

Ⅱ. 농 업 기 계 화



여 백

15	농기계 구입지원(자율)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생산지원과(과장 이병목, 흥병기 서기관) 입니다.

I.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 지원

1. 목 적

-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기계화를 통한 농업생산비 절감등 농업경영개선을 이룰수 있도록 하는데 있음.

2. 시책 및 추진방향

- 생력기계화 및 일관기계화촉진에 필요한 농기계 지원 공급
- 대형농기계 중점지원 보급 및 농업진흥지역의 기계화 촉진

3.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및 제7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천대, 백만원)

		'92-'96	'97	'98	'99 (예산안)	2000	2001- 2004
사 업 량		998	260	150	91.4	100	
사 업 비	계	2,899,463	954,960	789,045	482,777	528,000	
	보 조	369,627	96,349	-	-	-	
	용 자	704,716	205,951	275,609	135,178	147,840	
	지 방 비	345,165	96,411	-	-	-	
	농협용자	591,246	218,786	411,922	202,766	221,760	
	자 담	888,709	337,463	257,754	144,833	158,400	

5 '99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지원대상자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등 공동이용조직

(2) 지원대상 농기계

- 지원대상 농기계는 동력용으로 농업기계화촉진법 및 동법시행규칙에 의한 사후관리와 품질관리 기능을 확보하고 국정검사에 합격한 농기계[보행형동력경운기 및 보행형관리기용 부속작업기(경운기용 트레일러 제외)와 신규 보급되는 특수농기계는 국정검사 제외]를 우선으로 하며 지원대상 농기계는 [별표15- I -1]과 같음.
 - 주행형농기계(트랙터, 콤파인, 승용이앙기, 승용관리기, 스피드스프레이어등)는 기종명, 규격, 형식명, 제조번호, 제조자 등이 각인된 금속제(알루미늄 등)의 형식표지판을 견고하게 부착한 것에 한함
- 개별 기대의 품질과 사후관리에 특수성이 있는 중고차동장치 부착 경운기(관리기)용 트레일러 및 퇴비살포기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지원 공급함.
- 지원대상 농기계로 선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농민 판매가격을 농림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은 매년 분기별(1.1기준, 4.1기준, 7.1기준, 10.1기준)로 지원대상 농기계가격을 생산업자, 공급자와 보조 및 용자지원사업 주관기관에 통보함.

(3) 공급자

- 농기계 공급자는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에 의한 사후봉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정을 받은 농협 사후 봉사업자(이하 “공급농협”이라 한다)와 시·군·구단위 사후봉사업자로서, 농기계 생산업체와 사후봉사 이행계약을 체결하고 생산업체가 농기계조합에 통보하여 확인된 자로 함(생산업체의 통보를 받은 농기계조합은 그 내용을 지체없이 검토하여 확인서를 발급해야 함)

- 단, 농산물건조기, 과일선별기, 농업용은풍난방기, 은실용동력개폐기, 농산물결속기, 결속기(베일러), 중고차동장치 부착 경운기(관리기)용 트레일러 및 퇴비살포기에 대하여는 생산업체의 희망에 따라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 및 하자 보증을 받은 제품을 공급할 경우 농기계 생산업체를 공급자로 할 수 있음.

(4)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 91,4천대
- 용자지원 농기계
 - 농가 및 농기계이용조직등이 농기계를 구입할때는 「별표15- I -2」의 「기종별 지원한도액」 까지 용자지원
 - 단, 과다공급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대농민 판매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결정하여 덤핑판매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민원을 유발하는 기종에 대하여는 용자지원 비율을 하향조정할 수 있음

나. '99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1)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대, 백만원)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농협용자)
		계	보조	용자		
91.4	482,777	135,178	-	135,178	-	347,599 (202,766)

(2) 기종별 지원조건

- 지원금리 : 연리 4.5%

(3) 기종별 지원비율 및 용자기간

기종명	최대 지원비율	용자기간	기종명	최대 지원비율	용자기간
1. 농용트랙터	90%	1년거치7년상환	123. 동력배토기	90%	1년거치5년상환
2. 농용트랙터용 부속작업기	80 ¹ , 90	1년거치 5.4 ² 년상환	124. 동력퇴비살포기	90	1 " 5 "
37. 보행형동력경운기	80	1 " 5 "	125. 인격조종형동력분무기	90	1 " 4 "
38. 보행형동력경운기용 부속작업기	80	1 " 5 "	126. 동력연무기	90	1 " 4 "
- 본체와 함께 구입 기준 통합가격	90		127. 동력제초기	90	1 " 5 "
- 본체와 분리 구입 기준 통합가격 제외			128. 동력중경제초기	90	1 " 5 "
60. 승용경운기 및 부속작업기	90	1 " 5 "	129. 무 수확기	90	1 " 5 "
61. 동력이앙기	90	1 " 4 "	130. 무인자동방제기	90	1 " 4 "
63. 동력이앙기용 부속작업기	90	1 " 4 "	131. 버섯자동천공접종기	90	1 " 5 "
65. 바인더	90	1 " 4 "	132. 버직파기(전용형)	90	1 " 4 "
66. 콤바인	90	1 " 4 "	133. 벼품위자동판정기	90	1 " 5 "
68. 곡물건조기	90	1 " 7 "	134. 상토제조기	90	1 " 4 "
69. 보행형관리기	90	1 " 4 "	135. 석(연)탄보일러	90	1 " 5 "
70. 보행형관리기용 부속작업기	90	1년거치 4.5 ³ 년상환	136. 스피드스프레이어	90	1 " 5 "
93. 승용관리기	90	1 " 4 "	137. 예도형동력예취기	90	1 " 4 "
94. 승용관리기용 부속작업기	90	1 " 4 "	138. 온살난방용대체에너지화기기	90	1 " 7 "
107. 곡물수집차	90	1 " 5 "	139. 온실용동력개폐기	90	1 " 5 "
108. 곡물이송기	90	1 " 4 "	140. 온실용살수기	90	1 " 5 "
109. 과수인공교배기	90	1 " 5 "	141. 원거리용고성능방제기	90	1 " 4 "
110. 과일선별기	90	1 " 5 "	142. 육묘용파종기	90	1 " 4 "
111. 농산물건조기	90	1 " 7 "	143. 이식기	90	1 " 4 "
112. 농산물결속기	90	1 " 5 "	144. 자동관수분배기	90	1 " 4 "
113. 농산물세척기	90	1 " 5 "	145. 종자봉입기	90	1 " 4 "
114. 농용동력운반차	90	1 " 5 "	146. 채소수확기	90	1 " 5 "
115. 농용온풍난방기	90	1 " 5 "	147. 채소자동접목기	90	1 " 5 "
116. 농용굴삭기	90	1 " 5 "	148. 축사용고압세척기	90	1 " 4 "
117. 농용로우더	90	1 " 5 "	149. 콩정선기	90	1 " 5 "
118. 농용잔가지파쇄기	90	1 " 5 "	150. 탄산가스발생기	90	1 " 5 "
119. 농용톱밥제조기	80 ⁴ , 90	1 " 5 "	151. 탈망기	90	1 " 4 "
120. 농용혼합기	90	1 " 5 "	152. 토양소독기(전용형)	90	1 " 4 "
121. 농용환풍기	90	1 " 5 "	153. 하우스환경제어장치	90	1 " 5 "
122. 다목적관리작업차	90	1 " 5 "			

(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농기계로 지정된 것은 농기계 가격의 100%까지 지원할 수 있음

○1: 로우더, 2: 주행형동력분무기, 3: 전정기, 잔가지파쇄기, 4: 수동식모터부착형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 기관 : 농협조합,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나. 사업담당 부서

- 중앙 : 농림부 식량정책국 생산지원과(02-503-7228~9),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 및 영농자재부
- 도 : 농정국 농산(농정,유통)과, 농협 도지역본부 자재과
- 시·군 : 산업(농산,농정)과, 농촌지도소,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농업기계 사후봉사사업소
- 읍·면 : 읍·면사무소, 농협조합, 농업기계사후봉사사업소

다. 사업시행

(1) 농기계구입신청 및 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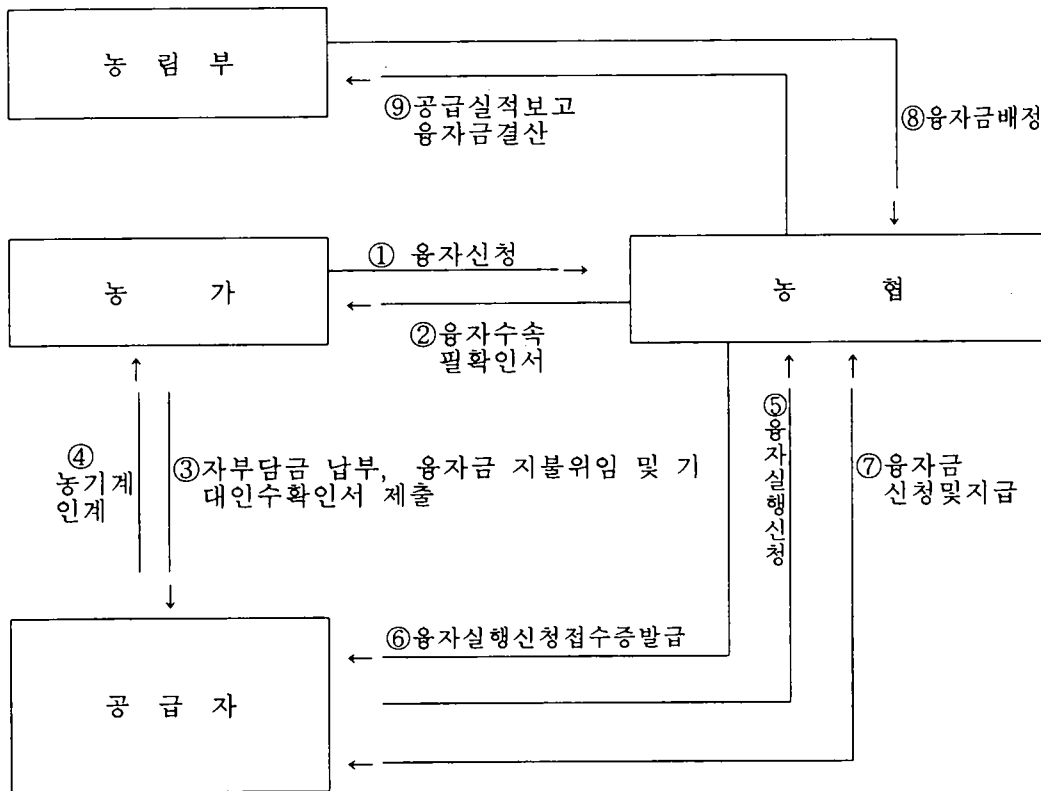
(가) 농기계(신품) 구입자금 용자지원

- 농기계(신품)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기계 구입용자신청서(별지 제15- I -2호서식)에 농기계 공급자의 사후봉사이행보증 확인을 받아 동 신청서와 용자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용자취급기관에 신청함.
- 용자취급기관장은 농가의 용자신청에 대하여 용자지원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용자수속필확인서(별지 제15- I -3호서식)를 교부함.
- 용자수속을 완료한 농가는 공급자에게 용자수속필확인서, 용자금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확인서(별지 제15- I -4호서식) 및 자부담금을 납부하고 기대를 인수함
- 농기계 공급자는 농기계 인도시에 실수요자로부터 받은 용자수속필 확인서, 용자금 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확인서를 용자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여 용자금 지급을 신청함
- 용자취급기관장은 용자실행신청 접수후 공급자에게 용자실행 신청접수증(별지제15- I -5호서식)을 발급하고, 농기계 구입자금 용자신청처리부(별지제15- I -6호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사전에 농기계구입 및 규격의 상이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농협은 확보된 자금(반드시 국고와 농협자금 구분) 범위내에서 월 2회 이상 용자실행함

(나) 중고농기계 구입자금 융자지원

- 지원대상 농기계는 [별표15- I -1]과 같음.
 - 구입처 : 일반농가, 농업기계공동이용조직, 농업회사법인, 쌀전업농 및 농기계사후봉사업자
-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는 중고농기계는 미상환액을 승계함.
- 융자금 상환잔액이 없는 중고농기계는 다음과 같이 융자 지원함.
 - 융자지원액 : 구입가격 상한선 $[\text{최초구입가격} \times (\text{내용연수} - \text{사용연수}) \div \text{내용연수}]$ 범위내에서 중고농기계 구입가격의 90%이내
 - 융 자 기 간 : 잔여 내용연수(내용연수 - 사용연수)이내
 - 융자금 상환조건 : 거치기간 없이 균분상환
 - 거래확인 : 농기계 사후봉사업자(시·군·구, 읍·면·동 및 농협) 또는 영농회장이 확인한 구매계약서 부분 또는 사본 징구

(2) 사업시행체계



라. 국고지원금 배정 및 집행절차

-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로부터 다음달까지 사용 가능한 보조 및 융자한도액을 신청받아 매월 20일까지 농림부(생산지원과)에 배정 요구
 - 농협중앙회 본회가 종합하여 농림부(생산지원과)에 융자한도액 배정 요구
 - 융자한도액 배정요구를 하였으나 정부의 자금형편상 당해월에 전액이 배정되지 못한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당해금액을 차기분에 포함하여 배정 요구
 - 다만, 지원대상자로부터는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 신청액중 배정안된 금액(부족액)을 다시 신청받지 않아도 됨
 - 융자한도액은 매월 20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당해 월에 배분함
 - * 사업주관기관이 지원대상자로부터 소요자금을 신청받을 때에는 신청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배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집행을 지연하면 정부에 반납한다는 사항을 반드시 주지시켜 실제의 사업진행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과다한 자금을 신청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함
 - 융자한도액 배정후 정당한 사유없이 자금을 집행하지 않으면 당해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음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별표 15- I -3」에 의거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해야 함
 - 검정 및 정산서에는 국고융자, 농협융자,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붙임 서식에 기재된 증거서류에 의하여 확인
 - 사업주관기관은 증거서류에 의심이 갈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거래업체 등에 조회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함
 - 위의 방법으로 사실확인일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객관적 시각에서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관계증빙을 관할 세무서에 통지

- 별표15- I -2의 「기종별 지원한도액」의 규격 구분에 따라 동일한 지원한도액이 적용되는 규격의 농기계를 「농업기계가격표」상의 규격별 최저 공급가격 미만으로 공급한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당해 최저 공급가격에 대한 지원한도액의 비율을 실제 공급가격에 적용하여 지원금액을 산정(1만원 미만은 사사오입)

(단위 : 천원)

기종	농업기계 가격표 금액으로 공급시			인하공급시		
	공급가격	지원금액	자부담	공급가격	지원금액	자부담
A유형 기종의 가 모델	1,300	900	400	1,100	900	200
“ 나 ”	1,200	900	300	1,000	900	100
“ 다 ”	1,100	900	200	950	855	95
“ 라 ”	1,000	900	100	900	810	90

- 단일기종을 「농업기계가격표」상의 공급가격 미만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당해 공급가격에 대한 지원한도액의 비율을 실제공급가격에 적용하여 지원금액을 산정(1만원 미만은 사사오입)

(단위 : 천원)

기종	농업기계 가격표 금액으로 공급시			인하공급시		
	공급가격	지원금액	자부담	공급가격	지원금액	자부담
A기종	1,000	700	300	900	630	270

- 「농업기계가격표」상의 공급가격 미만 금액으로 검정 및 정산한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당해 검정 및 정산서 사본을 지체없이(FAX이용등) 농림부(생산지원과)에 통지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1) 농기계 유통질서 확립 및 융자금 사후관리

- (가) 농협중앙회장은 공급농협에, 농기계공업협동조합은 농기계 생산업체와 농기계 사후봉사사업자에 대하여 각각 농기계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함.

(나) 농기계 구입자금 용자과정에서 부적합한 용자가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조치함.

- ① 시·군·구단위 사후봉사업자, 농협사후봉사업자
 - 농업기계를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용자지원 대상기종이 아닌 기종(본체)을 공급하고 용자 신청한 경우 : 농기계공급자 제외조치 및 고발
 - 용자지원 농기계의 기종 또는 규격이 다르거나, 작업기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용자 신청한 경우 : 농기계 공급자 제외 조치 및 고발
- ② 농기계 구입자금을 대출받은 자에 대하여는
 - 용자액(용자 유용액)을 회수하고 5년간 농업기계화 사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에 따라 조치(관계기관에 명단을 통보하여 부당사용금액의 크기에 따라 1-5년간 일체의 농림사업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
- ③ 용자취급기관의 농기계 인수 확인자 문책
- ④ 농기계 제조업체에 대하여는 생산비축자금 및 부품확보 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또는 기지원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다) 농협은 용자지원 농기계의 선량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농기계 공급 및 사후관리대장」을 작성 3년간 매년 1회 이상 관리 실태를 조사(본체가격이 200만원이하인 농기계 및 부속작업기는 사후관리기간동안 1회조사 : 농기계구입 익년도중 조사)하여 사업목적을 위반하였을시 용자금 회수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함.

(라) 공급농협이 실수요자의 용자수속 접수순위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사후봉사업자 공급분의 용자 실행 신청의 부당지연 및 불공정한 판매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농기계 공급자에서 제외조치함

(마) 정부지원 농기계 부당공급등의 사유로 인해 농기계 공급자에서 제외 당한 시·군·구단위 사후봉사업자, 농협사후봉사업자는 제외 조치일로부터 5년간 정부지원 농기계를 공급할 수 없으며, 직계존비속 및 부부간에 명의양도를 한 경우에도 동일 사후봉사업자로 인정함

(바) 정부지원대상 농기계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변경하는등의 사유로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는 지원공급대상 농기계에서 제외토록 함.

(2) 농기계 품질보증 및 사후봉사

- (가) 농기계의 품질보증과 사후관리, 소비자피해보상은 당해 농기계의 공급자(농기계제조업자·판매업자·농기계사후봉사업자)가 책임을 짐.
- (나) 농기계 공급자는 농기계 공급시 농가에게는 한글로 된 품질보증서, 사용설명서를, 사후봉사업소에는 한글로 된 부품목록을 필히 제공하여야 함
- (다) 시장·군수 및 농협중앙회장은 시·군·구단위 사후봉사업자와 공급농협으로 하여금 공급된 농기계의 수리용부품 공급등 사후봉사를 원활히 수행할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봉사가 미흡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사후봉사업소에 경고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음
- (라) 농기계 공급자와 생산업체는 농기계 공급시 당해농가가 보유한 폐농기계를 회수하여 자원의 재활용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
- (마) 중고차동장치를 부착한 경운기(관리기) 트레일러 및 퇴비살포기 공급자는 농업인에게 중고차동장치를 부착한 사실을 충분히 주지시킨후 공급하여야 함
- (바) 농기계조합은 공급농협 또는 시·군·구단위 농기계 사후봉사업자가 농기계생산업체와 체결한 사후봉사이행계약(해약 포함)의 내용과 사후봉사업자 성명, 영업장 소재지, 사후봉사지역 등에 관한 매년 1. 1. 및 7. 1. 현재의 현황을 농협중앙회에 통지함
- (사)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는 사후봉사업자가 보조금을 유용하거나 부당 공급행위 등으로 읍자 신청 접수중단의 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와 폐쇄 또는 휴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반사회보에 게재하는등 농기계 구입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홍보 조치하여야 함
- (아)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 폐농기계처리장 대표는 폐농기계의 원활한 수거를 위하여 폐농기계처리확인서(별지 제15- I -7호서식)를 작성하여 농업인이 요청할 경우 발급하여 함.

나. 지역별 주요농기계 적정 공급계획 수립 시행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농기계 보유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미 수립된 지역별 주요농기계 적정공급계획에 따라 적정수량의 주요 농기계가 보급되도록 지도한다.

- 주요농기계 : 농용트랙터, 동력이앙기, 콤파인, 곡물건조기, 관리기, 스피드스프레이어

- 읍·면·동장 및 농촌지도소장은 적정대수의 주요농기계가 공급되도록 지도하고, 읍자취급기관장은 주요농기계 읍자지원공급 현황(별지 제 15- I -8호서식)을 매월1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읍자취급기관장이 제출한 주요농기계 읍자지원 공급현황과 보조지원 농기계 구입현황(벼직과 및 발작물용 농기계 구입 지원 지침의 별지 제15-Ⅱ-5호서식)을 검토하여 연차별 공급 계획을 초과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읍·면·동별 기종별 공급현황을 해당 읍·면·동·농촌지도소 및 읍자취급기관에 통보하고 읍자취급 기관장은 농가가 연차별 공급계획을 초과한 기종을 읍자신청할 경우 농촌지도소장의 농기계구입자금지원 추천서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읍자신청접수토록 하여 농기계의 과잉공급을 예방하고 이용율을 증대시킨다.

- 농촌지도소장(읍·면 상담소장)은 해당 농기계를 구입코자 하는 농가에 대하여 영농규모 및 대체구입등 농기계구입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주요 농기계구입자금 지원추천서(별지 제15- I -9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의 주요농기계 적정 공급계획 수립 시행실태를 확인 지도하여야 한다.

다. 보 고

	보 고 자	보고구분	보고기한	보고서식
농기계 공급상황	농협중앙회장	분기보	익월 20일	별지제15- I -10호 서식
농기계 품질보증서 발급실적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반기보	"	별지제15- I -11호 서식

6. 200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농협조합 또는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 구비서류 : 농기계 구입계획서(별지 제15- I -1호서식)

나. 신청자격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등 공동조직으로서
농기계 조작능력이 있고 3년이상 영농을 지속하고자 하는 자

다. 지원비율 : 융자 70% (국고 28, 농협 42), 자담 30%

라. 지원대상자 선정

- 융자취급기관장은 융자지원으로 농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농가에 대하여 융자지원 농기계 구입신청서(별지 제15- I -2호서식)와 융자수속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융자수속필증(별지 제15- I -3호서식)을 교부함.
-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농업진흥지역에 농지를 소유한 농가로서 대형농기계(트랙터, 콤바인, 스피드스프레이어, 승용형이앙기)를 구입하는 농가(조직)
 - 행정기관 또는 폐농기계처리장에서 「폐농기계처리확인서」(별지제15- I -7호서식)를 받아 제출한 농가(조직)
 - 농기계 융자지원을 한번 받은 농가(조직)가 추가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신규 신청농가(조직)보다 차순위 적용

7. 별표 및 별지서식

가. 별 표

- 별표 15- I -1 : 지원대상 농기계
- 별표 15- I -2 : 기종별·규격별 지원한도액
- 별표 15- I -3 : 사업검정 및 정산서

나. 별지서식

- 별지 15- I -1호서식 : 농기계 구입 계획서
- 별지 15- I -2호서식 : 농기계 구입 용자 신청서
- 별지 15- I -3호서식 : 용자수속필 확인서(발행원부)
- 별지 15- I -4호서식 : 용자금 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 확인서
- 별지 15- I -5호서식 : 용자실행 신청접수증(발행원부)
- 별지 15- I -6호서식 : 농기계 구입자금 용자신청 처리부
- 별지 15- I -7호서식 : 폐농기계 처리 확인서
- 별지 15- I -8호서식 : 주요농기계 용자지원 공급 현황
- 별지 15- I -9호서식 : 주요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추천서
- 별지 15- I -10호서식(총민26-5) : 농기계 공급상황보고
- 별지 15- I -11호서식(총민26-30) : 농기계 품질보증서 발급 실적 보고

지 원 대 상 농 기 계

1. 농용트랙터 2. 농용트랙터용 부속작업기 2-2 감자파종기 2-3 결속기 2-4 구굴기 2-5 굴삭기 2-6 그래플(적재기) 2-7 논두렁조성기 2-8 땅속작물수확기 2-9 랩피복기 2-10 로우더 2-11 로타베이터 2-12 모우어 2-13 무논정지기 2-14 반전집초기 2-15 발근기 2-16 발근파쇄기 2-17 버직파기 2-18 봄스프레이어 2-19 비료살포기 2-20 사료배합기 2-21 사료작물수확기 2-22 스피드스프레이어 2-23 심경로타리 2-24 심토파쇄기 2-25 액상비료살포기 2-26 잔가지파쇄기 2-27 제초기 2-28 주행형분무기 2-29 중경제초기 2-30 톱밥제조기 2-31 퇴비살포기 2-32 트레일러 2-33 파종기 2-34 플라우 2-35 휴립복토기 2-36 휴립피복기 37. 보행형동력경운기 38. 보행형동력경운기용 부속작업기 38-38 *구굴기 38-39 *로타리	38-40 *배토기 38-41 *비닐피복기 38-42 *심경로타리 38-43 *쟁기 38-44 *중경제초기 38-45 *철차륜 38-46 *휴립기 38-47 땅속작물수확기 38-48 로우더 38-49 버직파기 38-50 비료살포기 38-51 사료배합기 38-52 스크레이퍼 38-53 잔가지파쇄기 38-54 전정기 38-55 제초기 38-56 톱밥제조기 38-57 퇴비살포기 38-58 트레일러(중고차동장치부 착된 것 포함) 38-59 파종기 60. 승용경운기 및 부속작업기 61. 동력이앙기 61-61 보행형동력이앙기 61-62 승용이앙기 63. 동력이앙기용 부속작업기 63-63 버직파기 63-64 측조시비기 65. 바인더 66. 콤팩인 66-66 자탈형콤팩인 66-67 보통형콤팩인 68. 곡물건조기 69. 보행형관리기 70. 보행형관리기용 부속작업기 70-70 *구굴기 70-71 *굴취기 70-72 *로타리 70-73 *배토기 70-74 *복토기 70-75 *비닐피복기	70-76 *심경로타리 심경로타리(정지로터 및 씨래 부착된 것) 70-77 *씨래 70-78 *예취기 예취기(끌어올림 및 모어형) 70-79 *쟁기 70-80 *제초기 70-81 *중경제초기 70-82 *트레일러 트레일러(중고차동장치부 착된 것) 70-83 *파종기 파종기(4조이상) 70-84 *혈굴기 70-85 *휴립기 70-86 *휴립피복기 70-87 논두렁조성기 70-88 버직파기 70-89 비료살포기 70-90 스크레이퍼 70-91 잔가지파쇄기 70-92 전정기 93. 승용관리기 94. 승용관리기용 부속작업기 94-94 구굴기 94-95 분무기 94-96 로타리 94-97 복토기 94-98 봄스프레이어 94-99 비닐피복기 94-100 비료살포기 94-101 이앙장치 94-102 잔가지파쇄기 94-103 제초기 94-104 퇴비살포기 94-105 휴립기 94-106 휴립피복기 107. 곡물수집차 108. 곡물이송기 109. 과수인공교배기
---	---	--

(주) ○명칭앞의 “*”표는 본체와 함께 구입할 경우에만 지원함

110. 과일선별기	127. 동력제초기	143. 이식기
111. 농산물건조기	128. 동력중경제초기	144. 자동관수분배기
112. 농산물결속기	129. 무 수확기	145. 종자봉입기
113. 농산물세척기	130. 무인자동방제기	146. 채소수확기
114. 농용동력운반차	131. 버섯자동천공접종기	147. 채소자동집목기
115. 농용온풍난방기	132. 벼직파기(전용형)	148. 축사용고압세척기
116. 농용굴삭기(자체중량 1톤미만)	133. 벼품위자동판정기	149. 콩정선기
117. 농용로우더(자체중량 1톤미만)	134. 상토제조기	150. 탄산가스발생기
118. 농용잔가지파쇄기	135. 석(연)탄보일러	151. 탈망기
119. 농용톱밥제조기	136. 스피드스프레이어	152. 토양소독기(전용형)
120. 농용혼합기	137. 예도형동력예취기	153. 하우스환경제어장치
121. 농용환풍기	138. 온실난방용대체에너지화기기 (페타이어소각장치)	
122. 다목적관리작업차	139. 온실용동력개폐기	
123. 동력배토기	140. 온실용살수기	
124. 동력퇴비살포기	141. 원거리용고성능방제기	
125. 원격조종형동력분무기	142. 육묘용과종기	
126. 동력연무기		

기 종 별 지 원 한 도 액

기 종 명	규 격	지원한도액	비 고
1. 농용트랙터	○ 바퀴형	천원	
	- 20마력 미만	5,500	
	- 20마력 이상 25마력 미만	6,400	
	- 25마력 이상 30마력 미만	8,100	
	- 30마력 이상 35마력 미만	9,300	
	- 35마력 이상 40마력 미만	10,200	
	- 40마력 이상 45마력 미만	13,000	
	- 45마력 이상 50마력 미만	15,000	
	- 50마력 이상 55마력 미만	18,700	
	- 55마력 이상 60마력 미만	20,600	
	- 60마력 이상 85마력 미만	22,500	
	- 85마력 이상 100마력 미만	28,300	
	- 100마력 이상	38,800	
	○ 케도형	80,100	
	○ 안전캡 부착시		
- 55마력 미만	1,000		
- 55마력 이상 70마력 미만	1,500		
- 70마력 이상	2,200		
○수평제어장치 부착시	1,000	17	
2-2 농용트랙터용 감자파종기	○ 2조	2,300	
	○ 3조	3,500	2
2-3 농용트랙터용 결속기	○ 원통형		
	- 드럼폭 100cm미만	5,200	
	- 드럼폭 100cm이상	17,400	
	○ 사각형		
	- 드럼폭 130cm미만	9,500	
- 드럼폭 130cm이상 160cm미만	11,400		
- 드럼폭 160cm이상	14,200	5	
2-4 농용트랙터용 구굴기	○ 오거형	1,600	
	○ 로타리형	3,300	2
2-5 농용트랙터용 굴삭기	○ 버킷산적용량 0.055m³미만	4,400	
	○ 버킷산적용량 0.055m³이상	5,800	2
2-7 농용트랙터용 논두렁조성기	○ 전규격	2,500	1
2-8 농용트랙터용 땅속작물수확기	○ 최대굴취폭 130cm미만	2,700	
	○ 최대굴취폭 130cm이상 150cm미만	2,900	
	○ 최대굴취폭 150cm이상	3,500	3
2-10 농용트랙터용 로우더	○ 버킷산적용량 0.3m³미만	1,400	
	○ 버킷산적용량 0.3m³이상 0.5m³미만	2,000	
	○ 버킷산적용량 0.5m³이상	2,700	3
2-11 농용트랙터용 로타베이더	○ 경폭 130cm미만	900	
	○ 경폭 130cm이상 170cm미만	1,100	
	○ 경폭 170cm이상 180cm미만	1,300	
	○ 경폭 180cm이상 190cm미만	1,600	
	○ 경폭 190cm이상 200cm미만	1,900	
	○ 경폭 200cm이상 220cm미만	2,100	
	○ 경폭 220cm이상	2,700	7

기종명	규격	지원한도액	비고
2-13 농용트랙터용 무논정지기	○ 쇠토펙 2m미만	1,300	5
	○ 쇠토펙 2m이상 2.5m미만	1,600	
	○ 쇠토펙 2.5m이상 3.0m미만	1,800	
	○ 쇠토펙 3.0m이상 4.0m미만	2,000	
	○ 쇠토펙 4.0m이상	5,800	
2-14 농용트랙터용 반전집초기	○ 원심력식	2,300	4
	○ 캄트랙식		
	- 1축	2,500	
	- 2축	3,200	
2-15 농용트랙터용 발근기	○ 발근폭 90cm	1,600	1
2-17 농용트랙터용 벼직파기	○ 로타베이터포함 6조이하	2,200	3
	○ 로타베이터포함 7조이상	2,700	
	○ 파종장치만 구입	1,000	
2-19 농용트랙터용 비료살포기	○ 탑재형		3
	- 호퍼용량 310kg미만	460	
	- 호퍼용량 310kg이상	1,000	
2-20 농용트랙터용 사료배합기	○ 견인형	820	3
	○ 배합량 3m'미만	6,300	
	○ 배합량 3m'이상 6m'미만	9,500	
2-21 농용트랙터용 사료작물수확기	○ 배합량 6m'이상	15,100	3
2-22 농용트랙터용 스피드스프레이어	○ 목초용	3,400	2
	○ 옥수수용	10,700	
2-23 농용트랙터용 심경로다리	○ 전규격	3,100	1
2-24 농용트랙터용 심토펙쇄기	○ 전규격	1,600	1
2-25 농용트랙터용 액상비료살포기	○ 1조식	3,900	2
	○ 2조식	6,000	
2-26 농용트랙터용 잔가지파쇄기	○ 일반살포형		3
	- 적재정량 5톤미만	5,300	
	- 적재정량 5톤이상	6,400	
	○ 원거리살포형	8,700	
2-27 농용트랙터용 잔가지파쇄기	○ 수동 및 기계공급식		5
	- 파쇄량 1.5톤/h미만	1,500	
	- 파쇄량 1.5톤/h이상 2.5톤/h미만	2,600	
	- 파쇄량 2.5톤/h이상	4,800	
	○ 유압공급식		
- 파쇄량 3.0톤/h미만	4,100		
- 파쇄량 3.0톤/h이상	8,500		
2-28 농용트랙터용 주행형분무기	○ 전규격	2,000	1
2-29 농용트랙터용 중경제초기	○ 탑재식		3
	- 약통용량 600ℓ미만	1,700	
	- 약통용량 600ℓ이상	2,400	
2-30 농용트랙터용 뚝밥제조기	○ 견인식	2,100	1
	○ 전규격	2,200	
	○ 전규격	8,900	1

기종명	규격	지원한도액	비고
2-31 농용트랙터용 퇴비살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재정량 1.0톤미만 ○ 적재정량 1.0톤이상 2.3톤미만 ○ 적재정량 2.3톤이상 4톤미만 ○ 적재정량 4톤이상 	천원 1,900 2,900 4,000 5,400	4
2-32 농용트랙터용 트레일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재용량 1톤이하 - 적재용량 1.5톤이상 2.0톤미만 - 적재용량 2.0톤이상 3.0톤미만 - 적재용량 3.0톤이상 4.0톤미만 - 적재용량 4.0톤이상 ○ 2중 덤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재정량 4.0톤미만 - 적재정량 4.0톤이상 5.0톤미만 - 적재정량 5.0톤이상 ○ 곡물운반형 	580 1,100 1,500 1,900 2,200 2,400 2,700 3,100 3,700	9
2-34 농용트랙터용 플라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양용 2련 ○ 자동양용 3련이상 5련미만 ○ 자동양용 5련이상 ○ 모듈드보드 단용4련미만 ○ 모듈드보드 단용4련이상 ○ 모듈드보드 양용3련이상 ○ 모듈드보드 회전4련미만 ○ 모듈드보드 회전4련이상 ○ 원판구동 4련 ○ 원판구동 6련이상 10련미만 ○ 원판구동 10련이상 ○ 이랑3~4련 ○ 이랑 5련 ○ 이랑 6련 ○ 이랑 8련이상 	500 840 1,000 1,400 1,800 3,300 3,000 4,100 2,700 3,200 3,800 660 800 1,000 1,600	15
2-35 농용트랙터용 휴립복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두독식 ○ 2두독식 	1,400 3,300	2
2-36 농용트랙터용 휴립피복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두독식 ○ 2두독식 	1,300 2,000	2
37. 보행형동력경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마력 ○ 8마력 이상 	1,100 1,200	2
38. 보행형동력경운기 및 그와 일체로 지원하는 부속작업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마력 ○ 8마력 이상 	1,300이내 (구입가격의80%이내) 1,400이내 (구입가격의80%이내)	2
38-47 보행형동력경운기용 땅속작물수확기	○ 전규격	760	1
38-48 보행형동력경운기용 로우더	○ 전규격	2,800	1
38-49 보행형동력경운기용 벼직파기	○ 전규격	740	1
38-50 보행형동력경운기용 비료살포기	○ 전규격	440	1
38-51 보행형동력경운기용 사료배합기	○ 전규격	6,800	1
38-52 보행형동력경운기용 스크레이퍼	○ 전규격	960	1

기종명	규격	지원한도액	비고
38-53 보행형동력경운기용 간가지파쇄기	○ 전규격	천원 900	1
38-54 보행형동력경운기용 전장기	○ 전규격	1,400	1
38-55 보행형동력경운기용 제초기	○ 전규격	840	1
38-56 보행형동력경운기용 톱밥제조기	○ 수동공급식 - 원판톱날드럼형 - 원판회전형 ○ 자동공급식	900 1,200 2,200	3
38-57 보행형동력경운기용 퇴비살포기	○ 전규격	2,600	1
38-58 보행형동력경운기용 트레일러	○ 일반형 ○ 유압덤프형 ○ 차동구동형 - 신차축 - 중고차축	420 1,200 1,000 780	4
38-59 보행형동력경운기용 파종기	○ 전규격	600	1
61. 동력이앙기(보행형)	○ 2조 ○ 4조	1,500 1,800	2
62. 동력이앙기(승용형)	○ 4조 ○ 6조 - 크랭크식 - 로타리식	5,800 5,600 8,700	3
63-63 동력이앙기용 벼직파기	○ 보행형 ○ 승용형	900 580	2
65. 바인더	○ 전규격	1,700	1
66. 콤바인(자탈형)	○ 포대형 - 2조(정격출력 15마력미만) - 2조(정격출력 15마력이상) - 3조(정격출력 20마력미만) - 3조(정격출력 20마력이상) - 4조이상 ○ 산물형 - 3조 - 4조이상 ○ 벧짚결속장치구입시	10,400 9,600 17,700 22,900 20,900 25,300 1,000	7
67. 콤바인(보통형)	○ 전규격	58,400	1
68. 곡물건조기	○ 30석 미만 ○ 30석이상 40석미만 ○ 40석이상 50석미만 ○ 50석이상 60석미만 ○ 60석이상 100석미만 ○ 100석이상 ○ 수분측정기 부착구입시	3,300 3,700 4,100 5,500 5,700 28,300 620	7
69. 보행형관리기	○ 3마력 미만 ○ 3마력이상 5마력미만 ○ 5마력이상	480 1,000 1,200	3

기종명	규격	지원한도액	비고
70. 보행형관리기 및 그와 일체로 지원하는 부속 작업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마력 미만 ○ 3마력이상 5마력미만 ○ 5마력이상 	<p style="text-align: center;">천원</p> <p style="text-align: center;">760이내 (구입가격의90%이내)</p> <p style="text-align: center;">1,200이내 (구입가격의90%이내)</p> <p style="text-align: center;">1,400이내 (구입가격의90%이내)</p>	3
70-76 보행형관리기용 심경로타리	○ 정지로터 및 씨레부착형	600	1
70-78 보행형관리기용 예취기	○ 끌어올림장치 부착 및 모어형	600	1
70-82 보행형관리기용 트레일러	○ 중고차동구동형	680	1
70-83 보행형관리기용 파종기	○ 4조 이상	600	1
70-87 보행형관리기용 논두렁조성기	○ 전규격	480	1
70-88 보행형관리기용 버직파기	○ 전규격	760	1
70-89 보행형관리기용 비료살포기	○ 전규격	360	1
70-90 보행형관리기용 스크레이퍼	○ 전규격	700	1
70-91 보행형관리기용 잔가지파쇄기	○ 전규격	560	1
70-92 보행형관리기용 전정기	○ 전규격	1,200	1
93. 승용관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형 ○ 겸용형(리프트,덤프장치 및 공기 압축기부착형) 	8,300 14,400	2
94-94 승용관리기용 구굴기	○ 전규격	420	1
94-95 승용관리기용 동력분무기	○ 전규격	3,600	1
94-96 승용관리기용 로타리	○ 전규격	800	1
94-98 승용관리기용 블스프레이어	○ 전규격	3,900	1
94-100 승용관리기용 비료살포기	○ 전규격	480	1
94-101 승용관리기용 이앙장치	○ 전규격	2,800	1
94-102 승용관리기용 잔가지파쇄기	○ 전규격	900	1
94-103 승용관리기용 제초기	○ 전규격	900	1
94-104 승용관리기용 퇴비살포기	○ 전규격	2,300	1
94-106 승용관리기용 휴림피복기	○ 전규격	1,100	1
107. 곡물수집차	○ 전규격	9,300	1

기종명	규격	지원한도액	비고
110. 과일선별기	○ 중량식(스프링저울식선별)	천원	
	- 수동공급식(5단)	1,100	
	- 수동공급식(6~8단)	1,300	
	- 수동공급식(10단)	2,300	
	- 자동공급식(5~8단)	1,800	
	- 자동공급식 및 세척식(5~6단)	2,600	
	○ 중량식(추저울식선별)		
	- 수동공급식(5~6단)	3,100	
	- 반자동 및 자동공급식	3,700	
	○ 중량식(전자식선별)		
	- 수동공급식		
	· 4~5단	3,400	
	· 6~7단	3,500	
	· 8단이상	4,300	
	- 자동공급식		
	· 7단	4,000	
	· 8~9단	4,600	
○ 중량식(광센서 선별)	2,600		
○ 형상식(드럼식선별)			
- 수동	1,500		
- 반자동공급식	1,700		
- 자동공급식	2,900		
○ 형상식(로울러식선별)			
- 반자동공급식	2,000		
○ 형상식(전자식선별)	3,400	18	
111. 농산물건조기	○ 선반식		
	- 2형	1,700	
	- 3형~4형	2,200	
	- 5형~7형	2,600	
	- 9형이상	3,400	
	○ 겸용식		
	- 4형~7형	2,200	
	- 9형	3,100	
	- 11형	4,200	
	- 15형	4,900	
	- 23형이상	6,300	
	○ 태양열집열장치 추가구입시	700	
	○ 랙크(120개)추가구입시	1,000	
	○ 랙크리프트추가구입시	1,000	
○ 선반순환식			
- 3~4형	3,500		
- 5~6형	4,200	14	
112. 농산물결속기	○ 접착결속식		
	- 수동공급식	1,100	
	- 자동공급식	2,400	
	○ 매듭결속식	2,900	
	○ 매듭결속절단식	14,900	4
113. 농산물세척기	○ 전규격	1,200	1

기종명	규격	지원한도액	비고
114. 농용동력운반차	○ 보행형	천원	7
	- 적재정량 200kg미만	480	
	- 적재정량 200kg이상 500kg미만	1,700	
	- 적재정량 500kg이상	2,500	
	○ 승용형		
	- 2륜구동방식	3,700	
	- 4륜구동방식	4,400	
- 작업대 겸용형			
· 2륜구동			
· 4륜구동(1톤미만)	4,800		
· 4륜구동(1톤이상)	8,900		
115. 농용온풍난방기	○ 경유용		10
	- 20천kcal미만	900	
	- 20천kcal이상 30천kcal미만	1,000	
	- 30천kcal이상 40천kcal이하	1,400	
	- 60천kcal이상 80천kcal이하	2,000	
	- 100천kcal이상 120천kcal이하	2,800	
	- 140천kcal이상 160천kcal이하	3,300	
	- 180천kcal이상 250천kcal이하	3,900	
	○ 증유용		
	- 180천kcal미만	5,400	
- 180천kcal이상 250천kcal이하	6,000		
- 300천kcal이상	7,400		
116. 농용굴삭기 (자체중량 1톤미만)	○ 버킷산적용량 0.016m ³ 미만	7,800	2
	○ 버킷산적용량 0.016m ³ 이상	10,800	
117. 농용로우더 (자체중량 1톤미만)	○ 버킷산적용량 0.014m ³ 미만	6,100	2
	○ 버킷산적용량 0.014m ³ 이상	7,500	
118. 농용잔가지파쇄기	○ 모터부착형	900	5
	○ 엔진부착형		
	- 정격출력 10마력 미만	1,300	
	- 10마력이상 20마력 미만	12,600	
	- 70마력이상	33,800	
○ 자주형	2,400		
119. 농용톱밥제조기	○ 모터부착형		7
	- 수동공급식		
	· 원판톱날드럼형	1,100	
	· 원판회전형	1,200	
	- 자동공급식		
	· 소요동력 10kw미만	2,100	
	· 소요동력 10kw이상 50kw미만	4,800	
	· 소요동력 50kw이상	40,000	
	○ 엔진부착형		
	- 수동공급식	1,700	
- 자동공급식	33,800		
121. 농용환풍기	○ 열회수 및 열교환식형		2
	- 토출량 20m ³ /min미만	1,300	
- 토출량 20m ³ /min이상	3,100		
123. 동력배토기	○ 전규격	440	1

기종명	규격	지원한도액	비고
126. 동력연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온식연무기 - 연무량 40 l/h 520 - 연무량 50 l 이상 90 l/h미만 600 - 연무량 90 l/h이상 · 약액통용량 30 l 미만 800 · 약액통용량 30 l 이상 900 ○ 상온식 연무기 - 연무장치 고정형 2,700 - 연무장치 회전형 3,700 - 연무장치 원심형 620 ○ 방제부 추가구입시 - 고정형 및 회전형 1,000 - 원심형 440 	천원	9
127. 동력제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 2,500 ○ 승용 3,600 		2
128. 동력중경제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기구동식 460 ○ 중앙구동식 1,000 ○ 측면구동식 1,900 		3
130. 무인자동방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선유도식 4,700 ○ 고정경로식 6,500 		2
131. 버섯자동천공접종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규격 14,700 		1
132. 벼직파기(전용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6조 1,500 ○ 승용6조 4,600 ○ 승용8조 6,500 		3
133. 벼품위자동판정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규격 35,600 		1
136. 스피드스프레이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주(보행)형 - 약액탱크용량 200 l 미만 6,100 - 약액탱크용량 200 l 이상 6,400 ○ 자주(승용)형 - 약액탱크용량 450 l 미만 7,000 - 약액탱크용량 450 l 이상 550 l 미만 9,700 - 약액탱크용량 550 l 이상 1000 l 미만 11,200 - 약액탱크용량 1000 l 이상 34,200 ○ 운반작업겸용형 - 약액탱크용량 600 l 미만 12,100 - 약액탱크용량 600 l 이상 15,100 ○ 안전캡 부착구입시 2,700 ○ 안전캡(파워스티어링포함)부착구입시 3,200 		10
137. 예도형동력예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규격 1,100 		1
138. 온실용난방용대체에너지화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타이어소각장치 45,000 		1
139. 온실용동력개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규격 800 		1
141. 원거리용고성능방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규격 8,800 		1
142. 육묘용과종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동산파식 1,500 		1
143. 이식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형 1조 2,500 ○ 자동 4,800 		2
144. 자동관수분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규격 1,300 		1
145. 종자분입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규격 10,300 		1
147. 채소자동접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규격 660 		1
148. 축사용고압세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규격 1,400 		1
151. 탈망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규격 480 		1
153. 하우스환경제어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규격 4,700 		1
합계			304규격

○○○○사업(완료, ○○년말) 검정 및 정산서

1. 사업주관기관명 :
2. 작성년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지원대상자 주소·성명 : (주민등록번호)
5. 사업비 집행명세

기종명	제 조 회사명	규격 (형식)	제조 번호	수량 (대)	단가 (천원)	사업비 집행액(천원)						양해를 적용여 부(예)	비 고
						계	국고 보조	국고 융자	지방비 보 조	농협자 융자	자부담		
						(100%)	()	()	()	()	()		농업기계가격표에 기재된 금액 미만 으로 거래한 경우는 그 사유를 가격표상 의 금액과 함께 기재
						(100%)	()	()	()	()	()		
						(100%)	()	()	()	()	()		

(작성요령)

-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첨부
(증빙서류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는 사업비집행액 합계와 일치해야 함)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자필서명영수증
 - “ 세무계산서(위·수탁판매시는 생산업체의
세무계산서)
 - “ 금융기관 거래자료(계좌입금증, 은행지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 다만, 자부담금에 대한 증빙은 반드시 계좌입금증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에 한함(위·
수탁판매시는 농민이 생산업체에 지불한 계좌입금증등 금융기관 거래자료)
- * 구입대상농기계(신품) 가격을 지원대상자의 중고농기계 가격과 상계처리
하고 지원대상자가 그 차액만 공급자에게 지급할 경우는 당해 중고농기계의 기
종명, 제조회사, 규격(형식), 제조번호(제작년도 포함), 가격 등을 기재한 계
약서 사본을 자부담금과 관련된 위의 금융기관 거래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 사업별로 1장에 여러 지원대상자를 연속하여 작성 가능

농기계 구입 계획서

접수번호 :

1. 신청자

신청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조직명)	
	주소		전화번호	

2. 영농규모 및 주작목

○ 영농규모

(단위 : 평)

구분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기타	계
소유							
임대							
계							

○ 주작목

- ① 쌀등 식량작물 ② 축산 ③ 원예작물(채소, 화훼, 특작) ④ 과수 ⑤ 인삼
⑥기타

3. 경영장부(경영일지)기록 상황

- 기록구분 : ① 경영장부 ② 경영일지
○ 기록기간 : ① 3년이상 기록 ② 2년기록 ③ 1년기록 ④ 기록안함

4. 시설 및 농기계 보유현황

○ 시설

(단위 : 평)

은실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축사	기타

○ 농기계 보유현황

(단위 : 대)

종 류	합 계	내 용
트랙터	대	00년식 0대, 00년식 0대, ...
콤바인		
승용관리기		
건조기		
스피드스프레이어		
승용관리기		

* 기타농기계 : 위외의 농기계 보유시 기종별 보유대수를 기재(미보유시는 “(미보유)”로 기재)

5. 농기계 구입 계획

지원 사업명								
기종명	제 조 회 사	규 격 (형식명)	수 량	단 가	기 대 금 액			
					계	보조금	용 자	자부담

6. 농가보유 폐농기계 처리계획(폐농기계처리확인서 사본 첨부)

- 기 종 명 :
- 구입년도 :
- 폐농기계처리방법 :

19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
 ○ ○ 농협조합장
 농협중앙회 ○ ○ 지부장
]
 귀하

농기계 구입 용자 신청서

접수번호 :

1. 신청자 및 구입예정 농기계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 (형식명)	수량	단가	기대금액			구입 희망일
					계	용자금	자부담	

2. 공급자 확인

- 본인은 신청자가 구입할 농기계(생산업체가 직접공급하는 경우는 농기계조합의 품질 및 하자보증을 받은 제품의 보증번호 :)를 공급하고 공급 후에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농림사업실시규정』, 『농업기계화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책임 사후관리 하겠으며 위반시 처벌을 받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공급자 : ○○○ 대리점, 공급농협, 생산업체 ○○○ (인)

19 년 월 일

신청자 : (인)

용자취급기관장

귀하

용자수속필 확인서 발행 원부

발행번호	발행일자	신청자 성명	신청자 주소				
기종명 (규격)	수량	기대금액	용자금		보조금		자부담
		천원	국고	농협	국고	지방비	

-----절-----취-----선-----

용자수속필 확인서

1. 발행번호 :
2. 건 명 : 농업기계구입자금 대출 신청
3. 용자신청자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4. 용자신청내역

기종명	규격 (형식명)	수량	기대금액(천원)					비고	
			계	용자금		보조금			자부담
				국고	농협	국고	지방비		

귀하의 용자신청에 따라 용자수속을 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1) 본 확인서는 용자실행전의 확인서로 용자금은 “농기계 구입 및 보조지원대상자 선정확인서 또는 농기계구입 용자신청서”에 의거 산출 하였음.
- (2) 본 확인서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19 년 월 일

용자취급기관장 또는 취급자 ○ ○ ○ (인)

(신청자) 귀하

용자금 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 확인서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 (형식명)	농기계 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수량 (대)	단가	기대금액(천원)					
						계	용자금		보조금		자부담
							국고	농협	국고	지방비	
부속 작업기											
계											

* 농기계 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가 없을 경우에 자체검사번호 기재

위 농업기계를 정히 인수하였으므로 용자금 수령을 다음 피위임자에게 지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자(인수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피위임자(공급자)

공급 대리점 또는 생산업체 :

공 급 농 협 :

대 표
조합장 (인)

19 년 월 일

용 자 취 급 기 관 장 귀 하

[별지제15- I -5호서식]

용자실행 신청 접수증 발행 원부

발행번호	발행일자	실수요자 성명	기대 제조회사명				
기종명	수량	기대금액	용자금		보조금		자부담
			국고	농협	국고	지방비	
	대	천원					
계							

-----절-----취-----선-----

용자실행신청접수증

1. 발행번호 :

2. 실수요자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3. 용자실행 신청내역

기종명	규격	형식명	수량 (대)	기대금액(천원)						제조회사명 및 대리점명
				계	용자금		보조금		자부담	
					국고	농협	국고	지방비		
부속 작업기										
계										

19 년 월 일

용자취급기관장 ○ ○ ○ (인)

공급회사(대리점) 귀하(농협공급분은 “(실수요자)귀하”)

농기계 구입자금 융자신청 처리부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차 주 (성명, 주소)	융자신청기종		구 입 금 액 (천원)					처 리		
			기종명 (수량)	업체명 (공급자명)	계	융자		보조		자부 담	일자	내용
						국고	농협	국고	지방비			

주요 농기계 용자지원공급현황

(단위 : 대)

기종명	성명	주소	제조회사	규격 (형식명)	용자실행신청 접수증발급일	비고

주요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추천서

1. 신청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2. 구입 예정 농기계

- 기 종 명 :
- 제 조 회 사 :
- 규격(형식명) :
- 수 량 :

위 신청인이 구입코자 하는 농기계에 대하여 구입자금을 지원해줄 것을 추천합니다.

19 년 월 일

○ ○ ○ 시·군 농촌지도소장(읍·면 상담소장) ○ ○ ○ (인)

읍·자취금기관장 귀하

총민 26-5

농기계 공급상황 보고

1.농업기계화 사업자금 지원실적

가. 재원별 용자지원 실적

(단위: 백만원, %)

재원별	연간계획 (A)	배정실적		집행실적		비율 (B/A)
		금회	누계	금회	누계 (B)	
농특회계자금 차관회전자금 농협자금등 . . 계						

나. 용도별 용자지원 실적

(단위: 백만원, %)

재원별	연간계획 (A)	배정실적		집행실적		비율 (B/A)
		금회	누계	금회	누계 (B)	
○ 농기계구입자금 지원 ○ 농기계사후관리 지원 - 수리용부품확보 지원 - 수리장비 지원 - 농기계보관창고시설지원 ○ 농기계 생산비축자금 ○ 시설농업기자재 생산지원 자금 계						

2. 농업기계 용자지원 공급상황

(199 . . .까지 접수증 발급실적)

가. 총괄

(단위: 대)

기종별	공급계획	공급실적			전년동기 공급실적 (C)	비율	
		전월까지	당월	누계(B)		B / A	B / C

※ ()는 순수대출지원분 별도내서

나. 시·도별 농기계 공급상황

(단위: 대)

구분 시·도별	기종명	공급실적		
		계	농협분	대리점분

※ 순수용자지원분은 별도작성, 단 기종명은 별지15-Ⅱ-6호서식(농업기계 보조지원공급 및 집행실적 보고)의 주요농기계 기종 구분을 사용

다. 업체별, 기종별 공급상황

(단위: 대)

구분 시·도별	기종명	공급실적		
		계	농협분	대리점분

라. 기종별 지원실적

(단위: 대, 백만원)

기종별	금 차 지원					지원누계				
	계	수량	보조	응자	자담	계	수량	보조	응자	자담

※ 응자란중 ()는 순수응자 지원분 별도내서

마. 업체별 지원실적

(단위: 백만원)

기종별	금 차 지원				지원누계			
	계	보조	응자	자담	계	보조	응자	자담

[별지 제15- I -11호서식]

총민 26-30

농기계 품질보증서 발급실적 보고

(단위 : 대)

기 종 별	제조업체명	발급실적	비 고

II. 벼직파 및 밭작물용 농기계 구입지원

1. 목 적

- 손쉽고 노동력이 적게드는 벼직파재배 확대보급으로 쌀 생산비를 절감하고 벼 재배면적을 안정적으로 확보
- 생력기계화 효과가 뛰어난 밭작물용 신기술농업기계의 보급을 촉진하여 밭작물의 기계화를 촉진

2. 시책 및 추진방향

- 벼직파용과 밭작물용으로 구분 지원
- 벼 직파재배 및 밭작물의 기계화 촉진으로 적기영농을 도모하고 농업생산성을 증가

3.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및 제7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대,백만원)

		'92-'96	'97	'98	'99 (예산안)	2000	2001- 2004
사 업 량		3,897	1,462	600	1,798	6,000	
사 업 비	계	8,160	3,832	2,400	9,109	34,000	
	보 조	2,040	807	480	911	3,400	
	용 자	1,306	389	480	2,551	9,520	
	지 방 비	2,040	808	480	911	3,400	
	농협융자	1,958	583	720	3,826	14,280	
	자 담	816	1,245	240	910	3,400	

5. '99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지원대상자

○ 벼 직파용 농기계

- 경지정리지역 중심으로 농업인, 농협조합,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 공동이용조직

○ 발작물용 농기계

- 주산단지 중심으로 농업인, 농협조합,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 공동이용조직

(2) 지원대상 농기계

○ 벼 직파용농기계 : 벼직파기, 탈망기, 중경제초기 등

○ 발작물용농기계 : 신기술농업기계로 지정받은 발작물용 농기계

- 원거리용 고성능 방제기, 무인자동방제기, 채소자동접목기, 과수용승용관리기, 벼섯자동천공접종기, 승용관리기(발용), 자동관수분배기, 종자봉입기 등

○ 주행형농기계(승용관리기등)는 기종명, 규격, 형식명, 제조번호, 제조자 등이 각인된 금속제(알루미늄 등)의 형식표지판을 견고하게 부착한 것에 한함

(3)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합 계	직파재배지원농기계	발작물재배 지원농기계
1,798 대	300	1,498

○ 지원비율 : 기대가격을 기준으로 보조 20%(국고보조 10%, 지방비 10%), 용자 70%(국고 28, 농협42), 자담10%

○ 기종별 용자조건

- 15- I -5-사업개요-나-(3) “기종별 지원비율 및 상환기간” 참조

나. '99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대,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농협융자)
			계	보조	융자		
계	1,798	9,109	3,462	911	2,551	911	4,736 (3,826)
벼 직 파 용 농 기 계	300	1,200	456	120	336	120	624 (504)
발작물재배용농기계	1,498	7,909	3,006	791	2,215	791	4,112 (3,322)

※ 시·도별 지원계획은 [별표15-Ⅱ-1]과 같음.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 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 부서

- 농림부 : 식량정책국 생산지원과(02-503-7228~9),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 및 영농자재부
- 도 : 농정국 농산(농정,유통)과, 농협중앙회 도지역본부 자재과
- 군 : 산업(농산,농정)과, 농촌지도소,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농업
기계사후봉사업소
- 읍·면 : 읍·면사무소, 농협조합, 농업기계사후봉사업소

다. 사업시행

(1) 사업비 집행

- 시장·군수·구청장은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
지사의 승인을 얻어 벼직파 및 발작물용 농기계구입자금지원사
업의 사업량 및 사업비를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음
- 벼직파재배 및 발작물 재배용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은 생산자조직 또
는 쌀전업농 농기계구입자금 지원과 상호 조정 집행이 불가능함

- 농업기계화사업외의 정부지원사업으로 농기계를 지원받은 경우는 당해 농기계의 내용연수기간내에는 농업기계화사업중 보조금을 수반하는 농기계 구입지원 불가
- 농업기계화사업중 보조금을 수반하는 농기계구입은 중복지원 불가
 - 사후관리기간내는 모든기종
 - 내용연수기간내는 동종농기계(다만, 내용연수기간내라도 현저히 노후되어 수리비가 당해 중고농기계 가액이상 소요되거나 영농규모의 확대로 농기계를 추가구입할 필요가 있다고 사업주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농기계 구입신청 및 인수

- 보조지원을 받아 벼직파 및 발작물용 농기계를 구입코자 하는 자는 농기계구입 및 보조지원 신청서(별지 제15-Ⅱ-1호서식)에 농기계 공급자의 사후봉사 이행보증 확인을 받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보조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는 농기계구입 및 보조지원대상자 선정확인서(별지 제15-Ⅱ-1호서식)를 시장·군수로부터 발급받아 동 확인서와 농기계 용자신청서(별지 제15-Ⅰ-2호서식)등 용자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용자 취급기관장에게 신청함.
- 용자취급기관장은 농가의 용자신청에 대하여 용자지원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용자수속필 확인서(별지 제15-Ⅰ-3호서식)를 교부함.
- 용자수속을 완료한 농가는 공급자에게 용자수속필확인서, 용자금 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확인서(지원한도액내의 용자금 지원 필요시 제출, 별지 제15-Ⅰ-4호서식), 보조금지불위임·자부담 납부 및 기대인수확인서(별지 제15-Ⅱ-2호서식)를 제출하고 기대를 인수함.

(3) 공급자의 보조금 및 용자금 신청과 지급

(가) 보조금 신청 및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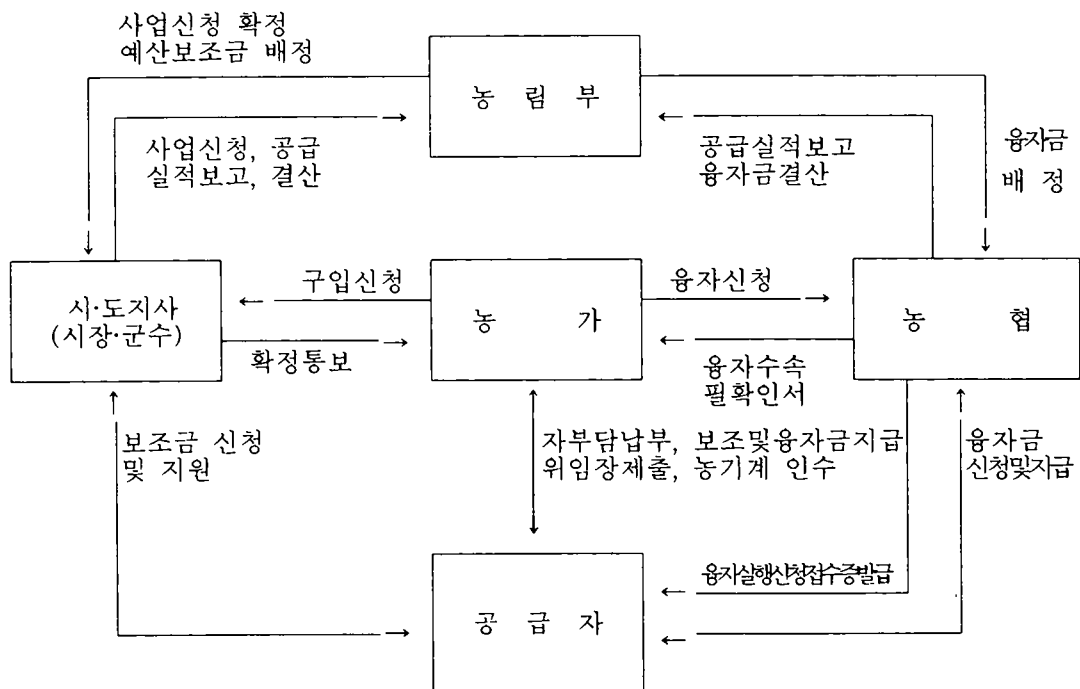
- 농기계 공급자는 매월 2회이상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조금(농기계 구입자금)교부 신청서(별지 제15-Ⅱ-3호 서식)에 의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되 공급농협의 경우에는 농협중앙회 시·군지부가 보조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을 받음.
- 농기계 생산업체가 시·군·구 농기계 사후봉사사업자에게 위탁판매할 경우와 시·군·구 농기계 사후봉사사업자가 정상적인 농기계 공급업무를 할 수 없을 때는 생산업체가 직접 보조금 지급신청 및 지급을 받을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매월 2회 이상 보조금을 지급하며, 사전에 농기계구입 및 규격의 상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농기계 보조지원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15-Ⅱ-4호서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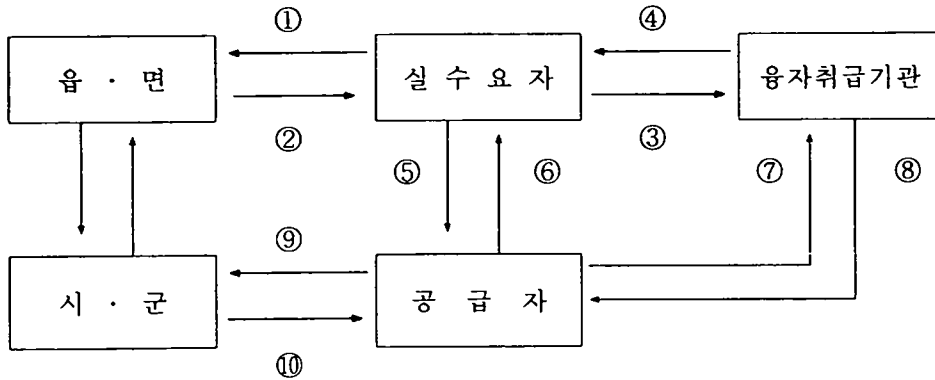
(나) 용자금 신청 및 지급

- 농기계 공급자는 농기계 인도시에 실수요자로부터 받은 용자수속필 확인서, 용자금 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확인서를 용자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여 용자금 지급을 신청함.
- 용자취급기관장은 용자실행신청 접수후 공급자에게 용자실행 신청접수증(별지 제15-Ⅰ-5호서식)을 발급하고, 농업기계 구입자금 용자신청처리부(별지 제15-Ⅰ-6호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사전에 농기계구입 및 규격의 상이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농협은 확보된 자금범위내에서 월2회 이상 용자실행함.

(4) 사업시행체계



(5) 농기계구입자금 지원 체계도



보조지원 농기계

읍자치원 농기계

- ① 농기계구입 및 보조지원 신청서 제출
- ② 농기계 구입 및 보조지원대상자 선정확인서 발급
- ③ ②의 선정확인서와 읍자신청서류 제출
- ④ 읍자수속필확인서 교부
- ⑤ 기대인수 신청
 - 읍자수속필 확인서
 - 읍자금 지불위임 및 기대인수 확인서
 - 보조금지불위임·자부담 납부 및 기대인수 확인서
- ⑥ 기대인계
- ⑦ 읍자실행 신청
- ⑧ 읍자실행신청 접수증 발급
- ⑨ 보조금지급신청(보조금교부신청서)
- ⑩ 보조금 지급

- ① 생략
- ② 생략
- ③ 일반읍자치원 농기계구입신청서와 읍자신청서류 제출
- ④ 읍자수속필확인서 교부
- ⑤ 기대인수 신청
 - 읍자수속필 확인서
 - 읍자금지불위임 및 기대인수 확인서
 - 자부담금 납부
- ⑥ 기대인계
- ⑦ 읍자실행 신청
- ⑧ 읍자실행신청 접수증 발급
- ⑨ 생략
- ⑩ 생략

라. 국고지원금 배정 및 집행절차

- 사업주관기관은 다음달까지 집행가능한 최소한의 보조 및 융자한도액을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받아 늦어도 매월 20일까지 농림부(생산지원과)에 배정 요구

- 보조 및 융자 구분 요구

- 사업주관기관이 시·군인 경우는 시·도가, 지역농협 또는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인 경우는 농협중앙회 본회가 종합하여 농림부(생산지원과)에 보조 및 융자한도액 배정 요구

- 보조 및 융자한도액 배정요구를 하였으나 정부의 자금형편상 당해월에 전액이 배정되지 못한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당해금액을 차기분에 포함하여 배정 요구

다만, 지원대상자로부터는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신청액중 배정안된 금액(부족액)을 다시 신청받지 않아도 됨

- 보조 및 융자한도액은 매월 20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당해 월에 배분함

- * 사업주관기관이 지원대상자로부터 소요자금을 신청받을 때에는 신청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배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연말까지 집행을 지연하면 정부에 반납한다는 사항을 반드시 주지시켜 실제의 사업진행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과도한 자금을 신청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함

- 보조 및 융자한도액 비정후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달까지 자금을 집행하지 않으면 당해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음

- 시·군(사업주관기관)이 확정된 사업별·지원대상자별 구입대상 농기계의 기종명, 제조업체명, 규격, 수량과 사업비 명세(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보조, 농협융자, 자부담으로 구분)을 대출취급기관에 통지

- 정부로부터 융자한도액이 배정되면 그 때마다 그 내용도 통지

- 대출취급기관은 융자한도액에 따라 사업별 지원대상 농가별로 대출실행하고 대출금액을 시·군에 통지
- * 시·군에서는 보조금 지급후 대출취급기관의 실제 대출금(국고융자와 농협융자로 구분), 보조금(지방비 포함) 및 자부담금과 함께 검정 및 정산서에 기재(1만원 미만은 사사오입)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별표15-1-3」에 의거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해야 함
 - 검정 및 정산서에는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보조, 농협융자,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붙임 서식에 기재된 증거서류에 의하여 확인
 - 사업주관기관은 증거서류에 의심이 갈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거래업체 등에 조회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함
 - 위의 방법으로 사실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객관적 시각에서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관계증빙을 관할 세무서에 통지
- 「농업기계가격표」상의 기종별 공급가격 미만으로 공급한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실제 공급가격에 사업별 지원비율을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1만원 미만은 사사오입)
 -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I -5-추진체계-마)참조
- 「농업기계가격표」상의 공급가격 미만의 금액으로 검정 및 정산한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당해 검정 및 정산서 사본을 지체없이 (FAX이용등) 농림부(생산지원과)에 통지
 - ※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사업에 대한 검정 및 정산(자부담금 포함)의 임무가 있는 기관이므로 특히 융자금을 수반하는 사업의 경우 농협이 대출을 취급하였다 하더라도 검정 및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됨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1) 농기계구입지원 보조금의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농기계는 보조를 받은자가 3년간 영농목적에 사용하여야 함.
- 시장·군수(읍·면장)·구청장은 보조지원 농기계의 선량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농기계 구입현황(별지 제15-Ⅱ-5호서식)을 비치하고 「농기계공급 및 사후관리대장」을 작성하여 3년간 사후관리(매년 1회이상 관리실태를 점검등)하고 보조금 교부목적과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는 농기계 사용기간을 감안, 보조금의 잔존액(정액법 기준으로 하되 폐기가격은 구입가격의 10%로 함)을 현금으로 반환 받아야 함.

다만, 농기계 사고등 불가피한 사유로 멸실되거나 시장·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시장·군수(읍·면장)·구청장은 보조금 지급후 당해년도내에 농촌지도소장과 합동으로 보조지원 공급된 농기계를 확인하고 규격이 다르거나 구입치 않았을 경우 및 선공급된 농기계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회수하고, 해당용자취급기관장에게는 용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며, 용자취급기관장의 확인과정에서 적발된 부당행위 통보자에 대하여도 보조금을 회수함.

※ 선공급된 농기계란 용자수속필확인서(별지 제15-Ⅰ-3호서식)발급 이전에 실수요자에게 공급된 농기계를 말한다.

(2) 농기계구입지원 용자금 사후관리 및 품질보증등 기타

- 일반농가 농기계구입지원(Ⅰ-5-행정사항-가) 참조

(3) 농기계구입자금 지원시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 용자액(용자 유용액)을 회수하고 5년간 농업기계화 사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에 따라 조치(관계기관에 명단을 통보하여 부당사용금액의 크기에 따라 1-5년간 일체의 농림사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4)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농기계	년 구입일	년 3년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농기계를 구입한 농가는 3년이상 영농목적에 사용하여야 함. ○ 사망, 질병등으로 불가피하게 이농할 때에는 읍·면장에게 신고하여 다른 농가에 관리 전환

나. 보 고

	보 고 자	보고구분	보고기한	보고서식
농기계 보조지원 공급 및 집행실적	시·도지사	분기보	익월20일	별지제15-Ⅱ-6호서식

6. 200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읍·면·동사무소, 시·군, 농촌지도소

- 구비서류 : 농기계 구입계획서(별지 제15-Ⅰ-1호 서식)

나. 신청자격

- 벼직파용 농기계

-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중심으로 경작규모에 따라 1~5호이상의 농가 및 지역농협,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작목반등 생산자조직
- 지원신청 농기계와 동일기종의 농기계를 보유한 농가에 대하여는 내용연수 동안 보조지원하지 않음.

- 밭작물 재배용 농기계

- 주산단지 중심으로 농가 및 영농조합법인, 작목반등 생산자조직
- 지원신청 농기계와 동일기종의 농기계를 보유한 농가에 대하여는 내용연수동안 보조지원하지 않음

○ 예 외

- 수해등 재해로 농기계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읍·면장이 확인하는 경우
- 농기계가 내용연수이내에 노후화 되었다고 읍·면장이 확인하는 경우

다. 지원비율 : 국고10%, 지방비10%, 용자70%(국고28, 농협42), 자담10%

라. 지원대상자 선정

(1) 벼직파용 농기계

○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농업진흥지역내 벼 재배농가(조직)로서 사용중이던 폐농기계의 조치계획이 확실한 농가(조직)
 - 행정기관 또는 폐농기계처리장에서 「폐농기계처리확인서」(별지 제15-I-7호서식)를 발급받아 제출한 농가(조직)
- 농업진흥지역외의 벼 재배농가(조직)
- 직파기, 탈망기, 중경제초기 일괄 지원요청자
- 기타 벼 재배농가

(2) 발작물용 농기계

○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주산단지내 전업농 및 생산자조직
- 주산단지 이외의 전업농 및 생산자조직
- 기타 일반발작물 재배농가

(3) 선정절차

- 시장·군수는 농기계구입 희망농가로부터 농기계구입계획서(별지 제15-I-1호서식)를 제출받아 농기계공급계획과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에 따라 시·군농발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통보

7. 별표 및 별지서식

가. 별 표

- 별표 15-Ⅱ-1 : 시·도별 벼직파 및 발작물용 농기계 지원계획
 - 별표 15-Ⅰ-2 : 지원대상농기계
 - 별표 15-Ⅰ-3 : 사업검정 및 정산서
- (15-Ⅰ 사업참조)

나. 별지서식

- 별지제15-Ⅱ-1호서식 : 농기계구입 및 보조지원 신청서(선정확인서)
 - 별지제15-Ⅱ-2호서식 : 보조금 지불위임·자부담납부 및 기대인수확인서
 - 별지제15-Ⅱ-3호서식 : 보조금(농기계구입자금) 교부신청서
 - 별지제15-Ⅱ-4호서식 : 농기계 보조지원확인서 발급대장
 - 별지제15-Ⅱ-5 서식 : 보조지원 농기계 구입현황
 - 별지제15-Ⅱ-6호서식(총민26-60) : 농기계 보조지원공급 및 집행실적 보고
 - 별지제15-Ⅰ-1호서식 : 농기계구입계획서
 - 별지제15-Ⅰ-2호서식 : 농기계구입 용자신청서
 - 별지제15-Ⅰ-3호서식 : 용자수속필 확인서
 - 별지제15-Ⅰ-4호서식 : 용자금 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확인서
 - 별지제15-Ⅰ-5 서식 : 용자실행신청접수증
 - 별지제15-Ⅰ-6호서식 : 농기계 구입자금 용자신청처리부
 - 별지제15-Ⅰ-7호서식 : 폐농기계 처리 확인서
- (15-Ⅰ 사업참조)

시·도별 비직파 및 발작물용 농기계 지원계획

(단위 : 대, 천원)

시·도	사 업 량			사 업 비				
	계	비직파 용	발작물 용	계	국고보조	지방비	국고융자	자부담
계	1,798	300	1,498	9,109,440	911,000	911,000	2,551,000	4,736,440
대 구	7	-	7	36,960	3,696	3,696	10,349	19,219
광 주	11	7	4	49,120	4,912	4,912	13,754	25,542
경 기	39	3	36	202,080	20,208	20,208	56,582	105,082
강 원	54	-	54	285,120	28,512	28,512	79,836	148,260
충 북	81	15	66	408,480	40,848	40,848	114,375	212,409
충 남	550	40	510	2,852,800	285,336	285,336	799,140	1,482,988
전 북	325	65	260	1,632,800	163,280	163,280	457,184	849,056
전 남	207	47	160	1,032,800	103,280	103,280	289,184	537,056
경 북	314	88	226	1,545,280	154,528	154,528	432,678	803,546
경 남	210	35	175	1,064,000	106,400	106,400	297,918	553,282

[별지제15-Ⅱ-1호서식]

농기계 구입 및 보조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

1. 신청자 및 구입예정 농기계

신청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조직명)						
	주소		전화번호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 (형식명)	수량	단가	기대금액				구입 희망일
					계	보조금	용자	자부담	
			대	천원					

2. 공급자 확인

- 본인은 위의 신청자가 구입할 농기계를 공급하고 공급후 「보조금의 관리 및 예산에 관한 법률」 및 「농림사업실시규정」의 「농업기계화사업」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책임 사후관리 하겠으며 위반시 처벌을 받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공급자 : ○○○ 대리점, 공급농협, 생산업체 ○○○ (인)

19 년 월 일

신청자 :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절-----취-----선-----

발급번호 :

농기계 구입 및 보조 지원대상자 선정확인서

신청자 주소 :
성명 :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 (형식명)	수량	단가	기대금액						구입 희망일
					계	국고 보조	지방비 보조	국고 용자	농협 용자	자부 담	
			대	천원							

19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 용자지원을 병행하여 구입시는 위 선정확인서와 용자신청서류를 갖추고 용자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십시오.

< 예 시 >

(이 면)

[농기계 구입 보조지원 교부조건]

1.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농기계는 3년이상 영농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2. 보조금 교부 목적과 교부조건에 위반하거나 이농등으로 영농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농기계 사용기간을 감안 보조금의 잔존액을 현금으로 반환 하여야 한다.
3. 교부조건을 위반한 농가에 대하여는 5년간 농업기계화 사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4.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절-----취-----선-----

< 예 시 >

(이 면)

[농기계 구입 보조지원 교부조건]

1.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농기계는 3년이상 영농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2. 보조금 교부 목적과 교부조건에 위반하거나 이농등으로 영농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농기계 사용기간을 감안 보조금의 잔존액을 현금으로 반환 하여야 한다.
3. 교부조건을 위반한 농가에 대하여는 5년간 농업기계화 사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4.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조금 지불위임·자부담 납부 및 기대인수 확인서

기종명	제조사	규격 (형식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수량 (대)	단가	기대금액(천원)					
						계	융자금		보조금		자부담
							국고	농협	국고	지방비	
					천원						
부속 작업기											
계											

* 농기계 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가 없을 경우에 자체검사번호 기재

1. 위 농업기계를 정히 인수하였으므로 보조금 수령을 다음 피위임자에게 위임하니 지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농기계의 자부담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위임자(인수자)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인)

피위임자(공급자)

공급 대리점 또는 생산업체 :

공급 농협 :

대표

조합장 (인)

19 년 월 일

시장·군수 귀하

[별지제15-Ⅱ-3-1호서식]

읍면별 농기계보조금 청구내역

구 분 읍·면	기 종 명	수 량	기 대 금 액 (천원)					
			계	보조금		융자금		자부담
				국고	지방비	국고	농협	
○○ 읍	○ ○ ○ ○ ○ ○ ○ ○ ○	대						
○○ 면	○ ○ ○ ○ ○ ○							

[별지제15-Ⅱ-3-2호서식]

보조금 지급 대상자 현황

기종명	구 입 자		수 량	기 대 금 액 (천원)					
	주 소	성 명		계	보조금		융자금		자부담
					국고	지방비	국고	농협	
			대						

[별지 제15-Ⅱ-4호서식]

농기계 보조지원 확인서 발급대장

발급번호	성명	주소	기종명	규격(형식명)	제조업체	구입처	기대대금(천원)						구입예정일	비고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국고응자	농협응자	자부담		

보조지원 농기계 구입현황

조직명 (성명)	주소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 (형식명)	농기계 형식표 지판의 제조번호	기대금액 (천원)					구입 년월일	
						계	보조금		음자			자부담
							국고	지방비	국고	농협		

※ 농기계 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가 없는 경우 자체검사 합격번호 기재

농업기계 보조지원 공급 및 집행실적 보고

1. 공급실적

< 총괄, 일반농가, 농업회사법인, 공동이용조직, 쌀전업농별로 별지 작성 >

(단위: 대)

기종별	공급계획 (A)	공급실적			전년동기 공급실적 (C)	비율	
		누계 (B)	전월까지	금월		B / A	B / C
계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스피드 스프레어							
이앙기							
관리기							
바인더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							
과일선별기							
온풍난방기							
기타							

2. 보조금 집행실적

< 총괄, 일반농가, 농업회사법인, 공동이용조직, 쌀전업농별로 별지 작성 >

(단위: 대, 백만원)

기종별	공급실적		집행			
			금회		누계	
	대수	금액	대수	금액	대수	금액
계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스피드스프레어						
이앙기						
관리기						
바인더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						
과일선별기						
온풍난방기						
기타						

3. 비 직파 및 발작물용 농기계 지원실적

가. 공급실적

(단위 : 대)

기종별	공급계획 (A)	공급실적			전년동기 공급실적 (C)	비율	
		누계 (B)	전월까지	금월		B/A	B/C
계							
비직파기							
탈망기							
중경제초기							
원거리용고성능방제기							
무인자동방제기							
채소자동접목기							
과수용승용관리기							
버섯자동천공접종기							
승용관리기(발용)							
자동관수분배기							
종자봉입기							
.							

나. 보조금 집행실적

(단위: 대, 천원)

기종별	공급실적		집행			
			금회		누계	
	대수	금액	대수	금액	대수	금액
계						
비직파기						
탈망기						
중경제초기						
원거리용고성능방제기						
무인자동방제기						
채소자동접목기						
과수용승용관리기						
버섯자동천공접종기						
승용관리기(발용)						
자동관수분배기						
종자봉입기						

Ⅲ. 생산자조직 농기계 구입 지원

1. 목 적

- 농촌노동력 부족해소와 대형농기계에 의한 규모화 영농으로 농업생산성 제고
- 농기계의 공동구입, 공동이용으로 이용율을 제고하고 구입비용을 절감하여 생산비절감 유도

2. 시책 및 추진방향

- 대형농기계중심의 규모화 영농으로 농업구조개선 및 경영규모 확대
- 생산자조직은 생산자단체와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으로 구분지원
- 미곡종합처리장 중심으로 벼농사의 생산에서 유통까지 일관기계화를 지원하여 국제경쟁력 제고

3.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및 제8조
- 농어촌특별발전조치법 제3조 및 제5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개소(호), 백만원)

구 분	'92-'96	'97	'98	'99 (예산안)	2000	2001-2004
사 업 량	16,366	1,819	1,100	610	600	
사 업 비	계	536,351	74,066	70,000	39,400	40,000
	보 조	109,193	18,283	14,000	3,940	-
	용 자	70,115	11,728	14,000	11,032	14,400
	지 방 비	109,196	18,286	14,000	3,940	-
	농협융자	164,670	10,395	21,000	16,548	21,600
자 부 담	83,177	15,374	7,000	3,940	4,000	

5. '99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지원대상

(가) 신규지원 생산자단체

- 토지이용형 작물의 경우 50ha 이상 영농작업 규모(농작업대행 또는 임차경영면적 25ha 이상 포함)를 확보하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하여 시·군에 등록을 필한 농업회사법인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협조합으로서 RPC와 농기구써비스센터를 운영하면서 50ha 이상 영농작업 규모(농작업대행 또는 임차경영)를 확보하고 위탁농작업 및 농작업 중개·알선과 농기계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농협조합

(나) 대체구입 지원 생산자단체

- '91~'94년까지 농기계구입자금 국고보조지원을 받은 농업회사법인
 - 농작업 대행 또는 임차경영면적을 25ha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이미 지원 받은 농기계 및 시설을 공동관리하고 있는 법인
- 농기계구입자금을 지원받은 농업회사법인중 경영등이 어려워 읍·면지역의 기존 영세 농업회사법인끼리 통폐합할 경우 농기계대체 구입자금 우선 지원

(다) 공동이용조직

- 토지이용형 작물의 경우 10-30ha 이상 영농작업규모를 확보하였거나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협조합
- 대규모 공동이용조직과 소규모 공동이용조직으로 구분 지원

(2) 지원단가

(단위 : 천원)

구 분		개소당 사업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	융자금	자부담
생 산 자 체 단	신규지원	100,000	10,000	10,000	70,000	10,000
	대체지원	50,000	5,000	5,000	35,000	5,000
공 동 이 용 조 직	대 규 모	60,000	6,000	6,000	42,000	6,000
	소 규 모	20,000	2,000	2,000	14,000	2,000

(3) 지원조건

- 지원대상농기계
 - 일반농가 농기계구입지원 사업지침에서 정한 기종 및 내용
다만, 동력경운기 및 부속작업기, 보행형동력이앙기 및 부속작업기, 바인더는 보조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종별 융자조건
 - 15- I -5-사업개요-나-(3) “기종별 지원을 및 상환기간” 참조
- 지원비율
 - 국고보조 10%, 지방비 10%, 융자 70%(국고28, 농협42) 자담 10%
- 지원조건
 - 개소당 사업비를 초과하여 구입하는 경우에는 농기계구입비의 90% 범위내에서 보조금(지방비포함)을 제외한 금액을 융자 지원할 수 있음.
- 대출
 -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등 생산자단체에 대한 대출은 법인명의로 하고, 작목반은 작목반장을 차주로하고 2인이상의 작목반원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여 대출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농기계는 5년이상 영농목적에 사용하여야 함.
- 정부지원을 받았거나 받고자하는 법인경영체는 매년도의 사업실적을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시·군에 보고 하여야 함.

나. '99 사업비(예산안)내용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자		
계	개소 610	백만원 39,400	14,972	3,940	11,032	3,940	20,488
생산자 단 체	70	7,000	2,660	700	1,960	700	3,640
공동이용 조 직	540	32,400	12,312	3,240	9,072	3,240	16,848

- ※ 1. 사업량 : 생산자단체는 신규지원, 공동이용조직은 대규모기준임.
- 2. 시·도별 지원계획은 [별표15-Ⅲ-1] 과 같음

< 추진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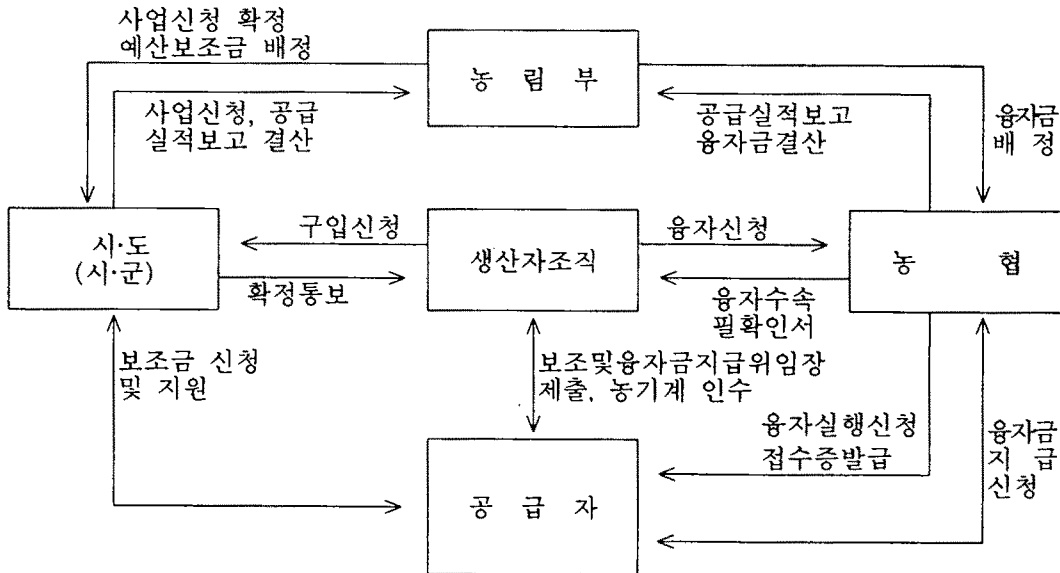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식량정책국 생산지원과(02-503-7228)
- 시·도 : 농정국 농산(농정, 유통)과
- 시·군 : 산업(농산, 농정)과, 농촌지도소

다. 사업시행

(1) 사업시행체계



(2) 사업비 집행

- 시장·군수는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생산자단체와 공동이용조직 사업의 사업량 변경, 생산자단체의 신규지원 사업량과 농기계 대체구입지원 사업량을 변경하여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음.
- 생산자조직 농기계구입 지원자금과 쌀전업농 농기계구입자금 지원은 상호 조정 집행할 수 없음

나. 중복지원 제한

- 농업기계화사업외의 정부지원사업으로 농기계를 지원받은 경우는 당해 농기계의 내용연수기간내에는 농업기계화사업중 보조금을 수반하는 농기계 구입 지원 불가
- 농업기계화사업중 보조금을 수반하는 농기계구입은 중복지원 불가
 - 사후관리기간내는 모든기종
 - 내용연수기간내는 동종농기계(다만, 내용연수기간내라도 현저히 노후되어 수리비가 당해 중고농기계 가액이상 소요되거나 영농규모의 확대로 농기계를 추가구입할 필요가 있다고 사업주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3) 사업추진

(가) 농기계구입신청 및 기대인수

- 생산자조직 농기계구입자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기종명, 규격, 제조회사, 가격등이 기록된 농기계 구입 및 보조지원신청서(별지 제15-Ⅱ-1호서식)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출한 농기계 구입 및 보조지원신청서의 기종명, 규격, 가격 등을 검토하여 작목별 경영규모별 기계화모델(별표15-Ⅲ-2)에 적합한 농기계를 구입토록 지도한 후 보조지원액을 확정하고 지원대상자 선정확인서(별지 제15-Ⅱ-1호서식)를 신청자에게 발급함.
- 보조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가 및 생산자조직은 지원대상자선정확인서를 시장·군수로부터 발급받아 동 확인서와 농기계 구입 용자신청서(별지 제15-1-2호서식)등 용자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용자취급기관장에게 용자를 신청함.
- 용자취급기관장은 위항의 용자신청에 대하여 용자지원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용자수속필확인서(별지 제15-Ⅰ-3호서식)를 교부함.
- 용자수속을 완료한 농가 및 생산자조직은 공급자에게 용자수속필확인서, 용자금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확인서(별지 제15-Ⅰ-4호서식), 보조금지불 위임·자부담 납부 및 기대인수확인서(별지 제15-Ⅱ-2호서식)를 제출하고 기대를 인수함.

(나)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농기계 공급자는 매월 2회이상 시장·군수에게 보조금(농기계구입 자금)교부 신청서(별지 제15-Ⅱ-3호서식)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되, 공급농협의 경우에는 농협중앙회 시·군지부가 보조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을 받음.
 - 농기계 생산업체가 시·군 농기계 사후봉사사업자에게 위탁 판매할 경우나 시·군농기계 사후봉사자가 농기계의 정상적인 공급업무가 어려울 때에는 생산업체가 직접 보조금 지급신청 및 지급을 받을수 있음
- 시장·군수는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매월 2회이상 보조금을 지급하며, 사전에 농기계 구입 및 규격의 상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농기계 보조지원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15-Ⅱ-4호서식)을 작성비치하여야 함.

(다) 용자금 신청 및 지급

- 농기계 공급자는 농기계 인도시에 실수요자로부터 받은 용자수속필 확인서, 용자금 지불위임장을 용자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여 용자금 지급을 신청함.
- 용자취급기관장은 용자실행신청 접수후 공급자에게 용자실행 신청접수증(별지 제15-Ⅰ-5호서식)을 발급하고, 농기계 구입자금 용자신청처리부(별지 제15-Ⅰ-6호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사전에 농기계구입 및 규격의 상이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농협은 확보된 자금범위내에서 월2회 이상 용자실행하여야 함.

(라) 농기계 구입현황 통보

- 농협장은 농기계구입 자금 대출시 농기계구입현황(별지 제15-Ⅱ-5호서식)을 매월 10일까지 시·군에 통보하고 농협 면세유류관리대장 정리에도 활용하여야 함.

(마) 위탁작업료 결정

- 시장·군수는 행정기관, 지도기관, 농업단체 및 지역농업인이 참여하는 “위탁작업료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위탁작업료를 지역실정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지도

(바) 공동이용규약 제정 운영

- 공동이용조직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기계관리자 지정, 농기계 공동이용방법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농기계공동이용규약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라. 국고지원금 배정 및 집행절차

- 비직과 및 발작물용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Ⅱ-5-추진체계-라) 참조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비직과 및 발작물용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Ⅱ-5-추진체계-마) 참조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1) 농기계 구입지원 보조금의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농기계에 대하여 보조금의 관리 및 예산에 관한 법률,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사업지침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생산자조직 육성사업에 필요한 보조금 교부조건을 부과하고 동사항을 준수토록 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목적과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는 농기계 사용기간을 감안, 보조금의 잔존액(정액법을 기준으로 하되 폐기가격은 구입가격의 10%로 함)을 현금으로 반환하도록 하여야 함. 다만, 농기계 사고등 불가피한 사유로 멸실되거나, 시장·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시장·군수는 보조금 지급후 당해년도내에 농촌지도소장과 합동으로 보조지원 공급된 농기계를 확인하고 규격이 다르거나 구입치 않았을 경우 및 선공급된 농기계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회수하고, 해당용자취급기관장에게는 용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함은 물론, 용자취급기관장의 확인과정에서 적발된 부당행위자에 대하여도 보조금을 회수함.
- ※ 선공급된 농기계란 용자수속필확인서(별지제15-I-3호서식)발급이전에 실수요자에게 공급된 농기계를 말함.
- 시장·군수는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생산자단체의 농기계 구입 확인, 기대활용, 관리상태와 자격기준 적합여부등(12월말 기준)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생산자조직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지시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지원된 자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회수할 수 있음. 다만, 고의성이 없이 당초 확보한 영농작업면적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영농작업면적을 확보토록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기계 대체구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보조금으로 지원된 농기계에 대하여 『농기계공급 및 사후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5년간 사후관리(매년 1회이상 관리실태 점검등)를 하여야 함. 다만, 사후관리기간 이내에 노후화등으로 사용이 어렵거나, 이농으로 처분을 요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처분할 수 있음.

(2)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시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 융자액(융자 유용액)을 회수하고 5년간 농업기계화 사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에 따라 조치(관계기관에 명단을 통보하여 부당사용금액의 크기에 따라 1-5년간 일체의 농림사업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

(3) 대형 농기계의 이용기술지도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장은 기술지도 대상농기계(50마력이상 트랙터, 승용 이앙기, 4조이상 콤바인)의 융자 실행자 명단을 취합하여 매익월 10일까지 관할 시·군 농촌지도소장에게 통보(별지 제15- I -6호서식)하여야 함.
- 농촌지도소장은 농협에서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대구입 농가를 방문하여 기대구입 내역을 확인하고 대형농기계관리대장(별지15-Ⅲ-1호서식)에 등록 관리하여야 하며, 1년간 경제적인 이용방안 등을 지도하여야 함. 구입 기대가 없거나 규격 또는 기종이 다를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군수와 융자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원자금의 회수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4) 농기계 구입자금 추가지원대상 농업회사법인 경영실적평가

- 농촌지도소장은 기 지원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기계구입자금 추가지원대상 ('91~'94 국고보조 지원)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최근 3년간 경영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그 결과를 지원 전년도 연말까지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함.

(5) 기 타

- 시·도지사는 농기계 보유 및 공급상황을 파악하여 적정수량이 보급되도록 함과 아울러 사후봉사가 원활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농촌진흥청장은 본 요령에 의한 대형농기계의 이용기술지도 세부지침을 시달하여 경제적인 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함.
- 시장·군수(읍·면장)는 폐농기계의 원활한 수거를 위하여 폐농기계 처리 확인서(별지 제15- I -7호서식)를 작성하여 농업인이 발급을 요청할 경우 이를 발급해 주어야 함.
- 이 요령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농가 농기계구입자금지원 사업지침에 의함.

(5)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부터	까지		
농기계	구입일	5년간	○ 정부지원보조금으로 농기계를 구입한 생산자조직은 5년이상 영농목적에 사용 하여야 함.	
			○ 사후관리기간이내에 노후화등으로 사용이 어렵거나, 처분을 요하는 경우에는 시도 지사의 승인을 얻어 처분할 수 있음.	

나. 보고사항

보 고 사 항	보고자	보고구분	보고기한	서식
○ 생산자조직 농기계구입 자금 지원 실적 보고	시·도지사	반기보	익월30일	별지제15-Ⅲ-2호 서식

6. 200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구(읍·면·동 사무소)

나. 신청자격

(1) 생산자 단체

(가) 신규구입지원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7조에 의거 설립등기를 마치고 시·군에 등록된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협조합으로서 다음의 영농작업 규모, 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을 확보하였거나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 영농작업규모: 토지이용형 작물의 경우 50ha이상(농작업대행 또는 임차 경영면적 25ha이상 포함)
 - 영농인력 : 5명이상, 그중 농기계운전능력자(기계화영농사, 기계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농기계 전문훈련기관 훈련과정 이수자, 동등이상 자격자. 이하 같음) 1명이상
 - 영농장비 : 기계화 일관작업이 가능하도록 5종 10대이상 확보
 - 시 설 : 농기계보관창고 및 간이수리시설 60평이상
- 장비 및 시설은 지원신청 당시의 시설장비와 지원후 확보할 시설장비를 구분하여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설립후 확보할 장비는 1년이내, 시설은 2년이내에 모두 구입(설치)하여야 함.

(나) 대체구입 지원

- '91~'95년까지 국고보조 농기계구입자금지원 농업회사법인
 - 농작업대행 또는 임차경영 면적을 25ha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이미 지원 받은 시설 또는 농기계를 공동관리하고 있는 법인

(2) 공동이용조직

- 농협조합에 등록된 작목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협조합으로서 다음의 공동작업 자격요건을 갖춘 생산자조직

< 농기계 공동작업 자격요건 >

	대규모공동이용조직	소규모공동이용조직
토지이용형작물의 경우 영농작업규모	30ha이상	10ha이상
인 력	농기계운전능력자 1인이상	농기계운전능력자 1인이상
농기계공동이용규약	제정운영	제정운영

※ 농기계 운전능력자 : 기계화영농사, 기계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농기계 전문훈련기관의 훈련과정 이수자, 동등이상 자격자

다. 신청절차 : 시장·군수(읍·면장)에게 신청

○ 구비서류 : 농기계구입계획서(별지 제15- I -1호서식)

라. 지원비율 : 읍자 90%(국고 36, 농협54), 자담 10%

마. 지원대상자 선정

(1) 우선순위

(가) 생산자단체

- ① “고도기술의 벼농사 시범사업”지역 농업회사법인
- ② 미곡종합처리장과 농기구서비스센터 설치 농협조합
- ③ 미곡종합처리장과 연계되는 농업회사법인
- ④ 행정기관 또는 폐농기계처리장에서 발행한 「폐농기계 처리확인서」를 제출한 농업회사법인 또는 농협조합
- ⑤ 조직구성원중 농기계운전능력자를 2인이상 확보한 농업회사법인 또는 농협조합

※ 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우선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1회에 3일이상 시·군의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정보 활용방법등 교육을 이수한 생산자단체 우선선정

(나) 공동이용조직

- ① “고도기술의 벼농사 시범사업” 지역의 생산자조직
 - ② 미곡종합처리장과 농기구서비스센터 설치 농협조합
 - ③ 미곡종합처리장과 연계되는 생산자조직
 - ④ 행정기관 또는 폐농기계 처리장에서 발행한 「폐농기계 처리확인서」를 제출한 생산자 조직
 - ⑤ 조직구성원중 농기계운전 능력자를 2인이상 확보한 생산자조직
- ※ 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우선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1회에 3일 이상 시·군의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정보 활용방법등 교육을 이수한 공동 이용조직 우선 선정

(2) 선정절차

- 시장·군수(읍·면장)는 제출된 사업계획과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 구비 요건, 지역여건, 사업상, 수지전망 등을 검토한 후 시·군 농어촌발전심 의회(특별시, 광역시는 별도 심의회 구성)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확정함.
 -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시 지역내 농기계 공급현황을 고려하여 결정 하므로써 지역별 기종별 편중 과잉공급을 방지하여야 함.
 - 지원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역농협장은 동 선정 심의회시 참여하지 않도록 함.
- 시장·군수는 설립통지를 받은 생산자단체의 영농규모, 인력, 장비 및 부지확보 여부등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과의 상위여부 등을 확인하여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토록 지시하고, 보완에 응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에 허위 등의 사실이 있을 때에는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 할 수 있음.

7. 별표 및 별지서식

가. 별표

- 별표 15-Ⅲ-1 : '99 시·도별 생산자조직 농기계구입자금 지원계획
- 별표 15-Ⅲ-2 : 작목별, 경영규모별 기계화모델
- 별표 15-Ⅰ-3 : 사업검정 및 정산서(15-Ⅰ 사업 참조)

나. 별지서식

- 별지 제15-Ⅲ-1호서식 : 대형농기계 관리대장
 - 별지 제15-Ⅲ-2호서식(자체가 26-31) : 생산자조직 및 쌀전업농 농기계 구입지원실적 보고

 - 별지 제15-Ⅰ-1호서식 : 농기계 구입계획서
 - 별지 제15-Ⅰ-2호서식 : 농기계 구입용자 신청서
 - 별지 제15-Ⅰ-3호서식 : 용자수속필 확인서
 - 별지 제15-Ⅰ-4호서식 : 용자금 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 확인서
 - 별지 제15-Ⅰ-5호서식 : 용자실행 신청접수증
 - 별지 제15-Ⅰ-6호서식 : 농기계구입자금 용자신청 처리부
 - 별지 제15-Ⅰ-7호서식 : 폐농기계 처리 확인서
- (15-Ⅰ 사업참조)
-
- 별지 제15-Ⅱ-1호서식 : 농기계구입 및 보조지원 신청서 (선정확인서)
 - 별지 제15-Ⅱ-2호서식 : 보조금 지불위임·자부담금납부 및 기대인수 확인서
 - 별지 제15-Ⅱ-3호서식 : 보조금 (농기계구입자금) 교부신청서
 - 별지 제15-Ⅱ-4호서식 : 농기계 보조지원 확인서 발급대장
 - 별지 제15-Ⅱ-5호서식 : 보조지원 농기계 구입현황
- (15-Ⅱ 사업참조)

‘99 시·도별 생산자조직 농기계구입자금 지원계획

(단위 : 개소, 천원)

	사 업 량		사 업 비				
	생산자 단 체	공동이용 조 직	계	국 고 보 조	지방비 보 조	국 고 용 자	자부담 기 타
계	70	540	39,400,000 (100%)	3,940,000 (10%)	3,940,000 (10%)	11,032,000 (28%)	20,488,000 (52%)
부 산	-	4	240,000	24,000	24,000	67,200	124,800
인 천	1	1	160,000	16,000	16,000	44,800	83,200
광 주	-	6	360,000	36,000	36,000	100,800	187,200
울 산	-	1	60,000	6,000	6,000	16,800	31,200
경 기	6	36	2,760,000	276,000	276,000	772,800	1,435,200
강 원	3	17	1,320,000	132,000	132,000	369,600	686,400
충 북	3	67	4,320,000	432,000	432,000	1,209,600	2,246,400
충 남	14	59	4,940,000	494,000	494,000	1,383,200	2,568,800
전 북	18	145	10,500,000	1,050,000	105,000	2,940,000	5,460,000
전 남	8	92	6,320,000	632,000	632,000	1,769,600	3,286,400
경 북	13	80	6,100,000	610,000	610,000	1,708,000	3,172,000
경 남	4	31	2,260,000	226,000	226,000	632,800	1,175,200
제 주	-	1	60,000	6,000	6,000	16,800	31,200

- ※ 1. 생산자단체는 신규지원기준이며, 지역실정에 따라 신규지원 및 대체지원으로 구분 지원
- 2. 공동이용조직 대규모기준이며, 지역실정에 따라 대규모 공동이용조직과 소규모공동이용조직으로 구분 지원
- 3. 자부담·기타 = 농협융자금 (42%) + 자부담(10%)

[별표15-Ⅲ-2]

작목별, 경영규모별 기계화 모델

(1) 벼

작업공정	작업수단 (기종명)		경 영 규 모 별					
			3~5ha 수준	10수준	20수준	30수준	50수준	100수준
경운·정지 ·운반	트랙터	소 형 (20~30 마력급)	대 1		1		1	1
		중 형 (40~50 마력급)		1	1	2		2
		대 형 (60마력 이상)					2	2
육 묘	탈 망 기		(1)	1	1	1	1	1
	상토 조제기		(1)	1	1	1	1	2
	일관 파종기		(1)	1	1	1	2	4
시 비	비료살포기		(1)	(1)	1	1	1	2
이양 또는 직 파	이양기	보행4조	1					
		승용6조		1	1	2	3	5
	직파기	6조	[1]	[1]				[1]
		8조			[2]	[2]	[3]	[4]
방 제	동력살분무기		1	1	1	1	1	2
	동력분무기		1	1		1	1	1
	고성능 방제기				1	1	1	2
수 확	콤바인	2조	1					
		3조		1		1		
		4조			1	1	2	3
건 조	건조기	소 형 (21석)	1					
		중 형 (36석)		1		1		
		대 형 (52석)			1	1	2	3

※ ○ ()는 위탁 또는 공동구입가능, []는 이양작업시 직파기 구입 불필요
○ 건조작업을 RPC에 위탁할 경우 건조기 구입 불필요

(2) 과수(사과)

작업공정		작업수단 (기종명)	2ha 수준		5ha 수준	
			규격	대수	규격	대수
동 력 원		관 리 기	5~7.5마력	1 대	5~7.5마력	1 대
		트 랙 터	20마력급	1	30마력급	1
정지 전정	정지전정	동력전정기	관리기용	1	관리기용	1
	가지처리	과 쇄 기	전용형 또는 관리기용	1	전용형 또는 관리기용	1
퇴비 사용	적 재	농용굴삭기	전용형	(1)	전용형	(1)
		농용로우더	트랙터용	1	트랙터용	1
	교 반	로 타 리	트랙터용 관리기용	1 1	트랙터용 관리기용	1 1
추비살포		비료살포기	관리기용	1	트랙터용	1
제 초 (예 취)		동력예취기	휴대형	1	휴대형	1
		예 취 기	관리기용	1	관리기용	1
		제 초 기	트랙터용	1	트랙터용	1
방 제	스피드스프레이어	400~600 ℓ	1	500~1,000 ℓ	2	
관 수	점적관수 또는 스프링클러		1조		1조	
입 출 고	지 계 차		-	전용형	1대	
선 별	과일선별기	중량식	1대	중량식	1	
운 반		트 레 일 러	트랙터용	1	트랙터용	1
		운 반 차		-	승용형(4륜)	1
저 장	저온저장고	20평형	1동	50평형	1동	

※ ()는 위탁 또는 공동구입 이용 가능

(3) 노지채소(마늘)

작업공정		작업수단 (기종명)	규격별	대수	비고			
동	력	원	트랙터 (경운기)	20~50PS급 (8~10PS)	1대			
씨	마	늘	분리	쪽분리기	1			
경	운	·	정	지	쟁기 및 로터리	경운기 또는 트랙터용	1	
퇴비사용	적	재	농용로우더	트랙터용	(1)			
	운	반	트레일러	경운기 또는 트랙터용	1			
파		종	마늘파종기		(1)	개발중		
비	닐	피	복	휴립피복기	트랙터용	1		
관		수	스프링쿨러		1조			
방	제	·	제	초	동력분무기	1대		
추	비	시	용	동력살분무기	1			
수		확	굴	취	기	트랙터용	1	
줄	기	절	단	줄기절단기	1			
선		별	선	별	기	1		

※ ()는 위탁 또는 공동구입 이용가능

대형 농기계 관리대장

	주소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 (형식명)	농 기계 형 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구입일자	이용방안 지도내용
○ 일반농가							
○ 생산자단체							
○ 공동이용조직							
○ 쌀전업농							

※ 제조번호란에는 농기계 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를 기입하며, 제조번호가 없을 경우에는 자체검사번호를 기재

[별지 제15-Ⅲ-2호서식]

[보고양식1]

자체가26-31

생산자조직 및 쌀전업농 농기계구입 지원실적 보고

1. 대상자별 지원실적

구분	생산자단체(개소)						공동이용조직(개소)						쌀전업농 (호)			
	농업회사법인			농 협			영농조합법인			작 목 반				농 협		
	계	신규	추가	계	신규	추가	계	대규모	소규모	계	대규모	소규모		계	대규모	소규모
계획(A)																
실적(B)																
비율(B/A)																

2. 농기계공급

구분	계	트랙터	이앙기	바인더	콤바인	방제기	건조기	기 타
계획(A)	대							
실적(B)								
비율(B/A)	%							

3. 농기계구입자금 지원

(단위: 천원)

구분	총사업비	국고 보조	지방비 보조	국비융자	농협융자	자부담	비 고
예 산 확 보 농기계공급금액(B) 집 행 액(C) 미 집 행 액 (B-C)	천원						
비율	B/A	%					
	C/B						

- ※ 1. 총계, 생산자단체, 공동이용조직, 쌀전업농 구분작성
- 2. 농기계공급금액(B)는 반기말까지 공급된 농기계구입자금 총액을 기재

IV. 쌀전업농 농기계 구입 지원

1. 목 적

- 벼농사의 일관기계화로 가족노동력에 의한 영농규모 확대

2. 시책 및 추진방향

- 가족 노동력에 의한 영농규모확대에 적합한 농기계 중심 공급

3.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및 제8조
- 농어촌특별발전조치법 제3조 및 제5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개소(호), 백만원)

구 분	'95-'96	'97	'98	'99 (예산안)	2000	2001-2004
사 업 량	20,681	7,159	6,000	4,000	4,000	
사 업 비	계	485,248	169,841	141,000	94,000	94,000
	보 조	104,715	41,048	14,100	9,400	-
	용 자	78,675	26,320	39,480	26,320	33,840
	지 방 비	104,718	41,048	14,100	9,400	-
	농협융자	108,416	34,533	59,220	39,480	50,760
자 부 담	88,724	26,892	14,100	9,400	9,400	

5. '99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지원대상

-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의 「전업농 육성」 사업에 따라 쌀전업농 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

(2) 지원단가

(단위 : 천원)

구 분	개소(호)당 사업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	용자금	자부담
쌀 전 업 농	23,500	2,350	2,350	16,450	2,350

(3) 지원조건

- 지원대상농기계
 - '99 일반농가 농기계구입자금지원 사업지침에서 정한 기종 및 내용.
다만, 동력경운기 및 부속작업기, 보행형동력이앙기 및 부속작업기, 바인더는 보조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종별 용자조건
 - 15- I -5-사업개요-나-(3) “기종별 지원을 및 상환기간” 참조
- 지원비율 : 국고보조 10%, 지방비 10%, 용자 70%(국고28, 농협42) 자담 10%
- 지원조건
 - 호당사업비를 초과하여 구입하는 경우에는 농기계구입비의 90%범위내에서 보조금(지방비포함)을 제외한 금액을 용자 지원할 수 있음.
- 농업기계화사업중 보조금을 수반하는 농기계구입은 중복지원 불가
 - 각 사업간 사후관리 기간내
- 농업기계화사업 외의 정부지원사업으로 농기계를 지원받은 경우 당해 농기계의 내용연수 기간내에는 농업기계화사업중 보조금을 수반하는 농기계 구입 지원 불가
- 쌀전업농은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농기계를 3년이상 영농목적에 사용하여야 함.

나. '99 사업비(예산안)내용

내용별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합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자		
쌀전업농	호 4,000	백만원 94,000	35,720	9,400	26,320	9,400	48,880

※ 시·도별 지원계획은 [별표15-Ⅳ-1] 과 같음.

< 추진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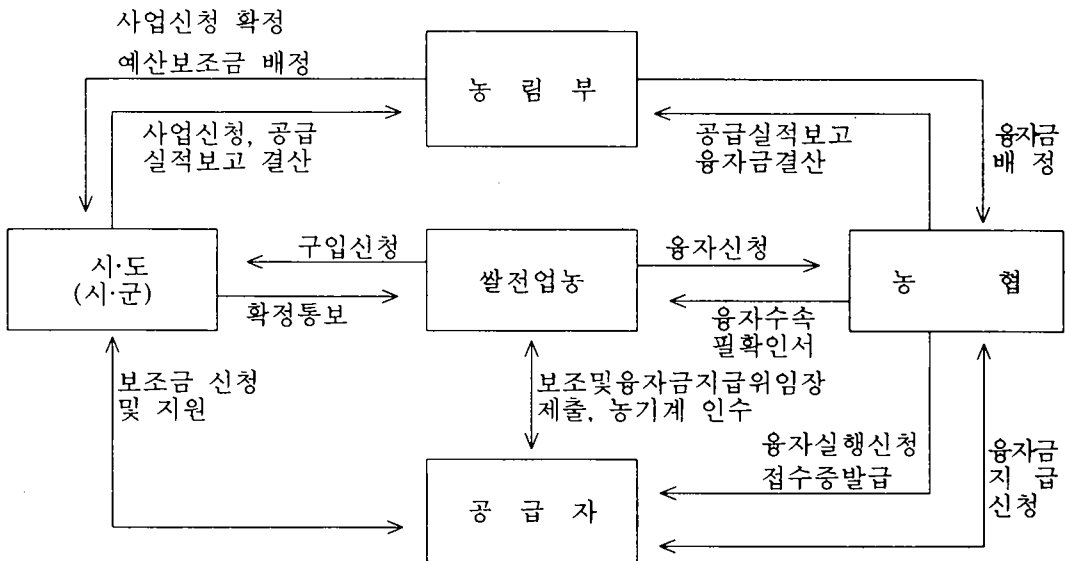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식량정책국 생산지원과 (02-503-7228)
- 시·도 : 농정국 농산(농정, 유통)과
- 시·군 : 산업(농산, 농정)과, 농촌지도소

다. 사업시행

(1) 사업시행체계



(2) 사업추진

(가) 농기계구입신청 및 기대인수

- 쌀전업농 농기계구입자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기종명, 규격, 제조회사, 가격등이 기록된 농기계 구입 및 보조지원신청서(별지 제15-Ⅱ-1호서식)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출한 농기계 구입 및 보조지원신청서의 기종명, 규격, 가격 등을 검토하여 작목별, 경영규모별 기계화모델(별표 15-Ⅲ-2)에 적합한 농기계를 구입토록 지도한 후 보조지원액을 확정하고 지원 대상자 선정확인서(별지 제15-Ⅱ-1호서식)를 신청자에게 발급함.
- 보조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가 및 생산자조직은 지원대상자선정확인서를 시장·군수로부터 발급받아·동 확인서와 농기계구입 용자신청서(별지 제15-Ⅰ-2호서식)등 용자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용자취급기관장에게 용자를 신청함.
- 용자취급기관장은 위항의 용자신청에 대하여 용자지원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용자수속필확인서(별지 제15-Ⅰ-3호서식)를 교부함.
- 용자수속을 완료한 농가 및 생산자조직은 공급자에게 용자수속필확인서, 용자금 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확인서(별지 제15-Ⅰ-4호서식), 보조금지불 위임·자부담 납부 및 기대인수확인서(별지 제15-Ⅱ-2호서식)를 제출하고 기대를 인수함
- 농업기계화사업외의 정부지원사업으로 농기계를 지원받은 경우는 당해 농기계의 내용연수기간내에는 농업기계화사업중 보조금을 수반하는 농기계 구입지원 불가
- 농업기계화사업중 보조금을 수반하는 농기계구입은 중복지원 불가
 - 사후관리기간내는 모든기종
 - 내용연수기간내는 동종농기계(다만, 내용연수기간내라도 현저히 노후되어 수리비가 당해 중고농기계 가액이상 소요되거나 영농규모의 확대로 농기계를 추가구입할 필요가 있다고 사업주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나)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농기계 공급자는 매월 2회이상 시장·군수에게 보조금(농기계구입 자금) 교부 신청서(별지 제15-Ⅱ-3호서식)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되, 공급 농협의 경우에는 농협중앙회 시·군지부가 보조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을 받음.
- 농기계 생산업체가 시·군 농기계 사후봉사사업자에게 위탁 판매할 경우나 시·군농기계 사후봉사자가 농기계의 정상적인 공급업무가 어려울 때에는 생산업체가 직접 보조금 지급신청 및 지급을 받을수 있음.
- 시장·군수는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매월 2회이상 보조금을 지급하며, 사전에 농기계구입 및 규격의 상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농기계 보조지원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15-Ⅱ-4호서식)을 작성비치하여야 함.

(다) 용자금 신청 및 지급

- 농기계 공급자는 농기계 인도시에 실수요자로부터 받은 용자수속필 확인서, 용자금 지불위임장을 용자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여 용자금 지급을 신청함.
- 용자취급기관장은 용자실행신청 접수후 공급자에게 용자실행 신청접수증(별지 제15-Ⅰ-5호서식)을 발급하고, 농기계 구입자금 용자신청처리부(별지 제15-Ⅰ-6호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사전에 농기계구입 및 규격의 상이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농협은 확보된 자금범위내에서 월2회 이상 용자실행하여야 함.

(라) 농기계 구입현황 통보

- 농협장은 농기계구입 자금 대출시 농기계구입현황(별지 제15-Ⅱ-5호서식)을 매월 10일까지 시·군과 농어촌진흥공사 해당 시·군지부에 통보하고 농협 면세유류관리대장 정리에도 활용하여야 함.

라. 국고지원금 배정 및 집행절차

- 비 직파 및 발작물용 농기계구입지원(Ⅱ-5-추진체계-라) 참조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비 직파 및 발작물용 농기계 구입지원(Ⅱ-5-추진체계-마) 참조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1) 농기계 구입지원 보조금의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농기계에 대하여 보조금의 관리 및 예산에 관한 법률,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사업지침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쌀전업농 육성사업에 필요한 보조금 교부조건을 부과하고 동사항을 준수토록 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목적과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는 농기계 사용기간을 감안, 보조금으로 지원된 농기계의 잔존가액(정액법을 기준으로 하되 폐기가격은 구입가격이 10%로 함)을 현금으로 반환하도록 하여야 함. 다만, 농기계 사고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장·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시장·군수는 보조금 지급후 당해년도내에 농촌지도소장과 합동으로 보조지원 공급된 농기계를 확인하고 규격이 다르거나 구입치 않았을 경우 및 선공급된 농기계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회수하고, 해당용자취급기관장에게는 용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함은 물론, 용자취급기관장의 확인과정에서 적발된 부당행위자에 대하여도 보조금을 회수함.
- ※ 선공급된 농기계란 용자수속필확인서(별지 제15- I -3호서식)발급이전에 실수요자에게 공급된 농기계를 말함.
- 시장·군수는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농기계 구입현황(별지 제15- II -5호서식)을 비치하여 농기계 구입 확인, 기대활용, 관리상태와 자격기준 적합여부등(12월말기준)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쌀전업농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지시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지원된 자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회수할 수 있음.
 - 쌀전업농 농기계구입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사망, 질병등으로 영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승계할 수 있는 직계 존·비속에게 승계시키거나 다른농가에게 농기계를 관리전환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보조금으로 지원된 농기계에 대하여 『농기계공급 및 사후관리 대장』을 작성 3년간 사후관리(매년 1회이상 관리실태등 점검)를 하여야 함. 다만, 사후관리기간 이내에 노후화등으로 사용이 어렵거나, 이농으로 처분을 요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처분할 수 있음.
- 이상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및 융자금의 회수결정을 내린 경우 시장·군수는 매월 10일까지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여부를 명시하여 농어촌진흥공사 해당 시·군지부에 통보하여야 함.

(2)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시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 융자액(융자 유용액)을 회수하고 5년간 농업기계화 사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에 따라 조치(관계기관에 명단을 통보하여 부당사용금액의 크기에 따라 1-5년간 일체의 농림사업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

(3) 대형 농기계의 이용기술지도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장은 기술지도 대상농기계(50마력이상 트랙터, 승용 이앙기, 4조이상 콤바인)의 융자 실행자 명단을 취합하여 매익월 10일까지 관할 시·군 농촌지도소장에게 통보(별지 제15- I -6호서식)하여야 함.
- 농촌지도소장은 농협에서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대구입 농가를 방문하여 기대구입 내역을 확인하고 대형농기계관리대장(별지15-Ⅲ-1호서식)에 등록 관리하여야 하며, 1년간 경제적인 이용방안 등을 지도하여야 함. 구입기대가 없거나 규격 또는 기종이 다를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군수와 융자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원자금의 회수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4) 기 타

- 시·도지사는 농기계 보유 및 공급상황을 파악하여 적정수량이 보급되도록 함과 아울러 사후봉사가 원활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농촌진흥청장은 본 요령에 의한 대형농기계의 이용기술지도 세부지침을 시달하여 경제적인 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함.
- 시장·군수(읍·면장)는 폐농기계의 원활한 수거를 위하여 폐농기계 처리 확인서(별지 제15- I -7호서식)를 작성하여 농업인이 발급을 요청할 경우 이를 발급해 주어야 함.
- 이 요령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농가 농기계구입자금지원 사업지침, 전업농 및 선도 농업경영체 육성사업지침에 의함.

(5)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구분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부터	까지		
쌀 전업농	농기계	구입일	3년간	○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농기계를 구입한 농가는 3년이상 영농목적에 사용하여야 함.	
				○ 사망, 질병등으로 영농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승계할 수 있는 직계 존·비속에게 승계 시키거나, 다른 농가에 관리 전환할 수 있음.	

나. 보고사항

보 고 사 항	보고자	보고구분	보고기한	서식
○ 쌀전업농 농기계구입 자금 지원 실적 보고	시·도지사	반기보	익월 30일	별지제15-III-2호서식

6. 200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구(읍·면·동 사무소)

○ 구비서류 : 농기계 구입계획서(별지 제15- I -1호 서식)

나. 신청자격

○ 쌀전업농 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영농규모 확대실적이 있는자 또는 당해 연도에 영농규모를 확대할 자

※ 당해연도에 영농규모를 확대할 자가 연도말까지 영농규모를 확대하지 않을 경우에는 쌀전업농 육성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지원자금을 회수함.

다. 신청절차 : 농기계구입계획서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읍·면장)에게 신청

라. 지원비율 : 융자 90%(국고36, 농협54), 자담 10%

마. 구비서류 : 농기계구입 및 보조지원 신청서(별지 제15-Ⅱ-1호서식), 쌀전업농 선정확인서, 영농규모를 확대할 자로서 농기계구입자금을 지원받은 후 영농규모를 확대하지 않아 사업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및 영농규모확대계획서 (해당자)

바.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쌀전업농 농기계 구입자금지원 대상자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비 범위내에서 농기계 구입 희망농가를 선정

(2) 우선순위

- ① 영농규모 적정화사업 실시지침에 따른 농지구입 또는 임차실적이 있는 농가
- ② 농지구입 및 임차실적은 없으나 당해연도에 영농규모를 확대할 농가
- ③ 행정기관 또는 폐농기계처리장에서 발행한 「폐농기계 처리확인서」를 제출한 농가

(3) 선정절차

- 시장·군수(읍·면장)는 제출된 사업계획과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 구비요건, 지역여건, 사업상, 수지전망 등을 검토한 후 시·군 농어촌 발전심의회(특별시, 광역시는 별도 심의회 구성)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확정함.
 -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시 지역내 농기계 공급현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므로서 지역별 기종별 편중 과잉공급을 방지하여야 함.
 - 지원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역농협장은 동 선정 심의회시 참여하지 않도록 함.

- 시장·군수는 설립통지를 받은 생산자단체의 영농규모, 인력, 장비 및 부지확보 여부등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과의 상위여부 등을 확인 하여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토록 지시하고, 보완에 응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에 허위 등의 사실이 있을 때에는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7. 별표 및 별지서식

가. 별표

- 별표 15-Ⅳ-1 : 시·도별 쌀전업농 농기계구입자금 지원계획

- 별표 15-Ⅲ-2 : 작목별, 경영규모별 기계화모델(15-Ⅲ 사업참조)

- 별표 15-Ⅰ-3 : 사업검정 및 정산서 (15-Ⅰ사업 참조)

나. 별지서식

- 별지 제15- I -1호서식 : 농기계 구입계획서
 - 별지 제15- I -2호서식 : 농기계 구입용자 신청서
 - 별지 제15- I -3호서식 : 용자수속필 확인서
 - 별지 제15- I -4호서식 : 용자금 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 확인서
 - 별지 제15- I -5호서식 : 용자실행 신청접수증
 - 별지 제15- I -6호서식 : 농기계구입자금 용자신청 처리부
 - 별지 제15- I -7호서식 : 폐농기계 처리 확인서
- (15- I
사업참조)
-
- 별지 제15- II -1호서식 : 농기계구입 및 보조지원 신청서
(선정확인서)
 - 별지 제15- II -2호서식 : 보조금 지불위임·자부담금납부 및 기대
인수 확인서
 - 별지 제15- II -3호서식 : 보조금 (농기계구입자금) 교부신청서
 - 별지 제15- II -4호서식 : 농기계 보조지원 확인서 발급대장
 - 별지 제15- II -5호서식 : 보조지원 농기계 구입현황
- (15- II
사업참조)
-
- 별지 제15- III -1호서식 : 대형농기계관리대장] (15- III사업참조)

[별표15-IV-1]

시·도별 쌀전업농 농기계구입자금 지원계획

(단위 : 호,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고 조	지방비 보 조	국 용 고 자	자부담 기 타
계	4,000	94,000,000 (100%)	9,400,000 (10%)	9,400,000 (10%)	26,320,000 (28%)	48,880,000 (52%)
대 구	5	117,500	11,750	11,750	32,900	61,100
인 천	91	2,138,500	213,850	213,850	598,780	1,112,020
울 산	7	164,500	16,450	16,450	46,060	85,540
경 기	538	12,643,000	1,264,300	1,264,300	3,540,040	6,574,360
강 원	116	2,726,000	272,600	272,600	763,280	1,417,520
충 북	203	4,770,500	477,050	477,050	1,335,740	2,480,660
충 남	693	16,285,500	1,628,550	1,628,550	4,559,940	8,468,460
전 북	506	11,891,000	1,189,100	1,189,100	3,329,480	6,183,320
전 남	851	19,998,500	1,999,850	1,999,850	5,599,580	10,399,220
경 북	432	10,152,000	1,015,200	1,015,200	2,842,560	5,279,040
경 남	558	13,113,000	1,311,300	1,311,300	3,671,640	6,818,760

※ 자부담·기타 = 농협융자금 (42%) + 자부담(10%)

16	농기계 사후관리지원(자율)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생산지원과(과장 이병목, 서기관 한한수)입니다.

I.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1. 목 적

- 농기계의 안전보관으로 고장을 예방하고 내용연수를 연장시켜 농기계의 이용율을 증진코자 함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기계보관창고의 지속적인 설치추진으로 창고보관율을 증대하고 농가 단위 개별보관창고의 설치비를 절약함.

3.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92-'96	'97	'98	'99 (예산안)	2000년	2001-2004
○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지원						
- 사업량	1,957 (1,062)	1,426 (126)	1,580 (80)	1,030 (30)	1,030 (30)	4,120 (120)
- 사업비	99,708 (48,070)	80,693 (5,293)	90,360 (3,360)	36,050 (1,050)	36,050 (1,050)	144,200 (4,200)
· 보조	20,655	30,160	34,800	7,000	7,000	28,000
· 용자	38,829 (38,829)	4,234 (4,234)	2,688 (2,688)	14,840 (840)	14,840 (840)	59,360 (3,360)
· 지방비	20,655	30,160	34,800	7,000	7,000	28,000
· 자부담	19,569 (9,241)	16,139 (1,059)	18,072 (672)	7,210 (210)	7,210 (210)	28,840 (840)

※()내서는 농업회사법인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지원 사업비임.

5. '99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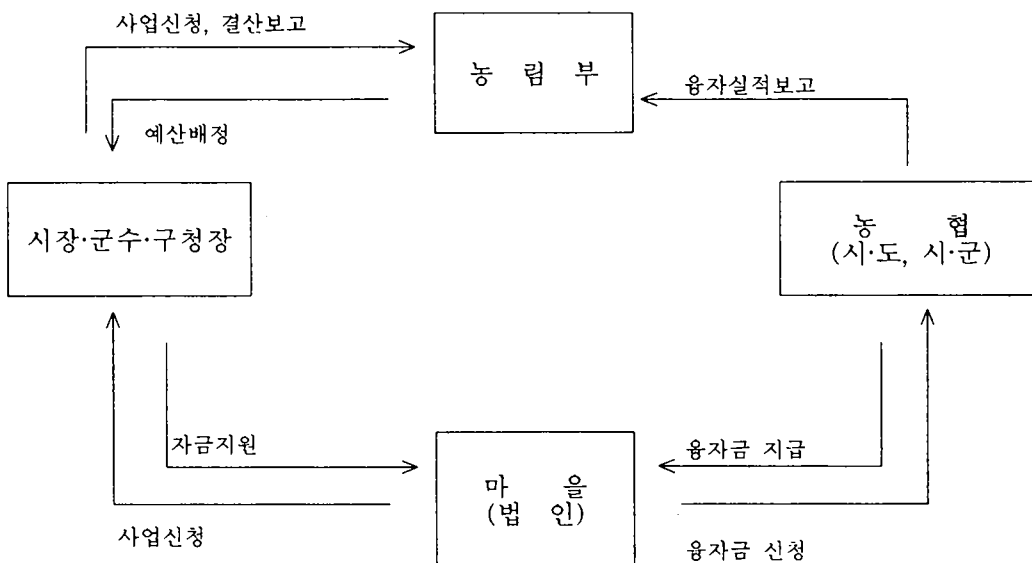
(1) 사업내용

- 사업배경 :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및 농업회사법인 농기계보관창고 설치비 지원
 - 보관창고에 고압세척장비설치, 간이수리 및 점검·정비장등 부대시설(분해·정비대, 바이스 및 공구등) 설치
 - 고압세척장비 : 고압세척기, 고압호스, 노즐 등
 - 간이수리 및 점검·정비장 : 규모 9m' 이상, 분해·정비대 1조, 바이스 및 공구 1조 등
- 지원대상
 -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 5호이상의 농기계공동보관 추진마을(40~50평범위내에서), 7호이상의 농기계 공동보관 추진마을(40~100평범위내에서 설치), 농기계공동이용조직
 - 농업회사법인 농기계보관창고 : 「생산자단체조직 농기계구입지원」 사업으로 농기계구입지원을 받은 농업회사법인
- 지원규모 및 조건
 -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 사업규모 40-100평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규모로 설치하고 고압세척장비 설치, 간이수리 및 점검·정비장 등 부대시설 설치
 - 개소당 사업비는 국고보조20%, 지방비보조20%, 국고융자 40% 자부담20%의 비율로 지원
 - 융자조건 : 연리 6.5%, 3년거치후 7년상환
 - 농업회사법인 농기계보관창고 : 사업규모 60평 범위내에서 법인실정에 알맞는 규모로 설치하고 세척장비 설치, 간이수리 및 점검·정비장등 부대시설 설치
 - 개소당 사업비는 국고융자80%, 자부담20%의 비율로 지원
 - 융자조건 : 연리6.5%, 3년거치후 7년상환

< 개소당 지원액 및 지원율 >

구 분		사업규모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	용 자	자부담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지원규모	평기준 60	천원 35,000	7,000	7,000	14,000	7,000
	지원비율	-	100%	20	20	40	20
농업회사법인 농기계보관창고	지원규모	평기준 60	천원 35,000	-	-	28,000	7,000
	지원비율	-	100%	-	-	80	20

○ 사업시행체계



(2) '99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자		
계	개소 1,030	백만원 36,050	21,840	7,000	14,840	7,000	7,210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1,000	35,000	21,000	7,000	14,000	7,000	7,000
농업회사법인 농기계보관창고	30	1,050	840	-	840	-	210

※ '99 시·도별 농기계보관창고 지원계획은 [별표16-I-1]와 같음.

< 추진체계 >

(1)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2)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식량정책국 생산지원과(02-500-2650)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02-397-5992)
- 시·도 : 농산(농정·유통)과, 농협 시·도지역본부 금융과
- 시·군·자치구 : 산업(농산·농정)과, 농협시·군지부, 지역농협

(3) 사업시행

- 국고지원금 배정 및 집행절차
 - 사업주관기관은 다음달까지 집행가능한 최소한의 보조 및 융자한도액을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받아 늦어도 매월 20일까지 농림부(생산지원과)에 배정 요구
 - 보조 및 융자 구분 요구
 - 시·도지사가 종합하여 농림부(생산지원과)에 보조 및 융자한도액 배정 요구
 - 보조 및 융자한도액 배정요구를 하였으나 정부의 자금형편상 당해월에 전액이 배정되지 못한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당해금액을 차기분에 포함하여 배정 요구
 - 다만, 지원대상자로부터는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 신청액중 배정안된 금액(부족액)을 다시 신청받지 않아도 됨
 - 보조 및 융자한도액은 매월 20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당해 월에 배분함
 - * 사업주관기관이 지원대상자로부터 소요자금을 신청받을 때에는 신청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배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집행을 지연하면 정부에 반납한다는 사항을 반드시 주지시켜 실제의 사업진행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과도한 자금을 신청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함

- 시·군(사업주관기관)이 확정된 설치규모 및 사업비 명세(국고보조, 국고용자, 지방비보조, 자부담으로 구분)을 대출취급기관에 통지
정부로부터 융자한도액이 배정되면 그 때마다 그 내용도 통지
- 대출취급기관은 융자한도액에 따라 사업별 지원대상 농가별로 대출실행하고 대출금액을 시·군에 통지
- * 시·군에서는 보조금 지급후 대출취급기관의 실제 대출금(국고용자)와 보조금(지방비 포함) 및 자부담금과 함께 검정 및 정산서에 기재(1만원 미만은 사사오입)

<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

- 신청절차
 - 농기계보관창고 시설설치 및 공동이용계획서, 부지확보 계획서 등을 구비하여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함.
- 구비서류
 -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설치지원 신청서 (별지 제16- I -1호서식)
 - 공동이용약정서, 부지확보계획서
- 표준설계도 활용
 - 시장·군수는 농기계보관창고의 설계비를 줄일수 있도록 '98년도에 보급한 농기계보관창고 표준설계도서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도
- 사업비 집행방법
 -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설치자에게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토록 하고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한 후에 집행함
 - 시장·군수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 품대, 자재소요량 및 금액 등을 확인하고 감시기관의 감리조서에 의거 실비 정산함.

감리기관 :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설계전문업체(건축사법에 의한 유자격업체)

- 시장·군수는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사업비 집행내역(창고 설치자의 시공비등)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다.
- 사업비 배정후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달까지 자금을 집행하지 않으면 당해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음

< 농업회사법인 농기계보관창고 >

○ 지원절차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업회사법인은 부지확보내역, 시설설치내역, 소요액등을 명시한 시설설치계획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지확보등 시설설치 가능여부등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와 지원액을 확정하고 그 내역을 지원대상자와 지역농협장에게 통보

○ 표준설계도 활용

- 시장·군수는 농기계보관창고의 설계비를 줄일수 있도록 '98년도에 보급한 농기계보관창고 표준설계도서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도

○ 사업비 집행방법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용자는 법인명의로 대출하여야 함
- 사업비 배정후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달까지 자금을 집행하지 않으면 당해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음

(4)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해야 함
 - 검정 및 정산서에는 국고보조, 국고용자, 지방비보조,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별표 16- I -2 및 증거서류에 의하여 확인
 - 사업주관기관은 증거서류에 의심이 갈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거래업체 등에 조회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함
 - 위의 방법으로 사실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객관적 시각에서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관계증빙을 관할 세무서에 통지

< 행정사항 >

(1) 사후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기계보관창고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공동이용실태등을 년 2회이상 점검하고 10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지원 보조금 교부결정시는 농기계를 공동보관하지 않는등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지원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는등 공동보관창고의 운영부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 건축된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는 마을명의 또는 참여농가 공동명의로, 농업회사법인 농기계보관창고는 법인명의로 각각 소유권 등기(건축물)한다.
- 공동참여농가는 연명으로 공동이용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보관 창고 전담관리자를 지정 운영한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터	까지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1999 (준공일)	2008 (10년)	농기계보관창고는 10년간 관리	

- 정부지원금의 부당사용자는 부당사용금액의 액수에 따라 1~5년간 농림부 정책자금 지원이 불가능하고(농림부 훈령 제948호), 5년간 농업기계화사업자금 지원도 불가능 함

(2) 보고·기타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를 해당지원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조기에 착공·완료토록 지도한다.
- 시·도지사는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사업 추진실적을 반기 익월 20일 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16-I-2호서식) 한다.

6. 2000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

(1) 신청서 제출기관 : 읍·면·동장

(2) 신청자격(선정기준 등)

- 농업진흥지역외의 지역으로서 기계화 영농기반이 조성된 지역(30점)
 - ① 대경지정리지역으로서 기계화 경작로가 설치된 장소(30)
 - ② 대지나 잡종지등 농지가 아닌 장소(25)
 - ③ 농업진흥지역외의 농지로서 논이 아닌 장소(20)
 - ④ 농업진흥지역으로 논이 아닌 장소(15)
 - ⑤ 농업진흥지역외에 있는 논(10)
 - ⑥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논(5)
- 참여농가수와 경지면적이 많은 지역(20점)
 - ① 참여농가수가 많고 공동이용약정서를 작성한 지역(20)
 - ② 경지면적이 많은 지역(10)
- 기계화영농사, 농어민후계자등이 참여하는 농가수가 많은 지역(20점)
 - ① 기계화영농사 참여(20)
 - ② 농어민후계자 참여(15)
 - ③ 농과계 학교 졸업자 참여(10)
- 대형정밀기종을 많이 보유한 지역(20점)
 - ① 콤바인 보유량이 많은 지역(20)
 - ② 동력이앙기 보유량이 많은 지역(15)
 - ③ 농용트랙터 보유량이 많은 지역(10)
-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 설치 지원실적이 없는 지역(10점)
 - ① 농기계보관창고 지원 실적이 없는 지역(10)
 - ② 지방자치단체의 농기계보관창고 지원 실적이 있는 지역(5)

(3) 신청절차

-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시설 설치 및 공동이용계획서, 부지확보계획서 등을 구비하여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

(4) 구비서류

-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6- I -1호서식)
- 공동이용약정서와 부지확보계획서 1부.

(5)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 농기계공동이용조직 및 쌀전업농등 대형 정밀 농기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마을로서 농기계공동보관창고설치 의지가 있고 공동이용약정서를 작성하는 마을
- 농업회사법인 농기계보관창고 : 「생산자조직 농기계구입지원」 사업으로 농기계 구입지원을 받은 농업회사법인

○ 우선순위

- ① 대경지정리지역으로서 기계화 경작로가 설치된 지역에 설치
- ② 대지나 잡종지등 농지가 아닌 장소에 설치
- ③ 농업진흥지역외의 농지로서 논이 아닌 장소에 설치
- ④ 농업진흥지역으로 논이 아닌 장소에 설치
- ⑤ 농업진흥지역외에 있는 논에 설치
- ⑥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논에 설치

○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 선정절차

- 시장·군수는 제출된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지원 신청서, 공동이용약정서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군농어촌발전심의회(특별시, 광역시는 별도 심의회를 구성)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도록 함.

< 농업회사법인 농기계보관창고 >

(1) 신청서 제출기관 : 읍·면·동장

(2) 신청자격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7조에 의거 농업회사법인 설립등기를 마치고 시·군에 등록된 농업회사법인으로 농기계구입 지원 희망법인 또는 농기계보유법인

(3) 신청절차 : 농업회사법인 농기계구입 신청시 구비서류 첨부 함께 신청

(4) 구비서류

- 농업회사법인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지원 신청서(별지 제16- I -1호 서식)
- 부지확보 계획서, 시설설치계획서

(5) 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가 '99년도 농기계구입자금 지원대상자 또는 농기계 보유 농업회사법인중 부지확보, 시설설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7. 별표 및 별지서식

가. 별표

- 별표 16- I -1 : '99 시·도별농기계보관창고 지원계획
- 별표 16- I -2 : 사업검정 및 정산서

나. 별지서식

- 별지 제16- I -1호서식 : 마을공동(농업회사법인)농기계보관창고 설치 지원 신청서
- 별지 제16- I -2호서식(자체가 26-33) :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사업 추진 실적 보고

‘99 시·도별 농기계보관창고 지원계획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				
	계	마을	법인	계	국고보조	지방비 보 조	용자	자부담
계	1,030	1,000	30	36,050,000 (1,050,000)	7,000,000	7,000,000	14,840,000 (840,000)	7,210,000 (210,000)
부 산	9	9	-	315,000 (-)	63,000	63,000	126,000 (-)	63,000 (-)
대 구	2	2	-	70,000 (-)	14,000	14,000	28,000 (-)	14,000 (-)
인 천	11	11	-	385,000 (-)	77,000	77,000	154,000 (-)	77,000 (-)
광 주	4	4	-	140,000 (-)	28,000	28,000	56,000 (-)	28,000 (-)
대 전	-	-	-	-	-	-	-	-
울 산	1	1	-	35,000 (-)	7,000	7,000	14,000 (-)	7,000 (-)
경 기	65	63	2	2,275,000 (70,000)	441,000	441,000	938,000 (56,000)	462,000 (14,000)
강 원	66	65	1	2,310,000 (35,000)	455,000	455,000	938,000 (28,000)	462,000 (7,000)
충 북	107	106	1	3,745,000 (35,000)	742,000	742,000	1,512,000 (28,000)	749,000 (7,000)
충 남	172	167	5	6,020,000 (175,000)	1,169,000	1,169,000	2,478,000 (140,000)	1,204,000 (35,000)
전 북	131	113	18	4,585,000 (630,000)	791,000	791,000	2,086,000 (504,000)	917,000 (126,000)
전 남	238	238	-	8,330,000 (-)	1,666,000	1,666,000	3,332,000 (-)	1,666,000 (-)
경 북	159	157	2	5,565,000 (70,000)	1,099,000	1,099,000	2,254,000 (56,000)	1,113,000 (14,000)
경 남	62	61	1	2,170,000 (35,000)	427,000	427,000	882,000 (28,000)	434,000 (7,000)
제 주	3	3	-	105,000 (-)	21,000	21,000	42,000 (-)	21,000 (-)

[별표 16-1-2]

○○○○ 사업(완료, 연도말) 검정 및 정산서

1. 사업주관기관명 :
2. 작성년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지원대상자 주소·성명 : (주민등록번호)
5. 사업비 집행명세 :
 - 총괄표

사 업 명	사업비 집행액(천원)				
	계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보조	자 부 담
	(100%)	()	()	()	()

○ 세부명세

세부시설 (사업)명	소요자재 (인력)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천원)	금 액 (천원)	기 사
○○○○	계 ○○○○ ○○○○ ·						○거래처 및 전화번호 기타 필요사항 기재
○○○○	계 ○○○○ ○○○○ ·						
~~~~~							
○○○○	계 · ·						
합 계							

## (작성요령)

- 법인, 공동이용조직 등의 경우는 지원대상자 주소·성명란에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그 밑에 구성원 성명을 부기함
-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사업자등록번호 기재)첨부 (증빙서류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는 각 사업비 합계와 일치해야 함)
  -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자필서명영수증
  -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금융기관거래자료(계좌입금증 등)
  - 연간 사업비 총액이 3천만원 미만인 사업의 경우는 직접노무비를 지원대상이 사업자등록증소지자외의 자(지원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 제외)에게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서명을 받은 때에는 당해증빙에 기재된 금액중 시장·군수가 당해지역의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인정함
  - 시설설치시 인부에게 제공한 식사대는 사업비 정산대상에서 제외함
- 주요공정 및 완성사진, 자재수불부, 작업일지, 기타 사업추진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 첨부
- 검정 및 정산 담당자는 위 세부명세 내용대로 시설이 완료되었는지를 사업 현장에서 지원대상자 입회하에 대조·확인
- 세부시설(사업)명은 단위사업의 실체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구분하고, 소요자재(인력)명은 자재, 장비, 인력,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가능한 한 상세하게 구분함



자체 가26-33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사업 추진실적 보고**

**1. 사업현황**

○ 총괄

개 소 수	설치규모	참여농가수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 보 조	용 자	자부담
개소	평/동	호	천원				

※마을단위에서 동일한 설치자가 100평을 분리하여 설치한 것은 1개소(1동)로 본다.

○ 규모별 설치현황

계	40평형	50평형	60평형	70평형	80평형- 100평형
동					

**2. 설치 추진상황**

계 획	미 착 수	착 공	설 치 중	완 공
평/동				

※ 부진사유는 별도 기재

**3. 사업비 지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 보 조	용 자	자 부 담
	평/동	천원				
계 획(A)						
집행액(B)						
비율(B/A)						

※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와 농업회사법인 농기계보관창고 구분 작성

## II. 농기계 수리봉사지원

### 1. 목 적

- 농기계의 사후봉사 강화와 관리철저로 농업인의 수리불편을 해소하고 고장을 줄여 농기계의 이용율을 증진코자 함.

###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기계 사후봉사사업소에 수리용부품을 사용전 비축토록하여 신속한 수리 봉사 실행
- 수리용시설·장비 설치자금 지원으로 신개발 정밀 농기계의 수리 촉진

### 3.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92-'96	'97	'98	'99 (예산안)	2000년	2001-2004
○ 농기계수리봉사 지원						
- 사업량	2,291	174	300	450	600	2,400
- 사업비	140,388	19,138	22,500	45,000	62,250	249,000
· 용 자	112,310	15,310	18,000	36,000	49,800	199,200
· 자부담	29,068	3,828	4,500	9,000	12,450	49,800
○ 수리용장비지원						
- 사업량	87	14	14	농기계수리	농기계수리	농기계수리
- 사업비	10,710	875	875	봉사지원에	봉사지원에	봉사지원에
· 용 자	8,568	700	700	포함	포함	포함
· 자부담	2,142	175	175			

## 5. '99년도 사업시행요령

### < 사업개요 >

#### (1) 사업내용

##### ○ 사업배경

- 농기계사후봉사업소에서 영농기 집중수리에 대비하여 수리용부품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 준비해야 하나 농기계사후봉사업소의 영세성등으로 수리용부품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정부에서 부품확보자금의 일부를 지원
- 농기계사후봉사업소에서 신속한 수리에 대비하여 현대화된 수리장비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 설치해야 하나 농기계사후봉사업소의 영세성등으로 새로운 수리시설·장비설치에 어려움이 있어 정부에서 수리용장비 설치자금의 일부를 지원

○ 부품지원대상자 : 농협부품센터와 지정농업기계 사후봉사업소, 광역농기계수리센터

○ 장비지원대상자 : 지정 농기계사후봉사업소, 농기계사후봉사업소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광역농기계수리센터

- 도단위 종합사후봉사업소 : 수리·정비용 건축비, 장비설치비, 수리장비, 공구구입비등

##### ○ 지원단가

- 수리용부품

구 분	도 단 위		광역농기계수리센터	시·군·구단위 사후봉사업소			농기계구수리서비스센터	읍·면·동단위 사후봉사업소
	농협부품센터	업체종합사후봉사소 (부품센터 포함)		갑류	을류	병류		
개소당 지원한도	백만원 1,000-2,000	500	400	300	200	100	40	40

※ 농협농기구서비스센터와 읍·면·동단위 사후봉사업소중 시설과 기술인력 기준이 시·군·구단위 사후봉사업소와 동일한 등급일 경우 해당 지원한도 지원가능

- 수리용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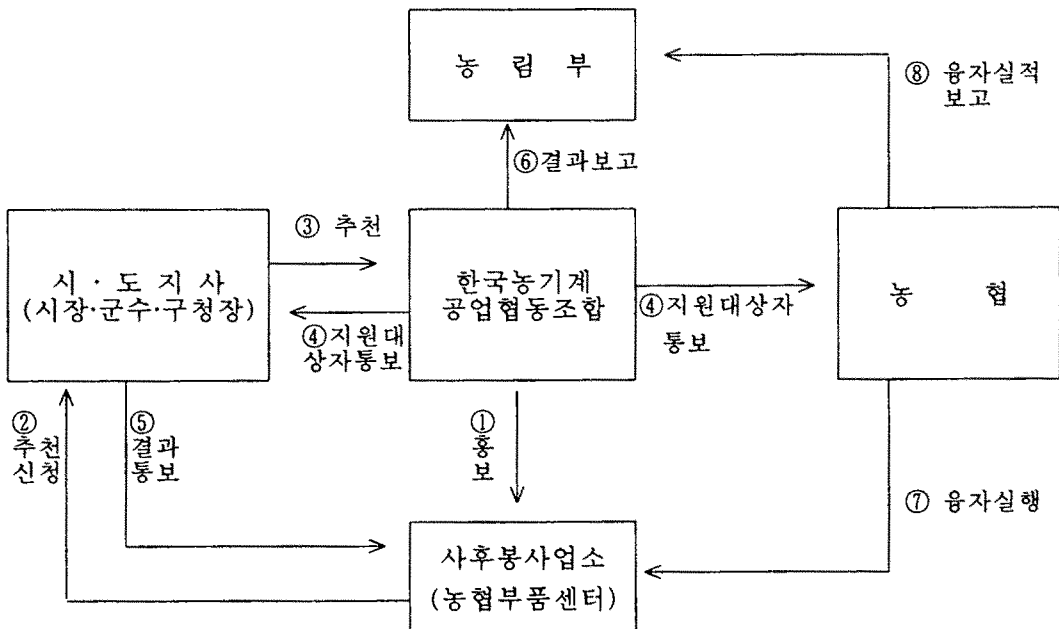
구 분	도단위 종합사후 봉사업소	광역농기계 수리센터	시·군·구단위 사후봉사업소	농협농기구 서비스센터	읍·면·동 단위 사후봉사 업소
개소당 지원한도	백만원 200	100	50	30	30

※ 농협농기구서비스센터와 읍·면·동단위 사후봉사업소중 시설과 기술인력기준이 시·군·구단위 사후봉사업소와 동일한 등급일 경우 해당 지원한도 지원가능

○ 수리용부품·장비 지원조건

- 지원액 : 사업비의 80%이내
- 자금용도 : 부품확보자금, 장비확보자금
- 지원대상자 추천 : 시장·군수·구청장(업체종합사후봉사업소 및 부품센터는 시·도지사)
- 지원대상자 확정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 용자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 사업시행체계





(2) '99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안(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개소 450	백만원 45,000	36,000	-	36,000	-	9,000
수리용부품· 장비확보지원	450	45,000	36,000	-	36,000	-	9,000

※ 용자조건 : 연리 4.5%, 1년거치후 4년상환

< 추진체계 >

(1)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2)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식량정책국 생산지원과(02-500-2650)
- 시·도 : 농산(농정·유통)과
- 시·군·자치구 : 산업(농산, 농정)과

(3) 선정절차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으로 부터 수리용부품·장비확보 자금지원대상자로 추천받은자를 대상으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농업기계화 추진업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및 지원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지원 대상자 추천 기관인 시·도지사 및 용자 취급기관에 통보

(4) 사업시행

- 사업시행계획의 작성 및 변경
  - 사업주관기관은 시·도지사의 추천에 따라 지원대상자 및 개소당 지원한도 금액등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음.

○ 국고지원금 배정 및 집행절차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사장은 다음달까지 집행가능한 최소한의 융자한도액을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받아 늦어도 매월 20일까지 농림부(생산지원과)에 배정 요구
- 융자한도액 배정요구를 하였으나 정부의 자금형편상 당해월에 전액이 배정되지 못한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당해금액을 차기분에 포함하여 배정 요구
- 다만, 지원대상자로부터는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신청액중 배정안된 금액(부족액)을 다시 신청받지 않아도 됨  
융자한도액은 매월 20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당해 월에 배분함
-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사장이 지원대상자로부터 소요자금을 신청받을 때에는 신청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배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집행을 지연하면 정부에 반납한다는 사항을 반드시 주지시켜 실제의 사업진행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과도한 자금을 신청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함
- 대출취급기관은 융자한도액에 따라 사업별 지원대상자에게 대출실행하고 대출금액을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사장에게 통지
-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사장은 국고융자금을 검정 및 정산서에 기재(1만원 미만은 사사오입)

○ 사업비 집행방법

- 수리용부품 확보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부품확보 확인서(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등을 첨부하여 농기계 사후관리자금 대출신청서(별지 제16-Ⅱ-2호서식)를 융자취급 기관에 융자지원 신청하며 융자기관은 부품확보확인서와 현품을 확인함. 다만, 수리용부품 확보자금 상환잔액이 있을시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지원한도로 함.

- 수리용부품·장비확보 자금지원을 받은 자는 용자취급기관으로부터 농기계 사후관리자금 대출확인서(별지 제16-Ⅱ-2호서식)을 받아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사장에게 제출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자금배정통보후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달까지 자금을 집행하지 않으면 당해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음

#### (5)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해야 함
  - 검정 및 정산서에는 국고용자,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별표 16-I-2 및 증거서류에 의하여 확인
  - 사업주관기관은 증거서류에 의심이 갈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거래업체등에 조회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함
  - 위의 방법으로 사실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객관적시각에서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관계증빙을 관할 세무서에 통지

### < 행정사항 >

#### (1) 사후관리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원받은 농기계 사후봉사사업소를 대상으로 년2회 이상 시설과 기술인력, 확보현황, 사후봉사실태 등을 확인점검·지도
- 수리용부품 확보자금을 지원받은 사후봉사사업소는 영농기(4-6월, 9-10월)에는 지원액의 12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품을 보유

- 농기계 제조업자와 공급자는 수리용부품을 책임 생산 공급하여야 하며 공급이 중단된 농기계의 경우에는 최종판매 농기계의 내용연수경과후 4년까지 수리용부품을 책임 공급
- 도단위 부품센터는 수입농기계와 구형모델의 농기계 부품을 증점 확보하고 배달차량 운영등 부품의 신속한 공급체계 확립 추진
- 수리용부품 확보기준
  - 제조업체, 부품센터, 도단위 업체종합사후봉사업소 : 모든 부품(내구품, 준소모품, 소모품)
  - 시·군·구단위 사후봉사업소 : 준소모품 및 소모품
  - 읍·면·동단위 사후봉사업소 : 소모품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사장은 수리용부품·장비확보자금을 지원 받은자 의 대출확인서 및 증빙서류에 의거 사업비를 정산한다. 단, 수리용 장비 확보자금을 지원받은자는 현지 실태조사하여 대출 확인서 및 증빙서류와 다를 때는 농협중앙회장에게 통보하여 농협중앙회장은 부당 거래된 지원자금을 회수조치한다.
- 정부지원금의 부당사용자는 부당사용금액의 액수에 따라 1~5년간 농림부정책자금 지원이 불가능하고(농림부 훈령 제948호), 5년간 농업 기계화사업자금 지원도 불가능 함

(2) 보고·기타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사장은 지원대상자 및 지원액을 확정 한 후 10일이내에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농협중앙회장과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수리용부품확보와 공급실적을 반기별로 익월 20일까지 농림부 장관에게 보고(별지 제16-Ⅱ-4호서식)

## 6. 2000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1)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 시·군·구, 읍·면·동단위 농업기계 사후봉사사업소
- 시·도지사 : 도단위 종합사후봉사사업소 및 부품센터  
단, 부품센터에는 장비지원 제외

### (2) 신청자격

- 부품 : 지정 농기계사후봉사사업소 및 부품센터
- 장비 : 지정 농기계사후봉사사업소, 농기계사후봉사사업소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다만, 부품센터에는 장비지원 제외)

### (3) 신청절차

- 수리용부품 확보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부품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에게 신청
- 수리용장비 지원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농기계 사후봉사시설과 수리장비 구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에게 신청

### (4) 구비서류

- 농기계 사후관리자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6-Ⅱ-1호서식)
- 수리용부품 확보내역서 또는 수리·정비용 건축비, 장비 설치계획 및 수리용장비 구입내역

### (5)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농기계수리용부품 공급을 원활히 하는 부품센터와 농기계사후봉사를 철저히 이행하는 사후봉사사업소, 신규로 사후봉사사업소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부품공급대상에서는 제외)
- 우선순위
  - 수리용부품·장비 확보자금 신규신청 사후봉사사업소
  - 대형정밀농기계의 보유량이 많은 지역의 사후봉사사업소
  - 농기계 수리봉사를 잘하는 사후봉사사업소
  - 농기계 수리기술 교육 참가업소

## 7. 별표 및 별지서식

### 가. 별표

- 별표 16- I -2 : 사업검정 및 정산서 (16- I 사업 참고)

### 나. 별지서식

- 별지 제16-Ⅱ-1호서식 : 농기계 사후관리자금 지원신청서
- 별지 제16-Ⅱ-2호서식 : 농기계 사후관리자금 대출 신청서
- 별지 제16-Ⅱ-3호서식 : 농기계 사후관리자금 대출 확인서
- 별지 제16-Ⅱ-4호서식(자체 가26-34) : 농기계 사후관리자금 지원현황

## 농기계 사후관리자금 지원 신청서

### 1. 신청자

업 소 명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기존대출잔액	천원
총 자 산	백만원	담보능력	백만원
사후봉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 구분		시군구단위 갑( ) 을( ) 병( ) 류 읍면동단위( ) 부품센터( )	

### 2. 수리용부품 확보 및 수리시설·장비설치 용자금 신청

용 도			
	계	용자신청액	자 담
수리용부품 ( )			
수리용장비 ( )			

1. 위와 같이 수리용부품 확보 및 수리시설·장비설치 자금으로 사용하고  
자 하오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자금배정 통보후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달까지  
자금을 집행하지 않으면 당해 사업비를 회수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신청인이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99    년    월    일

신청인 :

(인)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 지 사

귀 하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농기계 사후관리자금 대출 신청서

### 1. 신청자

업 소 명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기존대출잔액	천원
총 자 산	백만원	담보능력	백만원
5사후봉사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 구분		시군구단위 갑( ) 을( ) 병( ) 류 읍면동단위( ) 부품센터( )	

### 2. 수리용부품 확보 및 수리시설·장비설치 용자금 신청

용 도	자금총 소요액	대출 신청금액	현재 대출잔액	대출 희망시기
수리용부품 ( ) 수리용장비 ( )	천원	천원	천원	199 년 월 일

1. 위 대출금을 농기계 사후봉사지원(수리용부품, 수리용장비) 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오니 대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아울러, 붙임 2의 농기계 사후관리자금 대출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 9    년    월    일

업소명 :

대표자 : (인)

**(대출취급기관명)장    귀하**

구비서류 : 1. 부품구입확인서(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또는 수리장비구입확인서(건축완공서류,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1부.  
2. 농기계 사후관리자금 대출 확인서(농협발급용) 1부.





[별지 제16-Ⅱ-4호서식]

**자체 가26-34**

농기계 사후관리자금 지원현황

1. 농기계 사후관리자금 지원대상 선정

(단위 : 백만원)

업 소 명	계 획		/ 분기		누 계		비 율 (B/A)%
	개소수	금액(A)	개소수	금액	개소수	금액(B)	
계							
○ 수리용부품확보 자금							
○ 수리용장비지원							

※ 농기계 사후봉사업소(도단위, 시·군·구단위, 읍·면·동단위)별로 구분 작성

2. 농기계 수리용부품 확보 및 공급실적

(단위 : 백만원)

업소명	업소수	확 보		공 급		재 고	
			수입부품		수입부품		수입부품

※ 농기계조합 : 생산업체별 제조공장 및 부품센터의 부품현황

농 협 : 도 부품센터 및 읍·면·동단위 농기구서비스센터의 부품현황

### Ⅲ. 광역농기계수리센터 설치

#### 1. 목 적

- 대형·정밀농기계의 사후봉사 강화와 관리철저로 농업인의 수리불편을 해소하고 고장을 줄여 농기계의 이용율을 증진코자 함.

#### 2. 시책 및 추진방향

- 대형정밀 농기계가 많이 공급된 지역을 중심으로, 시·군단위에 있는 농기계 사후봉사사업소의 합동으로 광역농기계수리센터를 설치토록하여 대형정밀 농기계의 신속한 수리 촉진

#### 3.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92-'96	'97	'98	'99 (예산안)	2000년	2001-2004
○ 광역농기계수리 센터설치지원						
- 사업량	4	-	4	2	2	8
- 사업비	4,000	-	4,500	2,250	2,250	9,000
· 용 자	3,200	-	3,600	1,800	1,800	7,200
· 자부담	800	-	900	450	450	1,800

## 5. '99년도 사업시행요령

### < 사업개요 >

#### (1)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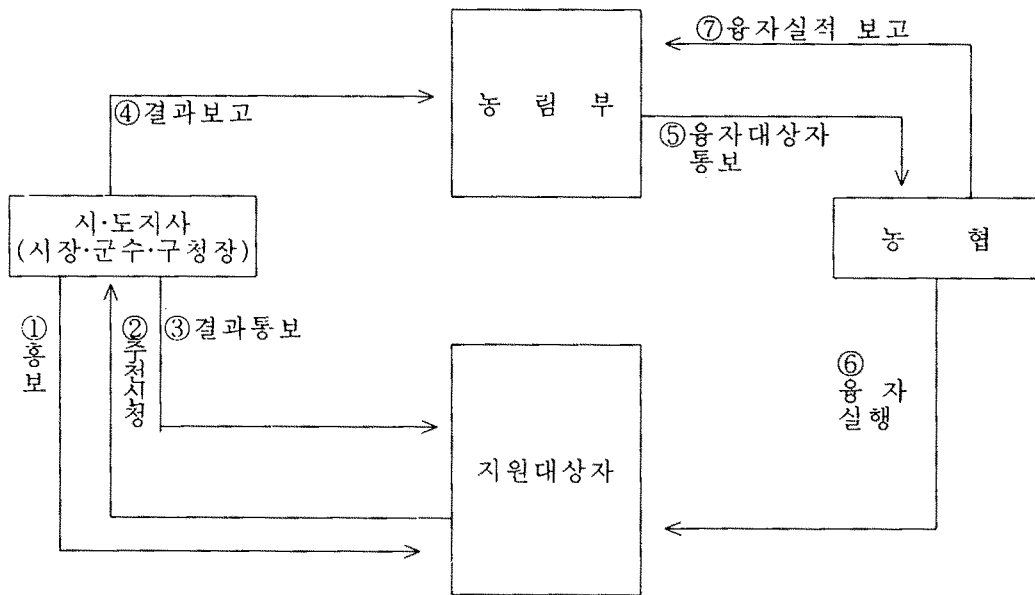
- 사업배경 : 대형 정밀기종의 공급확대에 따른 사후관리지원의 일환으로 대형 정밀 농기계의 신속 수리·정비를 위한 정비공장 등의 건축비, 장비설치비 및 수리장비·공구구입비등 지원
- 지원대상자 : 시·군·구단위 사후봉사업소, 대형정밀농업기계 제조업체등
- 지원단가

구 분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 자	자 부 담
개소당사업비	백만원 1,125	-	-	900	225
지 원 율	100%			80	20

- 지원규모 및 조건
  - 시설 설치기준

구 분	기 준
○ 사업장의 위치	○ 대형차량의 출입이 원활하고 농업기계 종합수리에 적합한 지역
○ 부지면적	○ 5,000제곱미터 이상
○ 정비공장, 부품보관창고, 농기계보관창고,사무실 등	○ 1,500제곱미터 이상 .
○ 장 비	○ 농용트랙터, 콤바인등 대형정밀 농업기계의 점검·정비와 수리에 필요한 장비
○ 부품확보	○ 농용트랙터, 콤바인등 대형정밀 농업기계 수리봉사용 부품

- 지원조건
  - 지원액 : 사업비의 80%이내
  - 자금용도 : 대형·정밀기종의 점검·정비·수리를 위한 건축비 및 장비설치비, 수리장비, 공구구입비등
  - 지원대상자 추천 : 시장·군수
  - 지원대상자 확정 : 시·도지사
- 설치지역
- 사업시행체계



(2) '99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자		
계	개소 2	백만원 2,250	1,800	-	1,800	-	450
광역농기계 수리센터 설치지원	2	2,250	1,800	-	1,800	-	450

※용자조건 : 연리 6.5%, 3년거치후 4년상환

## < 추진체계 >

(1)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2)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식량정책국 생산지원과(02-500-2650)
- 시·도 : 농산(농정, 유통)과 농협 시·도지역본부 금융과
- 시·군·자치구 : 산업(농산, 농정)과, 농협 시·군지부, 지역농협

(3) 사업시행

- 사업시행계획의 작성 및 변경
  - 농림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신청사업량을 감안 시·도별 사업량 및 사업비를 확정
  - 시·도지사는 사업비 범위내에서 지원 설치
- 국고지원금 배정 및 집행절차
  - 사업주관기관은 다음달까지 집행가능한 최소한의 용자한도액을 지원 대상자로부터 신청받아 늦어도 매월 20일까지 농림부(생산지원과)에 배정 요구
  - 시·도지사가 종합하여 농림부(생산지원과)에 보조 및 용자한도액 배정 요구
  - 용자한도액 배정요구를 하였으나 정부의 자금형편상 당해월에 전액이 배정되지 못한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당해금액을 차기분에 포함 하여 배정 요구
  - 다만, 지원대상자로부터는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신청액중 배정안된 금액(부족액)을 다시 신청받지 않아도 됨
  - 용자한도액은 매월 20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당해 월에 배분함
  - * 사업주관기관이 지원대상자로부터 소요자금을 신청받을 때에는 신청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배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집행을 지연하면 정부에 반납한다는 사항을 반드시 주지시켜 실제의 사업진행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과도한 자금을 신청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함

- 대출취급기관은 융자한도액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대출 실행하고 대출금액을 시·군에 통지
- * 시·군에서는 대출취급기관의 실제 대출금액을 국고융자와 자부담금과 함께 검정 및 정산서에 기재 (1만원 미만은 사사오입)

○ 사업비 집행방법

- 광역농기계수리센터 설치 사업실적을 확인한 후에 기성고의 확인에 따라 집행
- 사업비 배정후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달까지 자금을 집행하지 않으면 당해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음

(4)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해야 함
- 검정 및 정산서에는 국고융자,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붙임의 서식 및 증거서류에 의하여 확인[별표 제16-I-2]
- 사업주관기관은 증거서류에 의심이 갈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거래업체 등에 조회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함
- 위의 방법으로 사실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객관적 시각에서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관계증빙을 관할 세무서에 통지

< 행정사항 >

(1) 사후관리

- 시·도지사는 년2회이상 시설과 기술인력 확보현황 및 사후봉사실태등을 확인·점검 지도
- 정부지원금의 부당사용자는 부당사용금액의 액수에 따라 1~5년간 농림부 정책자금 지원이 불가능하고(농림부 훈령 제948호), 5년간 농업기계화사업자금 지원도 불가능 함

(2) 보고·기타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를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조기에 착공·완공토록 지도
- 시·도지사는 광역농기계수리센터 설치 추진실적을 반기별 익월 20일 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별지 제16-Ⅲ-2호서식)

6. 2000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안내

(1)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2) 신청자격

- 농기계 시·군·구단위 사후봉사업소
- 대형정밀 농업기계 제조업체

(3) 신청절차 : 광역농기계수리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광역농기계수리센터 설치사업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4) 구비서류 : 광역농기계수리센터 설치사업 지원신청서 1부(별지 제16-Ⅲ-1호서식)

(5)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시·군·구단위 농기계사후봉사업소로서 3개이상 합동참여업소
  - 대형정밀 농기계제조업체
- 우선순위
  - 대형정밀농기계 보유량이 많은 지역의 사후봉사업소
  - 농업진흥지역으로 논면적이 많은 지역의 사후봉사업소
  - 광역농기계수리센터사업에 참여하는 사후봉사업소가 많은 지역
  - 농기계 사후봉사를 잘하는 지역의 사후봉사업소
- 선정절차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광역농기계수리센터 설치사업 지원신청서, 부지확보계획서등을 농어촌발전심의회(특별시, 광역시는 별도 심의회를 구성)에서 본래의 목적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를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게 평가하여 선정
  - 시·도지사가 재차 검토, 선정



## 7. 별표 및 별지서식

### 가. 별표

- 별표 16- I -2 : 사업검정 및 정산서 (16- I 사업 참고)

### 나. 별지서식

- 별지 제16-Ⅲ-1호서식 : 광역농기계수리센터 설치사업 지원신청서
- 별지 제16-Ⅲ-2호서식 : 광역농기계수리센터 설치 추진실적

광역농기계수리센터 설치사업 지원신청서				
신청인(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호(업종)		자본금(재산)	백만원	
시설장비 확보계획	대지	㎡,	시설	㎡,
			장비	종 점
계 획	백만원	자금지원 요청액	백만원	
시설·장비설치 예 정 지				
착공예정일		자금사용시기		
준공예정일				
<p>위와 같이 광역농기계수리센터 사업계획 및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9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자    :                    (인)</p> <p>○ ○ 도지사        귀하</p>				
<p>구비서류</p> <p>1. 시설, 장비 및 인력확보 사업계획서(기확보분 포함) 1부.</p> <p>2. 농업기계사후봉사실적 등 참고자료 1부.</p>				

심사제외

광역농기계수리센터 설치 추진실적

1. 대 상 자

- 사업소재지 (상호명)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2. 추진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계획	실적	계 획			실 적			비율 (%)
			계	용자금	자부담	계	용자금	자부담	
○ 부지면적  ○ 정비공장, 부품보관창고, 농기계보관창고, 사무실등  ○ 장 비 - 호이스트 - 견 인 차 - 지 계 차 - 화 물 차 - 기타장비 및 공구  ○ 부품확보 - 농용트랙터, 콤팩트 등 대형정밀농업 기계수리 봉사용부품	5,000m ² 이상								

17	<b>시설농업기자재생산 및 농업기계생산비축지원(공공)</b>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생산지원과(과장 이병목, 서기관 한한수, 주사 강태인)입니다.

## I. 시설농업기자재생산지원

### 1. 목 적

- 농업기계화와 시설장비 현대화 촉진에 필요한 생산 시설설치자금을 지원하여 우량 농업용 국산기자재의 생산보급을 촉진

### 2. 시책 및 추진방향

- 첨단농업기자재의 개발 및 국산화 촉진으로 저렴한 우량 농업기자재 생산공급

### 3. 근거법령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 ②항

### 4. 연도별 지원계획

		'92-'96년	'97년	'98년	'99년 (예산안)	2000년	2001-2004
사 업 량		개소 42	11	6	4		
사업비	계	백만원 13,246	2,575	3,000	2,000		
	용자	13,246	2,575	3,000	2,000		

## 5. '99년도 사업시행 요령

### < 사업개요 >

#### 가. 사업내용

##### (1) 지원내용

- 농림용기계, 장비와 시설기자재의 생산시설설치비 및 건축비 용자 지원  
다만, 부지구입비는 제외

##### (2) 지원대상

- 농업용기계, 장비 및 시설기자재 생산업체

##### (3)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 소요사업비의 80%이내
- 지원조건 : 년리 6.5%,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나. '99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개소 4	백만원 2,000	2,000	-	2,000	-	-
농업기자재 생산시설자금	4	2,000	2,000	-	2,000	-	-

### < 추진체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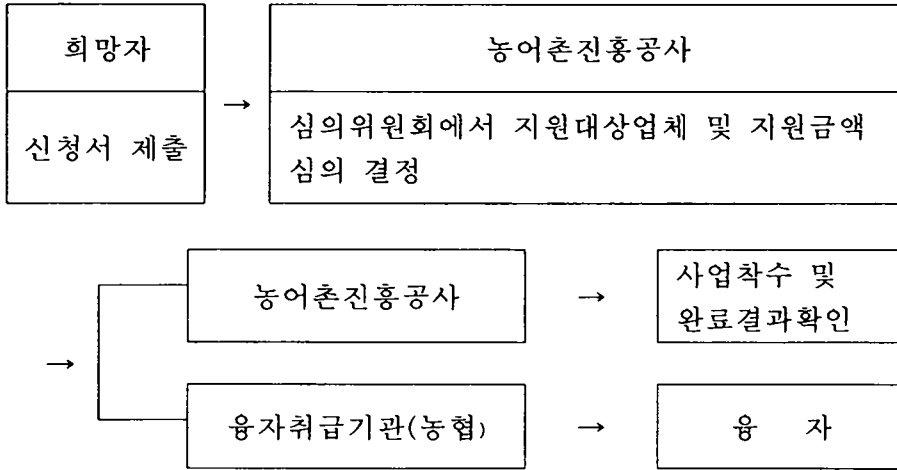
가. 사업주관기관 : 농어촌진흥공사

나. 사업담당부서

- 농어촌진흥공사 : 시설영농처 시설부 (0343-20-3590~3)

다. 사업시행

(1) 사업시행체계



(2) 사업시행

- 지원대상자 선정은 농어촌진흥공사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농업기자재 생산시설자금 지원심사 기준에 의함
- 농어촌진흥공사 사장이 업체별 신청금액, 생산제품, 재무능력 등을 조사 검토하여 심의자료를 작성, 선정 심의위원회에 상정
- ※ 농어촌진흥공사 사장은 심의상정 이전에 농협중앙회장에게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의뢰하여야 하고, 농협중앙회장은 동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용상태 등을 조사하여 대출가능여부를 농어촌진흥공사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자료 등을 참고로 하여 지원대상업체 및 업체별 지원금액을 심의결정
- 농어촌진흥공사 사장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지원대상 업체별 지원액을 대상업체 및 농협중앙회장에게 통보하고, 지원대상 업체별 대출 희망 농협을 파악하여 농협중앙회에 통보하여야 함.
- 농협중앙회장은 업체별 지원액 범위내에서 기성고에 따라 읍자치원

(3) 분기별 소요자금 배정 요청

-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로부터 다음달까지 사용가능한 용자한도액을 신청받아 매월20일까지 생산지원과에 자금배정을 요청하여야 함

(4) 자금 대출실행

- 사업비 배정후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달까지 자금을 집행하지 않으면 당해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음

라.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해야 함(별지 제17-1호서식)
  - 검정 및 정산서에는 국고용자,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붙임의 시설농업기자재 생산지원사업 검정 정산서 서식에 기재된 증거서류에 의하여 확인
  - 사업주관기관은 증거서류에 의심이 갈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거래업체 등에 조회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함
  - 위의 방법으로 사실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객관적시각에서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관계증빙을 관할 세무서에 통지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농협중앙회장은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생할 시 대출받은 날부터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대출금을 회수하고 농협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사후관리하여야 함.
- 정부지원금의 부당사용자는 부당사용금액의 액수에 따라 1~5년간 농림부정책자금 지원이 불가능하고(농림부 훈령 제948호), 5년간 농업기계화사업자금 지원도 불가능함

나. 보고사항

- 농협중앙회장은 농업기자재 생산시설자금 용자실적을 익년 1월 31까지 농림부장관 및 농어촌진흥공사 사장에게 통보
- 농어촌진흥공사 사장은 업체별 시설설치, 장비구입등 사업결과를 확인하고 그결과를 익년 1월 31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6. 200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농어촌진흥공사 시설영농처

- 구비서류 : 시설농업기자재 생산자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7-2호서식)

나. 신청자격: 농업용기계, 장비 및 시설기자재 생산업체

다. 지원대상자 선정

- 지원기준 : 농어촌진흥공사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지원심사기준에 의함.
- 우선순위
  - ①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
  - ② 현행 국내생산제품의 질적수준이 낮아 향상된 제품의 개발이 요구되는 품목
  - ③ 공정개선이나 기술개발 등을 통하여 현행제품보다 생산단가를 상당히 인하시킬수 있다고 인정되는 품목
- 선정절차
  - 농어촌진흥공사 사장이 업체별 신청금액, 생산제품, 재무능력 등을 조사 검토하여 심의자료를 작성, 선정심의위원회에 상정
  -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업체 및 지원금액을 심의결정

## 7. 별지서식

- 별지 제17-1호 서식 : 시설 농업기자재 생산지원사업 검정 및 정산서
- 별지 제17-2호 서식 : 시설농업기자재 생산자금 지원신청서



[별지 제17-1호 서식]

**시설농업기자재 생산지원사업(완료, 연도말) 검정 및 정산서**

1. 사업주관기관명 :
2. 작성년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지원대상자 주소·성명 : (주민등록번호)
5. 사업비 집행명세 :
  - 총괄표

사업명	사업비 집행액(천원)		
	계	국고융자	자부담
	(100%)	( )	( )

○ 세부명세

세부시설 (사업)명	소요자재 (인력)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천원)	금액 (천원)	기 사
○○○○	계 ○○○○ ○○○○ · · ·						○거래처 및 전화번호 기타 필요사항 기재
○○○○	계 ○○○○ ○○○○ · · ·						

세부시설 (사업)명	소요자재 (인력)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천원)	금액 (천원)	기사
○○○○	계 ○○○○ ○○○○ · · ·						
○○○○	계 ○○○○ ○○○○ · · ·						
○○○○	계 ○○○○ ○○○○ · · ·						
· · · · · ·	· · · · · ·						
합계							

< 작성요령 >

-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사업자등록번호 기재)첨부  
(증빙서류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는 각 사업비 합계와 일치해야 함)
  -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자필서명영수증
  -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계좌입금증 등)
  - 연간 사업비 총액이 3천만원 미만인 사업의 경우는 직접 노무비를 지원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소지자외의 자(지원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 제외)에게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서명을 받은 때에는 당해증빙에 기재된 금액중 시장·군수가 당해지역의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인정함
  - 시설설치시 인부에게 제공한 식사대는 사업비 정산대상에서 제외함
  
- 주요공정 및 완성사진, 자재수불부, 작업일지, 기타 사업추진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 첨부
  
- 검정 및 정산담당자는 위 세부명세내용대로 시설이 완료되었는지를 현장에서 대조·확인
  
- 세부시설(사업)명 단위사업의 실체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구분하고, 소요자재(인력)명은 자재, 장비, 인력, 기타필요한 사항을 가능한한 상세하게 구분함



## II. 농업기계 생산비축 지원

### 1. 목 적

- 농기계생산비축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여 농기계의 적기공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신기술 농업기계 생산지원

###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기계의 사전생산비축으로 영농기 적기공급을 도모하고, 신기술 농기계 생산보급을 촉진

### 3.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②항 및 제7조 ②항

### 4. 연도별 지원계획

		'92-'96년	'97년	'98년	'99년 (예산안)	2000년	2001-2004
사 업 량		개소 89	25	30	20		
사업비	계	백만원 1,897	59,000	60,000	40,000		
	용 자	1,897	59,000	60,000	40,000		

## 5. '99년도 사업시행 요령

### < 사업개요 >

#### 가. 사업내용

##### (1) 지원내용

- 농기계 사전생산비축을 위한 원자재 구입자금을 지원하여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수요집중기에 공급함으로써 영농에 원활을 기하는 한편, 신기술 농기계 개발등 우수 농기계 개발 촉진을 위한 자금 융자 지원

##### (2) 지원대상

- 농기계 생산 업체 및 신기술 농기계 지정업체

##### (3)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 농기계 생산비축 소요자금의 일부를 융자지원
- 지원조건 : 년리 6.5%, 융자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

#### 나. '99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계	개소 20	백만원 40,000	40,000	-	40,000	-	-
농기계생산비축자금	20	40,000	40,000	-	40,000	-	-

### < 추진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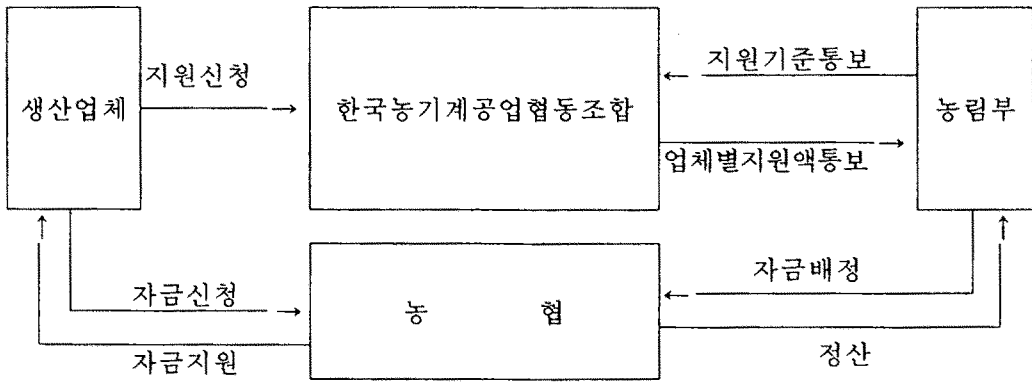
가.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나. 사업담당부서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02-757-1451)

## 다. 사업시행

### (1) 사업시행체계



### (2) 사업시행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농림부에서 정한 “농업기계 생산비축 자금지원 기준”에 의거 지원대상 업체별 지원한도액을 산정하여 농림부에 제출
- 신청 업체별 지원규모는 최근 2년간 매출실적, 당해년도 생산계획, 국산화율, 가격인상율, 신기술 및 품질인증 획득 실적 등을 감안하여 산출함. 다만 불량 농기계 공급, 사후봉사소홀등 농기계 유통질서 문란행위업체는 감액조정
- 농림부장관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제출한 업체별 지원 내역을 확정하여 농협중앙회장에게 통보하고 용자금을 농협에 배정
- 농협중앙회장은 업체별 지원액을 용자지원하고 사후관리
- 농기계생산업체는 생산비축자금을 원자재구입등 농기계생산비축에 필요한 자금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은 농기계생산비축자금 사용실태를 파악 익년도 농기계생산비축자금 배정에 활용하여야 함.

### (3) 분기별 소요자금 배정 요청

-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로부터 다음달까지 사용 가능한 용자한도액을 신청받아 매월 20일 까지 생산지원과에 자금배정을 요청하여야 함.

#### (4) 자금 대출실행

- 사업비 배정후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달까지 자금을 집행하지 않으면 당해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음

### < 행정사항 >

#### 가. 사후관리

- 농협중앙회장은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생할 시 대출 받은날부터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대출금을 회수하고 농협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사후관리하여야 함.
- 정부지원금의 부당사용자는 부당사용금액의 액수에 따라 1~5년간 농림부 정책자금 지원이 불가능하고(농림부 훈령 제948호), 5년간 농업기계화사업자금 지원도 불가능 함

#### 나. 보고사항

- 농협중앙회장은 농기계생산비축 자금 융자실적을 익년 1월 31까지 농림부장관,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사장에게 통보

## 6. 200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가. 신청서 제출기관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 구비서류 : 농기계 생산비축자금지원 신청서(별지 제18호-1호 서식)

#### 나. 신청자격 : 농기계 생산업체 및 신기술 농기계 지정업체

#### 다. 지원대상자 선정

- 지원기준 : 농림부에서 정한 “농업기계 생산비축자금 지원기준”에 의함.
- 선정절차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최근 2년간 매출실적, 생산계획, 국산화율 등을 감안 업체별 지원액 결정

## 7. 별지서식

- 별지 제18-1호 서식 : 농기계 생산비축자금 지원 신청서





# 여 백

### Ⅲ. 생 산 및 유통 개 선



# 여 백

<b>18</b>	<b>미곡종합처리장 설치운영(자율)</b>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식량관리과(과장 박준규, 농업사무관 민주석)입니다.

### 1. 목 적

- 벼의 수집·건조·저장·가공 및 포장과정을 자동화시설로 일괄처리함으로써 수확후 관리 비용절감·미질향상 및 쌀유통구조 개선

### 2. 시책 및 추진방향

- 2004년까지 미곡종합처리장 400개소를 원료벼 확보가 용이한 넓은들녘 중심으로 설치, 산지쌀유통의 중심체 역할을 하도록 육성
- 권역별로 생산농가와 계열화하여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단계에서부터 품종 통일, 공동작업, 브랜드 판매확대로 비용절감과 품질향상 도모

### 3. 근거법령 : 양곡관리법 제22조(미곡유통업의 육성)

### 4. 연도별 지원계획

#### 가.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구 분	'91~'96년	'97년	'98년	'99년 (예산안)	2000년	2001~ 2004
사 업 량	218	33	50	15		
사 업 비	계	백만원 373,109	60,871	70,000	21,600	
	보 조	94,700	18,000	30,000	6,400	
	용 자	72,170	16,800	26,000	10,880	
	지방비 자부담	- 206,239	- 26,071	- 14,000	- 4,320	

나. 건조·저장 시설증설

구 분		'95~'96	'97년	'98년	'99년 (예산안)	2000년	2001~ 2004
사 업 량		47	64	90	80		
사 업 비	계	백만원 22,676	35,801	33,500	36,000		
	보 조	7,000	8,750	12,025	13,500		
	용 자	5,425	9,170	14,775	15,300		
	지방비	-	-	-	-		
	자부담	10,251	17,881	6,700	7,200		

5. '99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추진배경

- 벼농사가 규모화되고 콤바인에 의한 물벼수확이 보편화되면서 수확후의 건조·저장 노동력과 비용의 절감, 미질관리 문제가 크게 대두
-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유통마진의 절감, 소비자기호의 다양화에 부응한 새로운 쌀 생산·유통체계 정립 필요성 증대

(2) 사업기간 : 1. 1 ~ 12. 31(가급적 벼수확기이전 완료)

### (3) 지원대상자

#### (가)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및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의2 제7호·제8호의 생산자 단체로서 미곡 유통을 하는 법인
- 일반사업자 : 양곡도정업체

#### (나) 건조·저장시설 증설

-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자 : 미곡종합처리장을 설치·운영중인 자
- ※ '99 신규지원대상자도 필요한 경우 당해연도에 증설사업가능
- 미곡종합처리장 미운영자 : 현재까지 미곡종합처리장이 설치되어 있지않으며, 관내 논면적이 적어 앞으로도 대규모의 미곡종합처리장을 설치하기에는 부적합한 지역에 소재한 농협

### (4) 지원단가 및 조건

#### (가) 미곡종합처리장설치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개소당 지원단가 및 지원비율

(단위 : 백만원)

사업자별	지원단가	보 조	용 자	자 부 담
생산자단체	2,000(100%)	800(40%)	800(40%)	400(20%)
일반사업자	800(100%)	-	640(80%)	160(20%)

※ 지원한도액(보조 및 용자) 이상 초과액은 사업자가 부담(과잉투자 지양)

#### (나) 건조·저장시설 증설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개소당 지원단가 및 지원비율

(단위 : 백만원)

사업자별	지원단가	보 조	용 자	자부담
생산자단체	450(100%)	225(50%)	135(30%)	90(20%)
일반사업자	450(100%)	-	360(80%)	90(20%)

(5) 지원시설의 종류

(가)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 지원시설 : 미곡종합처리장 건축, 건조·저장기계설비 및 부대장비(부지구입비 및 가공기계설비 제외)
- 설치규모 : 설치지역의 경지면적, 교통여건, 농가의 호응도, 수집가능 원료곡 생산량, 기존도정시설과의 거리, 자금조달능력 및 경영능력 등을 감안하여 설치
  - 일반사업자는 기본시설 I 형, 생산자단체는 기본시설 II 형
  - 기본시설 규모를 하한선으로 하며, 기본시설 규모이상 설치가능

기본시설유형	사업자	처리능력		
		건조	저장	가공
I 형	일반사업자	1,000톤	1,000톤	(20톤/일)
II 형	생산자단체	2,000	2,000	(20톤/일)

※ 가공능력 : 1일 8시간 가동기준임(단위 : 정곡, 톤)

※ 가공시설은 기존시설을 활용하거나 신규건설시는 자부담으로 하여야 함.

○ 기계설비기준

- 입고 및 출고 : 기계적으로 일관처리가 가능하고, 입고되는 산물벼의 중량 및 수분이 자동으로 측정되는 구조
- 건조 : 반입시설과 연계, 통풍 또는 열풍건조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구조



- 저장 : 산물형태로 장기간 안전저장 및 저장중 식미유지가 가능한 구조
- 제어시설 : 입고·건조·저장·출고·가공·품질검사 등을 연계 또는 단독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구조

※ 가급적 국내생산 기자재를 적극 활용

(나) 건조·저장시설 증설

- o 지원시설 : 벼 건조·저장기계설비 및 부대장비
- o 설치규모 : 건조 800톤, 저장 800톤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기존시설 능력 및 설치지역에 따라 각 시설규모 자율조정 가능 (기존시설에 추가증설 또는 인근지역에 위성시설로 탄력성 있게 설치)
- o 기계설비기준(가급적 건조·저장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경제성 제고)
  - 품질검사시스템 : 수분측정, 계량 및 제현작업 등을 자동화된 기계 (제현율자동판정기)로 처리하여 벼의 품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설치된 구조
    - ※ 제현율 자동판정기 : 벼를 계량·제현·입선별하여 완전현미와 설미를 계량함으로써 벼의 제현율을 자동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인쇄할 수 있는 기계
  - 건조 : 반입시설과 연계, 통풍건조 또는 열풍건조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구조
  - 저장 : 산물형태로 장기간 안전저장 및 저장중 식미유지가 가능한 구조

※ 가급적 국내생산 기자재를 적극 활용

나. '99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1)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개소 15	백만원 21,600	17,280	6,400	10,880	-	4,320
생산자단체	8	16,000	12,800	6,400	6,400	-	3,200
일반사업자	7	5,600	4,480	-	4,480	-	1,120

※ 용자조건

○ 생산자단체 · 일반사업자 : 연리 6.5%, 3년거치후 7년상환

(2) 건조 · 저장시설 증설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개소 80	백만원 36,000	28,800	13,500	15,300	-	7,200
생산자단체	60	27,000	21,600	13,500	8,100	-	5,400
일반사업자	20	9,000	7,200	-	7,200	-	1,800

※ 용자조건

○ 생산자단체 · 일반사업자 : 연리 6.5%, 3년거치후 7년상환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 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식량정책국 식량관리과(02-503-7274)
- 시·도 : 농산과(또는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 시·군자치구 : 산업과(또는 농정과)

다. 사업시행

### (1) 사업계획수립 및 변경

- 사업계획수립 :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서” 양식에 의거 작성
- 사업계획변경 : 사업자가 시설능력의 변동이나 사업대상지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2) 시설업체 선정

- 시설업체의 자격 :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진자<단, 부득이한 경우 일반 면허(종합면허)가 있는자 참여 허용>로서 자산, 기술자확보 등을 감안하여 하자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자에 한하여 설비에 참여 허용
  - 건축, 전기, 통신, 소방, 환경등 시설별로 각각의 관계법에 의한 면허 보유자
- 선정방법 : 생산자단체는 단체장(농협중앙회장등)책임하에 자율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유도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한의 설치비용 절감
  - 기설치한 RPC의 A/S부실, 현저한 공사하자발생, 시공업체의 원인에 의한 사업이월 발생시 공사참여제한

### (3) 감 리

- 생산자단체는 시설업체 선정과 함께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철저한 감리에 의한 부실공사 방지(시공업체가 감리를 할 수 없음.)

### (4) 준공검사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지원시설의 토목·건축부문 준공검사는 시·군 기술직(토목, 건축)이 직접담당

### (5) 사업비 집행방법

-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농림부 훈령 제912호, '97.10.29)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라.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해야 함.
  - 검정 및 정산서는 국고보조, 국고융자,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별지제2호의 미곡종합처리장 사업 검정 정산서 서식에 기재된 증거서류에 의하여 확인
  - 사업주관기관은 증거서류에 의심이 갈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거래업체 등에 조회하여 사실여부를 확인
  - 위의 방법으로 사실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객관적 시각에서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관계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지

## 마. 기타사항

- 시·군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운영협의회 구성운영

### < 구 성 >

- 위원장 : 시장·군수
- 위 원 : 산업과장,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또는 기술담당관), 농검출장소장, 농협 시·군지부 담당과장, 사업시행자, 관련 민간단체 임직원, 학계 및 민간 전문가등

### < 기 능 >

- 사업대상지역 및 대상자 선정 사전검토
- 시설규모의 적정성 및 기자재설치의 적정성 검토
- 농지전용등 행정지원 협의 및 미곡종합처리장 경영분석 평가지도
- RPC와 생산농가와의 생산·유통계열화를 촉진하여 지역특산미 생산활성화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생산자단체(농협중앙회, 시·도지역본부, 시·군지부) 및 관련 민간단체는 기술지원단을 설치하여 기술지원 및 운영지도
  - 건축 및 기계설비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
  - 설치모델 개발·선정 및 설치규모의 적정성 검토등 전문적 기술지원
  - 건조·저장·가공 및 기타시설의 고장, 기계작동 불량시 신속한 수리·보수실시로 가동의 원활화 도모
  - 설치공장별 경영분석 및 운영활성화 방안강구
- 시장·군수는 미곡종합처리장 시설관리 및 원료비 매입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전담책임자를 지정함은 물론 정기적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사업자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조치
  - RPC와 생산농가와의 계열화를 확대, 계약재배 등을 통해 생산단계에서 부터 품종통일, 공동농작업, 브랜드 판매 확대로 지역특산미를 육성하고 비용절감과 품질향상 도모
    - 가급적 시·군단위 이상의 광역브랜드화를 유도하고 우수업체에 수매량·운영자금등 정책적 인센티브 부여 확대
  - 운영실적이 1년이상 없는 업체에 대하여 자구계획서를 제출받아 회생가능성이 없을 경우 퇴출조치하고, 국고지원금 회수 또는 타업체 인수·합병조치(타업체에 인수·합병된 이후 재가동시는 RPC로 재인정)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부 터	까 지		
미곡종합 처리장	시설설치완료 익년부터	10년간	○ 융자금 회수완료시까지 사후관리 - 보조금을 지원받은 생산자 단체는 융자금 상환이 완료 되는 10년간 타인 또는 타 생산자단체에 시설양수도 불가함. 다만, 합병·통합등 불가피한 사유발생시에는 사업선정권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가능	

나. 보 고

보고사항	보고기관	피보고기관	보고기일	보고서식
○사업추진실적 보고	시장·군수 (시·도지사)	시·도지사 (농림부장관)	매익월 15일 이내 (3월부터)	별지 제3호서식
○사업정산실적 보고	시·도지사	농림부장관	사업종료후 30일 이내	별지 제4호서식
○미곡종합처리장별 원료비 매입실적	시장·군수 (시·도지사)	시·도지사 (농림부장관)	분기보고 (분기 익월15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

6. 2000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관할 시·군

나. 신청자격

(1)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7호(영농조합법인)·제8호(농업회사법인)의 생산자단체로서 “6번 마항의 선정기준”을 갖춘자
- 일반사업자
  - 관내 양곡도정업체

(2) 건조·저장시설 증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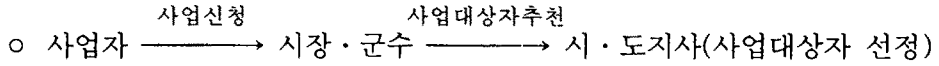
<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자 >

-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운영자
  - ※ 2000년도 신규지원대상자도 필요한 경우 당해연도 증설사업가능

< 미곡종합처리장 미운영자 >

- 미곡종합처리장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지역에서 건조·저장시설만 설치코자 하는 농협으로서 “6번 마항의 선정기준”을 갖춘자

다. 신청절차



라. 구비서류

- 자율사업 신청서 1부(실시규정 별지 제3호 서식)
-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사업예정지의 토지 등기부등본 및 지적도 1부.
- 기타 농림사업 실시규정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마.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가)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선정기준	생 산 자 단 체(농협)	일 반 사 업 자
지역적 요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li> <li>- 벼 수확작업의 기계화가 가능하도록 생산 기반이 조성된 미곡생산량이 많은 넓은 들판 지역</li> <li>○ 지역여건을 고려한 시·도지사(시장·군수) 판단사항</li> <li>- 가급적 기존업체와 원료수집 경합이 적은 지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li> <li>“ 좌 동 ”</li> <li>○ 지역여건을 고려한 시·도지사(시장·군수) 판단 사항</li> </ul>

선정기준	생 산 자 단 체(농협)	일 반 사 업 자
<p>사 업 자 자 격 요 건</p>	<p>○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장설치부지를 확보하고 있는단체</li> <li>· 사업착수이전까지 부지확보가 확실시되는 단체포함(매매계약서 등 증거서류 첨부)</li> <li>- 시설비 자부담 및 담보능력, 원료비확보 및 공장운영(10억원이상)에 필요한 자금력을 갖춘 단체(관할 농협 군지부장의 확인서 첨부)</li> </ul> <p>○ 지역여건을 고려한 시·도지사(시장·군수) 판단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각종 영농조직과 연계하여 원료비(물비, 건조비)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한 단체</li> <li>- 쌀유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단체</li> </ul>	<p>○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장설치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자</li> <li>· 사업착수이전까지 부지확보가 확실시되는 자포함(매매계약서 등 증거서류 첨부)</li> <li>- 관내 기존도정공장(현대화된 공장으로 습식연미·집진시설 및 20kg이하 소포장·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li> <li>※ 정부양곡 임도정업자인 경우, 대상자로 확정과 동시에 공사 완료일기준 정부양곡 가공 '도급계약 포기서 제출</li> <li>- 사업비 자부담, 물벼수매 및 운영자금 대출담보 제공능력이 충분(10억원이상)하고, 자금동원능력이 우수하여 신용평가가 좋은자(자산상태 관련 등기부등본, 사업자 신용조회,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실사)</li> </ul> <p>○ 지역여건을 고려한 시·도지사(시장·군수) 판단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각종 영농조직과 연계하여 원료비(물비, 건조비)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한 자</li> <li>- 쌀유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li> </ul>



선정기준	생산자단체(법인경영체)
지역적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벼 수확작업의 기계화가 가능하도록 생산기반이 조성된 미곡생산량이 많은 넓은 들판지역</li> </ul> </li> <li>○ 지역여건을 고려한 시·도지사(시장·군수) 판단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급적 기존 도정시설과 마찰이 없는 지역</li> <li>- 쌀작목반·농업회사법인등 각종 영농조직과 연계하여 원료벼 확보가 용이한 지역</li> </ul> </li> </ul>
사업자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출자액이 3억원이상인 법인</li> <li>-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25% 미만인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기부상의 출자가 조합원별로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시·군에서 확인</li> </ul> </li> <li>- 미곡생산·유통을 주목적으로 하면서 가공·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출자액의 50%이상을 생산요소인 현물(농지, 농기계시설등)로 출자한 법인(실체여부 시·군확인)</li> <li>· 미곡생산 및 유통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li> </ul> </li> <li>- 시설비 자부담, 물벼수매 및 운영자금 대출담보 제공능력이 충분(20억원이상)하고, 자금동원능력이 우수하여 신용평가가 좋은자(자산상태관련 등기부등본, 사업자 신용조회, 금융기관 신용조사서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실사)</li> <li>- 법인설립후 1년이상(신청일기준) 경과하여 연간 쌀 2,000톤이상 판매실적이 있는 법인</li> <li>- 관내 기존도정공장(현대화된 공장으로 습식연미·색채선별시설, 집진설비 및 20kg이하 소포장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li> <li>- 공장설치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착수이전까지 부지확보가 확실시되는 법인 포함(매매계약서 등 증거서류 첨부)</li> </ul> </li> </ul> </li> <li>○ 지역여건을 고려한 시·도지사(시장·군수) 판단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각종 영농조직과 연계하여 원료벼(물벼, 건조벼)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한 자</li> <li>- 쌀유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li> <li>※ 정부지원을 받았거나 받고자하는 법인은 매년도의 사업실적(생산, 출하, 가공, 유통등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에 한함)을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시·군에 보고(보고하지 않는 법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li> <li>※ 지원후에도 지원시설물이 법인명의로 등기되었는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여부를 확인후 정산</li> </ul> </li> </ul>

(나) 건조·저장시설 증설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자 :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운영자

※ 2000년 신규지원대상자도 필요한 경우 당해연도에 증설사업가능

○미곡종합처리장 미운영자

- 현재까지 미곡종합처리장이 설치되어 있지않으며, 관내 논면적이 적어 앞으로도 대규모의 미곡종합처리장을 설치하기에는 부적합한 지역에 소재한 농협

(2) 우선순위

(가)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 생산자단체 >

① 관내 기존도정공장(RPC로 전환시 활용가능한 현대화 시설)을 보유한 생산자단체

※ 현대화시설 : 습식연미·색채선별시설, 집진설비 및 20kg이하 소포장 장비 등을 갖춘 도정공장

② 고도기술의 벼농사종합시범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거나 인접한 생산자단체

③ 관내농가 또는 각종 영농조직등 민간인과 공동출자한 생산자단체

④ 양곡판매사업이 활발하고 취급양곡이 지역특산미로 인정받고 있거나 정착되어 있고 관내 기존도정시설의 인수 또는 연계출자방식을 취하는 생산자단체

⑤ 2개이상의 조합 또는 회사가 합병 또는 공동출자한 생산자단체

⑥ 신규 고정투자와 운영자금조달 여력이 있는 생산자단체

⑦ 지도자의 사업추진 열의도가 높고, 양정시책에 호응하여 시·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산자단체

< 일반사업자 >

- ① 설치예정지역이 고도기술의 벼농사종합시범단지내 또는 인접지역에 위치한 자
- ② 정부의 조곡매출사업 또는 조곡공매사업에 다년간 참여하여 미질향상과 민간의 쌀 유통기능 활성화에 공헌도가 높은 도정업자
- ③ 정부관리양곡 도정공장 공동출자 또는 시설이 현대화된 정부양곡 도정업자
- ④ 다수의 일반도정공장이 합병 또는 공동출자하는 도정업체
  - 합병 또는 공동출자하는 일반도정공장은 미곡종합처리장 사업대상자로 선정됨과 동시에 기존 도정업 등록취소
- ⑤ 관내농가 또는 각종 영농조직등과 공동출자하는 도정업자

(나) 건조·저장시설 증설

- ① 농가산물벼의 건조·저장시설 활용율이 100% 이상인 자
  - 활용율이 동일한 경우 시설규모가 작은곳 우선
- ② 전년도 원료벼 확보량(농가벼+공매벼)중 농가벼 확보비율이 높은자
- ③ 전년도 경영손익이 흑자인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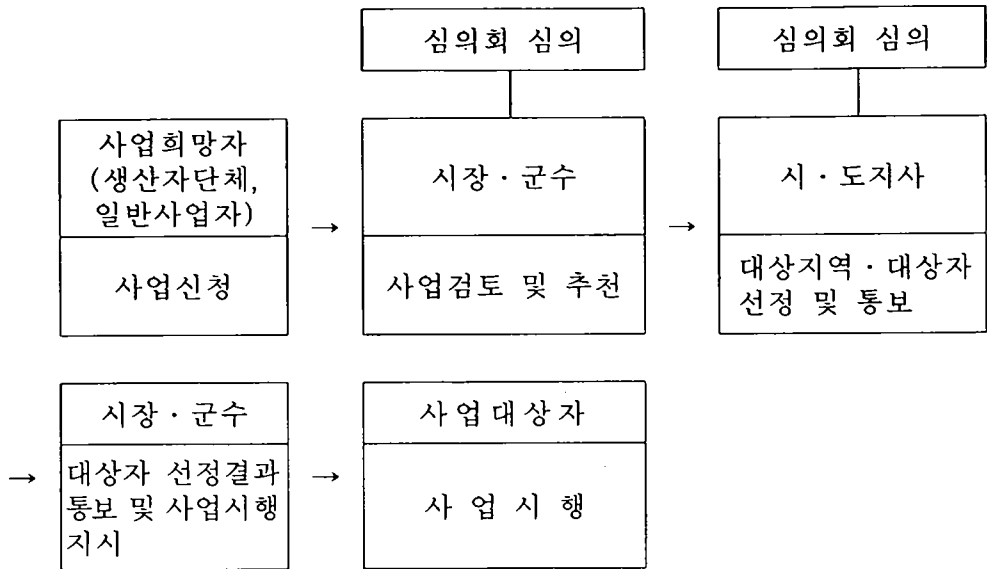
(3) 선정절차

○ 시장·군수 : 관내의 도정공장 분포상황 및 원료벼 확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기준의 우선순위에 따라 적격대상자를 선정하고, 시·군농어촌발전심의회 또는 시·군 미곡종합처리장 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추천(생산자단체와 일반사업자 구분)

※ 시장·군수는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예정지역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도시계획법·건축법·환경보전법등 각종 관련법령의 저촉여부 확인

○ 시·도지사 : 시장·군수가 추천한 사업자에 대하여 지역별 배분계획과 선정기준에 의하여 시·도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시행체계



바. 기타사항

- 정부시책방향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 신청가능

##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

3. 사 업 자 :

### 4. 세부사업계획

#### 가. 사업장 위치

○ 위치도(1/5000 축척지형도)

○ 사업부지

- 면 적 :        m²(        평),    소유자 :

- 지번 및 지목 :

- 농업진흥지역 여부 :            (농지전용가능지역 여부 :            )

- 개발제한지역 여부 :

- 국토이용관리법, 수도권정비법, 도시계획법, 농발법 등의 저촉여부 :

- 자기토지, 원료비 수집지역, 제반여건 등을 상세히 기재

#### 나. 사업규모(부지, 건축물, 시설능력등)

#### 다. 소요예산 및 자금조달계획

#### 라. 사업운영방안

### 5. 사업여건

○ 생산자단체의 경우 : 농가수, 관내논면적, 벼 생산량, 최근 3년간 조합의 경영수지상태, 최근 3년간 쌀 판매실적, 합병 또는 공동출자내역, 인수도정 공장명, 연계출하도정공장명, 사업계획 이사회 결의, 공동건조 및 저장에 관한 합의결과 및 참여농가수, 신규고정투자여력, 기타

○ 일반사업자의 경우 : 농가수, 관내논면적, 벼 생산량, 평창고 보유현황, 조곡매출 및 조곡공매참여 연도와 최근 3년간 취급물량, 인수도정공장명, 통합 또는 공동출자 도정공장명 및 현황, 농민과의 계약재배와 생산자조직과의 물벼수집 계획량 및 공동건조·저장에 관한 합의결과와 참여농가수, 신규 고정투자여력, 기타

[ 별지 제2호 서식 ]

미곡종합처리장사업(완료, 연도말) 검정 및 정산서

1. 사업주관기관명 :
2. 작성년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지원대상자 주소·성명 : (주민등록번호)
5. 사업비 집행명세 :

○ 총괄표

사업명	사업비 집행액(천원)			
	계	국고보조	국고융자	자부담
	(100%)	( )	( )	( )

○ 세부명세

세부시설 (사업)명	소요자재 (인력)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천원)	금액 (천원)	기 타
○○○○	계 ○○○○ ○○○○ · ·						○ 거래처 및 전화 번호 기타필요 사항 기재
○○○○	계 ○○○○ ○○○○ · ·						
합 계							

< 작성요령 >

-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사업자 등록번호 기재) 첨부  
(증빙서류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는 각 사업비 합계와 일치해야 함.)
  -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자필서명영수증
  -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계좌입금증 등)
  - 시설설치시 인부에게 제공한 식사대는 사업비 정산대상에서 제외함.
- 주요공정 및 완성사진, 자재수불부, 작업일지, 기타 사업추진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 첨부
- 검정 및 정산담당자는 위 세부명세내용대로 시설이 완료되었는지를 현장에서 대조·확인
- 세부시설(사업)명 단위사업의 실체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구분하고, 소요자재(인력)명은 자재, 장비, 인력,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가능한한 상세하게 구분함.





[ 별지 제4호 서식 ]

## 사업정산실적 보고(199 년도 사업자)

< 사업명 : >

사업자	지역 (시·군·읍·면)	사업량						사업비											착공일	준공일			
		계획			실적			비율		시설능력			투자계획				김행실적정산				비율 (F/E)		
		대지	건물 (A)	기계 설비 (B)	대지	건물 (C)	기계 설비 (D)	C/A	D/B	건조	저장	가공	계	보조 (E)	융자	자담	계	보조 (F)				융자	자담
		m ² (평)	m ² (평)	종	m ² (평)	m ² (평)	종	%		톤/조각	톤/조각	톤/정곡	천원				천원				%		

※ 처리능력 : 건조는 연간처리능력, 저장은 일시저장능력, 가공은 1일 8시간기준 생산능력을 표시

[ 별지 제5호 서식 ]

**미곡종합처리장별 원료벼 매입실적보고( /4분기)**

(물량 : 조곡, 톤, 금액 : 천원)

시·군 및 사업자	연산 별	매 입 량(계)		농 가 매 입				농가수탁 물량	기 타 매 입				조곡공매	
		물량	금액	계 약 재 배		일 반 농 가			농업회사법인		기 타		물량	금 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 ( )내에는 물벼로 매입처리한 물량을 기재

**19    농업협동조합 합병지원(공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업금융과(과장 허윤진, 서기관 박형규)입니다.

**1. 목    적**

- 농업·농촌 기간조직인 조합을 경쟁력을 갖춘 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생활권·경제권 중심으로 합병하는 조합에 시설통합, 부실채권 등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조합합병촉진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96년말 1,350개 조합을 2001년까지 500개 조합으로 합병하여 경쟁력 제고
- 조합원 자율의사에 의한 합병추진, 합병권고 시행
- 합병조합에 대한 지도·지원강화로 경영정상화 조기정착

**3. 근거법령**

- 농업협동조합법 제74조의2
- 농업협동조합합병촉진에관한법률 제4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억원)

구            분	'92~'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예산안)	2000~2001
사    업    량 (개)	-	-	65	80	40	665
사업비    국고용자	-	-	65	80	40	665

## 5. '99년도 사업시행요령

### < 사업개요 >

#### 가. 사업내용

##### (1) 사업추진배경

- WTO 출범과 OECD가입에 따른 국내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 조합합병을 통한 규모화로 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 「농업협동조합법」 개정('94.12)과 「농업협동조합합병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96.12)
    - 지원근거 : 농협법 제74조의2, 농협합병촉진법 제4조

##### (2) 연도별 합병계획

- 2001년까지 500여개 조합으로 합병추진(850개 조합 소멸)

##### (3) 지원대상·금액 및 조건

- 지원대상 : 합병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농업협동조합
- 지원금액 : 소멸조합당 1억원(신설합병의 경우 참여조합-1)
- 지원조건 : 무이자, 5년 거치후 일시상환(융자)

##### (4) 자금용도

- 경영활성화 및 유통가공시설의 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

나. '99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억원)

	사업량 (개)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국고)			지방비	용 자
			계	보 조	용 자		
합병조합	40	40	40	-	40	-	-

※ 용자조건 : 무이자, 5년 거치후 일시상환

< 추진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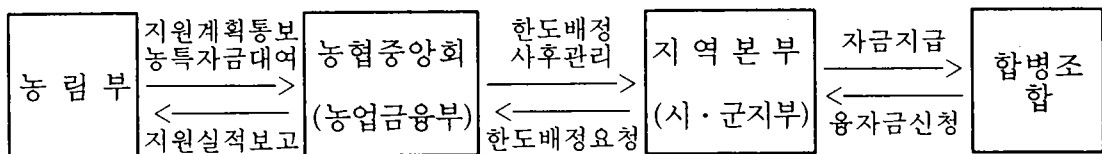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업정책국 농업금융과(02-500-2638)
- 농 협 : 농협중앙회 합병사무국(02-397-6512)

다. 사업시행

- 농림부장관으로부터 합병인가를 득한 후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농협중앙회장을 경유하여 농림부에 자금을 신청  
- 자금계획서 1부, 합병등기부 등본 1부
- 사업시행체계



< 행정사항 >

가. 자금관리

-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및 “농협여신관계제규정”에 의하여 관리

나. 사후관리

- 농협중앙회장은 합병조합이 조기에 경영이 정상화되도록 자금관리등 경영지도 실시

20 | 농산물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 실시(공공)

**I. 규모화촉진 직접지불 (공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지관리과(과장 이준영, 행정사무관 김부천)입니다

**1. 목 적**

-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쌀전업농의 영농규모확대를 촉진함으로써 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

**2. 시책추진방향**

-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안정과 전업농업인등의 영농규모확대가 동시에 달성되도록 쌀전업농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3. 근거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5호
-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및 시행규칙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97	'98	'99	2000~2004
사 업 량		ha 10,588	9,000	8,100	60,312
사 업 비	계	백만원 27,319	24,120	22,294	211,355
	보 조	27,319	24,120	22,294	211,355
	용 자	-	-	-	-
	지방비	-	-	-	-
	자부담	-	-	-	-

## 5. '99년도 사업시행요령

### < 사업개요 >

#### 가. 사업내용

(1)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 농업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 현재 65세이상인 자('99년도의 경우 193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하되 다음 각 1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60세이상 (193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자도 지급대상에 포함.
  - 질병 또는 사고 등의 건강상 장애로 영농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질병 또는 사고 등의 건강상 장애로 영농이 힘들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또는 사고확인서)를 첨부하거나, 이장 또는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서를 받는 경우
  - 노동력 부족으로 영농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 동일세대원내 후계농업인이 없는 자로서 노동력부족으로 영농이 힘들다고 이장 또는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서를 받거나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일의 3년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1월1일부터 3년간 계속하여 농작물을 경작한 농업인으로서 벼를 1년이상 경작한 농업인.
  - 벼외의 농작물을 일시 경작한 경우에는 3년 기간중 2년 이내에 경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이장 또는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서)
  - 다음 각 1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3년기간중 1년이상 벼를 경작한 자도 포함.
    - 질병 또는 사고등 건강상 장애로 영농을 하지 못한 경우(건강진단서, 사고확인서 또는 이장,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서)
    - 노동력 부족으로 영농을 하지 못한 경우(이장 또는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확인)

○ 지급약정체결시 소유하는 답을 모두 농어촌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나 전업농업인등에게 매도 또는 5년이상 임대(사용대 포함. 이하 같다) 하고자 하는 자.

- 단계적으로 경영이양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단계별 경영이양계획서(별지 제10호 서식)를 공사에 제출. 단, 단계별 경영이양기간은 최초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이어야 함.

※ 공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쌀전업농에게 직접 매도 또는 임대한 자가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 체결일 현재 지급대상자 요건을 구비하고 계약체결일 1년 이내에 경영이양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하며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단가는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년도 지급단가를 적용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요건의 예외>

① 자급 또는 취미경작 목적으로 1,000㎡이하의 답을 계속 경작하고자 하는 자(임차 또는 사용차하여 경작하고 있는 답을 포함하여 1필지 규모가 1,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0㎡까지 허용)

② 자기가 소유한 답이 다음의 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공사 또는 전업농업인등에게 경영이양이 곤란하여 계속 경작하고자 하는 자

-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계획구역안의 주거·상업·공업지역
- 도시계획법 제18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호지구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포함된 전원개발사업구역과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지역
-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



-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출자유지역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유치지역
- 특정다목적댐법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다목적댐건설 예정지역
-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철도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역
- 관광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경지정리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지역

※ 다음의 경우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임차 또는 사용차하여 경작하고 있는 답을 지급약정 체결일 이후에도 계속 경작하고자 하는 자(계속경작 허용규모이내의 답은 임차 또는 사용차 가능)
- 매도 또는 임대하는 농지를 배우자 또는 동일세대원인 직계존비속에게 경영이양을 하고자 하는 자
  - 민법 제78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분가가 아닌 단순분가를 통해 부모의 답을 경영이양을 받는 경우에는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2)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대상답 : 다음의 모든 요건을 갖춘 답

- (1)의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 토지대장에 등재된 지목이 답이며, 실제 벼를 경작하고 있거나 경작할 수 있는 답
  -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고 있지 않는 답(휴경답)은 제외
- 영농규모화사업 대상자가 매입 또는 임차를 원하는 영농규모화사업의 대상 답

(3) 경영이양보조금 지급기준

- 지급단가 : m²당 268원(ha당 268만원)
- 지급액 산정 : 경영이양면적(m²) × 268원
  - ※ 필지별 지급액 합계의 1,000원 미만은 절사하여 지급
- 지급액 상한 : 1,500만원

**나. '99년도 사업비 내용**

○ 예산지원규모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규모화촉진 직접지불 경영이양 보 조 금	ha 8,100	백만원 22,294	22,294	22,294	-	-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및 대행기관**

-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 사업대행기관 : 농어촌진흥공사

**나. 사업담당부서**

(1) 중 앙

- 농림부 농지관리과(전화 : 02-503-7264~5, 02-500-2635)
- 농어촌진흥공사 영농규모화사업처(전화 : 0343-420-3058 · 3355 · 34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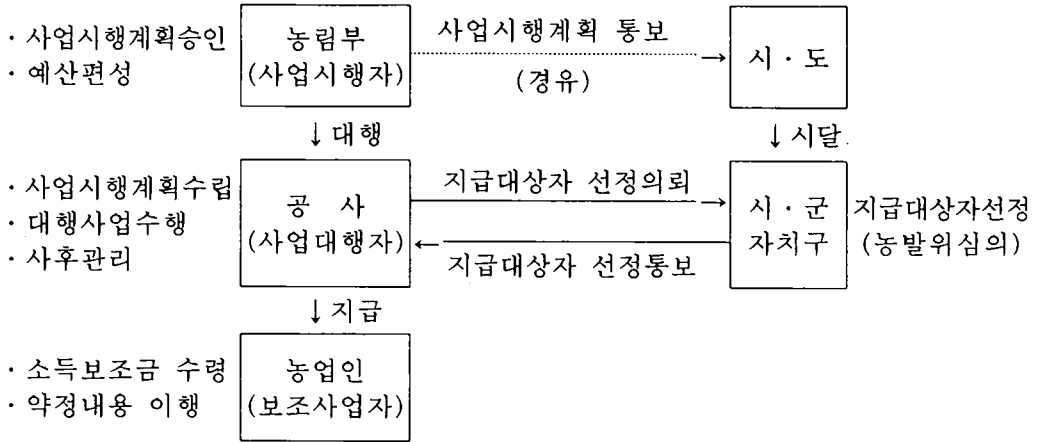
(2) 시 · 도

- 시 · 도 : 경기 농산유통과, 강원 농어업정책과, 충북 농산과, 충남 농정유통과  
전북 · 전남 · 경남 농업정책과, 경북 · 제주 농정과, 부산 농업행정과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농정과
- 농어촌진흥공사 각지사 영농규모화사업부

(3) 시·군·자치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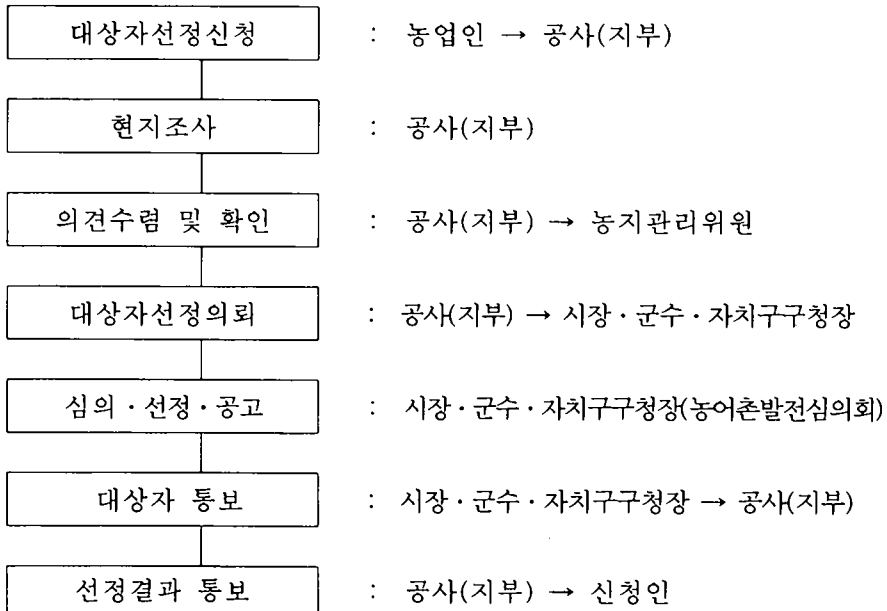
- 시·군·자치구 : 산업과 (농정과)
- 농어촌진흥공사 : 각 시·군지부

다. 사업시행체계도



라. 사업대상자 선정

(1) 선정절차



(2) 지급대상자 선정신청

- 신청시기 : 연중 신청가능하며, 영농규모화사업에의한 경영이양 농지의 매도·임대신청서류와 함께 신청
    - 쌀전업농등에게 직접 매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매매·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농지원부 정리 완료후에 신청
  - 접수기관 : 신청인 거주지 관할 공사 시·군지부
  - 신청서류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선정신청서(별지 제 1호서식)
    - 농지원부등본(공사에 매도·임대시 생략)
    -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공사에 매도·임대시 생략)
    - 주민등록표등본(공사에 매도·임대시 생략)
    - 전업농업인 등에게 직접 매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사용대차계약서 사본
- ※ 전업농업인등에게 직접 매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 제출하는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매매계약서	임대차·사용대차계약서
○ 계약당사자	○ 계약당사자
○ 목적 부동산	○ 목적 부동산
○ 계약년월일	○ 계약년월일
○ 농지대금 및 지급일자에 관한 사항	○ 임차료 및 지급일자에 관한 사항
○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중개업자	○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중개업자
○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 임대차계약조건 및 계약기한

(3) 신청서류 검토

- 신청서 기재사항 누락 또는 첨부서류 내용과 일치여부
- 지급대상자 및 대상농지 요건 적합여부

#### (4) 현지조사

- 신청서류 검토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영농규모화사업의 농지매도·임대 신청농지 현지조사와 병행 실시(별지 제2호서식)
  
- 지급대상자 조사
  - 현지거주 여부
  - 영농규모 : 지목별 소유·임차규모
  - 영농규모 축소 사유
  - 영농경력 및 비경작 경력
  - 농업법인 재직여부
  - 기지급 경영이양보조금 환수사실 여부
  - 쌀전업농육성대상자 여부 또는 영농규모화사업 지원수혜 여부
  - 전업농업인등에게 직접 매도 또는 임대시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의 사실여부
  - 시행규정에 의한 영농중단사유와 기간의 일치 여부
  
- 지급대상 담의 조사
  - 실제지목, 자경여부 및 재배작목
  - 지적도와 대비 일치여부
  - 농업진흥지역 내외
  - 수리·교통등 영농조건
  - 지급대상외 잔여 소유·임차농지규모
  
- 농지매입·임차예정 전업농업인등 조사
  - 지급약정체결 전일까지 전업농업인등의 자격요건 구비 여부
  - 담합·위장거래 여부

(5) 농지관리위원 의견수렴 및 확인

○ 내 용

- 지급대상자의 이·탈농 계획여부
- 대상 답, 대상자 조사등 현지조사결과 사실여부

○ 방 법

- 현지조사후 해당 답의 소재지 리·동에 거주하는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리·동에 농지관리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연접한 리·동에 거주하는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경영이양하는 답의 소재지가 2개이상의 리·동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영이양 면적이 많은 리·동의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함

(6) 지급대상자 심사 및 선정의뢰

- 공사지부장은 현지조사와 신청서류 검토결과 지급대상자의 요건에 부합되는 자에 대하여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지급대상자선정을 의뢰 (별지 제3호 서식)

(7) 지급대상자 선정

○ 지급대상 확인

- 공사 지부장으로부터 지급대상자 선정의뢰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공사에서 제출된 서류의 검토와 농지원부 등에 의한 확인 등에 의하여 지급대상자 및 대상농지의 적격여부를 확인

○ 심 의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확인결과 결격사유가 확인된 자를 제외하고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자치구의 경우 자체 심의기구 구성)에 부의하여 심의하되 서면심의도 가능(분과위원회 심의시도 서면심의 가능)

○ 선정 및 공고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공사로부터 선정의뢰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그 명단을 공고하고 공사지부장에게 통보. 이 경우 선정에서 탈락된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도 함께 통보

○ 선정결과 통보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부터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공사지부장은 모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별지 제4호서식)하여 지급약정체결을 촉구하고 탈락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도 명기하여 통보

**마. 지급약정 체결 및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1) 지급약정 체결

○ 지급약정 체결전 확인사항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가 경영이양을 신청한 답의 전부를 매도 또는 임대하였는지의 여부
- 경영이양 농지를 매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전업농업인들이 자격요건을 구비하였는지의 여부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가 지급약정체결일 전까지 임차 또는 사용차하고 있는 답에 대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해제하였는지의 여부 (계속 경작 허용규모이내의 임차 또는 사용차하고 있는 답은 제외)
- 전업농업인들에게 직접 매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여부, 임대하는 경우에는 농지원부 정리 여부

○ 공사지부장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약정체결전 이행사항 확인결과 적정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지급약정을 체결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는 경영이양보조금 수령을 위한 예금계좌를 공사에 신고

- 공사지부장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신청한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예정액이 배정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영이양으로 인한 농지집단화 효과와 신청순위 등을 고려하여 배정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약정을 체결하고 초과분에 해당되는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음 년도초에 지급약정을 우선 체결
- 단계적으로 경영이양을 하는 경우에는 필지별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연도의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단가 적용

## (2)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 지급시기 : 지급약정체결후
- 지급방법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가 신고한 예금계좌에 입금 지급

## < 행정사항 >

### 가. 사업시행

#### (1) 경영이양보조금 지급계획의 수립

- 공사는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의 경영이양계획과 전업농업인 등의 경영계획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경영이양보조금 지급계획을 수립·확정하여 사업시행 전년도 3월31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 사업의 목적 및 사업내용
  - 시·도별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인원 및 소요예산
  - 전업농업인등의 농업경영규모확대 지원계획

#### (2)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 공사는 수립된 연간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사업시행계획(이하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년도 10월31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승인 요청



- 사업의 목표
  - 매도 및 임대에 의한 사업추진내용
  - 시·군·자치구별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인원 및 소요예산
  - 조사·교육·홍보 계획
- 농림부장관은 사업시행계획을 심사하여 승인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
- 공사 지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의 개요를 영농 규모화사업 시행계획 공고와 함께 시·군·구·읍·면 및 공사 시·군지부의 게시판 등에 10일이상 공고
- 당해연도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사업비 규모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및 대상농지의 요건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기준과 지급시기 및 방법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조건 및 반환에 관한 사항
- 공사 지부장은 승인된 사업시행 계획의 개요를 농업인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등에 대한 유인물 송부
  - 홍보용 책자 및 리후렛 제작 배포
  - 신문, 생활정보지, 반상회보, 시·군 홍보지 등에 게재
  - 반상회 및 사랑방 좌담회 개최 등을 통한 홍보
- 공사는 사업시행과정에서 지역여건에 따라 지역별, 사업내용별(매도·임대) 사업시행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정시행하고, 조정 결과는 농림부에 보고 및 시·도에 통보
- 시·도간 조정 : 농림부와 협의
  - 시·군·자치구간 및 사업내용별 조정 : 공사 자체 조정

## 나. 사후관리

### ○ 경영이양보조금 수혜자 관리

- 조사시기 : 영농규모화사업과 동일
- 조사대상 : 당해연도 6월말까지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받은 농업인 및 농지
- 조사내용
  -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의 약정 이행여부
  -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의 영농규모 변화내용
- 조사방법
  - 농지원부 확인
  - 현지출장을 통한 본인, 농지관리위원, 이장, 주민 등에 대한 면담조사
- 조사결과 정리
  - 군지부장은 조사결과를 영농규모화촉진 경영이양보조금 수령자관리 대장(별지 제9호서식)에 기재하여 정리
- 사후관리 기간
  - 매매·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계약일로 부터 5년간

### ○ 경영이양보조금 수령자의 행위제한사항

-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영농이 허용된 담외의 담을 매입 또는 임대(이하 사용차 포함)하여 벼를 경작
- 임대한 담의 소유권 이전
- 임대한 담에 공작물 설치 및 형질 변경
- 기타 경영이양한 담을 경작하고 있는 전업농업인등의 농업경영의 규모 확대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지급약정의 해지·해제

- 해지사유

- 지급약정의 체결원인이 되는 당해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계약의 해지. 다만, 공사 또는 쌀전업농에게 매도하거나 공사에 임대하기 위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제외

- 해제사유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지급약정을 체결
- 경영이양후 영농이 허용된 답외의 답을 경작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체결시의 단계별 경영이양계획서의 내용대로 경영이양 완료예정일까지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약정의 해지·해제 통보

- 약정해지예정일 2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통보(별지 제6·7호서식)

○ 약정의 해지·해제의 취소

- 경영이양보조금 수령자가 약정의 해지·해제사유 해소를 공사에 통보한 때에는 약정의 해지 또는 해제를 취소

○ 경영이양보조금 전부반환의 경우

- 경영이양보조금 전부반환의 경우는 다음과 같음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지급약정을 체결하고 경영이양보조금을 수령하여 약정이 해제된 경우
- 경영이양후 영농이 허용된 답외의 답을 경작하므로써 약정이 해제된 경우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체결시의 단계별 경영이양계획서의 내용대로 경영이양 완료예정일까지 이행치 않아 약정이 해제된 경우

- 반환금액 계산방법 : 기지급 경영이양 보조금을 지급한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할의 가산금 부과

$$\text{반환금액} = \frac{\text{기지급경영이양보조금총액}}{\text{양보조금총액}} + \left( \frac{\text{기지급경영이양보조금총액}}{\text{양보조금총액}} \times \frac{\text{반환일까지의 일수}-1\text{일}}{365\text{일}} \times 10\% \right)$$

○ 경영이양보조금 일부반환의 경우

- 경영이양보조금 전부반환의 경우를 제외한 약정해지사유에 해당되어 약정이 해지된 경우
- 경영이양보조금 일부반환시 반환금액 산정

$$\text{반환금액} = \frac{\text{기지급경영이양보조금총액}}{\text{양보조금총액}} \times \frac{\text{잔여기간}}{\text{임대기간}} \times \frac{\text{지급약정해지면적}}{\text{경영이양 총면적}}$$

- 임대기간 : 5년(임대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5년으로 봄)
- 잔여기간 : 5년에서 이미 경과한 임대기간을 뺀 기간으로 하되 연단위를 초과하는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
  - 경영이양을 받은 농업인이 경작중인 농작물을 수확하기로 임대인 또는 사용대주와 합의한 경우에는 초과 잔여기간은 잔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경영이양을 받은 농업인이 경작중인 농작물을 수확하지 아니하기로 임대인 또는 사용대주와 합의한 경우에는 초과 잔여기간은 잔여기간에 산입
  - 약정해지연도에 경작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초과 잔여기간은 잔여기간에 산입. 다만, 임대기간 만료연도에 경영이양을 받은 농업인이 경작중인 농작물을 수확하고 경작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초과 잔여기간은 잔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경영이양보조금 반환 통지 : 약정해지일로부터 7일이내(별지 제8호서식)

○ 경영이양보조금 반환 기한 :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

○ 경영이양보조금 반환 미이행시의 조치

경영이양보조금의 반환통지를 받고 30일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인 조치 이행

- 납기경과후 10일 이내에 반환독촉장을 발부하며, 반환독촉장은 3회에 걸쳐 매 1개월마다 발부
- 경영이양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반환독촉을 받고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등 법적 절차를 취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공사의 소송업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제소등 법적 조치

**다. 사업대행에 따른 비용보조**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계획 수립, 보조금지급대상자 선정, 현지조사, 사후 관리등 사업대행에 따른 제비용(수수료)은 2000년 농특회계 예산에 계상 반영 보조한다.

**라. 보고**

구 분	보고사항	보 고 기 한			비 고
		지 사	본 사	농림부	
○ 분기보	○ 직불사업추진실적 보고	분기 익월 5일	분기 익월 10일	분기 익월 15일	별지 제10호 서식
○ 연 보	○ 직접지불사업사후 관리 조사결과 보고	10월 5일	10월 10일	10월 31일	별지 제11호 서식

**6. 2000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신청인 거주지 관할 농어촌진흥공사 시·군지부

## 나. 신청자격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 현재 65세이상인 자(193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하되 다음 각 1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60세이상(194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자도 지급대상에 포함
  - 질병 또는 사고등의 건강상 장애로 영농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질병 또는 사고등의 건강상 장애로 영농이 힘들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또는 사고확인서)를 첨부하거나, 이장 또는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서를 받는 경우
  - 노동력 부족으로 영농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 동일세대원내 후계농업인이 없는 자로서 노동력부족으로 영농이 힘들다고 이장 또는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서를 받거나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일의 3년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계속하여 농작물을 경작한 농업인으로서 벼를 1년이상 경작한 농업인.
  - 다음 각 1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3년기간중 1년이상 벼를 경작한 자도 포함.
    - 질병 또는 사고등 건강상 장애로 영농을 하지 못한 경우(건강진단서, 사고확인서 또는 이장,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서)
    - 노동력 부족으로 영농을 하지 못한 경우(이장 또는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확인)
  - 벼외의 농작물을 일시 경작한 경우에는 3년 기간중 2년 이내에 경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이장 또는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서)
- 지급약정체결시 소유하는 답을 모두 농어촌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나 전업농업인등에게 매도 또는 5년이상 임대(사용대 포함.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농업인

#### 다. 신청절차

- 2000. 1. 1이후 경영이양 예정시기에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를 당해 농지의 매도 또는 임대신청서류와 함께 공사 시·군지부에 제출 (제출서식은 공사 시·군지부에 비치)

#### 라. 구비서류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공사 시·군지부 비치)
  - 농지원부등본(읍·면장 발행)
  - 등기부등본(관할법원 발행) 및 토지대장등본(시·군발행)
  - 경영이양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읍·면장 발행)
  - 농지매매·임대 또는 사용대차계약서 사본(공사를 경유하지 아니 하고 쌀전업농에게 직접 매도·임대 또는 사용대차시)
- 공사에 농지매도·임대·사용대 신청시 제출분으로 대체 가능

#### 마. 대상자 선정

- 공사가 신청자에 대한 제출서류 검토와 현지조사 확인후 지급요건에 적합한 자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 시·군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

【 별지 제1호 서식 】

( 앞 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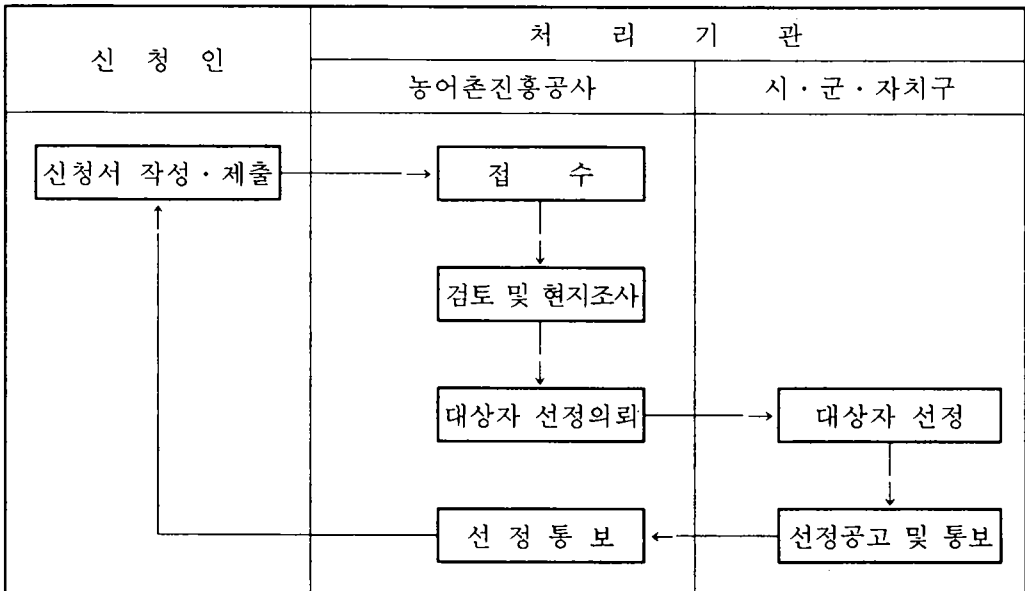
경 영 이 양 보 조 금 대 상 자 선 정 신 청 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구 분	농지소재지			지 번	공부 지목	면 적 (㎡)	진 흥 지역	소유자	경 작 구분	경 영 이 양 방 법	지 급 방 법
	사군	읍면	라동								
지 급 대 상 농 지											
		계									
간 여 소 유 농 지	답										
	기타										
	계										
임 차 경 영 농 지	답										
	기타										
	계										
											수수료 없 음
<p>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서명 또는 인)</p> <p>농어촌진흥공사 사장 귀하</p>											
붙임서류	1. 농지원부등본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4. 주민등록등본 5. 매매 또는 임대차·사용대차계약서 사본(전업농업인등에게 직접 경영 이양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



제출 및 처리기관	○ 거주지 관할 농어촌진흥공사 시·군지부
근거법규	○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6조(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 선정신청) -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작성방법	○ 진흥지역 : 농업진흥지역은 ○, 농업진흥지역밖은 ×로 기재 ○ 소유자 :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명의 기재 ○ 경작구분 : 자경,임대,임차,위탁,사용대,사용차 및 휴경으로 구분기재 ○ 경영이양방법 - 소유농지 : 농어촌진흥공사 임대·매도, 쌀전업농육성대상자 임대·매도·사용대, 영농조합법인 임대·매도·사용대, 농업회사법인 임대·매도·사용대, 개별 임대·매도·사용대 - 임차농지 : 경작권종료, 경작권이양, 경작권포기 ○ 지급방법 : 일시불 또는 연불로 기재 ※ 구분란(잔여소유농지·임차경영농지)의 지목은 실제지목을 말함.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별지 제2호 서식 】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현지조사서**

1.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일자		
주소			전화		
조사내용	영농경력	벼재배기간	실거주여부	경영이양후 이주여부	규모화지원여부
	년	년~년			

2. 가족구성원 내역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동거구분	주민등록 주소지	규모화지원여부

3. 본인 및 가족 경영농지 내역

구분	농지소재지	지번	공부지목	진흥지역	면적(m ² )	소유자
			실제지목	경작구분	경영이양방법	경영이양대상자
지급대상농지						
	계					
잔여소유농지						
	계					
임차경영농지						
	계					

농지관리위원 확 인	의견:
	리·동( 마을) 농지관리위원 (인)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210mm × 297mm  
(인쇄용지(2급) 60g/m²)

##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선정신청자개인별조사서

### 1. 선정신청자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일자	
	주소			전화		

### 2. 가족구성원 내역

관계	가족성명	주민등록번호	비고	관계	가족성명	주민등록번호	비고

### 3. 경영농지 내역

구분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	소유자 / 이양받은자	
			공부	실제		경영이양형태	성명
지급 대상 농지							
	계						
잔여 소유 농지							
	계						
임차 경영 농지							
	계						

210mm × 297mm  
(인쇄용지(2급) 60g/m²)

【 별지 제3호서식 】

소득보조금지급대상자 선정의뢰서

일련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 주소지	신청일자	벼재배 경 력

경 영 이 양 내 역						소득보조금 지급예정액 (천원)		
매 도		임 대		계		일시불	년 불	계
필지	면 적	필지	면 적	필지	면 적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보조금지급대상자 선정을 의뢰하오니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 선정의뢰자 개인별 조서 각 1부. 끝.

19    년    월    일

의뢰인 농어촌진흥공사    ○ ○ ○ 지부장    (인)

○ ○ 시장(군수) 귀하

27271-27821일  
'97. 1. 30 승인

210mm × 297mm  
(인쇄용지(2급) 60g/m²)

###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선정통지서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기한내에 지급 약정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1.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 2. 지급대상 농지의 표시 및 경영이양보조금지급 내역( 세부내역 별첨 )

- 대 상 면 적 :
- 지 급 총 액 :

#### 3. 지급약정체결

- 약정체결기한 : 선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장소 : 농어촌진흥공사                      시·군지부

#### 4.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 방법 : 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
- 시기 : 약정 체결후

#### 5. 경영이양보조금 수령후 신고하여야 할 사항

- 영농규모의 확대 또는 축소사항
- 주소 변경사항
- 지급약정의 해지사유 발생에 관한 사항

#### 6. 약정체결시 준비할 사항

- 주민등록증
- 인감도장
- 온라인 예금통장 (농지매도 대금 또는 임차료선급금 입금통장으로 대체 가능)

210mm × 297mm  
(인쇄용지(2급) 60g/m²)

7. 약정 해지 · 해제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 반환

약 정 해 지 · 해 제 사 유	경 영 이 양 보 조 금 반 환 기 준
1.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어 지급약정을 체결	○ 지급받은 경영이양보조금 전액과 가산금 10%를 가산하여 반환
2. 경영이양 당시 영농이 허용된 담외의 담을 매입하거나 임대 또는 사용차하여 경작	
3. 단계별 경영이양계획서의 내용대로 경영이양 완료예정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임대 또는 사용대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계약의 해지	○ 반환사유 발생일 이후 잔여기간 해당 경영이양보조금 반환

년 월 일

농어촌진흥공사

지부장 (인)

○ ○ ○ 귀하







( 뒷 쪽 )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정의 해지 또는 해제통지를 받고 약정의 해지 또는 해제예정일 이전에 그 사유를 해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을”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의 해지 또는 해제사유 해소를 통보한 때에는 “갑”은 약정의 해지 또는 해제를 취소할 수 있다.

제3조(경영이양보조금의 반환)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을”은 다음 각호와 같이 기지급 경영이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기지급 경영이양보조금 전액과 지급일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 연 1할의 이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
2.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 또는 사용대기간중 약정해지일 이후의 잔여기간에 해당되는 경영이양보조금을 반환. 이 경우 잔여기간은 농산물의 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4조(통지사항) “을”은 소유농지를 “갑”에게 임대하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을 수령한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갑”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영농규모의 확대 또는 축소
2. 주소 변경
3. 약정의 해지사유

제5조(해석) 이 약정문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 “을” 쌍방의 의견이 다른 때에는 약정체결 당시의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 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관할법원) 이 약정에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는 이 약정을 체결한 “갑”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갑” “을” 쌍방이 서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농어촌진흥공사

지부장

(인)

“을”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 별지 제7호 서식 】

경영이양보조금지급약정해지통보서

본인은 농어촌진흥공사와 체결한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지하고자 통보하오니 약정의 해지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면, 약정해지예정일전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영이양보조금 수령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2. 약 정 일 자 :     년   월   일

3. 약정해지 대상농지 및 경영이양보조금 수령내역

약 정 해 지 대 상 농 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내역	
농 지 소 재 지	지 목	면 적 (m ² )	약정해지 면적(m ² )	지급일자	지급액(원)
계					

4. 약정해지 사유 :

3. 약정해지 예정일자 :     년   월   일

                  년    월    일

○ ○ ○   (인)

농어촌진흥공사사장 귀하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m²)





경 영 이 양 농 지 내 역							
구분	농지소재지	지 번	공부지목	면적(m ² )	소유자	보조금 지급액(원)	
			실제지목	진흥지역	경영이양방법	일시불	연 불
지급대상 농지							
변경 농지 내역	중전농지소재지	지 번	중전면적	변경사유	환수일자	환수액 (원)	
	변경농지소재지	지 번	변경면적	변경일자			
잔 여 경 영 농 지 내 역							
구분	농지소재지	지 번	공부지목	면적(m ² )	소유자	경작자	
			실제지목	진흥지역	경영이양형태	주민등록번호	
잔여 소유 농지							
임차 경영 농지							
사 후 관 리 조 치 내 용							
시정요구 통보일	약정해지(해제) 통보일	조 치 내 역					
		조 치 내 용			환수금액(원)		
시 정 일	해지(해제)일	환 수 일		소득보조금	가 산 금	계	
※ 사후관리대상 제외		년 월 일	확 인	지부장	(인)		

**단계별 경영이양계획서**

**1. 선정신청자**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신청일		선정일	

**2. 경영이양대상 농지내역**

구분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	경영이양	
					방법	시기
경영이양대상답						
금회 경영 이양						
	계					
단계별 경영 이양						
	계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경영이양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농어촌진흥공사 사장 귀하

210mm × 297mm  
(인쇄용지(2급) 60g/m²)

【 별지 제11호 서식 】

심사제외

직불사업 추진실적( / 분기)

가. 총괄

(단위:호,ha,백만원)

사업별	계획				보조금지급			비율	
	년간		금분기		농가	면적	금액	년간 대비	분기 대비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농지매매									
임대차									
계									

나. 도별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실적

(단위:호,ha,백만원)

시 도 별	계획				보조금 지원실적									
	년간		금분기		계				농지매매			임대차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연간 대비 (%)	농가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계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 별지 제12호 서식 】

자체가 26-2

**직불사업 사후관리 조사결과 보고**

가. 총괄

(단위:m²,천원)

시 도 별	보조금지급실적			약정위반농지			보조금반환			위반농지에 대한 경영이양보조금 반환조치중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계																		

※ 작성요령

1. 경영이양보조금지급 실적 : 조사년도 6월말까지 지급한 경영이양보조금 실적 누계 기재
2. 약정위반 농지 : 조사년도 6월말까지 지급농지중 사후관리조사결과 경영이양보조금 환수대상이 되는 약정위반 농지를 모두 기재
3. 경영이양보조금 반환 : 조사년도 9월말까지 경영이양보조금 환수대상 농지중 경영이양보조금을 반환한 농지를 모두 기재
4. 경영이양보조금 반환조치중 : 전년도까지 위반농지는 전년도까지 사후관리 조사결과 경영이양보조금 반환대상이 되는 농지중 미반환농지 기재, 당해년도 위반농지는 당해년도 사후관리 조사결과 위반농지중 경영이양보조금 미반환 농지를 기재

나. 약정위반자 명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반 사유	보조금지급			보조금환수대상			보조금환수		보조금 미환수액	환수예정일
				일자	면적	금액	보조금	가산금	계	일자	금액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 II.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환경농업과(과장 이덕로, 농업사무관 안영수)입니다

### 1. 목적

- 환경농업실천농가의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환경농업을 육성하고 농업·농촌의 환경보전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확대하기 위함

### 2. 시책 및 추진방향

-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도를 '99년부터 도입하되 신규 정책도입에 따른 문제점 보완, 행정비용 등을 감안, 단계별로 도입
  - 1단계('99) : 규제지역내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 + 기존의 유기 및 저투입 농가에 대한 직접 지불
  - 2단계(2000년이후) : 전국적인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
- 환경규제지역내의 작목반 중심으로 지원하고 기존의 유기재배, 무농약재배, 저농약재배 농업을 하고 있는 지역 포함
-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환경보전 효과 등을 감안하여 개별농업인 보다는 생산자조직 위주로 지원

### 3. 근거법령

-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 4. '99년도 사업계획

#### 가. 사업비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 산 액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환경농업보조금	ha 10,572	백만원 5,731	5,731	5,731	-	-	-

## 나. 지원조건

- ha당 524천원(국고보조 100%)

## 다.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 라. 사업담당부서

### (1) 중앙

- 농림부 환경농업과 (전화 : 02-503-7284~5)
- 농촌진흥청 식량작물과 (전화 : 0331-291-4291)
- 국립농산물검사소 품질관리과 (전화 : 0343-446-0126)
- 농협중앙회 환경농업과 (전화 : 02-397-5627)

### (2) 시·도

- 시·도 농산담당과(시·도농업기술원)
- 국립농산물검사소 시·도지소
- 농협중앙회 시·도지역본부

### (3) 시·군

- 시·군·자치구 산업·농정과(시·군농업기술센터)
- 국립농산물검사소 시·군출장소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 마. 보조금 지급

- 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친환경농업 실천여부를 확인(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의 토양검정조사 및 국립농산물검사소 시·군출장소장의 잔류농약검사)한 후 보조금 지급

※ 현재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및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으므로 시행규정 및 시행규칙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지침은 별도로 시행할 예정임